

失業家庭의 生活變化와 對應方案

金勝權

曹愛姐 金美坤 李善雨

金柔敬 宋寅珠 呂珣眞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경기침체에 이어 나타난 IMF 구제금융의 결과로 우리 나라는 대량의 실업사태를 맞이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失業은 時代와 社會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한다.

특히 韓國에서의 失業 狀況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社會安全網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실업가정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基礎的 生活을 保障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과거의 家族主義的 價値觀은 약화되었으며, 家族의 機能과 役割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업가정은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며, 가족원간의 葛藤이 惹起되고, 家族扶養機能이 더욱 약화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가족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個人 및 社會問題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가족원의 家出, 遺棄, 離婚·別居, 自殺 등 家族解體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실업자 및 실업가정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本 研究는 실업자와 그들의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生活變化를 파악하고, 그 對應方案을 摸索함으로써 현재의 실업자 및 실업가정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나게 될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對策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危機에 처한 실업자 및 실업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발전하고, 전체 가족원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는 본 연구원 家族福祉·人口政策팀 金勝權 博士의 책임 하에 완성된 것으로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연구수행 및 보고서 執筆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分擔內譯은 다음과 같다.

研究調整 및 總括 (金勝權)

報告書 執筆:

- 第1章 序論 (金勝權)
- 第2章 先行研究 (金勝權·曹愛姐·李善雨·金柔敬)
- 第3章 失業規模 및 失業者 保護의 必要性 (金勝權)
- 第4章 失業家庭의 經濟狀態의 變化 (金勝權·宋寅珠)
- 第5章 家族生活의 變化 (曹愛姐)
- 第6章 失業者의 心理狀態의 變化 (金勝權)
- 第7章 健康·醫療保護의 變化 (金柔敬)
- 第8章 失業家庭의 福祉欲求 (李善雨·呂珮眞)
- 第9章 失業者 및 失業家庭을 위한 對應方案 (金美坤·金勝權)
- 第10章 結論 (金勝權)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부, 학계 인사에게도 감사한다. 또한 신속한 자료처리를 위해 수고한 정보통계연구실의 朴大順 主任研究助員과 보고서의 원고정리와 편집을 성실하게 도와준 朴賢正 研究助員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주신 朴純一 研究委員, 鄭京姬 責任研究員에게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에 收錄된 內容은 研究者들의 개인적인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 敬 培

目次

| | |
|----------|----|
| 要約 | 15 |
|----------|----|

第1部 總論

| | |
|----------------------------------|----|
| 第1章 序論 | 57 |
| 第1節 研究 必要性 및 目的 | 57 |
| 第2節 研究內容 및 方法 | 59 |
| 第3節 研究資料 및 調查對象의 特性 | 64 |
| 第4節 研究의 制限點 및 統計表 判讀時 留意事項 | 70 |
| 第2章 先行研究 | 72 |
| 第1節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關聯 先行研究 | 72 |
| 第2節 失業家庭의 家族生活 關聯 先行研究 | 74 |
| 第3節 失業者의 心理狀態 關聯 先行研究 | 77 |
| 第4節 失業家庭의 保健·醫療 關聯 先行研究 | 82 |
| 第5節 失業者의 社會的 關係 關聯 先行研究 | 86 |
| 第3章 失業規模 및 失業者 保護의 必要性 | 88 |
| 第1節 失業 規模 | 88 |
| 第2節 失職者 및 失職家庭 保護의 必要性 | 91 |

第 2 部 失業家庭의 生活變化

| | |
|---|-----|
| 第4章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變化 | 95 |
| 第1節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變化 | 96 |
| 第2節 失業家庭의 所得減少 對處方法 | 118 |
| 第3節 失業家庭의 最低生活費 및 生計維持 方法 | 124 |
| 第4節 失業家庭의 生活維持 可能期間에 영향을 주는 要因分析 | 141 |
| 第5節 要約 및 示唆點 | 146 |
| 第5章 家族生活의 變化 | 148 |
| 第1節 失業家庭의 家族生活 變化 | 149 |
| 第2節 失業家庭 夫婦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 184 |
| 第3節 要約 및 示唆點 | 187 |
| 第6章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 190 |
| 第1節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 192 |
| 第2節 失業者의 心理狀態에 영향을 주는 要因分析 | 219 |
| 第3節 要約 및 示唆點 | 226 |
| 第7章 健康·醫療保護의 變化 | 228 |
| 第1節 失業家口의 健康·醫療保護 行態變化 | 229 |
| 第2節 醫療機關 利用 中斷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分析 | 271 |
| 第3節 要約 및 示唆點 | 278 |

第 3 部 失業家庭의 福祉欲求와 對應方案

| | |
|------------------------------------|-----|
| 第8章 失業家庭의 福祉欲求 | 283 |
| 第1節 失業家庭의 福祉欲求와 社會福祉서비스의 對應 | 284 |
| 第2節 失業家庭의 福祉欲求 査定 | 288 |
| 第3節 失業家庭의 福祉欲求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 300 |
| 第4節 要約 및 示唆點 | 309 |
| 第9章 失業者 및 失業家庭을 위한 對應方案 | 312 |
| 第1節 失業家庭을 위한 社會安全網 構築方案 | 312 |
| 第2節 失業者 및 失業家庭을 위한 補完的 對應方案 | 349 |
| 第10章 結 論 | 359 |
| 參 考 文 獻 | 362 |

表目次

| | |
|--|-----|
| 〈表 1- 1〉 調査完了 失業家口の 特性 | 67 |
| 〈表 1- 2〉 調査完了 失業者의 特性 | 69 |
| 〈表 2- 1〉 失職者가 다른 家族에게 느끼는 感情 | 79 |
| 〈表 2- 2〉 다른 家族이 失職者에게 느끼는 感情 | 80 |
| 〈表 3- 1〉 最近 失業率 및 失業者 推移 | 90 |
| 〈表 4- 1〉 失業家口와 非失業家口의 財産分布 比較 | 96 |
| 〈表 4- 2〉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平均 貯蓄規模 | 98 |
| 〈表 4- 3〉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平均 負債規模 | 99 |
| 〈表 4- 4〉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平均 所得規模 | 101 |
| 〈表 4- 5〉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平均 支出規模 | 102 |
| 〈表 4- 6〉 失業家口와 非失業家口의 所得 및 支出額 分布 | 103 |
| 〈表 4- 7〉 失業家口와 非失業家口의 內譯別 平均所得額 | 104 |
| 〈表 4- 8〉 失業家口와 非失業家口의 內譯別 平均支出額 | 105 |
| 〈表 4- 9〉 失業家口의 所得 및 支出減少額의 分布 | 107 |
| 〈表 4-10〉 家口主 特性別 失業家口의 所得 및 支出減少 | 110 |
| 〈表 4-11〉 家口特性別 失業家口의 所得 및 支出減少 | 111 |
| 〈表 4-12〉 失業家口의 家口主 特性別 平均 移轉所得額 | 113 |
| 〈表 4-13〉 失業家口의 家口特性別 平均 移轉所得額 | 114 |
| 〈表 4-14〉 失業家口의 家口主 特性別 平均 移轉支出額 | 116 |
| 〈表 4-15〉 失業家口의 家口特性別 平均 移轉支出額 | 117 |
| 〈表 4-16〉 家口主 特性別 失職 및 移職에 대한 對處方法(複數應答) | 121 |

| | |
|---|-----|
| 〈表 4-17〉 家口特性別 失職 및 移職에 대한 對處方法(複數應答) | 123 |
| 〈表 4-18〉 家口主 特性別 希望 月 最小生活費 | 126 |
| 〈表 4-19〉 家口 特性別 希望 月 最小生活費 | 127 |
| 〈表 4-20〉 失業家口の 現 經濟生活水準과 希望 月最小生活費 比較 | 129 |
| 〈表 4-21〉 必需項目別 失業家口の 現在 支出과 希望最小支出 比較 | 130 |
| 〈表 4-22〉 家口主 特性別 生計維持方法(複數應答) | 134 |
| 〈表 4-23〉 家口特性別 生計維持方法(複數應答) | 136 |
| 〈表 4-24〉 家口主 特性別 失業家口の 現在 生活水準 維持可能 期間에 대한 主觀的 評價 | 139 |
| 〈表 4-25〉 家口特性別 失業家口の 現在 生活水準 維持可能 期間에 대한 主觀的 評價 | 140 |
| 〈表 4-26〉 要因分析을 위한 諸 變數의 造作 | 142 |
| 〈表 4-27〉 失業者의 生活維持 可能期間에 影響을 주는 要因 回歸分析 | 145 |
| 〈表 5- 1〉 家口主의 一般的 特性 | 151 |
| 〈表 5- 2〉 家口主 및 家口の 特性別 生計維持 問題 | 153 |
| 〈表 5- 3〉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兒童缺食 | 156 |
| 〈表 5- 4〉 失業家口の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期間別 生計維持 問題 및 子女 點心缺食 | 157 |
| 〈表 5- 5〉 失業家口 家族員의 役割變化 및 役割適應率 | 158 |
| 〈表 5- 6〉 家口主 및 家口の 特性別 夫婦關係 | 160 |
| 〈表 5- 7〉 失業家口 家口主 및 配偶者의 失業者 與否別 夫婦關係 | 161 |
| 〈表 5- 8〉 失業家口の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期間別 夫婦關係 | 162 |

| | |
|--|-----|
| 〈表 5- 9〉 失業家口 家口主의 性別 家庭暴力 經驗率 | 163 |
| 〈表 5-10〉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子女의 施設·親知 委託保護 | 165 |
| 〈表 5-11〉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父母의 施設·親知 委託保護 | 168 |
| 〈表 5-12〉 失業家口의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期間別 子女 및 父母 施設·親知 委託 | 169 |
| 〈表 5-13〉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子女의 學業成績 低下 | 172 |
| 〈表 5-14〉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子女의 非行增加 | 173 |
| 〈表 5-15〉 家口主 및 家口 特性別 子女의 私教育 中斷 發生率 | 176 |
| 〈表 5-16〉 子女 私教育 中斷 失業家口 家口主의 特性 및 家口類型別 總所得 中 私教育費의 比率 | 177 |
| 〈表 5-17〉 失業家口의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期間別 子女 學業成績 低下, 非行增加 및 私教育 中斷 | 178 |
| 〈表 5-18〉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子女의 進學拋棄 및 延期 | 179 |
| 〈表 5-19〉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子女의 軍入隊 및 休學 | 181 |
| 〈表 5-20〉 失業家口의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期間別 子女教育 問題 | 182 |
| 〈表 5-21〉 失業家口의 生活方式 變化經驗率 | 183 |
| 〈表 5-22〉 分析에 使用된 變數 | 185 |
| 〈表 5-23〉 夫婦關係에 影響을 주는 要因의 回歸分析 | 186 |
| 〈表 6- 1〉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 192 |
| 〈表 6- 2〉 失業者 및 家口特性別 ‘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의 心理狀態 水準 | 196 |
| 〈表 6- 3〉 失業者 特性別 ‘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안됨’의 心理狀態 水準 | 198 |

| | |
|---|-----|
| 〈表 6- 4〉 失業者 特性別 ‘가슴이 두근그릴 때가 있음’의 心理狀態 水準 | 200 |
| 〈表 6- 5〉 失業者 特性別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의 心理狀態 水準 | 202 |
| 〈表 6- 6〉 失業者 特性別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의 心理狀態 水準 | 205 |
| 〈表 6- 7〉 失業者 特性別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의 心理水準 | 207 |
| 〈表 6- 8〉 失業者 特性別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밈’의 心理狀態 水準 | 209 |
| 〈表 6- 9〉 失業者 特性別 ‘잘 다툼’의 心理狀態 水準 | 211 |
| 〈表 6-10〉 失業者 特性別 ‘대사가 힘들’의 心理狀態 水準 | 213 |
| 〈表 6-11〉 失業者 特性別 ‘허무한 느낌이 듦’의 心理狀態 水準 .. | 214 |
| 〈表 6-12〉 失業者 特性別 ‘외로움’의 心理狀態 水準 | 216 |
| 〈表 6-13〉 失業者 特性別 ‘죽고 싶은 기분임’의 心理狀態 水準 .. | 218 |
| 〈表 6-14〉 心理狀態 領域別 心理水準 分布 | 221 |
| 〈表 6-15〉 要因分析을 위한 諸 變數의 操作 | 223 |
| 〈表 6-16〉 失業者의 心理狀態에 影響을 주는 要因의 回歸分析 .. | 225 |
| 〈表 7- 1〉 家口主 特性別 經濟危機 以後 지난 2個月間 疾病發生 比率 | 232 |
| 〈表 7- 2〉 家口 特性別 經濟危機 以後 지난 2個月間 疾病發生 比率 | 234 |
| 〈表 7- 3〉 失職者의 健康狀態 | 235 |
| 〈表 7- 4〉 家口主 特性別 罹患 家口員의 疾病類型 | 237 |
| 〈表 7- 5〉 家口 特性別 罹患 家口員의 疾病類型 | 238 |
| 〈表 7- 6〉 失業家口內 罹患家口員의 疾病種類 | 242 |
| 〈表 7- 7〉 家口主 特性別 醫療機關 變更率 | 244 |
| 〈表 7- 8〉 家口 特性別 醫療機關 變更率 | 245 |

| | | |
|----------|------------------------------------|-----|
| 〈表 7- 9〉 | 家口主 特性別 失業 前·後 醫療機關 利用의 變化 | 249 |
| 〈表 7-10〉 | 家口特性別 失業 前·後 醫療機關 利用의 變化 | 250 |
| 〈表 7-11〉 | 家口主 特性別 失業 前·後 醫療機關 變更理由 | 253 |
| 〈表 7-12〉 | 家口 特性別 失業 前·後 醫療機關 變更理由 | 254 |
| 〈表 7-13〉 | 家口主 特性別 未治療率 및 治療中斷率 | 257 |
| 〈表 7-14〉 | 家口 特性別 未治療率 및 治療中斷率 | 259 |
| 〈表 7-15〉 | 家口主 特性別 入院과 外來 治療中斷率 | 260 |
| 〈表 7-16〉 | 家口 特性別 入院과 外來 治療中斷率 | 263 |
| 〈表 7-17〉 | 家口主 特性別 未治療 및 治療中斷 理由 | 265 |
| 〈表 7-18〉 | 家口 特性別 未治療 및 治療中斷 理由 | 266 |
| 〈表 7-19〉 | 家口主 特性別 月 總支出額 중 醫療費 比率 | 268 |
| 〈表 7-20〉 | 家口 特性別 月 總支出額 중 醫療費 比率 | 270 |
| 〈表 7-21〉 | 家口主 特性別 醫療費 負擔으로 인한 병원利用 中斷 比率 | 272 |
| 〈表 7-22〉 | 家口 特性別 醫療費 負擔으로 인한 병원利用 中斷 比率 | 273 |
| 〈表 7-23〉 | 要因分析에 使用된 變數 | 275 |
| 〈表 7-24〉 | 醫療機關 利用 中斷에 影響을 미치는 決定要因 | 277 |
| 〈表 8- 1〉 | 緊急 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 290 |
| 〈表 8- 2〉 | 夫婦 및 子女問題 | 292 |
| 〈表 8- 3〉 | 保護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 292 |
| 〈表 8- 4〉 | 老人을 包含한 失業家庭의 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 293 |
| 〈表 8- 5〉 | 障礙人을 包含한 失業家庭의 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 294 |
| 〈表 8- 6〉 | 失業家庭의 緊急 現物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 | 295 |
| 〈表 8- 7〉 | 失業者의 保健醫療對策 要求順位 | 295 |
| 〈表 8- 8〉 | 相談을 원하는 問題의 類型 | 296 |

| | |
|---|-----|
| 〈表 8- 9〉 求職 關聯 서비스에 대한 欲求 | 297 |
| 〈表 8-10〉 子女에게 問題가 있는 경우 받고 싶은 도움 | 298 |
| 〈表 8-11〉 子女養育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가장 必要的 政府的 支援 | 298 |
| 〈表 8-12〉 老人扶養을 위해 가장 必要的 政府支援 | 299 |
| 〈表 8-13〉 障礙人家口에 가장 必要的 政府支援 | 299 |
| 〈表 8-14〉 就業狀態에 따른 福祉欲求 | 301 |
| 〈表 8-15〉 就業狀態에 따른 獨立變數의 記述統計와 t-檢證 結果 | 302 |
| 〈表 8-16〉 失業者의 福祉欲求에 대한 回歸分析 | 303 |
| 〈表 8-17〉 就業者의 福祉欲求에 대한 回歸分析 | 307 |
| 〈表 9- 1〉 社會安全網 現況(1999. 5. 30 현재) | 315 |
| 〈表 9- 2〉 社會安全網 關聯 豫算 推移 | 316 |
| 〈表 9- 3〉 評價尺度의 定義 및 方法 | 318 |
| 〈表 9- 4〉 社會保障 擴充豫算 對 臨時對策 豫算 | 319 |
| 〈表 9- 5〉 社會安全網 豫算의 充分性 | 322 |
| 〈表 9- 6〉 失業者 階層別 社會安全網 需給比率 | 323 |
| 〈表 9- 7〉 社會安全網 프로그램別 月 保護者(失業者 基準) | 325 |
| 〈表 9- 8〉 限時 生活保護의 效果性 | 326 |
| 〈表 9- 9〉 生活安定對策에 관한 프로그램 選好度 | 328 |
| 〈表 9-10〉 經濟危機 以後 失業率 推移 및 展望 | 332 |
| 〈表 9-11〉 經濟危機 以後의 貧困率(都市) 推移 | 333 |
| 〈表 9-12〉 2000~2002년 貧困率 推定結果 | 333 |
| 〈表 9-13〉 年度別 公共扶助對象者數 | 334 |
| 〈表 9-14〉 失業者 中 社會安全網 對象 | 335 |
| 〈表 9-15〉 年度別 所要豫算(1999년 現在 價值基準) | 340 |
| 〈表 9-16〉 主要國의 GDP대비 公共扶助 支出費의 比重(1992) | 341 |
| 〈表 9-17〉 年度別 公共勤勞對象者數 및 所要豫算 | 351 |

| | |
|-----------------------------|-----|
| 〈表 9-18〉 教育機關別 特化프로그램 | 353 |
|-----------------------------|-----|

圖 目 次

| | |
|---|-----|
| [圖 4-1] 失業家口의 所得變化 | 106 |
| [圖 4-2] 失業家口의 支出變化 | 106 |
| [圖 4-3] 家口員의 失·移職에 대한 失業家口의 對處方法(複數應答) | 119 |
| [圖 4-4] 한 달간의 希望最小生活費 | 124 |
| [圖 4-5] 失業家口의 生計維持方法 | 132 |
| [圖 4-6] 所得減少에 對處하기 위한 保有不動產 處分方法(複數應答) | 137 |
| [圖 6-1] 失業者의 心理狀態別 水準 | 194 |
| [圖 9-1] 失業者 特性別 政策目標 및 事業의 類型 | 338 |
| [圖 9-2] 生計維持能力別 基礎生活保障方案 | 346 |
| [圖 9-3] 勤勞連繫 프로그램 行政體系 | 348 |

要約

第 1 章 序論

1. 研究必要性 및 目的

□ 研究의 必要性

- 실업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완전고용상태라고 하는 경우에도 실업률은 약 4% 수준에 있음.
-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은 IMF 경제위기 때 보다 큰 폭으로 저하되었으나 실망실업자 및 취업 포기자 등을 고려하면 실업규모는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상용고의 증가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취업자일 지라도 실업위기는 상존하고 있는 상태임.
-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社會保障制度가 미비되어 있어 인간의 생존을 위한 基礎的 生活保障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업자와 그들 가정이 느끼는 고통은 지대함.
 - 더군다나 傳統的 性役割 關係가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가족에게 있어 家長 등 主扶養者의 失業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가족구성원이 경제적 및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함.
 - 家族 不安定은 가족원으로 하여금 강한 스트레스와 葛藤을 겪

게 하며, 약화된 家族機能과 役割로 인하여 심지어는 家族이 解體되기도 하여 失業家庭은 總體的인 危機를 맞고 있다고 하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社會福祉政策과 失業對策은 가시적 증상을 보이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事後治療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해결에 극히 消極的임.

□ 研究의 目的

- 本 研究는 經濟危機 克服過程에서 야기되고 있는 실업자 및 실업가정의 생활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 이어서 실업자 및 그들 가족의 제반특성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對應方案을 강구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실업가정의 분출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대책을 개발하여,
 - 궁극적으로 실업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발전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사회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그럼으로써 실업가정이 저소득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고, 빈곤계층 실업가정의 『貧困의 世襲化』를 防止하는 효과를 얻을 것임.

2. 研究內容 및 方法

□ 研究內容

- 失業家口, 失業者 및 就業者의 特性
- 失業家口의 經濟狀態 變化
- 失業家口의 家族生活 變化

-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 健康狀態 및 醫療機關 利用實態의 變化
- 失業者 및 失業家庭의 福祉欲求
- 失業者 및 家庭을 위한 福祉對策

□ 研究方法

- 기존 문헌고찰
 - 최근 실업 및 실직가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경제불황을 경험한 외국의 문헌을 고찰하며,
 - 통계청의 월별 경제활동인구자료를 검토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심층분석함

第2章 先行研究

1.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關聯 先行研究

- 실업은 일차적으로 소득의 중단 혹은 감소로 인하여 실업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제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고통을 안겨줌.
 - 실업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빈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 박탈의 위기,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등을 겪음.
 - 실업으로 인한 본인의 소득상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적 자원을 소유한 경우, 실업과 그것으로 인한 여타의 충격을 상당히 완충해주는 것(buffering effect)으로 제시됨.

- 즉, 저축, 주택, 퇴직금 등의 재정적 자원을 소유하고 부채가 없는 실업자는 그렇지 못한 실업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에서도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함.
 -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社會福祉的 介入은 실업으로 인한 일차적인 경제적 위기를 상당부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失職家庭의 경제적 어려움은 住居問題와 生計費問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구주 가족의 경제곤란은 현저하였음.
- 失職家庭은 所得과 支出이 모두 큰 감소를 보였으나 소득의 감소가 지출의 감소보다 큰 규모를 나타냈는데, 이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最低生計費로 인하여 지출감소가 소득감소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실직 전·후를 불문하고 실직가정의 지출은 대부분 生計費, 教育費, 住居費였는데, 이는 이들 가족이 최근의 대량실업사태가 있기 전에도 어려운 생활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임.
 - 따라서 실직가정의 가족원은 기초적인 삶과 子女教育을 위한 必須的인 支出만을 하는 耐乏的인 生活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저소득계층일수록 실업공포가 빠르게 확산되며, 직업별로는 생산직이나 자영업자가 사무직 또는 자유전문직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실업공포는 고학력 보다 저학력계층에서 더 심각하게 대두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 失業家庭의 家族生活 關聯 先行研究

- 실업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所得中斷 혹은 所得減少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의미로서 중요하지만, 이 외 혹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가족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주부양자의 실직 후 家庭의 生活方式에 많은 변화를 보여 친교생활 감소, 자녀의 사교육 및 상급학교 진학 포기, 자녀결혼 연기 및 출산기피 등의 현상을 보였음.
- 가족의 경제력, 교육수준, 의사소통 능력, 긍정적인 가치관 및 태도, 가족의 결속력, 평등한 부부권력 등이 위기에의 適應力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업자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됨에 따라 자기비난과 외부에 대한 분노감은 외재화되어 그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됨.
 - 즉, 실업에 따른 欲求不滿 때문에 과잉반응이나 폭력적 행동이 증가하여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족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배우자와 자녀는 국가의 경제적 문제의 숨은 犧牲者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家庭暴力은 가족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별거나 이혼의 원인이 되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葛藤關係를 심화시키게 됨.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실직자에게 미치던 否定的인 影響

이 배우자나 자녀에게까지 轉移되어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실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심화되는 경향에 있었음.

- 우리 나라의 경우, IMF 체제 초기에 주춤하던 離婚率이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임.
 - 서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신청건수는 폭등하였음. 특히, 이혼 신청자나 상담자 중 절반 정도가 婚姻生活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배우자의 무능력 등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家族解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함.
- 심지어 실업으로 인한 家族危機의 증가와 家族解體의 경향은 要保護 兒童의 증가와 같은 사회현상으로 表出되기도 하였음.

3. 失業者의 心理狀態 關聯 先行研究

- 대부분의 실직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초조 및 불안’의 증세를 보이는 실직자는 68.5%나 되었음.
 - 이는 특히 여성가구주가족의 실직자 중 무려 80.3%가 이런 증세를 보여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음.
 - 실직당사자는 無氣力感, 不安感, 挫折感, 責任感 등이었으며, 失望感, 負擔感, 억울함, 안타까움 등도 다소 느끼고 있었음.
 - 특히 좌절감, 실망감, 무기력감 등의 감정은 실직자의 삶에 대한 希望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極的 狀況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음.

- 실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서는 많은 感情的 反應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실직자의 88.5%가 배우자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음.
 - 가족원에 대한 주요 감정적 반응으로는 責任感, 罪責感이 각각 26.0%, 22.0%로 높았으며, 가족부양의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12.2%였고, 원망감, 창피함도 다소 있어 양면성을 보였음.
 - 실직자의 책임감과 죄책감은 배우자에 대해 56.0%, (손)자녀에 대해 47.1%,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43.3%로 나타났음.
 - 부모에 대한 否定的인 感情 중 怨望感은 1.8%에 불과하였으나 부담감이 22.8%나 되어 老父母의 扶養負擔이 지대함을 알 수 있음.
- 다른 家族員의 61.7%가 失職者에 대하여 심리적 변화를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배우자의 80.1%가 다양한 유형의 감정적 반응을 보였음.
 - 특히 실직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45.3%나 되어 실직자에 대한 夫婦愛를 엿보게 함.
 - 그러나 怨望感, 失望感, 창피함도 10.7%나 되었는데, 만약 이러한 感情이 表出될 경우 실직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家族葛藤의 要因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子女가 失職者에게 갖는 감정적 반응은 안타까움이 26.0%로 가장 높았으나, 父母의 失職者에 대한 感情은 안타까움이 무려 50.9%나 되어 부모의 실직 당한 자식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음.

-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 실직가정은 심각한 것은 정신건강문제라고 지적하였으며, 실직남편은 실직 전에 비해 家庭暴力을 자행하는 경우가 10.8% 증가하였고 暴力의 頻度와 水準도 증가하였음.
 - 실직남편의 아내들은 自尊心이 낮을수록, 남편의 失職對處行動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수록, 건강하지 못할수록,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憂鬱感이 높았음.
- ‘최근의 일에 대한 집중’이 떨어진다고 한 실직자가 66.6%였으며,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는 48.2%, ‘불행하며 마음이 울적’한 실직자는 44.4%, ‘자신감 상실’은 38.9%, 그리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직자는 24.1%로 나타났음.

4. 失業家庭의 保健·醫療 關聯 先行研究

- 失業率이 증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되기 시작했다고 함.
 - 이 외에도 신부전 사망률은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점으로부터 2년 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2~4년 후에 높았음.
 - 失業率의 변화시점과 死亡率의 변화시점간에는 다소의 시간적 지체가 있던 것은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死亡으로 이어지기 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함.
- 가장의 실직은 가정재정을 주요한 위기로 몰아 넣을 수 있고, 불안, 우울, 가족갈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반향을 가져온다고 함.
 - 실직에 의해 재조직되는 가족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 연쇄충돌 (stress pileup)은 만성적 가족갈등 및 폭력, 가족해체 및 별거,

무기력감, 약물남용, 스트레스와 관련된 각종 身體的 및 精神的 疾病 등 부적응적 가족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블루칼라 노동자 중 실직을 경험한 사람이 상용직의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건강이 나쁜 확률이 대략 1.5배 높았음.
 - 가장 오랜 기간동안 실직상태인 사람이 건강이 가장 좋지 않다는 결과가 밝혀졌음.
- 실업자들의 삶에 대한 개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財政的 問題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自己統制感과 自己尊重感을 높여 스트레스에 대한 抵抗力을 키우는 것이라고 제시함.
 -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는 실직자였으나 재취업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건강상의 차이임.
 - 따라서 실업이 건강에 끼치는 害惡은 무엇보다 再就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가 장기간, 심지어는 평생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룸.
- 많은 실직자가 疾病 및 障礙狀態에 있어 건강이 결코 좋지 않았고, 특히 주부양자인 여성가구주의 건강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실직자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관절염, 디스크, 사고 및 증독의 후유증, 소화성 궤양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어서 의료비 지원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여성가구주 가족의 실직자는 초조, 불안, 불면증, 우울증, 소화

및 위장장애, 식욕감소 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음.

- 대인관계와 성욕감소는 남자가구주 가족의 남성실직자가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의 실업률은 알코올 판매량의 증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 시설에의 입원, 알코올 관련 범죄, 간경화로 인한 사망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업이 1% 증가할 때 자살은 4.1%, 살인은 5.7%, 심장병, 간경화,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1.9% 증가하였으며, 정신병원 입원자도 남성과 여성 각각 4.3%, 2.3%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5. 失業者의 社會的 關係 關聯 先行研究

- 실업은 소득상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많은 다른 유형의 박탈을 초래한다고 주장되었음.
 - 실업의 부수적 효과로서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그 밖의 일과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위 社會的 排除(social exclusion)에 의해 고통받게 된다고 함.
 - 특히, 성인에게 있어 직장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일차적 장이라는 점에서 실업은 社會關係의 危機와 이로 인한 個人의 萎縮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실업은 개인과 그 가족의 수입감소와 심리적 위축은 기존의 相互交換的인 社會的 義務를 주고받던 社會的 關係網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第3章 失業規模의 變化

- 景氣變動에 따라 우리 나라 失業率은 큰 폭의 變化를 겪고 있음.
 - 고실업을 유지하던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비교적 저실업의 고용안정수준에 근접하였으나,
 - 1990년대 중반이후 나타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 말 이후 급상승하였다가 최근 경기회복으로 빠른 속도의 저하를 보임.
- 정부의 실업대책에 의한 일시적 실업률 감소, 실망실업자 및 취업포기자 등을 감안하면 실업률의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업문제는 여전히 常存하고 있다고 판단됨.
 - 대규모 직업훈련 참여자는 非經濟活動人口로 분류되어 실업통계에서 제외되며, 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취업자로 파악되어 就業率 上昇과 失業率 低下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 결국 통계에 나타나는 실업률 변화만으로 실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연령층, 직종, 고용형태별 경제활동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失業者의 定義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기준한 것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게 됨.
 - 日傭職 勤勞者와 같이 일감의 부족 등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失業者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失業者에서 제외됨.

- 이들을 失業狀態로 볼 경우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失業者數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임.
- 所得激減으로 인한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과 구직의 어려움으로 취업을 拋棄한 失望失業者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정부가 집계한 失業者보다 최소한 2~3배의 실질적인 失業者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第4章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變化

1.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 실업가구의 평균 저축액과 부채액이 비실업가구에 비하여 높아 두 변수간 상반된 양상을 보임.
 - 저축액은 실업가구(493.5만원)가 비실업가구(682.8만원)보다 작는데, 이는 가구원 실직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기간의 저축액을 소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실업가구의 저축액 규모는 일반적으로 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소득원수가 많은 가구, 즉 가구주가 남성이며 학력이 높을 때,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주 연령이 30대일 때 크게 나타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비례함을 엿볼 수 있음.
 - 부채규모는 실업가구(1467만원)가 비실업가구(1998만원) 보다 오히려 작는데 부채상환능력의 저하로 실업가구에서는 빚을 줄이려는 노력이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실업가구에 대출을 꺼리는 관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부채규모의 경우 가구주가 남성이며 40~50대 연령층의 유배우

가정,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정일 때 더욱 크게 나타나 가족주기 및 구조가 지출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됨.

□ 실업가는 가계소득의 감소로 지출을 축소하고 있었는데, 실업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비실업가구의 각각 64.4%, 86.2%에 불과하였음.

－ 실업가구의 88.2%가 소득감소, 80.5%가 지출감소가 발생하였으며, 비실업가구의 가계수지가 월 14만원의 흑자인데 반해 실업가구는 월 10만원씩의 적자를 내고 있어 현격한 대조를 이룸.

- 소득감소는 남성 가구주 가구에서, 가구주 연령이 30~40대일 때, 그리고 가구주가 실직했을 때, 非自家의 실업자수가 많을 때,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하였음.

- 지출감소는 가구주의 성, 연령, 실업여부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가구주가 고등학교 학력수준일 때와 유배우 가정일 때, 가구원수가 2명일 때, 그리고 非自家일 때와 就業者數가 적을수록 지출감소가 가장 많았음.

□ 실업가구의 移轉所得과 支出은 실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가구원 실직이전부터 이전소득과 지출이 이들 가계의 필수적인 수입원 또는 지출항목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실직을 전후한 이전소득액은 남성이가구주 가구에서, 부부가족일 때, 가구원수가 많거나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그리고 1~2인 가구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이들 가구는 실업 전부터 생계비가 컸던 가구에서 이전소득액이 더 크고 대부분 근로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했음.

- 이전지출의 경우 가구원 실직을 전후로 지출액 규모는 보다 감소하나 해당 가구수 자체의 변화는 없어 이들 가구의 이전지출이 수혜가구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임을 보여줌.
- 가구원의 실직 및 이직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대처방안은 ‘타가구원의 구직활동 시작’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취업가구원의 노동강도 강화’ 8.4%, ‘타가구원의 취업’ 7.5%, 그리고 ‘취업가구원의 부업시작’ 4.2%로 나타났음.
- 가구주가 남성실업자인 유배우가정이 ‘가구원의 구직활동 시작’이나 ‘타가구원의 취업’, 그리고 ‘취업가구원의 노동강도 강화’가 많았음.
 - 가구특성별로 보면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유형이 부부+미혼자녀 가구일수록 그리고 총소득이 20~79만원대이며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대처방법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음.
 - ‘가구원의 구직활동 시작’의 경우 가구소득이 80~99만원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취업가구원의 노동강도 강화’의 경우 편모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실업가구의 가구원 실직·이직에 대한 대처는 실직가구를 대체하여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활동가능한 가구원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 그 외에도 기존의 소득·지출수준을 매개로 그것을 좌우하는 가구주의 특성 및 가족주기상의 위치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실업가구의 希望最低生計費는 50~79만원대 32.5%로 가장 높았으며, 100~199만원대 31.6%, 20~49만원대가 20%, 그리고 80~99만

원대 9.8% 였음.

- 가구주가 남성이며, 배우자가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연령대가 40~50대 연령층의 희망최저생계비가 100~199만원대에 많았음,
- 가구주가 여성이며, 이혼·별거·사별의, 학력수준이 낮은, 20~30대 연령층에서는 50~79만원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음.
 - 이는 50~79만원대의 희망최소생계비의 경우 가구원 실직이전 이미 저소득층, 그리고 100~199만원대의 경우 보다 나은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임.

□ 실업가구의 生計維持方法을 보면 1가구당 평균 1.57가지 였으며, ‘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통한 생계유지’가 5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그 간의 저축’(33.6%), ‘빛을 얻어서’(19.5%)의 순이었음.

- 실업급여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수당과 같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의한 생계유지는 실업가구의 6.5%에서만 나타나 효과가 크지 않았음.
- 전반적으로 經濟活動可能 家口員이 많거나 부부가족일 때, 그리고 家族週期 상 지출수준이 높은 가정이 다양한 생계유지방안을 갖고 있었음.
- 실직 전부터 낮은 소득수준으로 생활하던 가구에선 生計維持方案이 다양하지 못하여 저소득층 실직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타 가구원의 소득에 변화가 없고 미취업 상태가 계속될 때 실업가구의 현재 生活水準의 持續可能期間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실업가구의 66.6%가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났음.

- 현 생활수준 지속가능기간은 전체적으로 실직 전의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액 규모와 비례하였음.
 - 특히 여성가구주가, 배우자가 없는 실업가구가 동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여성가구주가정 또는 편부모가정의 빈곤상태를 보여주었음.

2. 生活維持 可能其間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析

- 실업가정의 生活維持可能其間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감소 대처방안으로 월세규모를 축소한 경우, 주택소유 여부,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얻거나 이웃의 도움을 받은 경우, 총저축액, 가구원 및 취업자수, 가구주의 실업여부, 실직 전 직업 일용직 및 상용임금근로자 여부 등이었음.
 - 먼저 所得減少 對處方案으로 月費規模를 축소(-.924)한 실업가구는 생활유지가능기간이 매우 짧아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자가 및 전세규모 축소의 경우와 비교할 때 月費로 살고 있는 실업가구의 어려움이 지대하였음. 이는 주택소유 여부에 서도 마찬가지로 자가 실업가구의 생활유지가능기간은 비자가 실업가구보다 훨씬 길게 나타났음(.323).
 - 생계유지방법으로 빚을 얻는 실업가구(-.476)와 이웃의 도움을 얻은 실업가구(-.844)는 생활유지가능기간이 매우 짧아 현재 취업가구원이 전혀 없거나 일용직 등 퇴직금이 없는 직종에 근무했던 실업자의 가구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임.
 - 가구의 저축이 많을수록 생활유지가능기간은 연장(.0002)되고 가구 내 취업자가 많을수록(.449) 동 기간은 연장됨. 그러나 부

양하여야 할 가구원이 많을 때 (-.088), 또는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 생활유지가능기간은 짧게(.304) 나타났음.

- 특히 실직전의 직업유형이 생활유지가능기간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일용직이었던 경우 동 기간이 짧고(-.348) 상용직이었던 경우는 보다 길었음(.405).

第5章 失業家庭의 家族生活 變化

1. 生計維持 問題

□ 실업 후 生計維持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가구는 전체 실업가구의 70.1%이었음.

－ 여자가구주가 남자가구주 보다, 40대 연령층의 저학력일수록, 이혼·별거·사별상태에 있는 실업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웠음.

- 가구유형별로는 편부모가구(84.0%)와 독인가구(72.6%)의 순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비노인가구 보다는 노인가구의 경우, 그리고 자가 비소유의 경우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비율이 높았음.

-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낮았으며, 반대로 실업자 수가 많을수록, 이환가구일수록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음.

2. 缺食兒童

□ 실업가구중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3.0%에 해당되었으며, 일주일에 평균 3회 정도였음.

- 이는 여자가구주가, 연령별로는 40대의 가구주가, 저학력 수준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음.
- 가구유형별로는 편부모가구가 많았고(17.0%), 非自家 失業家口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자 수가 적을수록,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환가구의 경우가 많았음.

3. 家族役割 및 關係의 變化

□ 家族의 役割變化 및 役割適應

- 실직가구 중 가족원의 역할변화가 있었다는 가구는 16.5%로 실직자 본인의 경우 가사노동에 참여한 비율은 8.6%, 자녀양육에 참여한 비율은 0.8%로 9.4%가 役割變化를 경험하였음.
- 이들 실직가구 가족원이 역할변화에 적응하는 비율은 59.3% 정도로 실직자 본인은 57.6%, 배우자는 48.5%로 변화된 역할에 대한 適應率은 높지 않았음.

□ 夫婦關係

- 유배우 실업가구 중 실업 후 ‘부부사이가 좋지 않고 싸움을 한다’는 가구는 23.6%나 되었음.
- 여자가구주일 경우(31.3%) 남자가구주의 경우(23.4%)보다 그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사이에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교육수준과 부부불화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가구주의 실업자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음.
- 非自家일 경우와 낮은 소득일수록, 그리고 취업자가 없거나 적을수록 부부불화가 일어난 비율은 더 높았음.

□ 家族解體

-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委託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이었음.
- 남자가구주 가구(1.8%) 보다 여자가구주 가구(2.8%)에서 자녀를 위탁한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5.4%).
-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가구주가 실업자일 경우 자녀의 위탁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별로는 독신가구나 부부가구 보다는 편부모가구나 기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2.7%), 비노인가구가 노인가구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음.
- 自家 失業家口의 경우 자녀위탁 비율이 0.5%인데 비해 非自家 失業家口에서는 3.4%를 보였으며, 가구총소득별로는 20~49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취업자수가 적은 경우, 이환가구일 경우에 자녀위탁 비율이 높았음.

□ 父母 委託保護

-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는 1.3%로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3.0%)을 보였음.
-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미혼가구주의 경우 가장 높았음(3.2%).
-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가 비실업자일인 경우보다 부모를 위탁한 비율이 높았으나(실업자: 1.5%, 비실업자: 1.1%), 가구주 및 가구

의 특성 모두 부모의 위탁경험과는 무관하였음.

□ 子女問題

- 실업이후 자녀의 學業成績이 떨어지는 가구는 17.7%로써 여자가 구주의 자녀가 남자가구주의 자녀보다 높았음.
 -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19.4%)을 나타내었고, 가 구주의 학력이 낮은 경우, 가구주가 미혼일 경우(31.4%), 유배 우자 가구보다는 무배우자 가구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가 비실업자인 경우보다 자녀의 학업성적의 저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실업자: 19.9%, 비실업자: 14.6%).
 - 편부모가구의 경우 41.0%의 가구가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를 경험 하였으며, 노인가구 보다는 비노인가구가, 그리고 자가소유 가 구보다는 비소유가구가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음.
-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와 가구 총소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계를 보였으며, 취업자 수가 적을수록, 실업자 수는 많을수록, 그리고 이환가구일 경우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를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높았으나 이 중 취업자 수와 이환가구 여부만이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음.
 - 실업이후 자녀의 비행이 증가한 가구는 6.6%로 남자가구주일 경우 6.3%인데 비해 여자가구주일 경우는 8.5%이었음.
 -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된 변화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 며, 고학력으로 갈수록 자녀의 비행행동의 증가율이 낮아졌음.
 - 가구주가 유배우인 경우가 자녀의 비행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

으며, 가구주가 실업자(7.2%)일 경우 비실업자(5.9%)일 경우보다 자녀의 비행이 증가율이 높았음.

- 비노인가구가 노인가구 보다 子女의 非行率이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이 19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자녀비행이 증가하였음.
- 실업으로 인해 子女의 私教育 등을 中斷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4.0%나 되었음.
- 성별로는 남자가구주 가구의 경우 여자가구주 가구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음(남자가구주: 25.8%, 여자가구주: 14.0%).
- 연령별로는 40대(42.5%), 30대(29.6%), 50대(12.5%)의 순으로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한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교육 중단비율이 높았음.
- 가구주의 결혼상태별로는 오히려 유배우가구주일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26.7%에 이르렀으며, 실업자일 경우 29.1%의 가구에서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하는 결과를 보였음.
- 가구유형별로는 편부모가구가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30.1%), 취업자수가 없거나 적을수록, 그리고 이혼가구가 자녀의 사교육 중단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음.
- 子女進學의 拋棄 및 延期한 실업가구는 5.3%로 나타났음.
- 여자가구주일 경우 남자가구주 보다 子女進學의 拋棄 및 延期가 많았으나 (남자가구주: 4.9%, 여자가구주: 6.9%)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음.
-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40~50대의 가구주일 경우,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 수준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가구, 그리고 가구주가

실업자인 가구에서 많았음.

- 가구 내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자녀의 진학포기 및 연기한 비율이 높았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가 군대에 입대하거나 학교를 휴학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9%였음.
-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특성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 가구의 특성별로는 편부모가구의 경우 자녀가 군입대를 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노인가구에서, 자가를 소유한 가구, 실업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자녀가 군입대를 하거나 휴학한 비율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음.

4. 失業家口 夫婦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 실업으로 인하여 종속변수인 ‘부부사이가 좋지 않고 싸움을 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주택소유 여부, 가구 총소득, 현 부채액, 향후 생활유지 가능기간,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 배우자의 실업자 여부 등이었음.
- 소득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소유한 가구의 규모를 축소했는지의 여부는 부부불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생계유지가 어려울수록 부부불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음.
- 주택소유 여부와 가구의 월 총소득, 그리고 현 부채액은 부부불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향후 생활유지 가능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은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배우자가 실업자일 경우 부부불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第6章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1.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 실업자들의 심리상태는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 세 영역으로 살펴 보았는데, 실업자의 심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不安感의 경우 공포감, 신경예민과 마음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안절부절못함, 그리고 짜증남의 상태에 의해서 측정되었으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심리상태 변화였는데,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안되는’ 실업자가 전체의 65.4%,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는 41.1%, ‘가슴이 두근거림’이 46.2%, 그리고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음’이 42.2%로 나타났다.

-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의 심리는 이혼·별거·사별(59.6%) 상태이면서 이환자(57.7%), 그리고 학력이 낮은(초등학교 이하가56.2%) 가구주(46.3%) 실업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연령이 50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이후 감소함. 또한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편부모가구(52.2%)일 때, 가구소득이 20~49만원대(48.3%)일 때, 그리고 가구내 취업자가 없거나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이러한 감정을 많이 느꼈음.

-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됨’의 심리는 남성보다는 여성실업자가, 연령이 증가할수록(50대의 경우 76.3%),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고(중학교 이하학력이 76.8~74.9%) 배우자가 없는(78.4%) 이혼(83.0%) 가구주(69.7%) 실업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남. 또한 편부모가구(79.0%), 가구소득이 20~49만원대(72.3%), 그리고 이혼가구원이 있는(74.0%) 가구의 실업자가 이러한 심리를 많이 나타내었음.

-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음’의 심리는 남성보다는 여성실업자가, 이혼자일수록(69.5%), 이혼·별거·사별상태(67.4%)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학력수준이 63.1%), 그리고 실업기간이 긴(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54.7%) 가구주 실업자에게서 많이 나타남. 또한 연령대가 50대가 될 때까지 이 감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 가구특성에 있어선 가구소득이 79만원 이하일 때, 편부모가구(56.9%)이거나 독인가구일 때, 그리고 취업자수가 적거나 이혼가구원이 있는(51.4%) 가구의 실업자일수록 이 감정이 잘 나타났음.
-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음’의 심리는 실업자가 50대가 될 때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가 62.4%), 이혼·별거·사별상태일수록(62.1%), 그리고 실업기간이 6~11개월(47.5%)이며 이혼자(58.2%)이거나 가구주(48.2%)일 때 높았음. 특히 여타 심리유형에 비해 남성실업자가 여성보다 이 심리를 많이 나타내고 있음. 편부모가구(53.8%)나 독인가구, 취업자가 없거나(46.1%) 적은 가구, 실업자가 많거나(2명 이상인 가구의 46.4%) 이혼가구원이 있는(49.4%) 가구의 실업자에게 동 심리가 많았음.
- 敵對感의 경우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 울화치밌, 잘 다툼, 그리고 매사가 힘듦의 상태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불안감보다는 낮

게 나타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이 전체 실업자의 59.3%,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이 47.3%, ‘잘 다툼’이 25.2%, 그리고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21.5%를 보였음.

-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의 심리는 실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50대 연령층의 66.5%),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학력 수준의 66.9%),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상태(63.8%)일수록 높았고 실업기간이 6~11개월(65.1%)이며 이혼자(71.6%)거나 가구주(61.5%)인 실업자에게서 더 높이 나타났음. 가구 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없는 경우보다 있을 때, 편부모가구(66.8%)일때, 취업자가 없거나(62.2%) 실업자가 많은(2명 이상 가구의 60.9%) 가구,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66.1%)의 실업자에게서 많았음.
-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의 심리는 매우 파괴적인데 다행히 21.5%의 낮은 수위를 보였으나 그 심리상태의 심각한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 심리는 실직자가 남성(25.0%), 40대 연령층(25.2%), 중학교 학력수준(29.4%), 유배우 상태(22.6%), 가구주(24.7%), 1년 이상 실업하고 있는(26.2%) 이환실업자(28.1%)인 경우가 가장 높았음. 또한 가구소득이 1~19만원(27.9%), 독신가구(26.7%), 취업자가 없거나(23.6%)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25.4%)의 실업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음.
-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을 보이는 실업자는 연령이 50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실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혼자이며 가구주인 실업자에게서 많았음. 또한 소득이 1~79만원일 때, 취업자는 없거나 1명, 실업자가 1명일 때,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을

수록 높게 나타났음.

- ‘잘 다툼’의 상태는 25.1%로 낮게 나타나 실업자들의 도전적 태도는 다소 약함을 보임. 잘 다툼은 경향은 이환자(32.7%)이며 40대 연령층(30.0%)의 6~11개월의 실직기간(29.3%)을 가진 유배우(28.3%) 가구주(27.4%)인 실업자에서 가장 높았음.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20~49만원의 가구소득(32.0%)을 가진 편부모가구(40.7%), 취업자가 없는(28.3%), 실업자가 2명 이상(30.0%)인 이환가구가 있는 가구(28.3%)의 실업자가 높게 나타났음.
- 憂鬱感의 경우 허무함, 외로움, 죽고 싶은 기분 등의 지표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매사가 힘들’의 심리상태가 전체 실업자의 61.8%로 나와 신경예민, 마음 불안정의 심리 다음으로 높았음. 그 외 ‘허무한 느낌이 듦’이 59.2%, ‘외로움’이 39.7%이고 가장 극단적 심리상태라 할 수 있는 ‘죽고 싶은 기분’이 19.0%로서 나타나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었음.
- ‘매사가 힘들’의 심리상태는 실업자가 남성일 때 높고 50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학력수준 경우 79.3%), 기혼상태일수록, 그리고 실업기간이 길수록(1년 이상 68.8%) 높았음. 또한 실업자가 가구주(68.6%)일 때,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상태(80.4%)일 때, 그리고 이환자일 때 높았음. 가구특성에 따라 보면 가구소득이 비교적 낮고(19만원 이하 72.2%), 취업자수가 적을수록(전혀 없음 66.9%), 실업자수는 많을수록(2명 이상 66.2%), 그리고 이환가구가 있는 가구(68.6%)일수록 높았으며, 편부모가구(73.4%)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독신가구(64.3%)에서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었음.

- ‘허무한 느낌이 들’의 심리상태는 남성보다 여성(61.3%)에, 학력이 낮을수록(중학교 학력수준의 69.1%), 연령이 많을수록(50대의 70.8%), 실직기간이 길수록(1년 이상 64.2%),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77.9%) 가구주(64.9%)이거나 이환자인 실업자(73.6%)에게서 많았음.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20~49만원대의 65.5%), 독신가구(68.6%) 및 편부모가구(66.4%)일 때, 취업자가 적고(전혀 없음 60.8%)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66.1%)의 실업자에게서 많이 나타났음.
- ‘외로움’의 심리상태는 실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50대의 경우 50.2%),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학교 이하 학력수준 49.4~49.5%), 미혼보다는 유배우 실업자가, 유배우 실업자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실업자(64.8%)에서 많았고 가구주(45.0%)일 때, 또 실업기간이 6~11개월(42.8%)이고 이환자(53.9%)일 때 많이 나타났음. 가구특성별로는 소득수준이 낮고(1~19만원대 46.1%) 편부모가구(60.0%)나 독신가구(59.5%)일수록, 취업자수가 적을수록(전혀 없음 42.4%),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46.0%)의 실업자에게서 많았음.
- 가장 염려되는 심리상태인 ‘죽고 싶은 기분임’의 경우 전체실업자의 19.2%로 대체로 낮았는데, 동 심리는 여성(19.4%), 50대 연령층(25.7%), 초등학교 학력수준(25.6%), 배우자와 헤어진 실업자(41.1%), 가구주(23.8%)인 실업자, 1년 이상 실업하고 있는 경우(24.1%). 이환자(35.2%)인 실업자에게서 가장 많았음. 또한 가구소득이 20~49만원인 가구(32.2%), 편부모가구(43.6%), 취업자가 전혀 없는 가구(23.3%), 가구원 중 이환자가 있는 가구의 실업자(24.1%)에게서 높게 나타났음.

2. 失業者의 心理狀態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析

□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 세 심리상태 영역을 從屬變數로 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업기간,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 실업급여 수급여부, 실업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5개 변수, 실업자의 교육수준, 이환실업자 여부, 가구총소득, 노인가구원 유무 등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실업기간이 길수록(불안감 .017, 적대감 .019, 우울감 .013),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이 강한 실업자가(불안감 1.311, 적대감 1.007, 우울감 1.177),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불안감 -.703, 적대감 -.558, 우울감 -.76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실업자에 대한 가족의 반응에 따라서 실업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임. 실업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용기를 주지 않는 경우(불안감 -.322, 적대감 -.372, 우울감 -.776), 실업자 대신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한 경우(불안감 1.049, 적대감 .866, 우울감 .804), 실업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막막해 하는 경우(불안감 1.429, 적대감 1.144, 우울감 1.530), 자녀들이 실업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불안감 .629, 적대감 1.135, 우울감 1.084),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불안감 1.198, 적대감 1.536, 우울감 1.218)에 실업자는 이러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었음.
 - 교육수준이 낮은 실업자(불안감 -.243, 적대감 -.123, 우울감 -.130)와 이환실업자(불안감 -.919, 적대감 -.522, 우울감 -.85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불안감 -.002, 적대감 -.003, 우울감 -.003),

그리고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불안감 .432, 적대감 .462, 우울감 .692)가 이러한 심리상태에 많이 있었음.

- 세 영역의 心理狀態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닐지라도 특정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 不安感의 경우 위에서 논의된 공통요인 외에도 실업자의 주당 평균구직시간이 길수록(.019), 실업의 이유가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수록(.704), 그리고 가구주(-.375)이거나 실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034) 영향을 많이 받았음.
 - 敵對感의 경우 실업자의 주당 평균구직시간이 길수록(.012), 직장을 그만 둔 이유가 실업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및 정부의 잘못에 의한 경우라고 생각할수록(.290), 실업의 이유가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수록(.552), 그리고 남성실업자(-.605)일 때 높게 나타났음.
 - 憂鬱感의 경우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회사 및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할수록(.337), 실업의 근본이유가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할수록(.597), 정치인의 무능에 의하여 실업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록(.446), 그리고 실업자가 가구주일 때 (-.734), 연령이 높을수록(.024), 편부모가구의 실업자(1.162)일수록 심리상태에 많이 있었음.

第7章 健康·醫療保護의 變化

1. 失業家庭의 健康·醫療保護 行態變化

□ 失業 後의 健康狀態의 變化

- 가구주와 질병발생비율과의 관계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결혼상태가 미혼이거나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일수록 질병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실업가구, 비실업가구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가구특성별 질병발생비율을 보면 독인가구나 편부모가구, 노인 가구에서 질병발생 비율이 1/3 이상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실업자가 많을수록 질병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소득이 감소된 실업가구에서 질병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실업과 질병발생의 불가분의 관계를 시사하기도 하지만 실업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다 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임.

□ 失業 後의 疾病發生 類型의 變化

- 실업가구인 경우 비실업가구에 비해서 慢性患者가 훨씬 많았는데, 이는 열악한 경제적 환경의 실업가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가구주 특성별로 질병유형을 보면 여자가구주 실업가구인 경우 만성질환자가 많았고,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상태가 불안정할수록, 가구주가 비실업자인 경우 만성질환자가 실업가구에서 많이 나타났음.
- 가구특성별로 보면 실업가구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인 여자 가구주나 고령층 및 저학력층 그리고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결손가정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이 많았음.

- 또한 실업가구 중 독인가구나 편부모가구 및 노인가구 등에 만성질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음. 또한 가구소득이 낮고 실업자수가 많으며,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가구일수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수가 많았고, 특히 소득이 감소된 실업가구의 이환 가구원 10명 중 7명은 만성질환자로 밝혀졌음.
 - 이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나 결손가정, 특히 의료보장 혜택에서조차 제외된 실업가구에서 만성질환자가 많은 것은 기본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심각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예상됨.
- － 질병유형 중 소화불량은 40~50대 가구주에게 많이 나타났고, 순환기계 질환과 관절염 및 디스크는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이 높았고, 정신과 질환은 30대 가구주에게 가장 많았고, 두통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발견되었음.
- 가구유형별로는 실업 편부모가구는 소화불량(22.9%)으로 나타났고, 특히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가구에 발생하는 질병은 관절염 및 디스크, 순환기계질환 및 정신과 질환, 사고 및 중독 후휴증 등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어서 의료비 부담의 심각한 실정을 시사하는 것임.

□ 醫療利用의 變化

- － 가구주의 특성별로 醫療機關 變更率은 실업가구에서는 여자가구주(여자가구주: 10.7%, 남자가구주: 9.9%)일 때가 약간 높았고,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와 40대 그리고 60대 연령층(10%)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에 10가구당 1가구에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가구소득과 의료기관 변경율은 대체로 정(正)의 관계로 실업과 비실업가구에서 유의하였으나, 가구소득이 없는 경우의 의료기관 변경율은 비실업가구가 오히려 높았음.
- 실업가구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의료기관의 수준이 하락된 가구는 10가구 중 1가구 정도이었고, 가구 내 실업자가 많을수록, 이환가구가 의료기관을 변경한 비율이 높았고, 또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실업가구(17.3%)의 의료기관 변경율은 전체 실업가구보다 1.7배가 많았고, 비실업가구(1.6%)와 비교하였을 때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음.

□ 醫療機關 類型의 變化

- 가구주특성별 의료기관 유형의 변화를 보면 실업 후에는 여자가구주 실업가구의 1/3 이상은 보건소(36.9%)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자가구주 실업가구가 실업으로 인한 의료부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 또한 가구주가 실업자인 실업가구는 실업 후에 과반수 이상이 약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주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실업 후에는 약국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 10명중 약 4명은 보건(지)소를 종합병원이나 병원대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노인일 경우는 실업가정의 경제가 더 열악함을 예상할 수 있음.
- 가구유형별로 실업 후의 의료기관의 변화를 보면 편부모가구와

노인가구는 약국, 보건(지)소급으로 하향되었음.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일수록 약국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10가구 중 8가구가 약국을 이용하였음. 또한 소득이 감소된 경우 10가구 중 5가구가 약국을 이용하였으나, 가구특성별 실업 후에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실업 후에 의료기관을 변경한 원인의 대부분 生活苦(53.1%)와 높은 治療費(42.1%)때문이었음.

□ 治療狀態의 變化 및 理由

- 失業 後의 治療狀態의 變化를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은 여자가구주인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가구주 연령이 40대와 30대의 실업가구에서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별로는 실업 편부모가구(72.0%)인 경우 이환가구원 10명중 7명은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저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비자가 실업가구가 자가 실업가구에 비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음.
 - 또한 가구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일수록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이 높았으며,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보다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이 1.5배나 높게 나타났음. 소득이 감소된 경우와 급성질환인 경우가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이 높았음.
 - 실업 이후 치료를 중단한 비율 중 입원 치료중단율이 외래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음(실업가구원: 입원(50.7%), 외래(23.0%)). 그리고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를 비교하면 실업가구의 이환가구원이 비실업가구보다 입원과 외래에 있어서 치료중단율이 높게 나타났음.(입원: 실업(50.7%), 비실업(44.4%), 외래: 실업(23.0%), 비실업(16.0%)).

- 失業 後의 未治療 및 治療中斷 理由는 치료비용 때문으로 나타났는데(실업가구: 78.9%, 비실업가구: 75.4%), 이는 미치료 및 치료중단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 失業 後의 醫療費 比率의 變化

- 가구의 총 지출액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가구주가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다소 높았음.
- 가구특성별로 보면 노인가구인 경우 의료비 지출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의료비가 총 지출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또한 만성질환일 때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醫療費 負擔이 醫療機關 利用 中斷에 미치는 影響

- 醫療費 負擔으로 인한 病院利用 中斷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중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가구주가 실업자일 때 중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가구소득에 따른 중단 가능성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비자가인 경우와 일부 소득층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

할 비율이 증가하였음.

- 실업자수에 따른 중단 가능성은 실업가구에서만 유의하여서, 실업자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리고 의료보장 여부와 의료기관의 중단 가능성은 실업가구에서만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고, 실업 후의 소득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중단 가능성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와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서 의료기관을 중단하겠다는 비율이 높았고, 만성질환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 醫療機關 利用 中斷에 影響을 미치는 決定要因

- 실업가구의 의료비 부담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중단하는 경우를 종속변수로 하여 回歸分析을 실시하였음.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향은 실업가구 중 특히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업가구,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나 가정 경제생활에 미치는 의료비부담이 큰 실업가구 및 의료비 지출규모가 큰 실업가구, 이환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가구소득 규모가 적은 실업가구 등이었음.
 - 그러나 질병유형이나 가구형태, 주택소유여부, 실업 전후 소득의 변화, 취업자수 또한 가구주의 특성 중 가구주의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및 연령 등의 변수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가능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실업가구는 가정경제에 미치는 의료비부담으로 인하

여 병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

第8章 失業家庭의 福祉欲求

-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 실직가구의 유형, 실업 이전의 가족관계의 양상 등에 따라 실업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해 상이한 대응기제를 발전시킴.
 - 실업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실업자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적절한 형태로 주어져야 함.
- 실업으로 가족소득의 중단·감소, 가족체계의 변화, 가족스트레스의 증가, 가족위기,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음.
 - 가족갈등, 가족폭력, 별거,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상의 문제들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많음.
 - 가족위기는 경제적 위기,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협, 가족관계의 위기, 사회관계의 위기의 유형을 띄고 있었음.
- 失業家庭의 欲求
 - 欲求란 해결되어야 할 문제 혹은 결핍의 상황임.
 - 사회적 욕구란 집단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욕구이며, 사회 문제와 유사한 개념임.
 - 욕구는 욕구인식의 기준에 따라 규범적 욕구, 감축적 욕구, 표현적 욕구, 비교적 욕구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 잠재적 욕구는 구체적인 요구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요청되는 결핍 혹은 문제의 상황임.
 - 긴급현물서비스(긴급식품비, 긴급의료권), 상담서비스, 보호서비

스, 고용관련서비스(구직활동비, 구인정보, 구직상담) 등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

- 긴급현물서비스 잠재적 욕구는 생계유지와 의료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실업가구가 각각 전체 실업가구의 70%, 50.8%에 이를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자녀의 도시락을 짜주지 못하는 가구도 전체 실업가구의 3.0%로 긴급식품권 지원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높았음.
 - 상담서비스 잠재적 욕구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욕구와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욕구가 있었음.
 -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욕구는 실업자의 5~15%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하여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
 -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욕구는 부부싸움이 심한 가구가 전체 실업가구의 5.0%,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 가구가 5.8%, 자녀의 비행행동 증가 가구가 5%로 나타나 잠재적 상담욕구가 있었음.
 - 아동위탁 또는 부모위탁에 대한 보호서비스 잠재적 욕구는 아이 또는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실업가구가 2% 정도로 있었음.
- 노인실업가구는 생계유지 부담, 의료비 부담이 훨씬 더 높고 식료품비와 의료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실업가구보다 더 높아서 현물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큰 것으로 보임.
- 장애인실업가구도 생계유지, 의료비,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가구가 각각 74.7%, 59.8%, 9.7%로 전체 실업자가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현물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第9章 失業者 및 失業家庭을 위한 福祉對策

1. 社會安全網 構築方案

□ 社會安全網의 保護對象者數

- 2000년 이후의 경우 빈곤율의 하락에 따라 생활보장대상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빈곤자 중 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약간씩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2000년 대상자는 186만명, 2001년 176만명, 2002년은 172만명으로 추정됨.
- 실업자 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업자는 실질적 실업자의 80%로 가정함. 가정은 근거는 실업자의 과거 소득이 평균소득이상이었던 자의 비율이 약 20%로 추정되기 때문임.

2. 社會安全網 構築을 위한 프로그램 개편방안

□ 社會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 社會안전망의 보호대상(target group)의 명확화 및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 社會안전망 주요대상은 실업자와 빈곤층이며, 정책에 있어서는 열악한 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

□ 社會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향

- 포괄적 社會안전망의 설치·연계로 보호의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안전망의 대상계층 중 빈곤선 이상의 계층에게는 고용보험,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공공부조 또는 고용보험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한시적(2001년까지)으로 공공근로, 실직자 대부사업 등으로 보완하고 그 규모는 실업률의 하락에 따라 축소함.
- 1, 2차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된 자는 제3차 긴급구호로써 보호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제거하여야 함.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2원적 사회안전망 구축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受惠的 福祉(Welfare)를,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근로연계 福祉(Workfare)를 지원하여야 함.
- 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과 DB 구축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전환을 통한 전달체계의 일원화로 대상자의 접근성 제고 및 비용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관련 DB를 조기에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함.
- 계층별·특성별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실업가정의 욕구, 가구여건,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제공토록 함.
- 고용보험의 개선
 - 일용직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실시
 - 재직시 임금수준이 높았던 실직자일수록 대기기간을 길도록 재편함.
 - 부조의 성격이 강한 특별연장급여는 3D업종 취업 및 비인기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이수 등과 연계하여 제공함.

第 1 部

總 論

第1章 序 論

第2章 先行研究

第3章 失業規模 및 失業者 保護의 必要性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 必要性 및 目的

1. 研究의 必要性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시기를 거치며 우리 나라는 전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및 기업부도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어, 1998년 12월 실업률은 7.9%(약 166만명)에 이르렀다. 또한 실망실업자 및 취업 포기자 등을 고려하면 실업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실업률이 미친 사회적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최근 실물경기가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실업은 경기회복 후 최소한 2~3년간은 지속된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의 공통된 견해이므로 우리 사회에서의 실업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저성장 시대를 맞아 고실업 상태는 업종 및 직종을 불문하고 앞으로 보다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社會保障制度가 미흡하여 생존을 위한 基礎的 生活保障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실직자와 그들 가정이 느끼는 고통은 지대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傳統的 性 役割 關係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 가족에게 있어 家長의 失職은 가족부양의 불안정분만 아니라 실직자 자신 및 전체 가족원에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갈등을 유발시켜 현대사회의 약화된 가

족 기능 및 역할과 맞물려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족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社會福祉政策과 失業對策은 가시적 증상을 보이는 개인만을 대상으로한, 최소한의 사후 치료적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실업자의 경제생활, 가족생활, 심리상태의 변화, 그리고 건강 및 보건의료수준의 변화를 심층분석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제적,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는 실업가정의 개인 및 가족문제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實質的이고 效率的인 福祉對策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특히 저소득 실직가정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업가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의 보다 효율적인 복지대책과 실업대책을 입안·시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실직가정의 가족 및 사회생활이 원만히 유지되도록 지원하여 『貧困』의 세습이라는 사회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家族에 대한 社會的 支援體系를 구축한다. 또한 이는 실직 및 소득격감으로 야기되는 제반 가족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실업가정, 특히 저소득 실업가정을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고 가족구성원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는 經濟危機 克服過程에서 야기되고 있는 실업자 및 실업가정의 생활실태의 변화를 심층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업자 및 그들 가족의 제반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복지욕구를 정

확히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보장정책과 1998년 4월 이후 실시되고 있는 범 정부차원의 실업대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업가정의 분출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대책을 개발하는 한편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위기에 처한 실업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발전하고 전체 가족원이 원만한 사회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가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저소득 실업가정의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책을 다양하게 강구하여 이들 가족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貧困의 世襲化』를 예방한다.

第 2 節 研究內容 및 方法

1. 研究內容

가. 失業家口, 失業者 및 就業者의 特性

먼저 실업가구의 가구유형을 남성실직가구, 여성실직가구, 편부모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다양한 가구형태에 따라 실직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가구유형에 따른 가족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실업가구의 경제활동 가족원수, 실업자 및 취업자 수, 그리고 실직자 개인의 특성을 실업자의 교육수준, 결혼상태, 실직당시 직업유형 및 취업자의 교육수준, 결혼상태, 현 직업유형별로 분석한다.

나. 失業家口의 經濟狀態 變化

주거형태, 소득내역 및 총소득, 지출내역 및 총지출, 소득 및 소비의 변화, 한 달간 최소생활비, 재산, 부채, 가구의 이전소득, 현재의 생활상태 유지가능 기간, 실직으로 인한 가구원의 경제활동 변화 등 실업가구의 소득원 분포와 소비실태를 실업가구의 특성별로 파악한다. 그리고 실업가구의 생계유지에 관하여는 생계유지방법, 실업 전·후 가족외부로부터의 금전적 및 물질적 도움 비교 및 실업상태에서의 생활한계기간을 예측하고자 한다.

다. 失業家口의 家族生活 變化

가족생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계유지 어려움, 자녀 결식 문제와 실업으로 인한 가족원의 역할변화 정도 및 역할적응정도, 그리고 부부관계의 변화 여부를 파악한다. 그리고 실업 전·후 가정폭력 증가정도, 자녀 및 부모의 위탁보호 등의 가족해체 여부와 학업성적 저하, 비행증가, 사교육 중단여부와 진학포기·연기, 군입대·휴학여부 등의 자녀문제, 그리고 친교활동, 외식, 문화·여가활동 등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 등으로 생활방식의 변화를 파악코자 한다.

라. 失職者의 心理狀態 變化

실업으로 인한 실업당사자의 다양한 심리적 변화 상태를 불안, 적대감, 우울감의 세 영역으로 나눠 살펴본다. 물론 실업자의 심리적 변화는 다른 가족원, 특히 배우자 및 자녀 등과의 관계를 통해 보다 복합적으로 발생되지만 자료수집의 한계로 이는 본 분석에서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심리상태 변화의 내용과 심도를 실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특성에 따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마. 健康狀態 및 醫療機關 利用實態의 變化

실업·비실업가구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의 이용변화 등을 비교한다. 먼저 건강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원별 최근(지난 2개월) 발병여부 및 질병유형을 분석하고 실업 전·후의 의료기관 변경여부 및 양상의 변화, 변경 이유 등을 파악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치료 상태의 변화 및 이유 등을 살펴본다.

바. 失業者 및 失業家庭의 福祉欲求

고용보험 내용 인지도, 가입 여부, 신청 여부, 급여액, 신청과 수급시 문제점과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참여 여부, 훈련기관, 훈련받은 분야, 훈련수당, 참여의향,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참여 여부, 문제점, 희망사업 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들 실업자와 실업가정이 가구원 실직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각종 문제의 내용과 심도를 분석하고 실직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복지대책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사. 失業者 및 그 家庭을 위한 福祉對策

실업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발전되기 위한 다양한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정부실업대책 및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타 실업관련 사항으로 최근 대량실업 및 자신의 실직에 대한 책임, 현 대량 실업사태의 장기전망 및 실업자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을 제

시하면서 실업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으로서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개별 실업자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수립 하도록 하였다.

2. 研究方法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관련기초문헌을 고찰하고,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국내의 실업 및 실직가구에 관한 선행연구, 그리고 경제불황을 경험한(하고 있는) 외국의 관련문헌을 연구한다. 둘째로는 통계청 및 노동부의 실업 및 취업관련 자료 즉 통계청의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노동부의 취업자 관련 조사자료를 분석한다. 셋째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¹⁾를 심층분석 한다. 넷째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 즉 노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실업대책 관련 주요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 현황자료를 검토한다.

3. 研究틀

본 연구는 3 部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3개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자료 및 조사대상의 특성, 그리고 연구수행상의 제한점이 포함되어 있다. 제2 장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실업 가정의 경제상태, 가족생활, 보건 및 의료에 미치는 실업의 영향, 그리고 실업자의 심리상태 및 그 사회적 관계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1)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에 기초한 전국 25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약 30,000가구 중 심층조사가 실시된 4,339가구(실업가구 2,767가구, 비실업가구 1,572 가구)에 대한 조사자료로 조사는 1998. 9~10월에 걸쳐 실시된 바 있음.

다. 이어서 제3장은 우리 나라 실업규모의 변화추이를 소개하고 사회적 의미를 찾고 있다.

제2부는 실업가정의 생활변화를 살펴보고 있으며, 4개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은 실업가정의 경제상태 변화를, 제5장은 가족생활의 변화를, 제6장은 실직자의 심리상태 변화를, 그리고 제7장은 건강·의료보호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4개 章은 기본적인 분석들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 즉, 실업자 또는 가구주의 특성 및 실업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기본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업자 또는 가구주의 특성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실업기간, 이환여부 등이며, 실업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총소득, 가구유형, 취업자수, 실업자수, 이환가구 여부, 노인가구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을 취하였다. 또한 각 장의 주제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연구의 통계적 의미를 보다 구체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기본적인 분석들 외에 각 장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변수에 의한 추가분석을 시도하였다.

제3부는 실업가정의 복지욕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2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욕구는 실업자 및 실업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그들의 욕구를 파악한 것이며, 대응방안은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후자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안전망과 미시적 차원의 세부정책을 조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第 3 節 研究資料 및 調査對象의 特性

1. 研究資料

주요 연구자료는 다음의 두 유형의 실태조사자료이다. 하나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²⁾ 이며, 다른 하나는 동 년도에 실시한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자료³⁾ 이다. 자료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調査期間 및 調査對象

각 시·도의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하였다. 표본 조사구는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에서 표본조사구가 추출되면 실제적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의 섬지역은 조사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다(제외되는 섬지역의 가구수는 전국 가구수의 6% 미만임).

나. 標本抽出 過程 및 方法

표본규모는 주어진 예산을 고려하여 250개 조사구의 약 30,000가구이다(조사구당 평균 120가구).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2)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에 기초한 전국 25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약 30,000가구 중 심층조사가 실시된 4,339가구(실업가구 2,767가구, 비실업가구 1,572가구)에 대한 조사자료로 조사는 1998. 9~10월에 걸쳐 실시된 바 있음.

3) 서울과 부산의 626실직가구와 696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자료로 조사는 1998. 6~7월에 걸쳐 실시된 바 있음.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가구에서 출발하므로 기숙사, 육아원, 양로원, 수녀원 등과 같은 시설단위 조사구는 표본추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표본 조사구내에 주택이 많이 신축되었을 때 (특히 아파트가 신축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계선 안의 모든 가구를 전부 조사하여야 하지만, 가구수가 너무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조사구 내의 신축아파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대신, 1995년 인구총조사 이후의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기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1995. 11. 1.) 이후 1997년 10월말까지 6개월 간격으로 4번 수집된 신축아파트 자료의 집계결과는 569,900가구분의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섬지역을 제외한 1995년 총조사의 대상이 되는 일반가구수 12,885,650가구이므로, 250개 조사구를 이들 2개 자료의 가구수에 비례배분하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른 239개 조사구, 그리고 신축아파트 11개 조사구를 추출, 이용하였다. 따라서 250개 조사구 중에서 11개 조사구는 신축아파트에서 추출하였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잠정집계에서 사용된 조사구별 자료에서 각 시·도의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19,771개 보통조사구 자료로 전산작업화일을 작성하였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1996년 7월말까지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거나 군에서 시로 편입된 읍·면의 조사구는 신행정구역에 따라 층번호를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한 250개 조사구의 기초자료상의 총가구수는 30,937가구가 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한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이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이다. 여기서 조사결과를 그대로 합산한 단순표본합계치(simple sample total)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각 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각 조사의 미완율이 조사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 調査方法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연구진의 훈련을 받은 조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조사원은 사전에 표본추출된 조사지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면접하였다.

표본추출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업가구원과 IMF 이후 직장 변동이 있는 가구원을 판별하는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가구원 중 실업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실업가구로 구분하여 실업가구조사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실업가구 중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IMF 이후 직장변동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가구조사와 해당가구원을 대상으로한 개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조사의 경우는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 및 가구의 가족생활에 대해 응답해 줄 수 있는 가구원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가능한 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조사는 실업자와 IMF 이후 전직경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해 직접면접조사를 하였다.

2. 調査對象의 特性

본 조사에서는 가구를 크게 실업가구⁴⁾와 비실업가구⁵⁾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된 총가구수 4,339가구⁶⁾ 중 실업가구는 2,767가구, 비실업가구는 1,572가구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실업가구

4) 실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5) IMF 이후에 전직을 경험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지난 1년간 한번이상 구직 활동을 한 비경제활동인구가 1명 이상인 가구

6)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임.

의 제반 특성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가. 失業家口의 特性

실업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3.6명으로 파악되었는데, 가구원 4~6명인 가구가 52.6%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3인 가구가 39.1%로 나타났다. 특히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독가구가 5.6%였다. 실업가구의 평균취업자수는 0.81명으로 우리 나라 가구의 평균취업자수 비율인 1.37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업가구에는 평균 1.12명의 실업자가 있으며, 실업가구의 89.0%에는 1명의 실업자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1-1〉 調査完了 失業家口의 特性

(단위: %)

| 실업가구 특성 | 비율 |
|-------------|---------------|
| 가구유형 | |
| 독신가구 | 5.7 |
| 부부(+미혼자녀)가구 | 44.7 |
| 편부모가구 | 1.8 |
| 기타가구 | 47.9 |
| 가구총소득 | |
| 없음 | 27.5 |
| 19만원 이하 | 4.1 |
| 20 ~ 49만원 | 12.1 |
| 50 ~ 79만원 | 20.5 |
| 80 ~ 99만원 | 8.5 |
| 100~199만원 | 22.0 |
| 200만원 이상 | 5.3 |
| 전체 | 100.0 (2,767) |

7)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8. 10. 가구당 취업자수는 1997년 가구평균 취업자수 1.5명에서 감소추이에 있음.

〈表 1-1〉 계속

| 실업가구 특성 | 비율 |
|---------------|---------------|
| 가구원수 | |
| 1인 | 5.9 |
| 2~3인 | 39.1 |
| 4~6인 | 52.6 |
| 7인 이상 | 2.4 |
| 평균가구원수(명) | 3.60 |
| 취업자수 (8명 무응답) | |
| 없음 | 41.1 |
| 1명 | 41.6 |
| 2명 이상 | 18.0 |
| 평균취업자수(명) | 0.81 |
| 실업자수 | |
| 1명 | 89.0 |
| 2명 | 10.1 |
| 3명 이상 | 0.9 |
| 평균실업자수(명) | 1.12 |
| 주택소유여부 | |
| 자가 | 55.1 |
| 전세 | 21.3 |
| 월세 | 19.2 |
| 기타 | 4.4 |
| 이환가구여부 | |
| 비이환가구 | 62.1 |
| 이환가구 | 37.9 |
| 전체 | 100.0 (2,767) |

나. 失業者의 特性

동 조사에서 심층조사된 실업자는 전체 3,230명였으며, 남자가 67.0%, 여자가 33.0%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평균연령은 38.0세, 연령층으로는 20대가 31.0%로 실업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업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5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율을,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도 구직경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는 23%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表 1-2〉 調査完了 失業者의 特性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
| 성 ¹⁾ | |
| 남자 | 67.0 |
| 여자 | 33.0 |
| 연령 ²⁾ | |
| ~29 | 32.9 |
| 30~39 | 24.0 |
| 40~49 | 22.1 |
| 50~59 | 15.7 |
| 60+ | 5.3 |
| 평균연령 | |
| 교육수준 ³⁾ | |
| 초교 이하 | 15.3 |
| 중학교 | 14.3 |
| 고등학교 | 47.5 |
| 전문대졸 | 7.7 |
| 대학 이상 | 15.2 |
| 결혼상태 ⁴⁾ | |
| 미혼 | 36.3 |
| 유배우 | 56.5 |
| 이혼·별거·사별 | 7.3 |
| 전체 | 100.0(3,230) |

註: 1) 14명 무응답, 2) 39명 무응답, 3) 25명 무응답, 4) 52명 무응답

〈表 1-2〉 계속

| 실업자 특성 | 비율 |
|---------------------|--------------|
| 가구주여부 ⁵⁾ | |
| 가구주 | 52.2 |
| 비가구주 | 47.8 |
| 이환여부 ⁶⁾ | |
| 비이환자 | 85.0 |
| 이환자 | 15.0 |
| 실업기간 ⁷⁾ | |
| 5개월 미만 | 47.0 |
| 6~11개월 | 40.7 |
| 12개월 이상 | 12.4 |
| 전체 | 100.0(3,230) |

註: 5) 45명 무응답, 6) 33명 무응답, 7) 442명 무응답

第 4 節 研究의 制限點 및 統計表 判讀時 留意事項

본 연구의 분석에서의 한계점과 또한 보고서에 나타나는 統計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필상의 편의를 위해 敷衍說明을 생략한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통계표에는 應答을 拒否한 數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즉, 각 통계표의 應答者數와 本 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답자의 특성별 實際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應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무응답의 숫자는 각 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내용의 비율이 연구에 활용된 자료인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기초 보고서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석의 잘못이 아니고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일부 응답자를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분석에 포함한 결과이다.

셋째,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실업률이 높았던 1998년 중반기에 실시되어 지금의 실업률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실업자가 그만큼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업가정이 1년 후인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취업은 하였는지, 욕구는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자료의 수집(예: 추구조사)이 필요하나 예산, 인력,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우며, 이는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가치는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실업자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第 2 章 先行研究

第 1 節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關聯 先行研究

실업은 일차적으로 소득의 중단 혹은 감소로 인하여 실업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다. 이 때, 경제적 고통이란 “개인 과 가족에게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제생활의 여러 측면 들”(Voydanoff, 1990; 안병철, 1999에서 재인용)로 규정된다.

실업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겪게 되는 생계 유지의 곤란은 빈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 박탈의 위기,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Chadiha, 1992; Dail, 1988; 조성희, 1999, 재인용).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으로 인한 본인의 소득상실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경제적 자원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원이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히 완충해 주는 것(buffering effect)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저축, 주택, 퇴직금 등의 재정적 자원을 소유하고 부채가 없는 실업자는 그렇지 못한 실업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에서도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Sales, 1995).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적 개입은 실업으로 인한 일차적인 경제적 위기, 그리고 실직자 개인의 심리와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인 위기를 상당부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가정의 경제상태 변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실증적 연구로서 최근에 발표된 김승권 외(1998a)의 연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8)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김승권 외(1998a)의 연구⁸⁾에 의하면, 失職家庭의 경제적 어려움은 住居問題와 生計費問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구주 가족의 경제곤란은 현저하다고 하였다. 즉, 失職家庭의 平均 所有財産은 4486만원, 平均 負債額은 1428만원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족은 不動産 1075만원, 動産 512만원, 總財産 1587만원이고 負債는 351만원으로 純財産은 1236만원에 불과하여 여러 가족유형 중에서 가장 빈약한 재산상태를 보였다. 失職家庭은 所得과 支出이 모두 큰 감소를 보였으나 소득의 감소가 지출의 감소보다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最低生計費로 인하여 지출감소가 소득감소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구는 실직 전·후를 불문하고 실직가정의 지출은 대부분 生計費, 教育費, 住居費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들 가족이 최근의 대량실업사태가 있기 전에도 어려운 생활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전체 지출 중에서 이들 세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가구주 가족이 실직 전 70.1%, 실직 후 76.8%, 남성가구주의 여성실직자 가족은 실직 전 57.5%, 실직 후 73.1%, 그리고 남성가구주의 남성실직자 가족은 실직 전 62.0%, 실직 후 76.5%로서 실직가정의 가족원은 기초적인 삶과 子女教育을 위한 最小限의 支出만으로 耐乏 生活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1998a).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8)의 연구⁹⁾에 의하면 ‘실업이나 파산이 이미 발생했거나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실업자가 21.1%를 차지하

8) 위기에 처한 실직가정 및 실업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실업대책을 평가하여 실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장·단기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자금지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것임. 본 연구를 위해서 1998. 6. 29~7. 23일 기간중 서울과 부산의 실직가구 626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실직자 696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음.

9) 전국의 기혼남녀 9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임.

였다. 이는 1997년 말에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¹⁰⁾의 결과인 12.3%보다 무려 8.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1997년 말의 19.9%에서 1998년에는 11.6%로 8.3%포인트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계층일수록 실업공포가 빠르게 확산되며, 직업별로는 생산직이나 자영업자가 사무직 또는 자유전문직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공포는 고학력층 보다는 저학력계층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第 2 節 失業家庭의 家族生活 關聯 先行研究

실업은 가족의 소득중단 혹은 소득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중요성을 띠지만, 이 외 혹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가족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체계 내에서 노동은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안정의 일차적 원천이기 때문에 실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즉, 실업->가족소득의 중단 혹은 감소->가족체계의 변화->가족스트레스의 증가->가족위기->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것이 실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가족관계 유형에 따라 실업이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의 결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스트레스란 가족기능에 있어서의 욕구(예를 들면, 도전, 위협 등)와 능력(예를 들면, 자원, 대처 등) 간의 실질적인 혹은 인지적인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되는 상태로 규정된다(Schliebner & Peregoy, 1994). 실업이 야기하는 스트레스는 가

10) 전국의 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임.

족체계 전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가고 이러한 상태가 점점 심화 되면 해당 가족의 일상적 생활균형이 파괴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족들은 나름대로의 해결을 시도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전의 균형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욱 불안정해지는 가족체계는 그 기능과 역할이 결국 마비되거나 무기력해져 전체 가족을 외부 위협에 노출시키고 가족갈등, 가족폭력, 별거 및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상의 문제들이 일시에 분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평소의 균형상태가 깨어져서 가족체계가 마비되거나 무력해지는 불안정한 상태가 가족위기이다(조성희, 1999).

실업이 가족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이 이론적 탐색을 시도한 것으로 실증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 발표된 실증적 연구로서 김승권 외(1998a)에 의한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와 장혜경 외(1999)에 의한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김승권 외(1998a)의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의하면 실업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문제와 생계비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실업가정이 어떤 유형의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출을 유지할 경우 가능한 ‘생활한계기간’은 7개월에서 1년4개월에 불과하여 대량실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가족이 급증할 것으로 보았다. 그 외 실업가정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원의 건강문제와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실직가정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었다. 또한 주 부양자의 실직후 실직가정에선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보여 친교생활 감소, 자녀의 사교육 및 상급 학교 진학 포기, 자녀결혼 연기 및 출산기피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장혜경 외(1999)의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는 실업과 그로 인한 가족문제는 사회구조적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IMF 관리체제 및 실업이 실직자 가구와 가족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그에 대한 가족원의 대응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경제적 충격과 가족의 결속력 및 안정성 변화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사결과 가족의 경제력, 교육수준, 의사소통 능력, 긍정적인 가치관 및 태도, 가족의 결속력, 평등한 부부권력 등은 실업가정의 위기에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됨에 따라 자기비난과 외부에 대한 분노감은 외재화되어 그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즉, 실업에 따른 욕구불만 때문에 과잉반응이나 폭력적 행동이 증가하여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Jones, 1990; Dail, 1988; 조성희,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국가의 경제적 문제의 숨은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Schliebner & Peregoy, 1994). 결국,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족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별거나 이혼의 원인이 되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직자에게 미치던 부정적인 영향이 배우자나 자녀에게까지 전이되어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경향은 실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Jachbson, 1987; 조성희, 1999에서 재인용).

많은 연구에서 실업과 이로 인한 빈곤은 또한 가족해체의 많은 직·간접적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이혼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빈곤선 이하 가구의 이혼

율은 빈곤선 이상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구보다 그렇지 못한 가구의 경우 가족해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Hernandez, 1999).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실업률이 자살이나 가정폭력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범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오고 있다(Darity, 1999).

우리 나라의 경우, IMF 체제 초기에 주춤하던 이혼율이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신청건수는 1997년 11월 472건, 1998년 들어 1월 524건, 4월 710건, 7월 830건으로 폭등하고 있다. 특히, 이혼신청자나 상담자들 가운데 절반이 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배우자의 무능력 등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문화일보, 1998.11.2),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업으로 인한 가족위기의 증가와 가족해체의 경향은 요보호아동의 증가와 같은 사회현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총 9,292명으로 1997년 6,734명보다 38% 증가하였으며, 이 중 부모가 버린 아이(기아)도 1,654명이나 돼 1997년 1,372명보다 28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第 3 節 失業者의 心理狀態 關聯 先行研究

최근 우리 사회에서 大量失職 및 失業은 큰 문제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 당사자 및 그들 가족원이 겪는 心理的 葛藤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업당사자의 심리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거나, 일부 남성실직자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었으며, 특히 실직당사자와 배우자, 부모, 자

녀 등 그들 가족원과의 심리적 교류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조사의 지역과 대상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실업이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문제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로서 가치가 크다 하겠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를 전·후로 실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실직자 및 실업가정의 심리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 장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주요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서울과 부산의 실직자 696명을 대상으로 한 김승권 외(1998a)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직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초조 및 불안’의 증세를 보이는 실직자는 68.5%나 되었다. 이는 특히 여성 가구주가족의 실직자 중 무려 80.3%가 이런 증세를 보여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심리변화는 다양한 양상을 띠어 보여준다. 실직당사자는 주로無氣力感, 不安感, 挫折感, 責任感 등을 느끼며, 失望感, 負擔感, 억울함, 안타까움 등도 다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좌절감, 실망감, 무기력감 등의 감정은 실직자의 삶에 대한 希望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極的 狀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이 연구에서는 실직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직자와 다른 가족원들간의 감정교류도 연구하였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서는 많은 감정적 반응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실직자의 88.5%가 배우자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가족원에 대한 주요 감정적 반응으로는 責任感, 罪責感이 각각 26.0%, 22.0%로 높았고, 가족부양의 부담감을 느끼는 한편(12.2%), 원망감, 창피함도 다소 있어 양면성을 보인다. 실직자의 책임감과 죄책감은 배우자에 대해 56.0%, (손)자녀에 대해 47.1%,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43.3%로 나타났

다. 이는 실직자가 家族의 主扶養者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따라 겪는 감정적 문제가 매우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에 대한 否定的인 感情 중 怨望感은 1.8%에 불과한 반면, 부담감이 22.8%나 되어 老父母의 扶養負擔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表 2-1〉 失職者가 다른 家族에게 느끼는 感情

(단위: %)

| 구분 | 배우자 | (손)자녀 | (친·시·친정) 부모 | 기타 가족 | 계 |
|-------|-------|---------|-------------|-------|---------|
| 감정없음 | 11.5 | 27.6 | 22.2 | 57.1 | 24.0 |
| 책임감 | 27.8 | 26.9 | 21.1 | 9.5 | 26.0 |
| 부담감 | 11.4 | 10.9 | 22.8 | 12.7 | 12.2 |
| 죄책감 | 28.2 | 20.2 | 22.2 | 4.8 | 22.0 |
| 원망감 | 4.3 | 2.2 | 1.8 | 4.8 | 2.7 |
| 창피함 | 0.9 | 1.0 | 2.3 | 7.9 | 1.5 |
| 안타까움 | 10.3 | 7.7 | 3.5 | 1.6 | 7.9 |
| 기타 감정 | 5.6 | 3.5 | 4.1 | 1.6 | 3.7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수) | (468) | (1,138) | (171) | (63) | (1,840) |

資料: 김승권 외,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 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a.

또한 다른 家族員의 61.7%가 失職者에 대하여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특히 실직자의 配偶者는 가장 민감한 심리적 변화를 보였는데, 배우자의 80.1%가 다양한 형태의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가장 많은 것은 실직자에 대한 안타까움(45.3%)으로 실직자부부의 夫婦愛를 엿보게 한다. 그러나 怨望感, 失望感, 창피함도 10.7%나 되었는데, 만약 이러한 感情이 表出될 경우 실직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家族葛藤의 要因이 될 것이다. 子女가 失職者에게 갖는 감정적 반응도 안타까움이 26.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父母의 失職者에

대한 感情은 안타까움이 무려 50.9%나 되어 실직 당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뜻한 심정을 엿볼 수 있으며, 부모 자신이 罪責感을 느끼는 경우도 7.5%나 되었다.

〈表 2-2〉 다른 家族이 失職者에게 느끼는 感情

(단위: %)

| 구분 | 배우자 | (손)자녀 | (친·시·친정) 부모 | 기타 가족 | 전체 |
|-------|-------|---------|----------------|----------|---------|
| 감정없음 | 19.9 | 46.9 | 26.1 | 60.4 | 38.3 |
| 책임감 | 4.4 | 4.0 | - | - | 3.6 |
| 부담감 | 4.9 | 3.6 | 2.5 | 3.8 | 3.8 |
| 죄책감 | 8.2 | 4.1 | 7.5 | 7.6 | 5.6 |
| 원망감 | 6.2 | 4.2 | 0.6 | - | 4.2 |
| 창피함 | 0.7 | 1.1 | 0.6 | - | 0.9 |
| 실망감 | 3.8 | 2.2 | 4.4 | - | 2.8 |
| 안타까움 | 45.3 | 26.0 | 50.9 | 28.3 | 33.4 |
| 불안 | 5.1 | 3.5 | 4.4 | - | 3.9 |
| 기타 감정 | 1.5 | 4.4 | 3.0 | - | 3.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수) | (453) | (1,078) | (161) | (53) | (1,745) |

資料: 김승권 외,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a.

실직남편의 아내를 중심으로 가족문제, 우울감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최규련, 1999)는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 실직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신건강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직남편은 실직 전에 비해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10.8% 증가하고 폭력의 빈도와 정도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직남편의 아내들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편의 실직대처행동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수록, 건강하지 못할수록,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부부대화, 자녀지도 및 대화, 부부갈등 문제 등에 관한 아내의 지원요구, 특히 교육요구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실직자 65명에 대한 사례를 통해 실직자의 心理的 安寧狀態를 분석한 장혜경 외(1999)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의 일에 대한 집중’이 떨어진다고 한 실직자가 66.6%였으며,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는 48.2%, ‘불행하며 마음이 울적’한 실직자는 44.4%, ‘자신감 상실’은 38.9%, 그리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직자는 24.1%로 나타났다.¹¹⁾ 이들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실직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당시의 상황으로선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실직자의 절대수가 결코 작지 않으며, 또한 실직기간이 3~4개월인 조사대상자가 47.6%로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실직기간이 5.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장기 실업이 증가하는 현 추세에서 실직자의 심리적 안녕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무성(1998)은 『사랑의 전화』의 상담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직남편은 주벽, 폭행, 학대 등의 일탈적 행위를 많이 자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조성희(1999)는 가정의 실직은 가출, 자녀·노인의 유기 및 학대, 가정폭력의 증가, 자살 등 여러 가지 가족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Targ and Perrucci에 의하면 실직부모는 분노, 적대감이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자녀학대가 발생되기도 하며, Liem & Liem은 부부관계의 유대가 근로자 부부에게 미치는 실업의 부정적 심리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홍식, 1998, 재인용).

따라서, 실업으로 인해 그 실직 개인들의 심리상태가 불안해져서 사회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 나아가 그것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결국 실업은 개인적 비용 뿐만

11) 심리적 안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항은 모두 12개이며, 본 연구와 관련이 직접있다고 판단되는 5개만을 소개하였음. 응답비율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것임.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전체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8).

第 4 節 失業家庭의 保健·醫療 關聯 先行研究

실업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외국의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Brenner(1984)는 미국과 서구유럽의 자료를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증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신부전 사망률은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점으로부터 2년 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2~4년 후에 높았다고 한다. 이는 실업이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실업률의 변화시점과 사망률의 변화시점간에는 다소의 시간적 지체가 있던 것은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사망으로 이어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Volser(1996)는 한 가정에서 가장의 실직은 가정재정을 주요한 위기로 몰아 넣을 수 있고, 불안, 우울, 가족갈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반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실직에 의해 재조직되는 가족생활이 미치는 스트레스 연쇄충돌(stress pileup)은 만성적 가족갈등 및 폭력, 가족해체 및 별거, 무기력감, 약물남용, 스트레스와 관련된 각종 신체 및 정신적 질병 등 부적응적 가족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

Kessler 외(1988)에 의하면 실업자들은 우울, 불안 그리고 자가보고의 물리적 질환을 많이 겪는다. 실직이 정신적, 육체적 질환의 이환 특히 빈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분석은 미국의 미시간 주의 장기실업, 실직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주로 자동차공장지역의 블루칼라 노동자(블루칼라는 다른 사무직, 전문직에

비해 금전적 요구가 없을 때 일에 대한 의욕이 높지 않다)는 실직을 경험한 사람이 상용피고용자에 비해 건강이 나쁠 확률이 대략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널 데이터 조사결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실직상태인 사람이 건강이 가장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 중 일부집단은 실직이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취업남편을 둔 아내들보다 모자가정의 어머니인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이 더 낮다. 즉 재취업의 가능성은 실직가족의 건강을 부분적으로 좌우하는 중요요인인 것이다.

또한 실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4가지 요인, 즉 재정적 부담, 결혼관계 부담(marital strain), 사회적 통합감소와 관련된 부담, 스트레스성의 일상사건 등을 시험한 결과 재정적 부담 요인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 스트레스성 일상사건의 영향은 가장 실직한 경우에만 나타났고, 특히 실직과 다른 불행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건강이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Liem 외(1988)는 재취업과 건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실업자들의 삶에 대한 개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자기통제감과 자기존중감을 높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는 실직자였으나 재취업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강수준의 개선이다. 따라서 실업이 건강에 끼치는 해악은 무엇보다 재취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가 장기간, 때로 평생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대조적인 결과이다.

실업이 보건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대부분이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적 건강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는 결과적으로 육체건강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인 경제위기와 대응전략(1998년)에서 조홍식이 발표한 『실직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량실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실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접근 중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활용하여 적응방안을 강구 하므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직자 개인 및 가족에게 미치는 실업스트레스의 영향과 단계별 특성은 제 1단계(불황기)는 과잉적응증후군이 동반되고, 제2단계(조정기)는 스트레스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불안해소를 위해 과음 및 과다흡연을 하면서 불안 심리를 삭이는 假面憂鬱症勢의 증가, 제3단계(실직)를 맞게되면서 배신감과 분노를 주조로 하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소화장애와 불면 증 등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제4단계(실직 후 단기)는 재취업을 시도하고, 제5단계(실직 장기화)가 되면 스트레스는 급상승하여 절망 및 자포자기, 냉소적이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1999년)에 의하면 실업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적으로 나타나 실업가구, 비실업가구 모두 경제위기 이후 지난 2개월간 가구원 2명 중 1명 정도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실업과 질병발생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가 실업가구 및 비실업가구 모두 10가구 중 1가구 수준이었고, 경제위기 이전에는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이후에는 약국과 보건지소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생활고와 높은 치료비이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치료 중단율은 실업가구의 1/3, 비실업가구의 1/5에서 나타났고 그 원인은 치료비용이었다. 특히 입원중단율이 외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그 밖에 다양한 보건의료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의

보건의료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승권 외(1998년)의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는 많은 실직자가 질병 및 장애상태에 있어 건강상태가 결코 좋지 않고, 특히 주부양자인 여성가구주의 건강이 상당히 나쁜 상태임을 밝혀냈다. 여성실직자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관절염, 디스크, 사고 및 중독의 후유증, 소화성 궤양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어서 의료비 지원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족의 실직자는 초조, 불안, 불면증, 우울증, 소화 및 위장장애, 식욕감소 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와 성욕감소는 남자가구주 가족의 남성실직자가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족의 실직자는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 악화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10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나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큼을 말해준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서울과 부산에 한정되어서 국내 여성 실직자 전체의 건강상태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실직자들은 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고혈압, 심장 및 순환계 장애 등의 신체적 이상 또는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업의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알코올 및 약물을 시작하거나 그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Brenner(1984)에 의하면 국가의 실업률은 알코올 판매량의 증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 시설에의 입원, 알코올 관련 범죄, 간경화로 인한 사망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¹²⁾. 유사한 결과로서 존 홉킨스 대학(John Hopkins University)의 연구에 의하면, 실업이 1% 증가할

12) 그러나 시만(Seeman, 1992)은 실업 그 자체로는 알코올 소비와 남용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무력감이 알코올 사용과 남용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영문, 1999에서 재인용).

때 자살은 4.1%, 살인은 5.7%, 심장병, 간경화,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1.9% 증가하며, 정신병원 입원자도 남성과 여성 각각 4.3%, 2.3%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chliebner & Peregoy, 1994). 따라서 실업을 경험하였거나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그 위험성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Dail, 1988; Kessler et al., 1988; Beckett, 1986)

경제상태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역효과는 경기후퇴기와 그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Brenner, 1987; 이영문, 1999에서 재인용). 이 보고에 따르면 경기침체 첫 해에는 자살률, 취약계층의 사망률, 범죄의 증가 등의 사회정세적으로 민감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영아사망률, 만성질환의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불균형과 보건의료 이용의 감소도 일어날 수 있다(이영문, 1999).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은 실직 2~3년 이후에 최고에 달하며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 스트레스는 인체 내 자기면역계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혈압상승, 기회감염의 증가, 위장염 등이 생기며 면역체계 전반의 기능을 약화시켜 심리적 방어기제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영문, 1999).

第 5 節 失業者의 社會的 關係 關聯 先行研究

Sen(1997)은 실업이 소득의 상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많은 다른 유형의 박탈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일자리 상실의 부수적 효과로서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그 밖의 일과 관련된 활동들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부터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Darity, 1999). 특히, 성인

에게 있어 직장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일차적 장이라는 점에서 실업은 사회관계의 위기와 이로 인한 개인의 위축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은 개인과 그 가족의 수입감소와 심리적 위축은 기존의 상호교환적인 사회적 의무를 주고받던 사회적 관계망 -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등 - 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第 3 章 失業規模 및 失業者 保護의 必要性

第 1 節 失業 規模

실업자는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도 실업률은 약 3~4% 대에 있으며,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경우에도 약 2%의 실업률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는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단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심각성의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업자 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失業率은 1980년대 초의 불황기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저하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평균 2%대를 유지하는 거의 完全雇傭에 가까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7년 11월부터는 失業率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IMF의 구제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1997년 평균 2.6%이던 실업률이 1998년 12월에는 7.9%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실업률 상승은 1999년 2월 8.6%에 도달됨으로써 유례없는 고실업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고실업률은 최근 저하되어 1999년 12월에는 4.8%로 크게 낮아졌다.

급속히 상승하던 실업률이 최근 수개월간 반전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최근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노동시장이 활성화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업대책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 및 특별취로사업의 확대실시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

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직업훈련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는 非經濟活動人口로 분류되어 실업통계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就業率 上昇과 失業率 低下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외에도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한 취업포기 및 실망실업자 등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어 실업률에서 제외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결국 통계에 나타나는 실업률 변화만으로 실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어떤 연령층에서, 어떤 직종에 어떤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失業者의 定義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¹³⁾에 기준한 것이다. 따라서 日傭職 勤勞者와 같이 일감의 부족 등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失業者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失業者에서 제외되는데 사실 이들은 失業狀態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을 失業狀態로 볼 경우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失業者數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所得激減으로 인한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과 구직의 어려움으로 취업을 拋棄한 失望失業者를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정부가 집계한 失業者보다 최소한 2~3배의 실질적인 失業者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실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失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失業者 家族員까지 감안한다면 실업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국민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13)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收入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없으면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求職活動을 한 사람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람임.

〈表 3-1〉 最近 失業率 및 失業者 推移

(단위: 천명, %)

| 연도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수 | 실업자 규모 | |
|-------|--------|-------------|--------|--------|-----|
| | | | | 실업자수 | 실업률 |
| 1994년 | 20,396 | 61.7 | 19,905 | 490 | 2.4 |
| 1995년 | 20,853 | 61.9 | 20,432 | 420 | 2.0 |
| 1996년 | 21,243 | 62.0 | 20,817 | 426 | 2.0 |
| 1997년 | 21,662 | 62.2 | 21,106 | 556 | 2.6 |
| 1998년 | | | | | |
| 1월 | 20,686 | 58.9 | 19,753 | 933 | 4.5 |
| 2월 | 20,808 | 59.1 | 19,576 | 1,232 | 5.9 |
| 3월 | 21,328 | 60.6 | 19,955 | 1,372 | 6.4 |
| 4월 | 21,620 | 61.3 | 20,188 | 1,432 | 6.6 |
| 5월 | 21,776 | 61.7 | 20,289 | 1,487 | 6.8 |
| 6월 | 21,779 | 61.6 | 20,253 | 1,525 | 7.0 |
| 7월 | 21,724 | 61.4 | 20,079 | 1,646 | 7.6 |
| 8월 | 21,517 | 60.7 | 19,943 | 1,574 | 7.3 |
| 9월 | 21,696 | 61.2 | 20,124 | 1,572 | 7.2 |
| 10월 | 21,785 | 61.4 | 20,248 | 1,537 | 7.1 |
| 11월 | 21,490 | 60.5 | 19,933 | 1,557 | 7.2 |
| 12월 | 21,259 | 59.8 | 19,591 | 1,669 | 7.9 |
| 1999년 | | | | | |
| 1월 | 20,728 | 58.3 | 18,967 | 1,761 | 8.5 |
| 2월 | 20,623 | 57.9 | 18,842 | 1,781 | 8.6 |
| 3월 | 21,210 | 59.5 | 19,507 | 1,703 | 8.0 |
| 4월 | 21,635 | 60.6 | 20,089 | 1,546 | 7.1 |
| 5월 | 21,795 | 61.0 | 20,393 | 1,402 | 6.4 |
| 6월 | 21,960 | 61.4 | 20,604 | 1,356 | 6.2 |
| 7월 | 21,907 | 61.2 | 20,558 | 1,349 | 6.2 |
| 8월 | 21,767 | 60.8 | 20,527 | 1,241 | 5.7 |
| 9월 | 22,069 | 61.6 | 21,000 | 1,069 | 4.8 |
| 10월 | 22,176 | 61.8 | 21,155 | 1,021 | 4.6 |
| 11월 | 22,087 | 61.5 | 21,116 | 971 | 4.4 |
| 12월 | 21,654 | 60.3 | 20,614 | 1,040 | 4.8 |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 1.

第2節 失職者 및 失職家庭 保護의 必要性

1. 失職責任에 대한 見解

失職은 개인의 질병, 게으름 등 個人的인 理由가 그 원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社會構造的 原因에 의해 야기되는 社會的 問題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실직자가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非自發的으로 失職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대량 실업사태는 명백히 國家 및 社會의 責任에 의한 결과이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작금의 대량실업은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라는 견해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IMF 구제금융에 따른 구조조정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大量失業과 經濟危機는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실직자는 남성실직자보다 失職의 責任이 국가에 있다는 견해를 더 강하게 제시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의견은 미미하였다. 즉, 남성실직자는 본인의 실직에 대하여 61.4%가 國家責任, 17.6%가 企業責任이라고 하였으며, 自身の 責任이라고 한 경우는 15.7%에 불과하였다. 女性失職者의 63.8%는 실직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16.7%였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한 경우는 13.2%였다(김승권 외, 1998a).

또한 대량실업사태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견해는 性 및 실직당시의 職業에 따라 다소 상이함을 보였다. 특히 실직당시에 전문·기술·행정직에 종사하였던 남성실직자가 실직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가진 비율이 5.3%에 불과한 반면, 국가 및 기업책임이라는 견해는 89.5%나 되어 젊은 고학력의 남성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매직에 종사하였던 남성실직자 중 자신의 책임이라고 한 경우가 37.5%나 되어 실직당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던 실직자와 대조적이었다(김승권 외, 1998a). 남성실직자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는 하위직종일수록 실직이 國家 및 企業의 責任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2. 大量失業의 社會的 및 個人的 危險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고성장·저실업의 경제구조 속에서 소득, 의료, 주택, 교육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市場賃金(Market Wage)과 企業의 補助, 그리고 家族制度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책을 個人이나 企業 또는 家族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社會保障制度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대량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先進 福祉國家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김승권 외, 1998a).

한편 경제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국제통화기금도 構造調整 過程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자와 빈곤층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構造調整期에 실업자 등 社會的 脆弱階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社會安全網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근본이유는 대량실업을 방치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社會的 費用이 실업자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크고, 보다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며, 아울러 실업자 및 그들 가족에게 미치는 副作用이 엄청날 것이라는 效率性的 觀點에서 비롯된 것이다.

第 2 部

失業家庭의 生活變化

第 4 章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變化

第 5 章 家族生活의 變化

第 6 章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第 7 章 保健·醫療의 變化

第 4 章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變化

실업이 가정의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소득감소에 의한 가구경제의 불안정이다. 물질적 생활여건의 악화는 실직당사자 및 가족원의 기존 생활방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생활 양식을 형성케 할 수 있다. 개개인 또는 가족이 향유하는 생활방식은 개인 및 가족이 기존 사회와 연결, 통합된 방식이며, 또한 그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쇄신하는 재사회화의 양식이라는 점에서 가구원의 실업으로 인해 개인 및 가족이 겪는 생활방식의 변화는 나아가 그 사회의 조직양식 및 재생산양식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¹⁴⁾

이에 本 章에서는 실업가정의 경제상태를 살펴보고 가구원 실업이 가족의 경제생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한 가구의 경제상태는 많은 자료에 의해 파악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不動産과 動産 등 財産과 負債, 月平均 所得 및 支出 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소득 및 지출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소득감소의 영향에 대해 실업가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업가구의 생계유지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각 항목은 모두 가구주와 가구의 특성별로 분석하여 실업가구 경제상태변화의 다양한 층위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파악이 가능한 자료에 한해서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를 비교분석하여 실업가구의 경제적 환경이 비실업가구의 경제적 환경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실업가구의 경제상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실업자 및 실업가

14)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구를 위한 복지대책을 樹立하고 政策의 優先順位를 設定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第 1 節 失業家庭의 經濟狀態 變化

1. 實業家庭의 財産 및 負債現況

가. 財産狀態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의 재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실업가구의 53.6%가 3000만원 미만, 15.4%가 1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각각 50.6%, 14.1%인 비실업가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조사시점이 1998년 9월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構造調整으로 인한 大量失業事態가 1997년 4/4분기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실직자들의 실업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아 가구원의 실직 및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직 不動産 處分 등 보다 재산변동을 크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결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表 4-1〉 失業家口와 非失業家口の 財産分布 比較

| 구분 | (단위: %) | |
|------------------|-------------|-------------|
| | 실업가구 | 비실업가구 |
| 1,000만원 미만 | 35.7 | 33.1 |
| 1,000~3,000만원 미만 | 17.9 | 17.5 |
| 3,000~5,000만원 미만 | 15.0 | 17.9 |
| 5,000~1억원 미만 | 16.1 | 17.4 |
| 1억~5억원 미만 | 10.9 | 10.8 |
| 5억원 이상 | 4.5 | 3.3 |
| 계(명) | 100.0(2771) | 100.0(1567) |

나. 貯蓄 및 負債規模

가구원의 실업이 가계의 재산현황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서 저축액과 부채규모 등 동산을 중심으로 실업가구와 비실업 가구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평균 저축규모를 보면 실업가구는 493.5만원으로 비실업가구 682.8만원의 약 72%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업가구의 75.6%가 300만원 미만의 동산을 가지고 있어 69.8%인 비실업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축액 수준이 낮았다. 이는 가구원의 실직후 생계유지를 위한 저축액 소모에 의한 것이다.(表 4-2 參照).

가구주 특성별로 저축규모를 살펴보면 실업가구나 비실업가구 모두 학력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남성가구주 가정이 저축액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저축규모가 임금수준 및 소득원수에 의존하는 가계소득 수준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특성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가구원수가 많고 부부 또는 확대가족일 때, 자기집을 가진 가구일 때 저축액이 많았으며, 가족주기상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30대 연령층 가구주 가구, 그리고 가구내 이환자가 없는 가구에서 저축액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저축규모에 대비하여 부채규모는 지출수준에 의하여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 평균 부채는 비실업가구가 1997.7만원으로 실업가구의 1.34배로서 훨씬 많다. 실업가구가 가구원 실직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第3節 參照), 이와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에 전체 부채규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소득감소에 의한 부채상환능력의 약화가 실업가구로 하여금 빚을 더 이상 내지 않게 하거나 또는 실업자에게는 은행 등으로부터 용자를 얻을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비실업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환능력이 있고 사업자금 또는 주택마련 등을 위한 큰 액수의 부채를 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부채규모는 비실업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表 4-2〉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平均 貯蓄規模

(단위: 만원)

| 가구주 특성 | 실업 가구 | 비실업 가구 | 가구특성 | 실업 가구 | 비실업 가구 |
|----------|----------|-----------|-------------|----------|-----------|
| 성 | | | 가구원 규모 | | |
| 남자 | 549.6 | 717.5 | 1인 | 274.2 | 392.7 |
| 여자 | 238.8 | 282.3 | 2인 | 302.2 | 432.2 |
| 연령 | | | 3인 이상 | 550.1 | 732.8 |
| ~29 | 366.2 | 377.9 | 가구유형 | | |
| 30~39 | 555.3 | 796.0 | 독신가구 | 255.4 | 392.7 |
| 40~49 | 435.1 | 714.2 | 부부(+미혼자녀)가구 | 577.3 | 827.8 |
| 50~59 | 563.3 | 637.5 | 편부모가구 | 47.6 | 298.9 |
| 60+ | 449.1 | 517.3 | 기타가구 | 463.2 | 562.0 |
| 교육수준 | | | 자가여부 | | |
| 초교 이하 | 323.2 | 312.9 | 자가 | 615.3 | 841.1 |
| 중학교 | 290.0 | 513.2 | 비자가 | 382.9 | 493.7 |
| 고등학교 | 512.8 | 783.6 | 가구총소득 | | |
| 대학 이상 | 990.4 | 930.9 | 없음 | 340.8 | 1329.4 |
| 결혼상태 | | | ~ 19만원 | 65.1 | 126.4 |
| 미혼 | 397.8 | 420.3 | 20 ~ 49만원 | 282.8 | 172.7 |
| 유배우 | 562.5 | 727.4 | 50 ~ 79만원 | 393.9 | 288.4 |
| 이혼·별거·사별 | 181.9 | 315.5 | 80 ~ 99만원 | 454.3 | 267.1 |
| | | | 100~199만원 | 782.8 | 676.7 |
| | | | 200만원 이상 | 896.0 | 1175.6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557.2 | 698.7 |
| | | | 이환가구 | 396.6 | 591.7 |
| 전체 | 493.5 | 682.8 | 전체 | 493.5 | 682.8 |

〈表 4-3〉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平均 負債規模

(단위: 만원)

| 가구주 특성 | 실업 가구 | 비실업 가구 | 가구특성 | 실업 가구 | 비실업 가구 |
|----------|----------|-----------|-------------|----------|-----------|
| 성 | | | 가구원 규모 | | |
| 남자 | 1614.8 | 2023.4 | 1인 | 429.1 | 494.5 |
| 여자 | 775.6 | 921.8 | 2인 | 925.9 | 1078.1 |
| 연령 | | | 3인 이상 | 1655.7 | 2192.2 |
| ~29 | 437.4 | 549.7 | 가구유형 | | |
| 30~39 | 1664.0 | 1684.5 | 독신가구 | 434.0 | 494.5 |
| 40~49 | 1745.0 | 2182.2 | 부부(+미혼자녀)가구 | 1683.1 | 2483.1 |
| 50~59 | 1429.2 | 2760.8 | 편부모가구 | 803.1 | 983.7 |
| 60+ | 1277.2 | 1415.6 | 기타가구 | 1416.5 | 1612.3 |
| 교육수준 | | | 자가여부 | | |
| 초교 이하 | 1115.6 | 1147.2 | 자가 | 1824.1 | 2011.6 |
| 중학교 | 1157.5 | 1413.3 | 비자가 | 1111.5 | 1785.4 |
| 고등학교 | 1484.6 | 1817.4 | 가구총소득 | | |
| 대학 이상 | 2464.1 | 3267.6 | 없음 | 1425.6 | 2789.5 |
| 결혼상태 | | | ~ 19만원 | 905.5 | 1926.4 |
| 미혼 | 667.8 | 368.2 | 20 ~ 49만원 | 1204.8 | 9130.5 |
| 유배우 | 1691.7 | 2119.2 | 50 ~ 79만원 | 1545.8 | 1041.4 |
| 이혼·별거·사별 | 729.8 | 1004.3 | 80 ~ 99만원 | 1369.2 | 1541.8 |
| | | | 100~199만원 | 1456.5 | 2252.8 |
| | | | 200만원 이상 | 2008.1 | 2431.3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1421.5 | 1510.1 |
| | | | 이환가구 | 1536.4 | 2451.4 |
| 전체평균 | 1467.1 | 1997.7 | 전체평균 | 1467.1 | 1997.7 |
| (수) | (2321) | (1290) | (수) | (2321) | (1290) |

실업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로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비실업 가구와 실업가구 모두에서 40~50대의 학력이 높은 유배우 남성가구주 가정,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고, 월소득이 많으며, 부양자녀와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정에서 부채액이 많았다. 이는 가족주기 및 가족

구조상 지출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부채규모 역시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업가구의 부채가 비실업가구보다 높은 경우는 미혼가구주 가정과 소득이 20~70만원인 가정이었는데, 이는 이 소득수준이 그나마 실업가구에서 생계비를 위한 부채를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담보하는 금액대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업가구는 비실업가구에 비해 자가가구의 부채규모가 비자가가구보다 훨씬 큰데 이는 가구원 실직이후 자가구입에 소요된 부채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表 4-3 參照).

실업가구의 부채는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이 1998년 9월임을 고려하면 조사대상인 실업자의 실직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1년이상 되는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면 실업가구의 전반적 재산현황은 <表4-1>에서 파악된 것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 失業家庭의 所得 및 支出現況

가구의 경제생활상태는 무엇보다 가구의 소득 및 지출내용과 수준으로 알 수 있다. 실업이 가계의 소득·지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1998년 9월 현재 1개월간 실업가구의 소득지출규모 및 그 내역을 비실업가구의 그것과 비교하여 가계수지를 알아보았다.

가. 所得現況

비실업가구의 소득규모는 실업가구의 그것보다 큰데 전체적으로 40~50대 배우자가 있고 학력수준이 높은 남성가구주 가정에서,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고 자녀가 있는 부부가족, 또 취업자수가 많거나 자가가구에서 소득이 많았다.

〈表 4-4〉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平均 所得規模

(단위: 만원)

| 가구주 특성 | 실업 가구 | 비실업 가구 | 가구특성 | 실업 가구 | 비실업 가구 |
|----------|----------|-----------|-------------|----------|-----------|
| 성 | | | 가구원 규모 | | |
| 남자 | 71.6 | 109.7 | 1인 | 30.2 | 64.1 |
| 여자 | 46.7 | 73.6 | 2인 | 43.0 | 80.8 |
| 연령 | | | 3인 이상 | 74.7 | 113.1 |
| ~29 | 57.6 | 108.9 | 가구유형 | | |
| 30~39 | 66.2 | 110.1 | 독신가구 | 30.5 | 64.1 |
| 40~49 | 61.8 | 106.7 | 부부(+미혼자녀)가구 | 75.9 | 107.5 |
| 50~59 | 74.1 | 106.5 | 편부모가구 | 36.3 | 66.6 |
| 60+ | 68.5 | 82.2 | 기타가구 | 64.6 | 108.0 |
| 교육수준 | | | 자가여부 | | |
| 초교 이하 | 56.9 | 77.3 | 자가 | 77.9 | 115.5 |
| 중학교 | 63.3 | 91.2 | 비자가 | 56.9 | 94.3 |
| 고등학교 | 68.4 | 109.6 | 취업자수 | | |
| 대학 이상 | 87.5 | 136.6 | 없음 | 33.6 | 33.6 |
| 결혼상태 | | | 1명 | 78.5 | 90.2 |
| 미혼 | 56.9 | 90.9 | 2명 이상 | 115.4 | 128.4 |
| 유배우 | 63.3 | 111.0 | 이환가구여부 | | |
| 이혼·별거·사별 | 68.4 | 67.0 | 비이환가구 | 70.8 | 106.1 |
| | | | 이환가구 | 61.4 | 101.6 |
| 전체 | 67.2 | 104.3 | 전체 | 67.2 | 104.3 |

나. 支出現況

지출규모 역시 비실업가구에서 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40~50대 연령층의, 배우자가 있고 학력수준이 높은 남성가구주 가정에서,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고 자녀가 있는 부부가족 또는 취업자수가 많고 자가가 구인 경우에서 지출이 많았다. 또한 이환가구인 경우 지출규모가 더 커서 이환가구원의 의료비가 가계지출의 주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表 4-5〉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平均 支出規模

(단위: 천원)

| 가구주 특성 | 실업 가구 | 비실업 가구 | 가구특성 | 실업 가구 | 비실업 가구 |
|----------|----------|-----------|-------------|----------|-----------|
| 성 | | | 가구원 규모 | | |
| 남자 | 794.8 | 947.6 | 1인 | 380.4 | 490.1 |
| 여자 | 698.5 | 599.1 | 2인 | 661.8 | 753.8 |
| 연령 | | | 3인 이상 | 831.7 | 972.0 |
| ~29 | 521.7 | 710.8 | 가구유형 | | |
| 30~39 | 800.3 | 930.6 | 독신가구 | 372.2 | 490.1 |
| 40~49 | 804.2 | 1031.4 | 부부(+미혼자녀)가구 | 799.0 | 918.3 |
| 50~59 | 839.4 | 900.7 | 편부모가구 | 669.4 | 751.8 |
| 60+ | 708.3 | 756.0 | 기타가구 | 786.3 | 946.4 |
| 교육수준 | | | 자가여부 | | |
| 초교 이하 | 659.2 | 633.6 | 자가 | 878.0 | 1037.2 |
| 중학교 | 751.2 | 779.0 | 비자가 | 682.5 | 783.5 |
| 고등학교 | 758.1 | 1019.7 | 취업자수 | | |
| 대학 이상 | 1037.0 | 1052.7 | 없음 | 736.0 | 666.8 |
| 결혼상태 | | | 1명 | 778.3 | 821.3 |
| 미혼 | 474.3 | 578.9 | 2명 이상 | 875.6 | 1022.6 |
| 유배우 | 809.8 | 967.5 | 이환가구여부 | | |
| 이혼·별거·사별 | 786.9 | 598.9 | 비이환가구 | 745.7 | 860.3 |
| | | | 이환가구 | 824.9 | 966.7 |
| 전체 | 777.0 | 901.0 | 전체 | 777.0 | 901.0 |

〈表 4-6〉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의 소득·지출을 금액대별로 보고 있다. 비실업가구의 51.9%가 1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얻는데 반해 실업가구의 66.3%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24.9%에 달한다. 월평균소득액과 지출액을 살펴보면 실업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각각 비실업가구 그것의 64.4%, 86.2%에 지나지 않으며 비실업가구의 가계수지가 월 14만원의 흑자인데 반해 실업가구는 월 10만원씩의 적자를 내고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表 4-6〉 失業家口와 非失業家口의 所得 및 支出額 分布

(단위: %)

| 소득분포 | 실업가구 | | | 비실업가구 | | |
|-----------|-----------------|-----------------|-------|-----------------|-----------------|-------|
| | 소득 | 지출 | 차이 | 소득 | 지출 | 차이 |
| 없음 | 24.9 | .0 | -24.9 | 9.3 | .0 | -9.3 |
| 1~19만원 | 3.8 | 8.1 | -4.2 | 1.4 | 3.1 | -1.7 |
| 20~49만원 | 11.3 | 25.6 | -14.3 | 8.8 | 21.6 | -12.8 |
| 50~79만원 | 18.8 | 27.7 | -8.9 | 19.4 | 28.9 | -9.5 |
| 80~99만원 | 7.5 | 11.4 | -3.9 | 9.2 | 14.0 | -4.8 |
| 100~199만원 | 20.3 | 17.5 | 2.8 | 34.3 | 23.5 | 10.8 |
| 200만원 이상 | 13.4 | 9.8 | 3.6 | 17.6 | 9.0 | 8.6 |
| 계(명) | 100.0 (2538) | 100.0 (2597) | 100.0 | 100.0 (1493) | 100.0 (1511) | 100.0 |
| 평균(만원) | 67.2 | 77.7 | -10.5 | 104.3 | 90.1 | 14.2 |

실업가구의 평균근로소득은 비실업가구에 비해 40만원정도가 적은 데 전체 평균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실업가구의 근로소득감소가 가계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큼을 짐작케 한다. 민간연금급여와 기타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자산소득과 사회보험급여는 차이가 있다. 자산소득의 경우 가구원실직여부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부유층 비율의 영향으로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별다른 차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업가구의 평균소득이 비실업가구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총소득대비 자산소득의 비중은 실업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던 실직자의 급여수급으로 금액과 비율에 있어 실업가구의 것이 훨씬 높았다(表 4-7 참조).

〈表 4-7〉 失業家口와 非失業家口의 內譯別 平均所得額

(단위: 만원)

| 소득내역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근로소득(상여금 포함) | 54.0 | 83.2 | 93.8 | 86.7 |
| 자산소득(이자, 배당금, 집세 등) | 2.7 | 4.2 | 3.0 | 2.8 |
| 사회보험급여 | 1.4 | 2.2 | .7 | .6 |
| 민간연금급여 | .2 | .3 | .5 | .5 |
| 기타소득 | 6.6 | 10.2 | 10.2 | 9.4 |
| 계 ¹⁾ | 64.9 | 100.0 | 108.2 | 100.0 |

註: 1) 내역별 소득합계는 각 가구의 평균소득액과 금액이 맞아야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오류와 조사자의 주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내역별 지출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실업가구의 소비지출이 비실업가구에 비해 낮고 지출억제노력이 모든 항목에 걸쳐 취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식품비에 있어선 월 1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비실업가구에서도 전체적인 소비억제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업가구의 총지출이 낮은 관계로 앵겔계수는 실업가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지출의 경우 실업가구의 금액이 1만원 정도 적지만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하여 주거비용의 비탄력성을 보여준다. 사교육비와 육아비용,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이 가계가 지출억제를 위해 가장 손쉽게 취하는 선택적 지출항목임을 말해주고 있다. 부채에 대한 원리금은 비실업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더 높은 사실을 반영한다.

주목할 것은 의료비부분인데 지출총액에서 의료보험료의 비중이 비슷한 것은 기대되는 바이나, 보험료를 제외한 치료비는 실업가구의

지출이 비실업가구보다 큰 유일한 항목이다. 총지출대비 비중은 금액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업과 실직자의 건강상태가 무관치 않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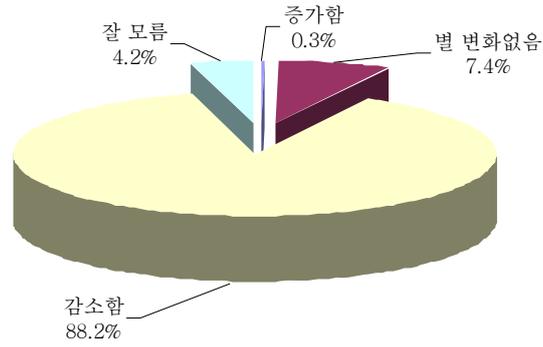
〈表 4-8〉 失業家口와 非失業家口의 內譯別 平均支出額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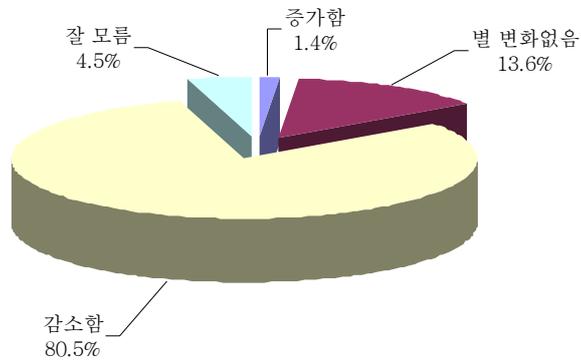
| 지출내역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가구의 식품비 | 259.4 | 33.9 | 272.0 | 30.3 | |
| 주거비(월세, 관리비) | 53.6 | 7.0 | 63.1 | 7.0 | |
| 사교육비 | 41.5 | 5.4 | 57.0 | 6.4 | |
| 육아비용 | 11.3 | 1.5 | 20.7 | 2.3 | |
| 세금 및 공과금 | 94.3 | 12.3 | 121.4 | 13.5 | |
|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 111.6 | 14.6 | 137.4 | 15.3 | |
| 내구재(전자제품, 냉난방용품, 가구, 자동차 등) | 19.3 | 2.5 | 34.5 | 3.8 | |
| 의료비 | 의료보험료 | 18.2 | 2.4 | 19.3 | 2.2 |
| | 보험료제외 치료비 | 53.9 | 7.1 | 50.7 | 5.7 |
| 기타 | 101.3 | 13.3 | 120.7 | 13.5 | |
| 계 | 764.4 | 100.0 | 896.8 | 100.0 | |

소득 및 지출에 있어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의 차이는 대부분 실업가구의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업가구의 지출감소 정도가 비실업가구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가구원의 실직을 전후한 실업가구의 소득·지출수준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응답가구 2,739가구 중 88.2%에 달하는 2,415가구에서 소득감소가 이루어졌으며(圖 4-1 參照), 응답가구 2,747가구 중 80.5%에 달하는 2,211가구에서 지출감소가(圖 4-2 參照) 발생하였다.

[圖 4-1] 失業家口의 所得變化



[圖 4-2] 失業家口의 支出變化



실업 후에도 소득이 증가하거나 별 변화가 없는 가구는 7.7%로서, 이들은 1998년 고금리 추세에 힘입어 가구원의 실직에도 불구하고 재산소득의 상승으로 종전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출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가구는 전체의 15.0%로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가구 비율의 2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구

원의 실업기간이 짧아 아직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해당가구에 본격화되지 않았을 사정에 기인하는 것 같다.

소득과 지출이 감소한 실업가구에서 감소액의 분포를 보면 <表 4-9>과 같다. 소득감소액의 경우 전체의 59.6%가 100만원 이상으로서 실직가구원이 가장이거나 가계의 실질적인 주수입원으로 역할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지출감소액의 경우 40.4%가 20~49만원대에 있고, 전체의 80%가 100만원 미만에 분포함으로써 지출수준의 상대적 비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능한 모든 항목의 지출을 줄여도 최소한의 생계비 및 주거비, 자녀교육비, 부채상환금과 같은 필수적인 지출요소가 있으며 또한 실업이전에도 이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가구의 경우 더 이상의 지출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가구의 지출감소액은 소득감소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表 4-9> 失業家口의 所得 및 支出減少額의 分布

(단위: %)

| 감소액 | 소득감소 | 지출감소 |
|------------|-------|-------|
| 1~19만원 | .9 | 8.4 |
| 20~49만원 | 10.4 | 40.4 |
| 50~79만원 | 20.0 | 26.2 |
| 80~99만원 | 9.0 | 4.8 |
| 100~199만원 | 37.5 | 16.9 |
| 200만원 이상 | 22.1 | 3.3 |
| 계 | 100.0 | 100.0 |
| 평균 감소액(만원) | 109.3 | 57.4 |

가구주의 특성별로 실업가구의 소득 및 지출감소를 살펴보면 <表 4-10>와 같다. 가구주의 성은 소득감소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고용구조를 반영한다. 즉, 실업이나 전반적 임금하락 동향이 가져

은 소득감소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수준을 누리고 있던 남성가구주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 지출감소의 경우 가구주의 성과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의 경기불황 및 대량 실업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불안정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가계에서 소비억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연령은 소득과 지출면에 있어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준다. 소득감소는 30대 가구주 가구에서 그리고 지출감소는 40대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30대의 경우 경제활동기간이 짧아 아직 재산을 충분히 축적해 놓을 여건이 안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기이므로 가구원 실직에 의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이들 연령층에 클 수밖에 없다. 40대의 경우 가장 활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대부분 중·고등학생일 취학자녀의 교육비 및 생계비 등으로 지출이 많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 연령층 가구에서 지출감소를 위한 항목선택의 여지가 많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30~40대에서 소득감소와 지출감소가 크게 일어난 것은 생애주기상의 이들 연령층 가구주 가구의 특징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은 대량해고의 대상이 이들 연령층에 보다 많았던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득감소에 있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임금하락의 경향이 직종과 무관하게 전 산업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출감소에 있어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주는데 고등학교 학력 가구주 가구에선 85.0%가 지출감소를 겪었다. 이는 고등학교 학력소지자가 가구경제에 있어 임금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술직 계층에 주로 진출해 있어 실직에 의한 소득감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이들 계층에 높고 또한 1998년의 경기불황에 의한 공장가동률 하락과

임금삭감 추세 역시 이들 계층에 미친 영향이 보다 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초교이하 학력 가구주 가구의 경우 74.2%의 가구에서 지출감소가 일어나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여기엔 이들 가구가 대부분 가구원 실직 이전부터 최저생계비수준에서 생활해 와서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지출억제가 가능하지 않은 계층이었을 사실이 반영되고 있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지출감소와만 유의한 관련이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대상선정이 노동자의 배우자유무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실직이 개인과 그가 속한 가구경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서 이는 당연하게 생각된다. 반면 유배우자가구의 81.8%에서 지출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특히 임금근로자계층에 있어 생계비 절감이라는 결혼의 경제적 근거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이혼·별거·사별가구에서 보다 지출감소의 비율이 낮은 것은 이들 가구가 대부분 편부·모 가정으로서 이미 지출수준이 낮았기 때문일 것이다.

가구주의 실업여부는 대부분 주수입원인 가장의 실직여부로 가계의 소득감소 및 지출감소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실업가구주 가구에서도 소득감소와 지출감소가 크게 발생한 것은 경제불황에 따른 전체 가계의 전반적 수지악화 경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가구의 특성별로 소득감소와 지출감소를 살펴보면 <表 4-11>과 같다. 가구원의 실직은 가구원의 규모나 형태에 무관하게 소득감소를 가져오지만 지출감소에 있어 가구원수는 유의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가구원수에 따라 절대적인 생계비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출억제의 항목과 크기에 있어 유동성이 클 것이고 또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表 4-10〉 家口主 特性別 失業家口の 所得 및 支出減少

(단위: %)

| 가구주 특성 | 소득감소 | | 지출감소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성 | | | | |
| 남자 | 88.7 | 25.2** | 81.4 | 11.4 |
| 여자 | 86.3 | | 76.3 | |
| 연령 | | | | |
| ~29 | 89.5 | 47.9*** | 78.7 | 41.4*** |
| 30~39 | 92.3 | | 84.0 | |
| 40~49 | 92.1 | | 84.9 | |
| 50~59 | 83.7 | | 77.3 | |
| 60+ | 85.6 | | 76.7 | |
| 교육수준 | | | | |
| 초교 이하 | 84.9 | 20.5 | 74.2 | 42.3*** |
| 중학교 | 89.9 | | 80.0 | |
| 고등학교 | 89.2 | | 85.0 | |
| 대학 이상 | 89.3 | | 80.3 | |
| 결혼상태 | | | | |
| 미혼 | 88.9 | 16.5 | 78.6 | 20.9* |
| 유배우 | 88.6 | | 81.8 | |
| 이혼·별거·사별 | 85.6 | | 74.4 | |
| 실업여부 | | | | |
| 비실업 | 82.1 | 94.5*** | 73.1 | 92.8*** |
| 실업 | 93.9 | | 87.4 | |

註: * p< 0.05, ** p<0.01, *** p< 0.001

주택소유 여부는 소득감소와 지출감소에 있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다. 비자가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외에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가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감소율이 높을 수 있다. 월세가구의 경우 일정액의 주거비가 상시적인 지출항목을 이루고 전세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전후 전세값 하

락에 따른 상대적 재산손실의 영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비자가가 구에서 지출감소의 노력이 보다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자수와 실업자수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취업가구원이 2명 이상인 실업가구의 경우 소득감소와 지출 감소가 발생한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로 실업자수가 2 명이상인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다.

〈表 4-11〉 家口特性別 失業家口의 所得 및 支出減少

(단위: %)

| 실업가구 특성 | 소득감소 | | 지출감소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가구원수 | | | | |
| 1명 | 83.6 | | 75.9 | |
| 2명 | 91.4 | 12.0 | 83.6 | 21.8** |
| 3명이상 | 88.0 | | 80.3 | |
| 가구유형 | | | | |
| 독신가구 | 84.3 | | 75.7 | |
| 부부가구 | 87.0 | 12.4 | 80.2 | 15.1 |
| 편부모가구 | 83.8 | | 79.9 | |
| 기타가구 | 89.9 | | 81.4 | |
| 주택소유여부 | | | | |
| 자가 | 86.3 | | 77.0 | |
| 비자가 | 89.9 | 12.7** | 83.8 | 20.4*** |
| 취업자수 | | | | |
| 없음 | 89.8 | | 84.6 | |
| 1명 | 90.6 | 61.9*** | 81.5 | 63.5*** |
| 2명 이상 | 78.5 | | 68.3 | |
| 실업자수 | | | | |
| 1명 | 87.8 | | 79.9 | |
| 2명 이상 | 92.7 | 39.0*** | 85.6 | 11.4 |
| 이환가구여부 | | | | |
| 비이환가구 | 86.3 | | 80.3 | |
| 이환가구 | 91.3 | 18.2*** | 80.8 | 9.4* |

註: * p<.05, ** p<.01, *** p<.001

3. 失業家口의 移轉所得 및 支出

가. 移轉所得

실업가구의 이전소득 분포를 보면 우선 부모로부터 받는 금전적 도움액이 월 4만5천원 정도로 형제나 기타 친지로부터 받는 액수보다 많았으며, 가구원의 실직 이후로 그 액수가 무려 5~10배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구원의 실직을 전후로 부모, 형제, 친지 등으로부터 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의 수는 6~10여 개가 증가하는데 그쳐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가구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가구원 실직 이전부터 이전소득이 생계유지에 있어 절대적인 수입원의 하나였고 이제 가구원의 실직으로 그나마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친척, 친지의 도움이 이들 가계의 거의 유일한 소득원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구주의 특성별로 실업가구의 이전소득 분포를 보면 우선 남성가주주 가구일수록, 그리고 부부가족일수록 실업 전후 도움을 받는 액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남성가구원(주로 家長)의 소득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실업의 타격도 보다 크고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주주 가정은 대부분 편모가정이어서 이들은 금전적 도움을 기대할만한 친척, 친지 등 인적 네트워크가 부부가족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가구주 연령이 40대일 때 이전소득이 많았는데 이는 소득이 가장 1인에 집중되어 있던 기 중산층 가정에서 가장 실직 이후 갑작스런 생활수준 변화에 대처해 외부 친척, 친지의 도움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업가구의 가구특성별로 이전소득분포를 보면, 우선 가구원이 많을수록 이전소득액수가 크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실직을 전후한 도움액수의 증가율이 더 높다. 이는 가구원 규모가 가계의 지출규모를 크

게 좌우하기 때문에 지출수준이 높던 3인 이상 가구의 생계비 영향이 반영된 한편,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1~2인 가구는 실직 후엔 소득원이 전혀 없어 부모, 형제 등 외부의 금전적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4-12〉 失業家口의 家口主 特性別 平均 移轉所得額

(단위: 만원)

| 가구주 특성 | 부모 | | 형제 | | 기타 | |
|----------|-------|-------|------|-------|------|------|
| | 실업전 | 실업후 | 실업전 | 실업후 | 실업전 | 실업후 |
| 성 | | | | | | |
| 남자 | 4.65 | 21.36 | 1.67 | 12.66 | 1.49 | 7.07 |
| 여자 | 3.81 | 11.49 | .63 | 5.79 | 3.73 | 7.04 |
| 연령 | | | | | | |
| ~29 | 12.34 | 28.32 | .56 | 6.53 | | 1.26 |
| 30~39 | 5.31 | 22.48 | 1.48 | 12.46 | .57 | 7.77 |
| 40~49 | .14 | 12.34 | .87 | 21.83 | 2.35 | 8.52 |
| 50~59 | 2.30 | 13.66 | 3.24 | 7.42 | 4.33 | 8.31 |
| 60+ | 4.74 | 21.82 | .70 | 5.75 | 2.43 | 7.17 |
| 교육수준 | | | | | | |
| 초교 이하 | 1.87 | 13.84 | .84 | 7.41 | 4.12 | 6.59 |
| 중학교 | 5.00 | 15.08 | .72 | 10.61 | 1.00 | 7.77 |
| 고등학교 | 5.58 | 18.42 | 2.37 | 12.87 | 1.97 | 7.25 |
| 대학 이상 | 5.05 | 29.64 | 1.01 | 12.84 | | 7.00 |
| 결혼상태 | | | | | | |
| 미혼 | 3.89 | 14.88 | .23 | 9.77 | .35 | 2.85 |
| 유배우 | 5.15 | 23.02 | 1.74 | 12.13 | 2.39 | 8.17 |
| 이혼·별거·사별 | 2.35 | 8.23 | 1.22 | 8.63 | 1.40 | 5.82 |
| 전체평균금액 | 4.48 | 19.33 | 1.45 | 11.24 | 1.95 | 7.06 |
| 계(사례수) | 408 | 417 | 411 | 420 | 410 | 416 |

註: 빈칸은 사례수 10 이하로서 평균금액이 0.0으로 나오거나 결측치로 처리된 항목이다.

마찬가지로 실업가구의 가구유형이나 자가여부, 총소득 분포 및 이환가구여부에서도 이전소득 규모에 있어 가구원 실직 이전의 지출수준이 반영되어 지출이 많던 가구는 가구원실직 이후에도 그만큼 많은

액수의 외부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편부모가구의 경우 부모, 형제외 기타 친적, 친지들로부터 받는 금전적 도움액이 가구원 실직을 전후로 변화가 거의 없어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직계혈족에 한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13〉 失業家口의 家口特性別 平均 移轉所得額

(단위: 만원)

| 가구주 특성 | 부모 | | 형제 | | 기타 | |
|-------------|------|------|-----|------|-----|------|
| | 실업전 | 실업후 | 실업전 | 실업후 | 실업전 | 실업후 |
| 가구원 규모 | | | | | | |
| 1인 | 3.8 | 12.9 | .3 | 9.1 | .7 | 4.3 |
| 2인 | 2.3 | 14.9 | 1.1 | 11.4 | 1.0 | 6.5 |
| 3인이상 | 5.2 | 21.7 | 1.8 | 11.6 | 2.5 | 7.7 |
| 가구유형 | | | | | | |
| 독신가구 | 3.8 | 12.9 | .3 | 9.1 | .7 | 4.3 |
| 부부(+미혼자녀)가구 | 2.9 | 19.1 | 2.2 | 9.1 | 2.0 | 10.2 |
| 편부모가구 | | 16.2 | | 3.1 | 1.7 | 1.6 |
| 기타가구 | 5.6 | 21.0 | 1.4 | 13.1 | 2.2 | 6.1 |
| 자가여부 | | | | | | |
| 자가 | 4.6 | 22.1 | 2.7 | 8.1 | 3.9 | 9.9 |
| 비자가 | 4.4 | 17.8 | .7 | 13.0 | .9 | 5.4 |
| 가구총소득 | | | | | | |
| 없음 | 5.0 | 18.0 | .9 | 13.1 | 1.6 | 10.1 |
| ~ 19만원 | 2.3 | 5.5 | 1.4 | 5.6 | .6 | 2.6 |
| 20 ~ 49만원 | 3.9 | 15.9 | 1.3 | 10.0 | 4.8 | 4.9 |
| 50 ~ 79만원 | 5.3 | 20.5 | .4 | 12.0 | 1.2 | 8.5 |
| 80 ~ 99만원 | .3 | 16.6 | 1.5 | 10.3 | | 1.2 |
| 100~199만원 | 10.9 | 42.4 | 5.4 | 12.7 | 2.8 | 9.9 |
| 200만원 이상 | 1.0 | 17.7 | 1.3 | 10.4 | 1.2 | 4.3 |
| 실업자수 | | | | | | |
| 1명 | 4.8 | 19.9 | 1.4 | 10.8 | 1.9 | 7.0 |
| 2명 이상 | 1.3 | 14.0 | 1.7 | 16.0 | 2.4 | 7.3 |
| 이환가구여부 | | | | | | |
| 비이환가구 | 5.8 | 22.0 | .6 | 10.6 | 2.3 | 6.8 |
| 이환가구 | 2.7 | 15.8 | 2.6 | 12.0 | 1.5 | 7.4 |
| 전체평균금액 | 4.5 | 19.3 | 1.5 | 11.2 | 2.0 | 7.1 |

註: 빈칸은 사례수 10 이하로서 평균금액이 0.0으로 나오거나 결측치로 처리된 항목임.

나. 移轉支出

실업가구의 이전지출분포를 보면 가구원실직 이후로 전체 이전지출액은 감소하였으나 해당 사례수는 변화가 없다. 이는 가구원실직으로 인한 가계 소득감소의 영향인 한편, 이들 가구의 이전지출이 수혜가구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더라도 이전지출 자체를 중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업가구의 이전소득분포가 나타내는 양상을 그대로 확인시켜준다.

가구주 특성별 분포에서 특징적인 것은 60대와 중학교학력의 가구주 가구에서 이전지출액이 특히 많다는 점인데, 이는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가계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농촌가구의 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별거·사별가구주 가정의 경우 부모외엔 이전지출이 없어 이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함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가구특성별 이전지출분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편부모가정의 경우 가구원 실직이후론 이전지출 사례가 거의 없다. 독신가구의 경우 이전지출이 없는 것, 자가이고 총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실업자수가 적고 이환가구일수록 이전지출이 많은 것은 가계소득 정도와 이전지출의 비례관계 또는 가계지출정도와 이전지출의 반비례 관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가구총소득과 이전지출 간의 관계인데 월소득 5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정에서 이전지출이 나타나고 있고 50~100만원 미만대 소득으로 생활하는 실업가구의 이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가구 또는 얼마 되지 않는 소득의 20~50%에 이르는 이전지출이 나타나는 가구는 결국 빚을 내어 이러한 금액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저소득 노동계층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친족망의 확대를 이용한다는 앤더슨(Anderson, 1971)의 논의를 상기시킨다.

즉 이들 가정의 경우 그간 가구원의 수입이 자신의 가계유지뿐 아니라 부모, 형제 등 친족가구의 생존에 같이 쓰여와 가구원의 실직이후에도 이전지출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월소득 50~100만원 미만 실업가구의 경우 부모 외 이전지출액이 매우 적은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구경제의 독립성을 가늠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이 금액대에 위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4-14〉 失業家口의 家口主 特性別 平均 移轉支出額

(단위: 천원)

| 가구주 특성 | 부모 | | 형제 | | 기타 | |
|----------|-------|-------|-------|-------|-------|-------|
| | 실업전 | 실업후 | 실업전 | 실업후 | 실업전 | 실업후 |
| 성 | | | | | | |
| 남자 | 111.4 | 107.6 | 103.8 | 100.8 | 105.2 | 102.7 |
| 여자 | 113.8 | 102.8 | 96.8 | 96.3 | 96.5 | 96.6 |
| 연령 | | | | | | |
| ~29 | 94.6 | 86.5 | 82.2 | 79.3 | 79.5 | 79.5 |
| 30~39 | 105.2 | 98.6 | 94.8 | 92.0 | 92.4 | 92.0 |
| 40~49 | 96.3 | 93.7 | 88.8 | 82.7 | 83.9 | 89.5 |
| 50~59 | 108.0 | 103.6 | 103.9 | 105.9 | 113.4 | 99.8 |
| 60+ | 232.5 | 232.4 | 217.3 | 217.3 | 236.3 | 227.1 |
| 교육수준 | | | | | | |
| 초교 이하 | 74.3 | 72.3 | 63.5 | 60.5 | 62.9 | 70.8 |
| 중학교 | 284.0 | 282.7 | 275.6 | 282.7 | 286.2 | 275.6 |
| 고등학교 | 75.5 | 68.3 | 65.8 | 64.0 | 70.4 | 63.6 |
| 대학 이상 | 119.9 | 115.2 | 115.7 | 105.9 | 105.5 | 109.5 |
| 결혼상태 | | | | | | |
| 미혼 | 106.6 | 94.7 | 103.4 | 90.5 | 90.5 | 90.5 |
| 유배우 | 117.9 | 115.1 | 109.7 | 107.9 | 112.4 | 109.9 |
| 이혼·별거·사별 | 29.2 | 2.7 | | | | .1 |
| 전체 평균 | 110.6 | 106.0 | 102.1 | 99.6 | 103.1 | 101.0 |

註: 빈칸은 사례수 10 이하로서 평균금액이 0.0으로 나오거나 결측치로 처리된 항목임.

〈表 4-15〉 失業家口의 家口特性別 平均 移轉支出額

(단위: 천원)

| 가구 특성 | 부모 | | 형제 | | 기타 | |
|-------------|-------|-------|-------|-------|-------|-------|
| | 실업전 | 실업후 | 실업전 | 실업후 | 실업전 | 실업후 |
| 가구원 규모 | | | | | | |
| 1인 | 22.8 | 4.7 | .7 | | | |
| 2인 | 138.5 | 136.5 | 123.8 | 124.3 | 124.1 | 123.6 |
| 3인이상 | 111.5 | 107.1 | 105.2 | 101.9 | 106.6 | 104.0 |
| 가구유형 | | | | | | |
| 독신가구 | 22.8 | 4.7 | .7 | | | |
| 부부(+미혼자녀)가구 | 100.9 | 100.9 | 91.5 | 92.4 | 96.6 | 93.0 |
| 편부모가구 | 32.6 | | | | | |
| 기타가구 | 135.5 | 128.7 | 130.8 | 123.6 | 127.4 | 126.6 |
| 자가여부 | | | | | | |
| 자가 | 111.5 | 109.3 | 106.6 | 103.1 | 109.8 | 108.6 |
| 비자가 | 109.9 | 103.5 | 98.4 | 96.7 | 98.0 | 95.1 |
| 가구총소득 | | | | | | |
| 없음 | 68.6 | 59.9 | 64.8 | 54.5 | 61.4 | 54.6 |
| ~ 19만원 | | | | | | |
| 20 ~ 49만원 | 119.1 | 118.2 | 113.5 | 116.7 | 111.3 | 106.8 |
| 50 ~ 79만원 | 11.5 | 4.6 | .7 | .7 | .9 | 4.9 |
| 80 ~ 99만원 | 11.3 | 5.5 | .0 | 1.0 | .1 | .1 |
| 100~199만원 | 108.3 | 107.4 | 97.0 | 96.1 | 101.8 | 95.9 |
| 200만원 이상 | 229.6 | 225.4 | 217.1 | 215.8 | 224.3 | 226.7 |
| 실업자수 | | | | | | |
| 1명 | 113.9 | 109.6 | 105.7 | 102.2 | 106.8 | 104.6 |
| 2명 이상 | 67.3 | 59.4 | 55.5 | 65.9 | 55.5 | 55.5 |
| 이환가구여부 | | | | | | |
| 비이환가구 | 146.1 | 139.7 | 135.8 | 133.2 | 137.4 | 133.5 |
| 이환가구 | 50.7 | 48.4 | 44.4 | 43.8 | 45.4 | 46.3 |
| 전체평균금액 | 110.6 | 106.0 | 102.1 | 99.6 | 103.1 | 1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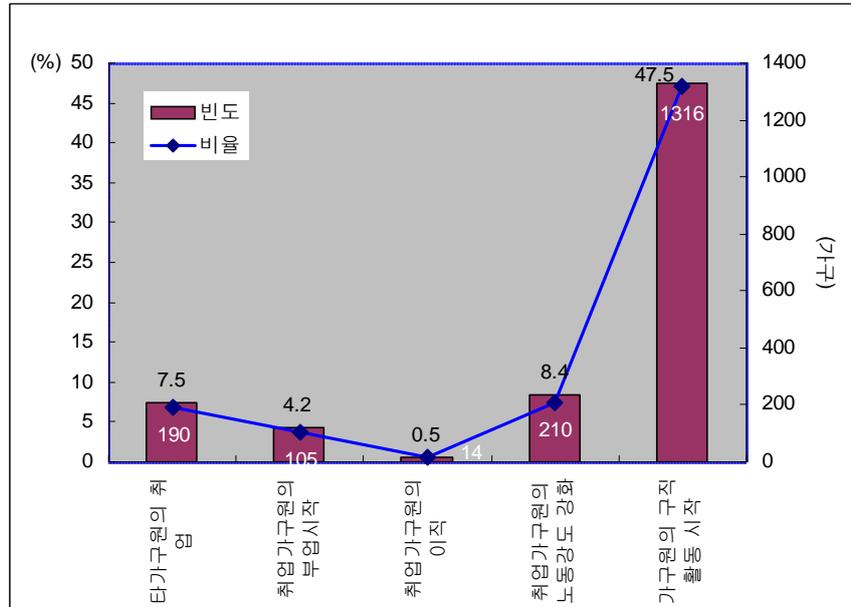
註: 빈칸은 사례수 10 이하로서 평균금액이 0.0으로 나오거나 결측치로 처리된 항목임.

第 2 節 失業家庭의 所得減少 對處方法

가구원의 실직·이직에 대한 실업가구의 대처는 무엇보다 타가구원의 취업에 대한 요구 상승으로 나타난다. 실제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남성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기혼여성의 취업률과 구직활동 비율이 높아졌다. 여기서는 실업가구의 대처방법을 타가구원의 취업과 취업가구원의 부업시작, 취업가구원의 이직, 근로시간연장과 같은 취업가구원의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가구원의 구직활동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대처방안으로 예상되는 ‘가구원의 구직활동 시작’이 전체 실업가구의 47.5%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가구원 실업으로 인해 소득 감소가 발생한 가구의 59.0%이며, 특히 경제활동가능 가구원의 부재, 이환 등으로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독가구 및 2인 가구를 제외한 3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의 69.6%를 차지한다. 주목되는 것은 신규취업이나 재취업률이 14.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가구원의 부업활동, 이직, 노동강도강화 등 여타 대처방안 모두가 전체 실업가구의 10%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과 함께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사회문제를 고용창출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조사시점 당시까지도 적극적으로 취해지지 않았고 또 별 성과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소득증가를 위한 취업가구원의 이직이 0.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기업 구조조정이 노동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보다 정리해고 중심의 경직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圖 4-3] 家口員의 失·移職에 대한 失業家口의 對處方法(複數應答)



가구원의 실직 및 이직에 대한 대처방법을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가구주가 남성이고 연령이 40~50대이며 학력수준이 중졸, 또 유배우상태에 있을 때 가구원 실직에 대한 가족전체의 대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우선 실직에 대한 대처방안의 활용이 가구주의 성과 무관하지 않음은 기대되던 바이다. 왜냐하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및 가구의 단독수입원으로서 가장의 역할이 남성에 더 많음을 생각할 때 남성가구원의 실직이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이다.

연령층에 따라 보면 40~50대 가구주 가구에서 타가구원의 취업이나 취업가구원의 노동강도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 연령대 가구주 가족이 가족주기상 가구원의 수가 가장 많고 취학자녀의 존재로 교육비등의 필수적 지출요소가 많아 최저생활비에 대한 압박이 보다

큰 것은 앞 절에서 본 대로다. 그러나 30~40대 가구주가구에서 소득 감소 및 지출감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실업에 대한 대처가 상대적으로 50대 가구주가구에서 더 활발한 것은 이 연령대의 실직노동자가 신규취업이나 이직 및 창업을 하기는 타연령대에 비하여 더 어려운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50대 노동자의 경우 보통 한 직종에서의 근속연수가 20여 년에 이르는데 기존 종사업에 대한 나름의 전문성 또는 배타적 적응성을 갖춘 상태에서 재투자의 기간을 확보하여 새로운 직종에 취업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여기에는 취업에 있어 연령제한을 많이 두는 한국기업 고용행태의 영향도 크다. 또한 50대는 20~30대에 비하여 창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일을 벌여나가기도 어렵다. 즉 실직을 기회로 다른 인생설계를 해볼 만한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50대 가구주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했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가구원의 취업과 같은 대처방법이, 만약 가구주가 취업상태라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 강화와 같은 대처방법을 보다 활발히 구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가구주가 유배우일수록 가구원 실직에 대한 대처방법이 보다 다양하고 활발히 진행됨을 보여준다. 이는 미혼가구주나 이혼·별거·사별 가구가 대부분 단독가구 또는 2~3인가구로서 실직가구원을 대신하여 취업활동을 할 경제활동인구가 가구원에 없을 가능성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주의 실업여부와 각 실업가구의 가구원 실직·이직에 대한 대처방법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뚜렷하다. 우선 가구주가 실업일 때 타가구원의 취업과 취업가구원의 부업시작이 보다 활발한데 전자의 경우는 대량실업사태이후 기혼여성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사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후자는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반대로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 타가구원의 실직으로 인한 가

계 소득감소는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경제적 의무에 대한 책임감의 상승으로 이어져 근로시간 연장과 같은 노동강도 강화의 대처방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가구주가 취업상태일 때에도 타가구원의 구직활동 시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경기불황에 의한 전반적인 가계의 소득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에 대해 가족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表 4-16〉 家口主 特性別 失職 및 移職에 대한 對處方法(複數應答)
(단위: %)

| 가구주 특성 | 타가구원 의 취업 | 취업가구 원의 부업시작 | 취업가구 원의 이직 | 취업가구원의 노동강도 강화 | 가구원의 구직활동 시작 | 전체 |
|----------|--------------|--------------------|------------------|----------------------|--------------------|------|
| 성 | | | | | | |
| 남자 | 8.3 | 4.2 | .6 | 8.7 | 52.2 | 74.0 |
| 여자 | 4.0 | 3.6 | .3 | 6.9 | 51.2 | 66.0 |
| χ^2 | 9.9* | 26.0*** | .6 | 14.9** | 27.8*** | |
| 연령 | | | | | | |
| ~29 | 2.2 | 5.7 | .3 | 5.9 | 52.3 | 66.4 |
| 30~39 | 5.5 | 4.2 | .5 | 6.9 | 50.5 | 67.6 |
| 40~49 | 9.1 | 4.1 | .3 | 7.4 | 49.8 | 70.7 |
| 50~59 | 9.0 | 3.7 | 1.2 | 11.6 | 56.7 | 82.2 |
| 60+ | 7.2 | 4.5 | .0 | 6.7 | 47.8 | 66.2 |
| χ^2 | 14.9* | 2.0 | 9.2 | 17.2** | 22.8 | |
| 교육수준 | | | | | | |
| 초교 이하 | 7.9 | 4.5 | 1.2 | 10.2 | 50.4 | 74.2 |
| 중학교 | 8.4 | 2.9 | .7 | 10.9 | 54.2 | 77.1 |
| 고등학교 | 7.3 | 5.0 | .2 | 6.8 | 52.6 | 71.9 |
| 대학 이상 | 6.3 | 3.0 | .0 | 6.0 | 50.5 | 65.8 |
| χ^2 | 1.7 | 5.7 | 9.7* | 12.8* | 21.7* | |
| 결혼상태 | | | | | | |
| 미혼 | 3.2 | 3.6 | .3 | 4.0 | 41.8 | 52.9 |
| 유배우 | 9.0 | 4.2 | .7 | 9.1 | 53.2 | 76.2 |
| 이혼·별거·사별 | 2.6 | 3.9 | .0 | 6.8 | 51.9 | 65.2 |
| χ^2 | 24.9*** | 4.5 | 3.1 | 7.9* | 30.3*** | |
| 실업여부 | | | | | | |
| 비실업 | 6.1 | 2.7 | .6 | 9.7 | 53.4 | 72.5 |
| 실업 | 8.8 | 5.6 | .5 | 7.2 | 50.6 | 72.5 |
| χ^2 | 6.3* | 12.4*** | .0 | 4.8* | 24.5*** | |

註: * p<.05, ** p<.01, *** p<.001

실업가구의 규모나 가구유형은 가구원 실직·이직에 대한 대처에 모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타가구원의 취업이나 가구원의 구직활동 시작이 3인 이상 가구의 각각 8.6%, 53.1%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가구유형에 있어서도 부부가구나 기타가구에서 보다 활발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다면 실업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처는 가구원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는 점이다. 단, 3인 이상 가구의 9.4%에서 취업가구원의 노동강도 강화가 일어나 2인 가구보다 발생비용이 높은 것은 가구원 규모에 따라 보다 많이 드는 기초생계비용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총소득은 가구원의 실직·이직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서 소득 감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대처방법에 대해 모두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어 총소득이 50~100만원대 있는 가구일수록 가구원실직에 대해 보다 활발히 대처함을 나타내었다.

취업자수 역시 타가구원의 취업이나 노동강도 강화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가구원이 많다고 해서 실업가구의 대처양상이 보다 활발하다거나 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취업가구원이 많아도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대적 액수가 작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구원 실직에 의한 소득감소가 가계에 미치는 타격은 결국 기존에 그 가구가 영위하던 생활수준에 대비하여 상대적이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 많이 쓰던 가구라면 그 생활수준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취업자수가 없는 가구의 경우 실직에 대한 대처비용이 오히려 낮다는 것인데 이는 해당 실업가구에서 실직당사자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구원이 없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4-17> 家口特性別 失職 및 移職에 대한 對處方法(複數應答)

(단위:%)

| 가구특성 | 타가구 원의 취업 | 취업가구 원의 부업시작 | 취업가 구원의 이직 | 취업가구원 의 노동강도 강화 | 가구원의 구직활동 시작 | 전체 |
|-------------|-----------------|--------------------|------------------|-----------------------|--------------------|--------|
| 가구원수 | | | | | | |
| 1인 | .9 | .4 | | | 42.4 | |
| 2인 | 5.0 | 4.6 | .3 | 05.8 | 49.9 | 65.6 |
| 3인 이상 | 8.6 | 4.3 | .6 | 9.4 | 53.1 | 76.0 |
| χ^2 | 15.9*** | 5.4 | 1.6 | 19.3*** | 23.2*** | |
| 가구유형 | | | | | | |
| 독신가구 | .9 | .4 | | | 43.8 | |
| 부부(+미혼자녀)가구 | 9.8 | 3.6 | .7 | 9.1 | 54.2 | 77.4 |
| 편부모가구 | | 6.0 | | 10.0 | 43.8 | 59.8 |
| 기타가구 | 6.5 | 5.1 | .5 | 8.6 | 51.2 | 71.9 |
| χ^2 | 23.3*** | 9.2* | 1.7 | 13.8** | 20.5* | |
| 가구총소득 | | | | | | |
| 없음 | 2.5 | 2.6 | .2 | 3.7 | 51.4 | 60.4 |
| ~ 19만원 | 4.7 | 7.1 | .0 | 6.2 | 38.1 | 56.1 |
| 20 ~ 49만원 | 11.1 | 3.9 | 1.8 | 8.5 | 53.3 | 78.6 |
| 50 ~ 79만원 | 16.2 | 6.8 | .4 | 12.1 | 48.5 | 84.0 |
| 80 ~ 99만원 | 2.9 | 4.0 | .6 | 12.0 | 60.1 | 79.6 |
| 100~199만원 | 7.6 | 3.4 | .8 | 10.5 | 50.0 | 72.3 |
| 200만원 이상 | 5.1 | 4.1 | .0 | 6.9 | 58.9 | 75.0 |
| χ^2 | 90.1*** | 15.3* | 13.1* | 35.0*** | 35.0** | |
| 취업자수 | | | | | | |
| 없음 | 1.5 | 3.1 | | 1.2 | 52.7 | (58.5) |
| 1명 | 11.6 | 5.1 | .9 | 13.0 | 50.5 | 81.1 |
| 2명 이상 | 12.5 | 4.5 | 1.1 | 14.6 | 53.3 | 86.0 |
| χ^2 | 95.6*** | 5.5 | 10.0** | 120.0*** | 7.4 | |

註: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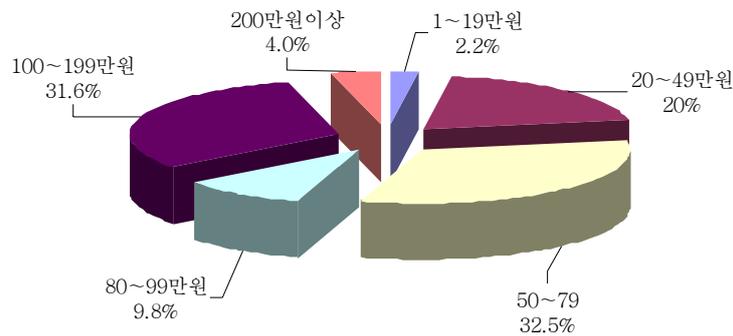
第 3 節 失業家庭의 最低生活費 및 生計維持 方法

1. 最低生活費

소득이 줄면 지출을 그에 맞춰 줄이는 것은 가정의 경제생활에 있어 당연한 반응이지만 지출수준에 대한 가계의 만족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생활을 영위하던 저소득계층의 경우 그러한 경제생활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제생활의 질이 갑자기 악화된 가구의 경우 갑자기 낮아진 생활수준이 발생시키는 상대적 박탈감 및 재적응의 문제로 실업가정의 가족생활이나 가구원 개인의 심리 및 사회생활 방식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선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구원실직이 초래하는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보는 의미에서 실업 가구의 한달간의 최소생활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가 <圖 4-4>와 같다.

[圖 4-4] 한 달간의 希望最小生活費



실업가구에서 희망하는 한달 최소생활비는 50~79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32.5%로서 가장 많았고, 100~199만원이 31.6%로 그 뒤를 이었다.

<表 4-18>은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및 결혼상태가 모두 희망 최소생활비와 독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가구주인 경우 희망최소생활비는 100~199만원대, 여성가구주인 경우 20~79만원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성가구주 가구가 대부분 유배우자 가정이고 노부모등 부양가족이 많은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정은 배우자가 없고 편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가구원 규모나 기존의 생활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구별로 최고비율을 보여주는 희망최소생활비는 미혼가구인 경우 20~49만원대, 이혼·별거·사별로 무배우자 가구의 경우 50~79만원대인 반면, 유배우자 가구의 경우 100~199만원대이다. 물론, 미혼가구와 무배우자 가구간 희망최소생활비의 차이는 자녀의 교육비에 기인한 부분이 클 것이다.

가구주의 연령대를 보면 미혼이거나 자녀가 아직 취학전의 어린이일 경우가 대부분일 20, 30대 가구주 가구에서 50~79만원대 희망최소생활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자녀의 교육비등으로 한창 지출이 많은 40, 50대 가구주 가구에선 100~199만원대가 가장 높다. 자녀의 출가로 가족주기상 규모가 줄어드는 단계인 60대 가구주 가구에선 다시 희망최소생활비가 낮아져 50~79만원대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희망최소생활비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이는 보통 학력과 소득이 정관계를 갖는 한국사회에서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존의 생활수준이 높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최저생활비를 구성하는 필수 항목의 수나 질에 있어 고학력층의 기대수준이 평균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4-18〉 家口主 特性別 希望 月 最小生活費

(단위: %)

| 가구주 특성 | 1 ~19 | 20 ~49 | 50 ~79 | 80 ~99 | 100 ~199 | 200+ | 계(수) | χ^2 |
|----------|----------|-----------|-----------|-----------|-------------|------|--------------|----------|
| 성 | | | | | | | | |
| 남자 | 1.7 | 17.2 | 31.3 | 10.6 | 34.5 | 4.5 | 100.0(2,183) | 70.3*** |
| 여자 | 4.0 | 32.2 | 38.2 | 6.4 | 17.6 | 1.8 | 100.0(450) | |
| 연령 | | | | | | | | |
| ~29 | 5.4 | 32.6 | 38.0 | 5.4 | 17.4 | .5 | 100.0(184) | |
| 30~39 | 1.0 | 19.2 | 36.1 | 10.4 | 30.1 | 3.2 | 100.0(501) | 144.6*** |
| 40~49 | 1.4 | 15.3 | 27.8 | 11.1 | 39.5 | 5.0 | 100.0(694) | |
| 50~59 | 2.0 | 16.8 | 32.7 | 10.1 | 32.8 | 5.7 | 100.0(808) | |
| 60+ | 3.3 | 27.4 | 33.4 | 8.9 | 25.2 | 2.0 | 100.0(449) | |
| 교육수준 | | | | | | | | |
| 초교 이하 | 2.7 | 26.5 | 38.3 | 9.0 | 21.5 | 1.8 | 100.0(710) | |
| 중학교 | 1.9 | 19.6 | 32.0 | 11.0 | 33.1 | 2.5 | 100.0(484) | 134.6*** |
| 고등학교 | 1.6 | 18.2 | 30.9 | 10.0 | 34.9 | 4.5 | 100.0(984) | |
| 대학 이상 | 2.1 | 12.1 | 26.8 | 10.2 | 39.8 | 9.0 | 100.0(422) | |
| 결혼상태 | | | | | | | | |
| 미혼 | 6.3 | 41.4 | 32.9 | 5.4 | 10.4 | 3.6 | 100.0(222) | 243.8*** |
| 유배우 | 1.2 | 15.4 | 31.0 | 10.9 | 37.0 | 4.5 | 100.0(2,037) | |
| 이혼·별거·사별 | 4.7 | 31.4 | 40.0 | 7.2 | 15.6 | 1.7 | 100.0(360) | |

註: * p<.05, ** p<.01, *** p<.001

희망최소생활비를 실업가구의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앞의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우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희망최소생활비가 많아지며, 독인가구나 편부모가구에 비해 부부(+미혼자녀)가구의 희망최소생활비가 많다.

주택소유여부에 있어선 자가가구의 37.9%가 100~199만원대, 비자가가구인 경우의 35.9%가 50~79만원대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자가가구의 지출요구수준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表 4-19〉 家口 特性別 希望 月 最小生活費

(단위: %)

| 실업가구 특성 | 1~19 만원 | 20~49 만원 | 50~79 만원 | 80~99 만원 | 100~ 199 만원 | 200 만원 이상 | 계(수) | χ^2 |
|---------|------------|-------------|-------------|-------------|-------------------|-----------------|--------------|----------|
| 가구원수 | | | | | | | | |
| 1인 | 12.1 | 49.1 | 29.1 | 1.2 | 8.5 | .0 | 100.0(165) | 309.9*** |
| 2인 | 3.0 | 28.5 | 41.0 | 7.6 | 17.6 | 2.3 | 100.0(432) | |
| 3인 이상 | 1.2 | 15.7 | 31.0 | 11.0 | 36.3 | 4.8 | 100.0(2,058) | |
| 가구유형 | | | | | | | | |
| 독신가구 | 12.3 | 49.7 | 29.4 | 1.2 | 7.4 | .0 | 100.0(163) | 253.0*** |
| 부부가구 | 1.4 | 15.3 | 30.1 | 11.4 | 37.1 | 4.7 | 100.0(1,173) | |
| 편부모가구 | 4.1 | 38.8 | 34.7 | 6.1 | 16.3 | .0 | 100.0(49) | |
| 기타가구 | 1.5 | 19.6 | 35.0 | 9.7 | 30.2 | 4.1 | 100.0(1,273) | |
| 노인가구여부 | | | | | | | | |
| 비노인가구 | 2.2 | 19.2 | 32.2 | 10.3 | 32.0 | 4.0 | 100.0(2,247) | 11.6 |
| 노인가구 | 1.9 | 23.0 | 34.1 | 7.3 | 29.0 | 3.9 | 100.0(411) | |
| 주택소유여부 | | | | | | | | |
| 자가 | 1.7 | 16.4 | 28.9 | 9.8 | 37.9 | 5.3 | 100.0(1,290) | 70.3*** |
| 비자가 | 2.6 | 23.2 | 35.9 | 9.9 | 25.6 | 2.8 | 100.0(1,367)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 |
| 비이환가구 | 1.8 | 18.8 | 33.2 | 10.3 | 31.9 | 4.0 | 100.0(1,637) | 16.4* |
| 이환가구 | 2.8 | 21.5 | 31.5 | 9.2 | 31.1 | 4.0 | 100.0(1,020) | |

註: * p<.05, ** p<.01, *** p<.001

주목되는 점은 노인가구 여부가 희망최소생활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가구일수록 희망최소생활비가 작은 경향성, 또한 이환가구일수록 오히려 희망최소생활비가 작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가구나 이환가구가 가구원실직 이전부터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이미 낮아 그에 대한 적응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최소생활비에 대한 기대수준 역시 타가구에 비해 낮은데 기인하는 것 같다.

희망최소생활비 분포는 50~79만원대와 100~199만원대에서 빈도가

높은 쌍봉형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와 가구의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주가 남성이고 자가이며 부부에 자녀가 1인 이상일 때, 그리고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희망최소생활비가 100~199만원대에 위치한다. 그리고 가구주가 여성이며 비자가이고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가 1인 있을 때 평균 희망최소생활비가 50~79만원대에 위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실업가구의 현 경제생활수준과 비교하여 그 격차를 보면 <表 4-20>와 같다. 희망최소생활비의 경우 실업가구 전체의 73.9%가 50~199만원대에 있지만 현재 지출액을 보면 56.6%의 실업가구만이 그 정도의 지출수준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월 20만원 미만, 또는 월 200만원 이상 지출액, 즉, 양 극단에 위치한 가구수가 많다. 즉, 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소생활비의 수준이 보다 일정한 데 반해 같은 실업가구라도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은 상대적인 빈부의 편차가 크다는 것으로서 이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회적 추세가 실업가구의 경제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업가구의 평균지출감소액이 57.4만원임을 보면, 가구의 현 경제생활수준과 자신이 인식하는 최저생활수준간의 괴리로 인한 상대적 박탈을 가장 심하게 느낄 집단이 현재 50~79만원대의 지출수준에 있는 가구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1인 이상의 취학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학력이 최소한 중졸 이상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夫 婦 家 族 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가소유 여부가 중산층의 가늠기준이 됨을 고려하면 가구원실직으로 인한 경제생활 수준저하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많이 느낄 집단은 가구원 실직 이전엔 월평균 110~140만

원대의 소득으로 생활하며 스스로 중산층이라 간주했던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가구 희망최소생활비의 평균금액은 현재 실업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보다 2만원이 많기는 하지만 그 절대적 차가 유의한 것인지는 여기서 확인되진 않는다. 그러나 지출내역 중 가구원 생존 및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그리고 (주거비등과 달리) 보다 유동적인 세 항목의 의료비, 식품비, 교육비에 있어 현재 지출액과 희망최소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表 4-20〉 失業家口의 現 經濟生活水準과 希望 月最小生活費 比較 (단위: %)

| 구분 | 현재 지출액 | 희망최소생활비 | 차이 |
|-----------|--------|---------|-------|
| 1~19만원 | 8.1 | 2.2 | 5.9 |
| 20~49만원 | 25.6 | 19.9 | 5.7 |
| 50~79만원 | 27.7 | 32.5 | -4.8 |
| 80~99만원 | 11.4 | 9.8 | 1.6 |
| 100~199만원 | 17.5 | 31.6 | -14.1 |
| 200만원 이상 | 9.8 | 4.0 | 5.8 |
| 계 | 100.0 | 100.0 | |
| (수) | (2597) | (2657) | |
| 평균금액 | 77.7 | 79.7 | |

실업가구의 현재 지출수준과 희망최소지출액을 비교하면, 의료비, 식품비, 교육비 등 모든 항목에서 실업가구의 현재 지출수준은 희망 최저수준보다 낮게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실업가구의 평균의료비 지출(7만 2천원)이 비실업가구(7만원)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희망지출액과 현재 지출액간의 1.6만원 차이는 가구원의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요구가 실업가구에서 비실업가구보다 크지만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때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의 의료서

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가계의 엔겔계수가 평균 22~23%, 저소득층의 엔겔계수가 40.7%¹⁵⁾임을 감안할 때, 실업가구의 희망최소식품비는 현재 한국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생계수준 이하임을 말해주는 한편, 희망최소식품비보다 낮은 실업가구의 식품비 지출비율이 엔겔계수의 본래적 의미로 해석될 수치가 아님을 말해준다. 즉 실업가구는 가구원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처하여 주거비나 공과금, 부채원리금 등 상대적으로 고정된 지출액 대신 보다 유동적인 식품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최소한의 식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비의 경우 현재 지출액과 희망최소지출액 사이의 금액차가 가장 큰데, 이는 자녀교육비가 실업가구의 지출억제를 위한 노력에서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만큼 자녀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하락에 대해 부모로서의 우려와 불만이 매우 클 것임을 말해준다.

〈表 4-21〉 必需項目別 失業家口의 現在 支出과 希望最小支出 比較
(단위: 만원)

| 구분 | 현재 지출액 평균 | | 희망최소지출액 | | 차이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point |
| 의료비 | 7.2 | 9.3 | 8.8 | 11.0 | 1.6 | -1.7 |
| 식품비 | 25.9 | 33.3 | 29.4 | 36.9 | 4.5 | -3.6 |
| 교육비 | 4.15 | 5.3 | 13.1 | 16.4 | 9.0 | -11.1 |
| 총지출액 | 77.7 | | 79.7 | | 2.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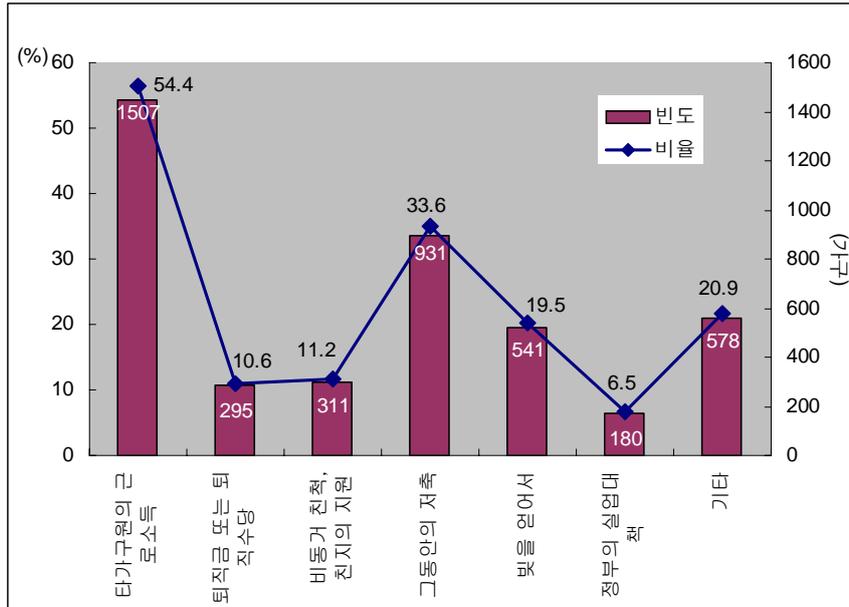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1999년 전국 대도시지역의 엔겔계수는 38.3%, 중소도시 40.7%, 농어촌 41.9%로 나왔다. 전국 평균 엔겔계수는 보통 중소도시의 값(40.7%)으로 산정하며 이는 1994년의 41.12%에 비해 0.42% 낮은 것이다.

2. 生計維持方法

실업가구의 생계유지방법에 대해 18가지의 선택지에 대한 複數應答의 조사결과를 보면 [圖 4-5]와 같다. 전체 2770 실업가구에 대해 응답사례가 총 4341개가 되어 평균 한 가구당 1.57개의 생계유지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가구원의 근로소득에 의한 생계유지가 54.4%로 가장 많았고 그 동안의 저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33.6%, 빚을 얻어서가 19.5%로 뒤를 이었다. 기타방법엔 이자, 집세 등의 재산소득(3.8%), 집·토지 등의 재산을 팔거나 줄여서(2.4%), 종교단체 및 사회기관의 도움(1.2%), 이웃의 도움(1.6%), 생활안정자금 등의 정부대부사업(0.8%),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등의 정부보조금(2.5%), 농산물 재배·판매(5.1%), 그리고 기타(3.6%)가 있다. 기타방법에선 농산물 재배·판매를 통한 생계유지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농산물재배를 병행하며 생계를 꾸리던 농촌지역 또는 대도시근교지역 조사대상가구의 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실업대책의 경우 실업급여와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훈련수당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산출하였는데, 6.5%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업가구의 생계보호와 경제활동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간의 여러 연구보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빚을 얻어 생활하는 실업가구가 전체의 19.5%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간의 저축액이나 여타의 근로소득이 없던 기존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정부의 생계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圖 4-5] 失業家口의 生計維持方法



가구주 특성별로 실업가구의 생계유지방법을 살펴보면 <表 4-22>과 같다. 우선 가구주의 성은 가구원의 근로소득과만 유의한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상태인 남성가구주의 근로소득이 타가구원의 실직시 생계에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 또는 남성가구주의 경우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유배우자가 있을 가능성이 여성가구주의 경우보다 높아 가구주가 실직했을 경우 배우자의 취업으로 생계유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통한 생계유지는 50대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높고 저축 및 빚을 통한 생계유지는 30~40대에서 높다. 이는 30~40대 부부의 경우 생계마련의 책임이 거의 부부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50대 부부의 경우 자녀가 사회활동을

할 연령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가능한 소득처가 많은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동거 친척, 친지의 도움은 20대 가구주와 60대이상의 가구주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구주의 결혼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20대의 경우 대부분 미혼의 독신가구, 60대는 노인가구이기 때문에 가구주의 실업에 대처할 타가구원이 없는 상황, 따라서 친척, 친지 특히 그중에서도 비동거 부모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특징은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의 가구주 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학력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무직 등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인 직업에 많이 종사하였어서 퇴직금의 수령비율이 높았을 것이다. 또한 금액도 더 많았을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그 동안의 저축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실업가구의 응답비율에서도 다소 확인된다.

가구주의 결혼상태가 유배우일수록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의한 생계유지비율이 높은 것은 가구주의 연령에서도 언급했듯 실업자를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이 많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 비동거 친척, 친지의 도움이 없으면 퇴직금이나 그간의 저축액 등 자조형태의 생계유지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가구주의 실업여부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외 타 방법에 있어 일관된 경향을 보여 여느 가구원보다 가구주의 실직이 가계에 미치는 타격이 크며 그만큼 실업가구로선 다각도의 생계유지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생계유지방법 중 정부 실업대책의 경우 세 가지 방법을 합산하여 구했기 때문에 현재 여타 독립변수와의 독립성 검증은 되지 않고 있는데 분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할 점은 가구주가 30대이고 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정부 실업대책의 혜택을 입는 비율이 보다 큰데 여기에는 정부 실업대책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表 4-22〉 家口主 特性別 生計維持方法(複數應答)

(단위: %)

| 가구주 특성 | 가구원의 근로소득 | 퇴직금 또는 퇴직 수당 | 비동거 친척, 친지의 도움 | 그동안 의 저축 | 빚을 얻어서 | 정부 의 실업 대책 | 기타 | (수) |
|----------|--------------|-----------------------|-------------------------|-------------|-----------|---------------------|------|--------|
| 성 | | | | | | | | |
| 남자 | 55.9 | 11.3 | 10.9 | 33.1 | 19.6 | 6.7 | 20.2 | (2272) |
| 여자 | 48.1 | 7.5 | 13.3 | 35.1 | 18.8 | 4.9 | 23.6 | (471) |
| χ^2 | 15.9** | 6.6 | 3.0 | 6.2 | .9 | | | |
| 연령 | | | | | | | | |
| ~29 | 41.5 | 13.4 | 19.0 | 41.1 | 14.2 | 5.7 | 16.7 | (192) |
| 30~39 | 44.6 | 13.2 | 16.8 | 40.1 | 19.4 | 8.2 | 14.2 | (514) |
| 40~49 | 57.2 | 8.4 | 10.1 | 36.6 | 24.8 | 6.3 | 14.9 | (717) |
| 50~59 | 63.2 | 10.5 | 7.0 | 27.9 | 18.4 | 6.5 | 25.8 | (855) |
| 60+ | 50.7 | 10.8 | 11.9 | 28.3 | 15.6 | 5.0 | 29.8 | (459) |
| χ^2 | 65.2*** | 9.5 | 45.0*** | 39.2*** | 22.2*** | | | |
| 교육수준 | | | | | | | | |
| 초교 이하 | 57.2 | 7.2 | 8.9 | 29.5 | 21.1 | 5.1 | 26.8 | (740) |
| 중학교 | 58.5 | 6.8 | 12.4 | 29.9 | 20.5 | 5.8 | 25.0 | (501) |
| 고등학교 | 53.4 | 10.7 | 11.7 | 37.5 | 19.0 | 5.9 | 16.9 | (1029) |
| 대학 이상 | 47.1 | 20.7 | 12.8 | 35.4 | 17.3 | 11.0 | 15.4 | (436) |
| χ^2 | 15.8** | 63.2*** | 6.2 | 16.6** | 3.2 | | | |
| 결혼상태 | | | | | | | | |
| 미혼 | 37.9 | 14.4 | 17.8 | 39.1 | 15.8 | 5.2 | 18.3 | (229) |
| 유배우 | 57.0 | 11.2 | 10.1 | 32.8 | 19.8 | 7.0 | 20.3 | (2121) |
| 이혼·별거·사별 | 50.2 | 5.7 | 14.4 | 33.0 | 21.0 | 4.0 | 25.2 | (377) |
| χ^2 | 34.0*** | 14.0** | 17.4*** | 9.8* | 2.8 | | | |
| 실업여부 | | | | | | | | |
| 비실업 | 70.4 | 8.3 | 8.0 | 26.2 | 16.0 | 5.3 | 24.1 | (1349) |
| 실업 | 39.3 | 12.9 | 14.3 | 40.7 | 23.0 | 7.5 | 18.0 | (1418) |
| χ^2 | 267.6*** | 14.6*** | 27.0*** | 64.4*** | 21.3*** | | | |

註: * p<.05, ** p<.01, *** p<.001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생계유지방법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원수가 많고 부부가구일수록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의한 생계유지 비율이 높고 독신가구는 비동거 친척, 친지의 도움을 얻거나 그간의 저축을 쓰는 비율이 높다.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내는 경우는 3인 이상 가구 및 편부모가구에서 비율이 높는데 전자가 필요생계비의 규모에 의한 것이라면 후자는 편부모가정의 경제수준이 일반가정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택소유의 경우 자가일수록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에, 비자가일수록 비동거 친척, 친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 위에서 본 가구주의 학력과 생계유지방법간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가구원 실적이전 소위 중산층에 속하던 가구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후자의 경우에선 저소득층일수록 생계유지를 위한 친척, 친지간의 상호부조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가구총소득 및 취업자수와 생계유지방법간의 비율분포는 취업자가 없고 소득이 없을 때 퇴직금과 저축 및 빚을 쓰는 경우가 많아 이 방법들이 실업가구에서 타가구원의 취업 등 소득을 얻기 위한 가능한 모든 대처방식이 행해진 이후에야 취하게 되는 최종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실업가구의 이환가구여부는 비동거 친척, 친지의 도움 및 빚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과만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데 이는 이환가구의 경우 이미 저소득층이었을 가능성이 높는데다 경제활동가능한 가구원이 적음은 물론 이환 가구원을 돌볼 노동력에 대한 추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타가구원의 취업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가 이들 가구에선 이미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4-23〉 家口特性別 生計維持方法(複數應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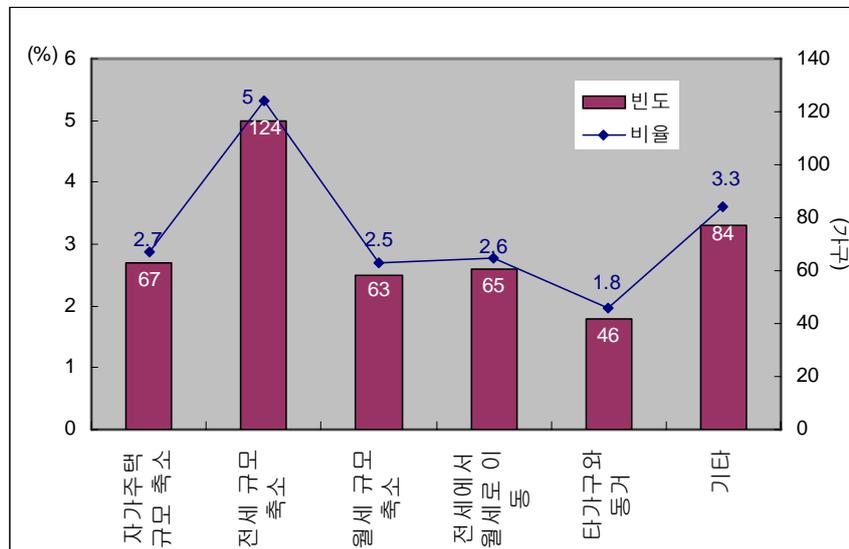
(단위: %)

| 실업가구 특성 | 가구원의 근로소득 |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 친척, 친지 도움 | 저축 | 빚을 얻어서 | 정부 실업대 책 | 기타 | (수) |
|-----------|--------------|-------------------|--------------|----------|-----------|----------------|------|--------|
| 가구원수 | | | | | | | | |
| 1인 | 11.6 | 13.1 | 23.0 | 48.7 | 14.1 | 4.1 | 22.8 | (171) |
| 2인 | 40.9 | 10.0 | 16.3 | 32.2 | 16.7 | 6.8 | 18.0 | (440) |
| 3인 이상 | 60.5 | 10.6 | 9.3 | 32.7 | 20.6 | 6.6 | 21.2 | (2153) |
| χ^2 | 191.8*** | 1.3 | 43.2*** | 18.6*** | 6.8* | | | |
| 가구유형 | | | | | | | | |
| 독신가구 | 10.8 | 13.3 | 23.2 | 48.2 | 14.3 | 4.1 | 22.4 | (170) |
| 부부가구 | 61.4 | 10.6 | 8.3 | 30.6 | 20.0 | 6.7 | 21.0 | (1230) |
| 편부모가구 | 54.1 | 7.0 | 12.9 | 30.4 | 25.6 | 1.9 | 34.6 | (52) |
| 기타가구 | 53.5 | 10.5 | 12.4 | 34.7 | 19.2 | 6.6 | 19.9 | (1316) |
| χ^2 | 155.3*** | 2.0 | 36.8*** | 22.0*** | 11.8** | | | |
| 주택소유여부 | | | | | | | | |
| 자가 | 57.6 | 13.0 | 8.4 | 31.9 | 18.5 | 6.7 | 24.4 | (1346) |
| 비자가 | 51.5 | 8.5 | 13.9 | 35.3 | 20.6 | 6.2 | 16.7 | (1421) |
| χ^2 | 10.2** | 14.3*** | 20.3*** | 3.4 | 1.8 | | | |
| 가구총소득 | | | | | | | | |
| 없음 | 21.0 | 13.8 | 15.0 | 47.3 | 25.2 | 3.6 | 18.3 | (690) |
| ~ 19만원 | 38.6 | 6.0 | 23.0 | 30.4 | 23.9 | 3.8 | 39.0 | (105) |
| 20 ~ 49만원 | 52.4 | 8.6 | 19.3 | 27.5 | 23.5 | 7.0 | 28.8 | (313) |
| 50 ~ 79만원 | 68.6 | 8.1 | 8.5 | 25.4 | 22.4 | 9.2 | 20.7 | (521) |
| 80 ~ 99만원 | 73.4 | 12.7 | 7.9 | 28.6 | 12.5 | 11.5 | 14.9 | (208) |
| 100~199만원 | 78.8 | 10.7 | 5.1 | 28.9 | 10.0 | 6.6 | 15.8 | (562) |
| 200만원 이상 | 55.3 | 10.0 | 9.0 | 36.0 | 19.1 | 4.9 | 25.4 | (370) |
| χ^2 | 528.4*** | 15.8* | 74.1*** | 88.7*** | 60.4*** | | | |
| 취업자수 | | | | | | | | |
| 없음 | 14.2 | 15.9 | 20.2 | 47.6 | 23.4 | 6.4 | 21.6 | (1152) |
| 1명 | 82.1 | 7.0 | 5.9 | 25.3 | 17.0 | 7.1 | 15.7 | (1137) |
| 2명 이상 | 85.7 | 6.9 | 2.3 | 19.8 | 16.5 | 5.0 | 29.5 | (478) |
| χ^2 | 1293.6*** | 56.5*** | 163.1*** | 176.9*** | 18.4*** | | | |
| 이환가구 여부 | | | | | | | | |
| 비이환가구 | 54.9 | 11.2 | 9.8 | 33.8 | 15.6 | 6.3 | 18.0 | (1721) |
| 이환가구 | 53.7 | 9.8 | 13.6 | 33.5 | 26.1 | 6.8 | 25.5 | (1047) |
| χ^2 | .3 | 1.2 | 9.3** | .0 | 44.3*** | | | |

註: * p<.05, ** p<.01, *** p<.001

실업가구의 생계유지방법 중 집과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해서라는 응답은 전체 가구의 2.4%로 나타났다. 보유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전세 규모를 축소했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5.0%로 가장 많고 그 외 자가주택의 규모를 축소했다, 월세규모를 축소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했다가 2.5~2.7%로 비슷하게 나왔다. 기타는 자가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되었거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로 3.3%에 달한다. 즉, 전세가구의 부동산처분이 자가가구나 월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왔는데 이는 전세주택이 월세주택에 비해 그나마 재산가치가 높아서 소득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업가구가 선택할 여지가 보다 높았던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주거의 이동에 비교적 유리한 가구, 즉 규모가 작거나 이환자 또는 노인가구원이 없다는 가구 여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圖 4-6 參照).

[圖 4-6] 所得減少에 對處하기 위한 保有不動產 處分方法(複數應答)



3. 生活維持 可能期間

“타가구원의 소득은 변화가 없으면서 미취업상태가 계속될 때 귀택은 현재의 생활수준을 얼마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대한 실업가구의 주관적 전망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가구원 실직이후 대부분이 최대한의 절약생활을 하고 있는 1995개 실업가구의 66.0%가 6개월 미만으로 답해 실업가구의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현재 생활수준이 지속 가능할 기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으나 가구주의 성과연령, 결혼상태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가, 그리고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앞으로의 생활가능기간에 대한 실업가구의 평가가 더 부정적인데 이는 여성가구주가정 또는 편부모가정의 심각한 빈곤상태를 말해준다.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앞으로의 생활유지 가능기간이 보다 긴 것은 50~60대가장의 직장 근속년한이 길고 그간의 저축액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表 4-24 參照).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독신 또는 편부모가구일수록 앞으로의 생활유지 가능기간이 1~3개월에 몰려 있다. 반대로 3인 이상 가구 또는 부부(+미혼자녀)가구에선 1년 이상 생활유지가 가능하다는 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실업가구의 저축액 분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소득이 적고 실업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또한 비자가일수록 생활유지 가능기간은 더 단축되어 실업가구의 생계유지와 소득액 및 소득원 수의 관계, 그리고 한국사회의 높은 주거비 비용이 가계의 실질적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24〉 家口主 特性別 失業家口의 現在 生活水準 維持可能 期間에 대한 主觀的 評價

(단위: %)

| 가구주 특성 | 현재 생활수준 유지 가능 기간 | | | | | | 계(수) |
|----------|------------------|----------|----------|-----------|----------|-------|--------------|
| | 1개월 미만 | 1~3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6개월~1년 미만 | 1년~2년 이상 | 2년 이상 | |
| 성 | | | | | | | |
| 남자 | 18.9 | 27.1 | 18.3 | 13.0 | 10.4 | 12.3 | 100.0(623) |
| 여자 | 26.0 | 29.1 | 19.1 | 5.9 | 10.5 | 9.3 | 100.0(351) |
| 연령 | | | | | | | |
| ~29 | 16.5 | 36.9 | 21.6 | 14.3 | 6.2 | 4.5 | 100.0(151) |
| 30~39 | 20.7 | 31.1 | 20.9 | 11.0 | 8.3 | 8.0 | 100.0(395) |
| 40~49 | 25.8 | 25.3 | 19.0 | 11.5 | 9.4 | 9.1 | 100.0(536) |
| 50~59 | 18.0 | 24.4 | 16.7 | 11.3 | 12.8 | 16.7 | 100.0(597) |
| 60+ | 15.1 | 27.9 | 16.0 | 12.5 | 12.6 | 15.9 | 100.0(297) |
| 교육수준 | | | | | | | |
| 초교 이하 | 20.8 | 27.7 | 17.3 | 10.3 | 10.8 | 13.1 | 100.0(510) |
| 중학교 | 23.9 | 29.4 | 16.2 | 12.5 | 8.3 | 9.7 | 100.0(347) |
| 고등학교 | 18.8 | 27.8 | 19.5 | 12.1 | 10.9 | 11.0 | 100.0(769) |
| 대학 이상 | 19.0 | 23.0 | 20.3 | 11.5 | 11.2 | 15.0 | 100.0(323) |
| 결혼상태 | | | | | | | |
| 미혼 | 17.3 | 33.4 | 23.1 | 14.0 | 7.9 | 4.3 | 100.0(179) |
| 유배우 | 18.7 | 27.1 | 18.4 | 12.5 | 10.3 | 13.0 | 100.0(1,504) |
| 이혼·별거·사별 | 29.8 | 25.0 | 16.1 | 6.1 | 12.5 | 10.5 | 100.0(284) |
| 전체 | 20.2 | 27.4 | 18.4 | 11.7 | 10.5 | 11.8 | 100.0(1,995) |

〈表 4-25〉 家口特性別 失業家口の 現在 生活水準 維持可能 期間에
대한 主觀的 評價

(단위: %)

| 가구특성 | 1개월 미만 | 1~3개 월미만 | 3~6개 월미만 | 6개월~ 1년미만 | 1년~2 년 미만 | 2년 이상 | 계(수) |
|-----------------|-----------|-------------|-------------|--------------|--------------|----------|--------------|
| 가구원 규모 | | | | | | | |
| 1인 | 22.6 | 34.8 | 18.9 | 13.6 | 6.1 | 4.0 | 100.0(137) |
| 2인 | 23.9 | 30.9 | 18.1 | 9.0 | 11.0 | 7.1 | 100.0(335) |
| 3인이상 | 19.2 | 26.0 | 18.4 | 12.1 | 10.7 | 13.5 | 100.0(1,522) |
| 가구유형 | | | | | | | |
| 독신가구 | 22.9 | 35.2 | 19.1 | 13.7 | 6.2 | 2.9 | 100.0(136) |
| 부부(+미혼자 녀)가구 | 17.5 | 24.3 | 19.8 | 12.9 | 10.4 | 14.9 | 100.0(848) |
| 편부모가구 | 33.8 | 24.0 | 5.8 | 7.7 | 18.5 | 10.2 | 100.0(40) |
| 기타가구 | 21.7 | 29.2 | 17.5 | 10.4 | 10.8 | 10.3 | 100.0(971) |
| 자가여부 | | | | | | | |
| 자가 | 15.0 | 25.7 | 16.7 | 12.2 | 12.6 | 17.8 | 100.0(914) |
| 비자가 | 24.6 | 28.9 | 19.8 | 11.3 | 8.7 | 6.7 | 100.0(1,081) |
| 가구총소득 | | | | | | | |
| 없음 | 29.1 | 33.1 | 16.7 | 10.2 | 6.6 | 4.4 | 100.0(528) |
| ~ 19만원 | 33.8 | 31.4 | 15.8 | 6.7 | 7.4 | 4.8 | 100.0(84) |
| 20 ~ 49만원 | 22.4 | 30.4 | 19.9 | 11.5 | 8.8 | 7.1 | 100.0(243) |
| 50 ~ 79만원 | 20.3 | 26.7 | 19.3 | 17.4 | 9.6 | 6.8 | 100.0(372) |
| 80 ~ 99만원 | 14.8 | 26.1 | 24.9 | 13.1 | 11.5 | 9.7 | 100.0(149) |
| 100~199만원 | 7.8 | 19.2 | 20.5 | 10.7 | 17.2 | 24.6 | 100.0(373) |
| 200만원 이상 | 16.4 | 25.4 | 12.8 | 8.7 | 12.4 | 24.2 | 100.0(246) |
| 실업자수 | | | | | | | |
| 1명 | 19.9 | 27.4 | 17.9 | 11.6 | 10.8 | 12.4 | 100.0(1,774) |
| 2명 이상 | 23.4 | 28.4 | 22.5 | 11.8 | 7.5 | 6.5 | 100.0(216) |
| 전체 | 20.2 | 27.4 | 18.4 | 11.7 | 10.5 | 11.8 | 100.0(1,995) |

第 4 節 失業家庭의 生活維持 可能期間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析

실업자들의 생활수준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要因으로는 실업당사자의 人口社會學的 要因, 家族關聯 要因, 자신의 失業前 職業, 失業期間, 失業理由 등 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諸 要因,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의 求職活動, 職業訓練 및 公共勤勞 參與, 失業給與 受給 등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업자의 다양한 심리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1. 要因分析을 위한 變數

가. 從屬變數

요인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그리고 2년 이상’ 등이다. 이 변수는 서열변수임은 분명하나 본 분석에서는 연속변수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응답결과가 대체적으로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나. 獨立變數

본 분석을 위해 활용된 독립변수는 모두 25개이다. 실업으로 인한 세 가지 所得減少 對處方案(자가 규모축소, 전세 규모축소, 월세 규모축소), 住宅所有 與否, 5가지 生計維持方法(가구의 근로소득, 퇴직금·퇴직수당, 빚을 얻음, 종교 및 사회단체 도움, 이웃의 도움 등), 家口의 經濟狀態 變數(월소득, 가구의 월지출, 주거비 지출규모, 총저축액, 총부채액), 家口特性(가구원수, 취업자수, 실업자수, 독신가구 여부, 편

부모가구 여부), 그리고 家口主 特性(성, 교육수준, 연령, 실업여부, 실직전 직업) 등이다.

〈表 4-26〉 要因分析을 위한 諸 變數의 造作

| 독립변수 | 본 분석을 위한 조작 |
|-----------------|---------------------------|
| 소득감소 대처방안 | |
| 자가 규모축소 | 0: 아니오, 1: 예 |
| 전세 규모축소 | 0: 아니오, 1: 예 |
| 월세 규모축소 | 0: 아니오, 1: 예 |
| 주택소유 여부 | 0: 자가, 1: 비자가 |
| 생계유지방법 | |
| 가구의 근로소득 | 0: 아니오, 1: 예 |
| 퇴직금/퇴직수당 | 0: 아니오, 1: 예 |
| 빚을 얻음 | 0: 아니오, 1: 예 |
| 종교 및 사회단체 도움 | 0: 아니오, 1: 예 |
| 이웃의 도움 | 0: 아니오, 1: 예 |
| 가구의 월소득 | 실제 소득: 천원 |
| 가구의 월지출 | 실제 지출: 천원 |
| 주거비 지출규모 | 실제 지출: 천원 |
| 총저축액 | 실제 저축액: 천원 |
| 총부채액 | 실제 부채액: 천원 |
| 가구원수 | 실제 가구원수 |
| 취업자수 | 실제 취업자수 |
| 실업자수 | 실제 실업자수 |
| 독신가구 여부 | 0: 비독신가구, 1: 독신가구 |
| 편부모가구 여부 | 0: 비편부모가구, 1: 편부모가구 |
| 가구주 특성 | |
| 가구주 성 | 0: 남자 1: 여자 |
| 가구주 교육수준 | 2~8의 서열 |
| 가구주 연령 | 실제 연령: 세 |
| 가구주의 실업여부 | 0: 비실업, 1: 실업 |
| 실직전 직업=일용직 | 0: 비일용직, 1: 일용직 |
| 실직전 직업=상용 임금근로자 | 0: 비상용임금근로자 1: 상용임금근로자 |

본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은 <表 4-26>에 제시되어 있다. 간략히 요약하면, 소득감소 대처방안, 주택소유여부, 생계유지방법은 조사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더미(dummy) 變數化 했다. 가구의 경제상태와 관련된 변수인 월 소득 및 지출, 주거비 지출, 저축 및 부채 등은 모두 실제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수, 취업자수, 실업자수는 실제 人員數를 사용하였다. 가구주 특성 변수로서 性(0: 남자, 1: 여자), 教育水準(2~8의 서열변수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숫자가 큼), 年齡, 失業 與否 등은 조사결과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구유형과 가구주의 직업은 분석을 위해 모두 더미 변수화 하였다. 즉, 독신가구 여부(0: 비독신가구, 1: 독신가구), 편부모가구 여부(0: 비편부모가구, 1: 편부모가구), 실직 전 직업이 일용직인지 여부(0: 비일용직, 1: 일용직)와 상용임금근로자인지 여부(0: 비상용임금근로자, 1: 상용임금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2. 分析結果

종속변수인 실업자의 주관적 생활유지가능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감소 대처방안으로 월세규모를 축소한 경우, 주택소유 여부,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얻거나 이웃의 도움을 받은 경우, 총저축액, 가구원 및 취업자수, 가구주의 실업여부, 실직 전 직업의 일용직 및 상용임금근로자 여부 등이 나타났고, 그러나 소득감소 대처방안이 자가 및 전세규모 축소의 경우, 생계유지방법이 가구의 근로소득, 퇴직금 및 퇴직수당, 종교 및 사회단체 도움인 경우, 가구의 월소득, 월지출, 주거비 지출규모, 총부채액, 실업자수, 독신가구 및 편부모가구 여부, 가구주의 性, 교육수준, 연령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4-27 參照).

영향을 주는 변수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소득감소 대처방안

으로 월세규모를 축소(-.924)한 실업가구는 생활유지가능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가 및 전세규모 축소는 유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月費로 살고 있는 실업가구의 어려움이 지대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생활유지가능기간에서도 엇볼 수 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실업가구의 생활유지가능기간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실업가구보다 훨씬 길었다(.323).

생계유지방법으로 빚을 얻는 실업가구(-.476)와 이웃의 도움을 얻는 실업가구(-.844)에서 생계유지가능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소득, 퇴직금, 종교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실업가구의 생활유지가능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취업가구원이 전혀 없거나 일용직 등 퇴직금이 없는 직종에 근무했던 실업자의 가구가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家口의 貯蓄이 많을수록(.0002), 그리고 가구 내 취업자가 많을수록(.449) 생활유지가능기간은 연장되었으나, 부양하여야 할 가구원수(-.088)가 많으면 동 기간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의 생활유지가능기간은 짧았다(.304).

실직전의 직업유형이 생활유지가능기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실직당시 일용직에 근무한 실직자의 가구에서 동 기간은 짧았으나(-.348), 상용직의 임금근로자에게서 보다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05). 이는 앞에서 논의한 生計維持方法 중 退職金·退職手當이 生活維持可能期間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다소 일치한다. 다시 말해 퇴직당시 받은 金錢으로 이들 가구의 생활은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퇴직수당이 없는 日傭職에 종사하였던 실직자의 가구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表 4-27〉 失業者의 生活維持 可能期間에 影響을 주는 要因의 回歸分析

(단위: %)

| 변수 | b | s.e. |
|-----------------|--------------------|----------------|
| 절편 | 2.415*** | .340 |
| 소득감소 대처방안 | | |
| 자가 규모축소 | -.134 | .277 |
| 전세 규모축소 | -.298 | .232 |
| 월세 규모축소 | -.924*** | .275 |
| 주택소유 여부 | .323*** | .093 |
| 생계유지방법 | | |
| 가구의 근로소득 | -.035 | .106 |
| 퇴직금/퇴직수당 | .175 | .136 |
| 빚을 얻음 | -.476*** | .103 |
| 종교 및 사회단체 도움 | -.661 | .419 |
| 이웃의 도움 | -.844** | .316 |
| 가구의 월소득 | .003 | .001 |
| 가구의 월지출 | .0001 | .0002 |
| 주거비 지출규모 | .001 [#] | .001 |
| 총저축액 | .0002*** | .000 |
| 총부채액 | -.0001 | .000 |
| 가구원수 | -.088* | .037 |
| 취업자수 | .449*** | .073 |
| 실업자수 | -.119 | .121 |
| 독신가구 여부 | .106 | .214 |
| 편부모가구 여부 | .103 | .098 |
| 가구주 특성 | | |
| 가구주 성 | .022 | .121 |
| 가구주 교육수준 | -.003 | .036 |
| 가구주 연령 | .005 | .004 |
| 가구주의 실업여부 | .304** | .108 |
| 실직전 직업=일용직 | -.348 [#] | .198 |
| 실직전 직업=상용 임금근로자 | .405** | .154 |
| | R^2 .25 | Adj. R^2 .24 |
| F | 16.8*** | |

註: # p<.10, * p<.05, ** p<.01, *** p<.001

第 5 節 要約 및 示唆點

실업가구의 경제상태는 가구주 및 가구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경제적 어려움 자체는 공통적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기 집이 없고 편부모가구의 경우, 그리고 실직당시 일용직에 근무하였던 실업자의 가계는 그 어려움이 지대함을 보여주었다. 실업기간이 길수록 부채는 증가할 것이며, 특히 부채상환능력이 없어 빚을 얻을 수도 없는 가구 역시 급증할 것이다. 이는 실업가구의 생활난으로 이어져 생계, 자녀양육, 노부모 부양 등에 있어 총체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로 귀결될 것이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는 실업가구의 생활유지가능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생활유지가능기간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한 김승권 외(1998a)의 연구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의하여 『生活限界(可能)期間』을 산출하였다. 첫째, 현재의 負債를 모두 償還하고 不動産을 그대로 유지한 채 動産에 의해서만 생활하는 경우의 生活限界(可能)期間은 여성가구주 가족은 약 2개월이었으나, 남자가구주 가족은 이미 動産에 의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둘째, 현재의 負債를 償還하지 않고 부동산도 그대로 유지한 채, 動産에 의한 生活限界(可能)期間을 예측한 결과 생활한계기간은 남성가구주 가족이 약 15~16개월, 여성가구주 가족은 단 7개월에 불과하였다. 셋째, 不動産을 處分하고, 負債를 償還한 후 純財産에 의한 생활한계기간을 예측한 결과 남성가구주 가족은 약 33~37개월, 여성가구주 가족은 약 18개월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負債償還의 延長 및 動産에 의한 생활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를 감안하면 대부분 실업가정의 生活限界期間은 실업 후 약 1년~1년 6개월 정도이며, 특히 저축이나 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약 6개

월~1년 정도가 한계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실업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로 지정하거나 공공근로, 취로사업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라도 가계의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第 5 章 家族生活의 變化

IMF체제로 돌입한 이후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간의 ‘高成長·低失業’構造에서 ‘低成長·高失業’構造로 변하게 되면서 대량실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실업자가 많이 나타날 경우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특히 가계부양자인 家口主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실업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원과 가족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거나, 가족구성원간의 役割轉移, 특히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와의 役割變化와 새로운 역할에 대한 不適應 등으로 인한 부부불화, 가족원의 갈등, 가정폭력, 가족해체, 자녀교육 및 비행의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변화된 經濟的 狀況과 家族役割로 인한 失業家口 家族員들의 適應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력 상실이 가족에 미친 영향은 가족이 속한 계층이나 가족이 갖고 있는 經濟的 資源과 社會的 支援의 形態나 內容, 가족의 結束力과 適應性, 對處戰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Elder et al., 1992; Liker & Elder, 1983; Voydanoff, 1990; 김양희,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실업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는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의 특성이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本 章에서는 실업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家族生活의 變化 樣相을 살펴보고, 가구의 중심 가구원으로서 가구주 부부의 관계는

전체 가구 및 가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第 1 節 失業家庭의 家族生活 變化

本 節에서는 199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자료¹⁶⁾와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조사’자료¹⁷⁾를 이용하여 실업가구의 실업 후 家族生活 變化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족생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주요 항목으로는 生計維持, 家族役割 및 關係, 家庭暴力, 家族解體, 子女問題, 生活方式의 變化 등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生計維持 問題로는 ①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가 있었는지 여부, ② 자녀 점심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째, 家族役割 및 관계변화에는 실업 후 가족역할 변화율과 부부분화 여부를, 셋째, 家族解體에 관한 내용으로는 ①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했는지 여부, ② 경제적 이유로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했는지 여부를, 넷째, 子女問題에 관한 내용으로는 ① 자녀의 비행행동의 증가여부, ②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여부, ③

16) 동 조사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하여 표본추출된 250개 조사구의 3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기간(1998. 9.14~10. 3) 전 일주일(1998. 9. 6~9.12) 및 1개월(1998. 8.13~9.12)동안 구직활동을 한 개인, 즉 실업자가 1인 이상 있는 가구 2,77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임.

17) 실직가정 및 실직자의 생활실태 파악하여 장단기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실직자, 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직자 696명과 그들이 속한 실직가구 626가구에 대하여 1998. 6.29~7.23일 기간중 조사를 실시한 것임(김승권 외, 1998).

자녀의 사교육 중단여부, ④ 자녀의 진학포기 및 연기했는지 여부, 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군 입대 및 휴학 여부 등의 내용 등이며¹⁸⁾, 마지막으로 生活方式의 變化는 친교활동, 외식, 문화·여가활동, 여행 및 휴가 감소 등 생활방식의 변화를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家族生活의 變化와 관련된 내용들은 실업가정 스스로가 갖고 있는 屬性과 그 가구를 대표하는 家口主의 特性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특성별로 살펴보고, 실업가구 가구주의 부부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가구 및 가구원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가구중 가구주가 유배우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1. 分析對象의 一般的 特性

본 연구의 분석대상 가구는 총 2,771가구로써 이들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表 5-1>과 같다. 우선 실업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구주가 82.6%로 대부분이 남자가구주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40대의 26.3%로 40~50대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전체 대상의 38.1%가 고등학교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가구주도 27.5%나 되었다. 결혼상태별로는 77.6%가 유배우 상태이고, 이혼·별거·사별의 무배우 상태

18) 본 분석에서 가족생활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내용중 생계유지 문제와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문제 중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 및 자녀비행 증가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의 1~5 점 척도 중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자녀의 점심결식, 자녀 및 부모의 친지·시설 위탁보호, 자녀의 진학포기·연기, 군입대·휴학 및 사교육 중단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중 그렇다 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가 14.1%, 그리고 미혼인 경우는 8.4%에 불과하였다. 또한 전체 가구 주중 52.0%가 실업자로 나타나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이 실업자임을 알 수 있다.

〈表 5-1〉 家口主의 一般의 特性

(단위: %, 명)

| 특성 | 비율 | (수) |
|----------|-------|---------|
| 성 | | |
| 남자 | 82.6 | (2,223) |
| 여자 | 17.4 | (468) |
| 연령 | | |
| 29세 이하 | 6.9 | (186) |
| 30~39세 | 19.0 | (511) |
| 40~49세 | 26.3 | (706) |
| 50~59세 | 31.0 | (834) |
| 60세 이상 | 16.7 | (450) |
| 교육수준 | | |
| 초교 이하 | 27.5 | (729) |
| 중학교 | 18.6 | (494) |
| 고등학교 | 38.1 | (1,012) |
| 대학 이상 | 15.8 | (419) |
| 결혼상태 | | |
| 미혼 | 8.4 | (224) |
| 유배우 | 77.6 | (2,076) |
| 이혼·별거·사별 | 14.1 | (376) |
| 실업자 여부 | | |
| 비실업자 | 48.0 | (1,303) |
| 실업자 | 52.0 | (1,412) |
| 전체 | 100.0 | (2,771) |

註: 1) 각 특성별 사례수의 차이는 무응답에 의한 것임.

2. 生計維持 問題

가. 生計維持 困難

가구원의 실업으로 인한 家族生活의 變化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¹⁹⁾으로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구 및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그들이 받는 충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가구원이 실직을 하여 소득은 감소하였더라도 소비 規模를 줄임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잘 넘기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 生計責任者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어려움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족의 절대적인 생계책임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위협을 느끼는 가구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업가구가 된 이후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가구의 70.1%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로는 여자가구주의 경우 남자가구주 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여자가구주일 경우 실업가구가 아닐 경우에도 남자가구주 보다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직종에 있어서도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등 남자보다 낮은 임금수준에 있는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가구가 되었을 경우에도 여자 실업가구가 남자 실업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가 각각 75.9%와 73.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 일수록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가 많았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가구주나 유배우 가구주보다는 이혼·별거·사별한 가구주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더 많고, 실업자가 비실업자 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편부모가구의 경우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84.0%이었고, 독신가구 72.6%, 부부가구 67.1%로

19) 실직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95.8%), 그 중에서도 생계비(50.4%)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김승권 외, 1998a).

나타났다. 또한 비노인가구 보다는 노인가구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많았으며²⁰⁾, 전세나 월세에 사는 가구가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다.

〈表 5-2〉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生計維持 問題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 ² | 가구특성 | 비율 | χ ²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69.2 | 12.5*** | 독인가구 | 72.6 | |
| 여자 | 74.6 | | 부부가구 | 67.1 | 30.43** |
| | | | 편부모가구 | 84.0 | |
| 연령 | | | 기타가구 | 71.9 | |
| 29세 이하 | 62.2 | | 노인가구 여부 | | |
| 30~39세 | 69.8 | 52.8*** | 비노인가구 | 68.9 | 15.76** |
| 40~49세 | 75.9 | | 노인가구 | 76.7 | |
| 50~59세 | 65.6 | | 주택소유여부 | | |
| 60세 이상 | 73.1 | | 자가 | 63.8 | 69.08*** |
| | | | 비자가 | 76.0 | |
| 교육수준 | | | 가구 총소득 | | |
| 초교이하 | 76.4 | | 없음 | 78.8 | |
| 중학교 | 72.5 | 89.4*** | 19만원이하 | 83.0 | |
| 고등학교 | 68.5 | | 20~49만원 | 82.4 | 363.52*** |
| 대학이상 | 60.1 | | 50~79만원 | 76.4 | |
| | | | 80~99만원 | 66.0 | |
| 결혼상태 | | | 100~199만원 | 56.1 | |
| 미혼 | 67.4 | | 200만원이상 | 31.7 | |
| 유배우 | 69.0 | 28.9*** | 취업자수 | | |
| 이혼·별거·사별 | 77.3 | | 없음 | 78.0 | 133.6*** |
| | | | 1명 | 68.9 | |
| 실업자 여부 | | | 2명 이상 | 53.0 | |
| 비실업자 | 62.6 | 90.1*** | 실업자수 | | |
| 실업자 | 76.8 | | 1명 | 69.1 | 20.87*** |
| | | | 2명 이상 | 79.4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65.7 | 59.7*** |
| | | | 이환가구 | 77.1 | |
| 전체 | 70.1 | | 전체 | 70.1 | |

註: * p<.05, ** p<.01, *** p<.001

20) 특히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취업자가 한명도 없는 실업가구에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가구는 85.3%로 전체 실업가구 보다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욱 높았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9).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비율이 낮아 생계유지와 가구소득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취업자 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낮고, 반대로 실업자 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환가구 여부와 생계유지상의 어려움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계유지의 어려움 여부는 실업 전·후 所得變化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72.8% 인데 비해 소득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경우는 44.9%로 소득감소가 생계유지 어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취업상태가 지속될 경우의 생활유지 가능기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생활유지 가능기간이 짧을수록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으며, 실업 전·후 所得變化와 生活維持 可能期間은 모두 생계유지 어려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 子女 點心缺食

실업가구중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실업가구의 3.0%에 해당되었으며,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일주일에 평균 3회 정도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곤란으로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가구의 경우도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남자가구주 보다 여자 가구주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가구주가, 그리고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 수준일수록 비율이 높았다(초등학교 이하 4.2%, 중학교 3.4%, 대학 이상 1.4%).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주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취업했을 경우가 많고,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구의 빈곤상태가 주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가구주보다는 이혼·별거·사별한 무배우자의 경우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가구주가 실업자일 경우 비 실업자일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가구주의 연령과 결혼상태 뿐이었다.

경제적 곤란으로 자녀에게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경우는 편부모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17.0%). 이는 편부모가구의 형성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등에 의해 대부분 30~40대에 구성되는 가구들로써 이들의 자녀들이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는 연령층의 비율이 높고²¹⁾, 부부가구나 기타 가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전세나 월세 등과 같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고, 가구의 총소득별로는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자 수가 적을수록,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즉,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는 것과 경제적인 변수와의 관련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 외 이환가구 여부도 자녀의 도시락을 못 싸주는 것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이환가구원의 수발, 보호 등으로 인한 부양자의 經濟的, 身體的, 時間的 負擔이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 전·후 소득의 변화 및 생활유지 가능기간과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는 것과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21) 편부모가구중 편부가구는 39.5세, 편모가구는 38.3세에 형성되며, 해혼사유별로 보면 사별인 경우는 40대에서, 그리고 이혼·별거인 경우는 30대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취학자녀의 비율은 편부가구의 경우는 81.1%, 편모가구 69.5%였음(공세권 외, 1995).

〈表 5-3〉 家口主 및 家口特性別 兒童缺食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2 |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2.9 | .13 | 독신가구 | - | |
| 여자 | 3.5 | | 부부가구 | 3.0 | 34.06*** |
| | | | 편부모가구 | 17.0 | |
| 연령 | | | 기타가구 | 2.6 | |
| 29세 이하 | 1.0 | | 노인가구 여부 | | |
| 30~39세 | 1.4 | 27.21*** | 비노인가구 | 3.0 | .00 |
| 40~49세 | 5.8 | | 노인가구 | 3.1 | |
| 50~59세 | 2.7 | | 주택소유여부 | | |
| 60세 이상 | 0.9 | | 자가 | 1.8 | 9.14** |
| | | | 비자가 | 4.1 | |
| 교육수준 | | | 가구 총소득 | | |
| 초교이하 | 4.2 | | 없음 | 3.3 | |
| 중학교 | 3.4 | 6.49 | 19만원이하 | 7.4 | |
| 고등학교 | 2.7 | | 20~49만원 | 6.0 | 23.06*** |
| 대학이상 | 1.4 | | 50~79만원 | 3.3 | |
| | | | 80~99만원 | 0.6 | |
| 결혼상태 | | | 100~199만원 | 1.5 | |
| 미혼 | 0.9 | | 200만원이상 | - | |
| 유배우 | 2.7 | 8.48* | 취업자수 | | |
| 이혼·별거·사별 | 5.6 | | 없음 | 3.7 | 3.21 |
| | | | 1명 | 2.7 | |
| 실업자 여부 | | | 2명 이상 | 1.9 | |
| 비실업자 | 1.9 | 7.53 | 실업자수 | | |
| 실업자 | 4.0 | | 1명 | 2.9 | .16 |
| | | | 2명 이상 | 3.6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1.7 | 19.96*** |
| | | | 이환가구 | 5.2 | |
| 전체 | 3.0 | - | 전체 | 3.0 | - |

註: * p<.05, ** p<.01, *** p<.001

〈表 5-4〉 失業家口의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期間別 生計維持 問題 및 子女 點心缺食

(단위: %)

| 구분 | 생계유지 문제 | | 자녀도시락 못짜줌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실업전후 소득변화 | | | | |
| 변화없음+증가 | 44.9 | 131.76*** | - | 3.46 |
| 감소 | 72.8 | | 3.1 | |
| 생활유지 가능기간 | | | | |
| 6개월 미만 | 80.6 | | 4.5 | |
| 6개월 ~ 1년미만 | 64.2 | 364.24*** | 0.6 | 9.28 |
| 1년 ~ 2년미만 | 56.9 | | 1.5 | |
| 2년 이상 | 39.4 | | 2.9 | |
| 전체 | 71.3 | - | 3.5 | - |

註: * p<.05, ** p<.01, *** p<.001

3. 家族役割 및 關係의 變化

가. 家族의 役割變化 및 役割適應

가구주나 주요 가족원의 실직은 실직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들의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실직한 가구주를 대신하여 배우자나 기타 가족원이 생계책임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실직 가구주는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해 배우자가 수행하던 家事勞動이나 子女養育에 참여하는 등 많은 家族生活 變化를 경험한다.

김승권 외(1998)의 연구에 의하면, 실직가구 중 家族員의 役割變化가 있었다는 가구는 16.5%에 이른다. 역할변화의 유형을 주요 가족원별로 보면, 실직자 본인의 경우 가사노동 참여 8.6%, 자녀양육 참여 0.8%로 모두 9.4%가 역할변화를 경험하였다. 실직자 배우자의 경우는 5.4%가 역할변화를 경험하였는데 그 중 경제활동 참여율(3.4%)이 가

장 높았으며, 가사노동 1.6%, 자녀양육 0.2%, 기타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족원의 경우는 경제활동참여 2.4%, 가사노동 참여 1.4%, 기타 0.2%로 4.0%가 역할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런데 역할변화를 경험한 실직가구 가족원의 역할변화에 대한 적응률은 59.3%였다. 役割適應率은 실직당사자가 57.6%, 배우자는 48.5%로 변화된 역할에 대한 적응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가족원 모두 새로운 役割適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겠다(김승권 외, 1998).

〈表 5-5〉 失業家口 家族員의 役割變化 및 役割適應率

(단위: %)

| 역할변화율 ¹⁾ | 역할 적응률 ²⁾ | | | |
|---------------------|----------------------|--------|------|-------|
| | 전체 | 실직자 본인 | 배우자 | 기타 가족 |
| 16.5 | 59.3 | 57.6 | 48.5 | 68.0 |

註: 1) 실직가구 중 가사노동, 자녀양육, 경제활동 참여 등 역할변화를 1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임.

2) 역할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資料: 김승권 외,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a. 表 재구성

나. 夫婦關係

실업으로 인하여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은 부부관계로서 실업은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부싸움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結婚滿足道를 저하시킨다. 이는 실업이후 별거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Conger et al., 1990, 조홍식; 1998에서 재인용). 또한 실업가구의 부부관계는 비실업가구에 비해 결속력이 떨어지고 갈등이 증가하며, 비실업가구 대비 실업가구의 이혼 및 별거율은 2:7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Liem R. & J. H. Liem, 1988). Atkinson 외(1986)도 가구주가 실직하면 배우자의 지지가

낮아지고 서로 다투는 횟수가 많아지며, 가족의 응집력이 낮아지는 등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배우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 ‘실업 후 부부사이가 좋지 않고 싸움을 한다’는 가구가 23.6%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로는 여자가구주(31.3%)가 남자가구주(23.4%)보다 이러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부부불화에 있어서는 일관성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가구주의 실업여부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가구주가 비실업자일 경우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부부싸움을 한다는 경우가 18.8%인데 비해, 실업자일 경우에는 27.2%로 가구주의 실업자 여부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가구주 배우자의 실업자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가구의 생계책임자는 가구주으로써 가구주 배우자의 취업은 가계보조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여부는 부부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실업여부별로 부부불화 경험율을 살펴보면,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비실업자일 경우 부부불화가 있었다는 비율은 17.4%이었으며, ‘가구주—실업, 배우자—비실업’의 경우는 26.0%, ‘가구주—비실업, 배우자—실업’인 경우는 21.9%, 그리고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실업’일 경우는 43.8%를 보였다. 즉, 부부불화는 배우자의 실업여부보다는 가구주의 실업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구주나 배우자 한 사람이 실업자일 때보다는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실업자일 경우 부부불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表 5-6〉 家口主 및 家口の 特性別 夫婦關係¹⁾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2 |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23.4 | 6.37 | 독신가구 | 34.8 | 9.21 |
| 여자 | 31.3 | | 부부가구 | 21.7 | |
| 연령 | | | 편부모가구 | - | |
| 29세 이하 | 28.5 | 46.96*** | 기타가구 | 25.9 | |
| 30~39세 | 28.7 | | 노인가구 여부 | | |
| 40~49세 | 28.4 | | 비노인가구 | 24.2 | 5.44 |
| 50~59세 | 19.3 | | 노인가구 | 19.0 | |
| 60세 이상 | 14.3 | | 주택소유여부 | | |
| 교육수준 | | | 자가 | 19.7 | 28.55*** |
| 초교이하 | 24.3 | | 비자가 | 27.6 | |
| 중학교 | 22.3 | 25.84* | 가구 총소득 | | |
| 고등학교 | 25.1 | | 없음 | 27.0 | |
| 대학이상 | 20.1 | | 19만원이하 | 32.7 | |
| 실업자 여부 | | | | 20~49만원 | 31.3 |
| 비실업자 | 18.8 | 20.39*** | 50~79만원 | 26.3 | |
| 실업자 | 27.2 | | 80~99만원 | 17.6 | |
| 배우자의 실업자여부 | | | | 100~199만원 | 15.7 |
| 비실업자 | 22.8 | 6.75 | 200만원이상 | 9.3 | |
| 실업자 | 26.7 | | | 취업자수 | |
| 전체 | 23.6 | | | 없음 | 27.1 |
| | | | 1명 | 23.1 | |
| | | | 2명 이상 | 16.6 | |
| | | | 실업자수 | | |
| | | | 1명 | 23.3 | .31 |
| | | | 2명 이상 | 24.5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22.5 | 4.57 |
| | | | 이환가구 | 25.1 | |
| 전체 | 23.6 | | 전체 | 23.6 | |

註: 1) 가구주의 결혼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 p<.05, ** p<.01, *** p<.001

〈表 5-7〉 失業家口 家口主 및 配偶者의 失業者 與否別 夫婦關係¹⁾
(단위: %)

| 배우자의 실업자 여부 | 가구주의 실업자 여부 | | 전체 | χ^2 |
|-------------|-------------|------|------|----------|
| | 비실업자 | 실업자 | | |
| 비실업자 | 17.4 | 26.0 | 22.8 | 15.79** |
| 실업자 | 21.9 | 43.8 | 26.7 | 13.55** |

註: 1) 부부불화에 관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한 비율 중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만을 제시한 것임.

** p<.01

夫婦不和는 가구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인가구여부에 따라서는 비노인가구에 부부불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부부간의 불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총소득별로도 낮은 소득일수록, 그리고 취업자가 없거나 적을수록 부부불화가 일어난 비율은 더 높았다. 그 외 실업자수가 많고, 이환가구원이 있을 경우 부부불화가 일어난 비율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또한 부부불화는 실업 전·후 소득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실업 전 보다 감소한 경우에 소득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경우보다 부부불화의 비율이 더 높아 24.5%이었다. 생활유지 가능기간에 따른 부부불화 정도는 기간에 따른 일관성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생활유지 가능기간이 짧을 경우에 긴 경우보다 부부불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간의 불화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 실업 이전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부부간의 갈등이 실업으로 인해 表面化되는 것일 수도 있다.

〈表 5-8〉 失業家口의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期間別 夫婦關係

(단위: %)

| 구분 | 부부관계 | |
|-----------|------|----------|
| | 비율 | χ^2 |
| 실업전후 소득변화 | | |
| 변화없음+증가 | 11.2 | 26.85*** |
| 감소 | 24.5 | |
| 생활유지 가능기간 | | |
| 6개월 미만 | 30.6 | |
| 6개월~1년미만 | 18.7 | 68.01*** |
| 1년~2년미만 | 22.3 | |
| 2년 이상 | 9.0 | |
| 전체 | 25.4 | - |

註: * p<.05, ** p<.01, *** p<.001

4. 家庭暴力

경제위기로 인해 가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남편의 실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갈등은 가정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失職, 貧困, 家族缺損 등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가정내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²²⁾. 실직과 가정폭력과의 관계는 실직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구성원의 役割變化의 不適應 등이 가족관계에서 불만, 불화, 적대행위 등의 가능성을 높여 가정폭력을 유발하게 된다(김승권 외, 1998b). 또한 부부간의 성역할 분담에 있어 생산자로서의 남편의 역할에 대한 家父長的 規範이 강할수록 가장의 실업으로 인한 부부갈등의

22) 가정폭력은 가족내의 경험한 스트레스의 수가 많고,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빈약할수록 발생빈도가 높음. 즉, 가족스트레스를 10가지 경험한 가족은 한가지 경험한 가족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10배나 높음(Straus et al., 1980, 김승권 외, 1998b에서 재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夫婦關係의 악화 내지 家族解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²³⁾

가족과 성 상담소 상담결과에 의하면,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1년 동안의 총 상담건수 2,389건 중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건수는 8%(211건)이었으나 1998년 1~4월사이의 총 상담건수 882건 중 약 15%(13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상담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양혜경, 1998).

〈表 5-9〉 失業家口 家口主의 性別 家庭暴力 經驗率

(단위: %)

| 구분 | 가구주의 성 | | 전체 |
|----------|--------|-------|------|
| | 여성가구주 | 남성가구주 | |
| 가정폭력 경험률 | 6.6 | 13.1 | 11.8 |

資料: 김승권 외,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a. 表 재구성

실직가구의 가정폭력 경험률은 11.8%로 여성가구주 가구는 6.6%가 경험한 것에 비해 남자가구주 가구는 13.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구주 가구에서 가족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1998b). 이 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실직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23)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악화는 경제위기 전의 부부관계의 위상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실업 전 부부관계가 남편주도형, 평등형, 또는 부인주도형인가의 여부에 따라 남편 실직에 따른 가정의 영향은 달리 나타났음. 즉, 남편주도형의 전통적인 가정일수록 남편의 실직이 가정의 긴장관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수평적인 부부관계인 평등형일 경우, 남편주도형 보다는 가족에 대한 실업의 충격이 약하며, 실업에 대한 적응성도 전통적 부부관계 보다 높았음. 부인주도형인 경우, 전통적 부부관계에서 보다는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가족의 적응성이 높았음(장혜경 외, 1998).

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편 실직 전에 18.7%의 가정에서 폭력이 있었는데 비해 실직 후에는 29.5%의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실직 후 폭력이 10.8% 증가하였으며, 폭력의 대부분(88%)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었다고 밝히고 있다(최규련, 1999).

5 家族解體

가. 子女 委託保護

실업으로 인한 扶養能力 低下에 따라 자녀나 노부모를 施設이나 親知에게 委託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 그리고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는 1.3%이었다. 우선 자녀를 위탁한 경우를 보면, 가구주의 특성별로는 여자가구주 가구에서 자녀를 위탁한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남자가구주 가구는 1.8%인데 비해, 여자가구주 가구는 2.8%이었다. 여성의 취업여부별로도 자녀의 위탁비율에 차이를 보여 취업한 경우(2.3%)에 비취업(1.7%) 중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5.4%이었으며, 그 다음은 40대로 1.9%이었다. 50대 이후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연령 또한 차이를 보여 30대에서 어린 자녀의 비율이 높고²⁴⁾, 50대 이상에서는 자녀의 연령 또한 높아짐으로써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할 자녀가 없거나 적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4) 15~49세 유배우 부인의 경우 첫째아를 24.5세에 출산하고, 막내아를 27.6세에 출산함으로써(조남훈 외, 1997) 30대부인의 경우 막내가 3세~13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表 5-10〉 家口主 및 家口の 特性別 子女의 施設·親知 委託保護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2 |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1.8 | .82 | 독신가구 | 2.5 | |
| 여자 | 2.8 | | 부부가구 | 1.0 | 8.66 |
| | | | 편부모가구 | 2.7 | |
| | | | 기타가구 | 2.7 | |
| 연령 | | | 노인가구 여부 | | |
| 29세 이하 | 1.1 | | 비노인가구 | 2.2 | 2.62 |
| 30~39세 | 5.4 | 38.44*** | 노인가구 | 0.7 | |
| 40~49세 | 1.9 | | 주택소유여부 | | |
| 50~59세 | 0.3 | | 자가 | 0.5 | 21.89*** |
| 60세 이상 | 0.9 | | 비자가 | 3.4 | |
| 교육수준 | | | 가구 총소득 | | |
| 초교이하 | 1.5 | | 없음 | 1.7 | |
| 중학교 | 1.0 | 5.06 | 19만원이하 | 2.3 | |
| 고등학교 | 2.4 | | 20~49만원 | 3.6 | 6.52 |
| 대학이상 | 2.9 | | 50~79만원 | 2.0 | |
| | | | 80~99만원 | 2.4 | |
| 결혼상태 ¹⁾ | | | 100~199만원 | 1.7 | |
| 유배우 | 2.0 | .00 | 200만원이상 | - | |
| 이혼·별거·사별 | 1.8 | | 취업자수 | | |
| | | | 없음 | 2.2 | 4.14 |
| 실업자 여부 | | | 1명 | 2.2 | |
| 비실업자 | 1.8 | .12 | 2명 이상 | 0.6 | |
| 실업자 | 2.1 | | 실업자수 | | |
| | | | 1명 | 2.0 | .01 |
| | | | 2명 이상 | 1.6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1.5 | 2.78 |
| | | | 이환가구 | 2.6 | |
| 전체 | 2.0 | - | 전체 | 2.0 | - |

註: 1) 가구주의 결혼상태가 유배우, 사별·이혼·별거인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함.

* p<.05, ** p<.01, *** p<.001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아이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경우가 많아 각각 2.4%, 2.9%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최근의 대량실업은 單純勞務職 등의 근로자보다는 사무직 등에 종사한 사람들의 실직률이 높으면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상태와 아이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하는 것은 이혼·별거·사별상태 보다 유배우 상태인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배우의 경우 맞벌이일 경우 자녀를 돌보아줄 가족원의 不在로 위탁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결혼상태별 자녀의 위탁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실업자여부별로도 가구주가 실업자일 경우 자녀의 위탁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두 변수간의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승권 등의 연구에서 主扶養者의 실직으로 인해 자녀를 兒童保護施設이나 親戚에게 委託한 경우는 실직가구 중 2.7%로 남자가구주 보다는 여자가구주 가구의 경우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남자가구주: 2.5%, 여자가구주: 6.7%). 이들이 자녀를 위탁한 이유로는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워’, 그리고 ‘구직활동을 위해서’ 등이었다(김승권 외, 1998a).

자녀의 시설 및 친지에게 위탁한 경우를 가구유형별로 보면, 독신가구나 부부가구 보다는 편부모가구나 기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2.7%), 노인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비노인가구가 노인가구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자가 소유한 가구의 경우 위탁비율이 0.5%인데 비해 자가 비소유 가구에서는 3.4%를 보였다. 가구총소득별로는 20~49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취업자수가 적은 경우에, 그리고 실업자수는 1명 이상 일 때 위탁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취

업자 수가 없거나 적은 것은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업자가 많은 것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가족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또한 이환가구가 비이환가구 보다 자녀위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시설이나 친지에 위탁한 경우는 실업 전보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소득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경우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생활수준 유지가능 기간이 짧은 경우에 자녀를 위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나. 父母 委託保護

전체 응답가구중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3.0%)이었고, 그 다음은 30대(1.9%), 60대(1.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미혼가구주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3.2%가 부모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경우이었다. 또한 가구주가 실업자(1.5%)일 경우 비실업자(1.1%)일 경우보다 부모를 위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체 가구주의 특성과 부모의 위탁경험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경우는 가구유형별로는 편부모가구와 독인가구에서, 그리고 노인가구 보다는 비노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현재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구이거나 노인들만이 사는 가구로서 부모의 위탁가능성이 적은 가구라고 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여부별로는 자녀위탁과 마찬가지로 자가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부모위탁 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表 5-11〉 家口主 및 家口の 特性別 父母의 施設·親知 委託保護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2 |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1.3 | .00 | 독신가구 | 2.8 | |
| 여자 | 1.4 | | 부부가구 | 1.2 | 2.61 |
| | | | 편부모가구 | 2.9 | |
| 연령 | | | 기타가구 | 1.2 | |
| 29세 이하 | 3.0 | | 노인가구 여부 | | |
| 30~39세 | 1.9 | 7.02 | 비노인가구 | 1.5 | 1.38 |
| 40~49세 | 1.3 | | 노인가구 | 0.5 | |
| 50~59세 | 0.5 | | 주택소유여부 | | |
| 60세 이상 | 1.6 | | 자가 | 0.8 | 3.95 |
| | | | 비자가 | 1.9 | |
| 교육수준 | | | 가구 총소득 | | |
| 초교이하 | 1.0 | | 없음 | 1.2 | |
| 중학교 | 1.8 | 1.31 | 19만원이하 | - | |
| 고등학교 | 1.3 | | 20~49만원 | 2.8 | 9.09 |
| 대학이상 | 1.5 | | 50~79만원 | 0.9 | |
| | | | 80~99만원 | 2.1 | |
| 결혼상태 | | | 100~199만원 | 1.0 | |
| 미혼 | 3.2 | 5.25 | 200만원이상 | - | |
| 유배우 | 1.3 | | 취업자수 | | |
| 이혼·별거·사별 | 0.4 | | 없음 | 2.2 | 9.69 |
| | | | 1명 | 0.8 | |
| 실업자 여부 | | | 2명 이상 | 0.3 | |
| 비실업자 | 1.1 | .32 | 실업자수 | | |
| 실업자 | 1.5 | | 1명 | 1.4 | .04 |
| | | | 2명 이상 | 1.0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1.5 | .83 |
| | | | 이환가구 | 1.0 | |
| 전체 | 1.3 | - | 전체 | 1.3 | - |

가구총소득별로는 20~40만원 이하 가구에서, 취업자수는 적을수록, 실업자수는 1명인 경우에, 그리고 이환가구원은 없는 경우에 부모의 위탁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실업 전·후 소득변화와 생활수준 유지가능 기간과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 위탁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表 5-12〉 失業家口의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 期間別 子女 및 父母 施設·親知 委託

(단위: %)

| 구분 | 자녀 시설·친지위탁 | | 부모 시설·친지위탁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실업전후 소득변화 | | | | |
| 변화없음+증가 | 1.0 | .33 | 1.8 | .05 |
| 감소 | 2.0 | | 1.2 | |
| 생활수준 유지가능기간 | | | | |
| 6개월 미만 | 2.5 | | 1.5 | |
| 6개월~1년 미만 | 2.0 | .35 | 0.9 | 1.18 |
| 1년~ 2년 미만 | 2.3 | | 0.7 | |
| 2년 이상 | 1.9 | | 1.0 | |
| 전체 | 2.4 | - | 1.3 | - |

6. 子女問題

가족원의 실직, 특히 가구주의 실직은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자녀들도 心理적으로 萎縮되어 憂鬱症狀을 보이거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등의 결과를 낳는다.

가. 子女의 學業成績 低下

실업가구가 된 이후 자녀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가구는 17.7%나 되었다. 특히 여자가구주일 경우 남자가구주 보다 6.2%포인트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19.4%)을 나타내었고,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일 경우 40.1%,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일 경우 30.6%로 가구주의 학력이 낮은 경우 자녀의 학업성적

이 떨어지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가구주가 미혼일 경우 31.4%로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유배우보다는 이혼·별거·사별 등의 무배우인 경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가구주가 미혼일 경우는 가구주 자신이 학생이거나, 가구주의 형제·자매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들의 경우 학생이면서 生計扶養者로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됨으로써 학업성적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주의 실업여부에 따라서는 자녀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비율이 실업자일 경우(19.9%)가 비실업자(14.6%)일 경우보다 높았다. 그러나 결혼상태를 제외한 다른 특성은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특성별 자녀의 學業成績 低下與否를 보면 편부모가구의 41.0%가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를 경험하였다. 또한 노인가구 보다는 비노인가구에서 그리고 자가소유 가구보다는 비소유가구에서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 경험률이 더 높았다. 가구총소득별로는 8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대부분 20% 이상이 자녀의 학업성적의 저하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19만원 이하(소득)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29.6%)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와 가구 총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

취업자수와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어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를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낮았다. 한편, 실업자 수는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 경험률과 반비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아니었다. 이환가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어 이환가구가 있을 때 자녀성적은 더 떨어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학업 성적 저하는 실업 전·후 소득변화 및 생활수준 유지가능 기간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18.0%)에 그리고 생

활수준 유지 가능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 저하 경험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나. 子女의 非行 增加

실업이후 자녀의 비행행동이 증가한 가구는 6.6%로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6.3%)에 비해 여성(8.5%)의 경우 자녀의 비행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一貫된 變化樣相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가구주가 고학력일수록 자녀의 非行行動 增加率이 낮아지고 있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일 경우 보다 무배우일 경우 자녀의 비행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으며, 가구주가 실업자(7.2%)인 경우도 비실업자(5.9%)인 경우보다 높았다.

가구의 특성별로는 가구유형과 총소득만이 자녀의 비행증가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독신가구의 경우 자녀비행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7.1%), 그 다음은 편부모가구(14.6%)였다. 이는 자녀 양육을 지원할 가족원의不在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즉 이들 가구의 경우 가구주 혼자서 생계유지자 및 양육자 역할을 병행해야하므로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 역할과 정서적 지원의 질이 타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表 5-13〉 家口主 및 家口の 特性別 子女의 學業成績 低下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2 |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16.8 | 6.67 | 독신가구 | 28.3 | 53.33*** |
| 여자 | 23.0 | | 부부가구 | 15.6 | |
| 연령 | | | 편부모가구 | 41.0 | |
| 29세 이하 | 17.2 | 25.80 | 기타가구 | 18.2 | |
| 30~39세 | 19.4 | | 노인가구 여부 | | |
| 40~49세 | 17.4 | | 비노인가구 | 17.9 | 1.99 |
| 50~59세 | 17.8 | | 노인가구 | 15.9 | |
| 60세 이상 | 13.9 | | 주택소유여부 | | |
| 교육수준 | | | | 자가 | 13.3 |
| 초교이하 | 19.6 | 비자가 | 22.0 | | |
| 중학교 | 20.5 | 9.45 | 가구 총소득 | | |
| 고등학교 | 16.5 | | 없음 | 23.1 | |
| 대학이상 | 14.1 | | 19만원이하 | 29.6 | |
| 결혼상태 | | | | 20~49만원 | 23.6 |
| 미혼 | 31.4 | 24.95* | 50~79만원 | 20.3 | |
| 유배우 | 15.7 | | 80~99만원 | 4.9 | |
| 이혼·별거·사별 | 30.1 | | 100~199만원 | 12.2 | |
| 실업자 여부 | | | | 200만원이상 | 8.4 |
| 비실업자 | 14.6 | 9.26 | 취업자수 | | |
| 실업자 | 19.9 | | 없음 | 22.1 | 18.67** |
| 전체 | 17.7 | | - | 1명 | |
| | | | 2명 이상 | 11.5 | |
| | | | 실업자수 | | |
| | | | 1명 | 17.7 | 2.48 |
| | | | 2명 이상 | 18.3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13.8 | 21.9*** |
| | | | 이환가구 | 23.7 | |
| 전체 | 17.7 | - | 전체 | 17.7 | - |

註: * p<.05, ** p<.01, *** p<.001

〈表 5-14〉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子女의 非行增加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2 |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6.3 | 12.05* | 독신가구 | 37.1 | |
| 여자 | 8.5 | | 부부가구 | 6.9 | 48.77*** |
| | | | 편부모가구 | 14.6 | |
| | | | 기타가구 | 5.2 | |
| 연령 | | | 노인가구 여부 | | |
| 29세 이하 | 11.9 | | 비노인가구 | 7.0 | 5.30 |
| 30~39세 | 6.3 | 35.71** | 노인가구 | 3.9 | |
| 40~49세 | 4.7 | | 주택소유여부 | | |
| 50~59세 | 9.0 | | 자가 | 6.1 | 4.83 |
| 60세 이상 | 7.1 | | 비자가 | 7.2 | |
| 교육수준 | | | 가구 총소득 | | |
| 초교이하 | 9.0 | | 없음 | 5.3 | |
| 중학교 | 8.3 | 16.83 | 19만원이하 | 23.9 | |
| 고등학교 | 5.3 | | 20~49만원 | 9.0 | 41.23** |
| 대학이상 | 4.0 | | 50~79만원 | 7.0 | |
| | | | 80~99만원 | 3.4 | |
| | | | 100~199만원 | 5.1 | |
| 결혼상태 | | | 200만원이상 | 7.9 | |
| 미혼 | 18.1 | 31.06*** | 취업자수 | | |
| 유배우 | 5.9 | | 없음 | 7.5 | 5.95 |
| 이혼·별거·사별 | 11.2 | | 1명 | 6.1 | |
| | | | 2명 이상 | 6.1 | |
| 실업자 여부 | | | 실업자수 | | |
| 비실업자 | 5.9 | 5.23 | 1명 | 6.4 | 2.33 |
| 실업자 | 7.2 | | 2명 이상 | 8.4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5.6 | 5.15 |
| | | | 이환가구 | 8.4 | |
| 전체 | 6.6 | - | 전체 | 6.6 | - |

註: * p<.05, ** p<.01, *** p<.001

가구의 총소득별로는 1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자녀의 비행 증가가 있었다는 비율(23.9%)이 가장 높았고 20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점차 낮아지다가 100만원 이상의 소득층부터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노인가구보다는 비노인가구에서, 자가가구보다는 비자가가구

에서, 그리고 취업자가 없거나 실업자가 많은 가구, 또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자녀비행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활유지 가능기간이 짧을수록 자녀비행 증가율이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表 5-17 參照).

다. 子女의 私敎育 中斷

실업으로 인해 자녀의 私敎育을 中斷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24.0%나 되었다²⁵⁾. 이 경우는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우선 성별로는 남성가구주 가구(25.8%)가 여성가구주 가구(14.0%)보다 사교육 중단이 더 많이 일어났다. 이는 실직남성가구주가 실직여성가구주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42.5%, 30대 29.6%, 50대 12.5%의 순으로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한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중단한 비율도 높아져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는 13.9%이었으나 중학교 이상의 학력에서는 26.3%~28.3%에 달했다. 그러나 가구주가 초등학교 이하일 경우 가구원 실직이전부터 사교육 실시율이 이미 낮았을 가능성도 있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가구주일 경우 가장 높은 비율(26.7%)을 보였으며, 실업자일 경우에도 29.1%의 가구에서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하였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실직후 사교육을 중단한 경우는 편부모가구(30.1%)일 때, 취업자수가 적을 때, 이환가구원이 있을 때(28.9%) 더 많이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가구 총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비자가가구일 때 사교육 중단이 더 많이 발생했다.

25) 김승권 외(1998a)의 연구에서도 실업가구 자녀의 사교육 중단 비율은 29.1%나 되고 있어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사교육 중단 발생의 이러한 양상은 가구 총소득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봤을 때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表 5-16>에 제시된 총소득 중 사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보다 남성가구주에서, 가구주 연령이 50대일 때를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주가 유배우상태일 때, 또 실업자일 때 등 비율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가구주 특성상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사교육비의 비율이 더 높는데 이는 분모가 되는 총소득액이 타가구에 비해 이들 가구에서 훨씬 작기 때문에 最小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도 그 비율은 더 높은 것이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일 때 사교육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家族週期上 이 시기가 子女數와 자녀의 學齡에 있어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들 때라는 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으나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서 보이듯 보다 안정적이고 많은 소득이 있는 가구에선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投資가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교육비 비율의 분포와 비교한 실업가구의 사교육 중단 비율의 분포는 가계에 여유가 있어 기존 사교육비 지출이 충분히 많았던 경우에는 가구원 실업 이후 사교육 중단 비율이 훨씬 높고, 역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최소한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던 가구에선 가구원 실업이후에도 그 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가구유형에 따른 분포로서 편부모가구의 경우 총소득액 중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14.7%) 사교육을 중단한 경우가 30.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편부모가구의 경제수준이 가구원 실직 이전부터 絶對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여타 가구유형에 비해 최소한의 사교육이 가능했던 가구수도 그만큼 적었다는 것, 그리고 가구원 실직은 그나마 하고 있던 최소한의 사교육도 중단해야 할만큼 이들 가구에 致命的인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5-15〉 家口主 및 家口 特性別 子女의 私教育 中斷 發生率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2 |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25.8 | 20.36*** | 독신가구 | 1.3 | |
| 여자 | 14.0 | | 부부가구 | 22.0 | 37.02*** |
| | | | 편부모가구 | 30.1 | |
| | | | 기타가구 | 27.7 | |
| 연령 | | | 노인가구 여부 | | |
| 29세 이하 | 8.4 | 222.41*** | 비노인가구 | 24.4 | .83 |
| 30~39세 | 29.6 | | 노인가구 | 21.9 | |
| 40~49세 | 42.5 | | 주택소유여부 | | |
| 50~59세 | 12.5 | | 자가 | 21.4 | 7.65 |
| 60세 이상 | 9.8 | | 비자가 | 26.6 | |
| 교육수준 | | | 가구 총소득 | | |
| 초교이하 | 13.9 | 42.17*** | 없음 | 26.8 | |
| 중학교 | 27.5 | | 19만원이하 | 24.4 | 15.40 |
| 고등학교 | 28.3 | | 20~49만원 | 28.4 | |
| 대학이상 | 26.3 | | 50~79만원 | 25.9 | |
| | | | 80~99만원 | 25.2 | |
| | | | 100~199만원 | 20.5 | |
| 결혼상태 | | | 200만원이상 | 13.4 | |
| 미혼 | 4.3 | 43.03*** | 취업자수 | | |
| 유배우 | 26.7 | | 없음 | 26.4 | 36.02*** |
| 이혼·별거·사별 | 16.3 | | 1명 | 26.5 | |
| | | | 2명 이상 | 11.6 | |
| 실업자 여부 | | | 실업자수 | | |
| 비실업자 | 18.4 | 33.59*** | 1명 | 24.7 | 2.62 |
| 실업자 | 29.1 | | 2명 이상 | 19.7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21.0 | 16.91*** |
| | | | 이환가구 | 28.9 | |
| 전체 | 24.0 | - | 전체 | 24.0 | - |

註: * p<.05, ** p<.01, *** p<.001

〈表 5-16〉 子女 私教育 中斷 失業家口 家口主의 特性 및 家口類型別 總所得 中 私教育費의 比率¹⁾

(단위: 만원, %)

| 특성 | 총소득액 (a) | 사교육비 (b) | 총소득 중 사교육비 비율(b/a) |
|--------------------|-------------|-------------|-----------------------|
| 성 | | | |
| 남자 | 58.1 | 16.6 | 28.6 |
| 여자 | 40.3 | 10.3 | 25.6 |
| 연령 | | | |
| 29세 이하 | 45.6 | 0.5 | 1.1 |
| 30~39세 | 60.5 | 15.0 | 24.8 |
| 40~49세 | 53.5 | 16.9 | 31.6 |
| 50~59세 | 49.5 | 18.6 | 37.6 |
| 60세 이상 | 87.7 | 13.1 | 14.9 |
| 교육수준 | | | |
| 초교이하 | 50.7 | 18.7 | 36.9 |
| 중학교 | 52.1 | 15.3 | 29.4 |
| 고등학교 | 56.2 | 14.5 | 25.8 |
| 대학이상 | 66.8 | 18.6 | 27.8 |
| 결혼상태 ¹⁾ | | | |
| 유배우 | 59.1 | 16.6 | 28.1 |
| 이혼·별거·사별 | 31.5 | 7.5 | 23.8 |
| 실업자 여부 | | | |
| 비실업자 | 77.1 | 15.8 | 20.5 |
| 실업자 | 44.8 | 16.2 | 36.2 |
| 가구유형 | | | |
| 독신가구 | - | - | - |
| 부부가구 | 59.8 | 16.3 | 27.3 |
| 편부모가구 | 25.2 | 3.7 | 14.7 |
| 기타가구 | 55.8 | 16.1 | 28.9 |
| 전체 | 56.6 | 16.0 | 28.3 |

註: 1) 유배우, 이혼·별거·사별중인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함.

자녀의 사교육 중단은 실업 전·후 소득변화 및 생활수준 유지 가능 기간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실업 전 보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서 사교육을 중단한 비율(25.5%)은 소득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가구의 3배 이상이었으며, 생활수준 유지가능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8.5%)는 2년 이상일 경우(13.5%)보다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表 5-17 參照).

〈表 5-17〉 失業家口의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 期間別 子女 學業成績 低下, 非行增加 및 私教育 中斷
(단위: %)

| 구분 | 자녀 학업성적 저하 | | 자녀 비행 증가 | | 자녀 사교육 중단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χ^2 | χ^2 |
| 실업전후 소득변화 | | | | | | |
| 변화없음+증가 | 9.6 | 12.52* | 5.7 | 3.29 | 8.3 | 20.87*** |
| 감소 | 18.0 | | 6.8 | | 25.5 | |
| 생활수준 유지가능기간 | | | | | | |
| 6개월 미만 | 22.7 | | 7.0 | | 28.5 | |
| 6개월~1년미만 | 20.2 | 45.89*** | 7.2 | 18.88 | 28.3 | 18.91*** |
| 1년~2년미만 | 12.4 | | 4.2 | | 24.3 | |
| 2년 이상 | 5.9 | | 4.4 | | 13.6 | |
| 전체 | 17.5 | - | 6.4 | - | 26.3 | - |

註: * p<.05, ** p<.01, *** p<.001

라. 子女의 進學拋棄 및 延期

전체 실업가구중 자녀의 進學을 拋棄하거나 延期한 적이 있는 가구는 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여성가구주가(6.9%)에서 남성가구주가(4.9%)보다 좀더 많이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50대의 가구주일 경우 자녀의 진학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7.7%), 그 다음은 40대(6.9%)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反比例 관계를 보여 가구주가 저학력일수록 자녀 진학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무배우 가구주의 경우 유배우 가구주 보다 높고 또한 가구주가 실업자일 경우(6.1%)가 비실업자일 경우는(4.1%)보다 높았으나 연령과 교육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表 5-18〉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子女의 進學拋棄 및 延期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2 |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4.9 | 1.77 | 독인가구 | - | |
| 여자 | 6.9 | | 부부가구 | 6.4 | 25.41*** |
| | | | 편부모가구 | 17.6 | |
| | | | 기타가구 | 3.9 | |
| 연령 | | | 노인가구 여부 | | |
| 29세 이하 | 1.0 | | 비노인가구 | 5.2 | .00 |
| 30~39세 | 0.7 | 35.21*** | 노인가구 | 5.2 | |
| 40~49세 | 6.9 | | 주택소유여부 | | |
| 50~59세 | 7.7 | | 자가 | 5.2 | .00 |
| 60세 이상 | 3.4 | | 비자가 | 5.1 | |
| 교육수준 | | | 가구 총소득 | | |
| 초교이하 | 6.9 | | 없음 | 4.6 | |
| 중학교 | 5.8 | 8.60* | 19만원이하 | 8.1 | |
| 고등학교 | 5.1 | | 20~49만원 | 8.5 | 33.96*** |
| 대학이상 | 2.5 | | 50~79만원 | 8.6 | |
| | | | 80~99만원 | 2.8 | |
| | | | 100~199만원 | 1.6 | |
| 결혼상태 | | | 200만원이상 | 1.3 | |
| 미혼 | 2.0 | | 취업자수 | | |
| 유배우 | 5.1 | 6.79 | 없음 | 5.9 | 1.75 |
| 이혼·별거·사별 | 7.9 | | 1명 | 4.5 | |
| | | | 2명 이상 | 5.1 | |
| 실업자 여부 | | | 실업자수 | | |
| 비실업자 | 4.1 | 3.91 | 1명 | 4.6 | 10.92*** |
| 실업자 | 6.1 | | 2명 이상 | 9.8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3.9 | 11.22*** |
| | | | 이환가구 | 7.3 | |
| 전체 | 5.3 | - | 전체 | 5.3 | - |

註: * p<.05, ** p<.01, *** p<.001

가구유형별로는 사교육 중단과 마찬가지로 편부모가구에서 자녀의

진학 포기 또는 연기 비율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가구총소득의 경우는 79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진학 포기율은 낮아져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서는 1.3%에 불과했다. 실업자수가 많아질수록 자녀의 진학포기나 연기한 비율은 높아졌으며, 이환가구원이 없는 가구(7.3%)는 있는 가구(3.9%)에 비해 자녀의 진학포기 및 연기한 비율은 3.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同 비율은 실업 전·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리고 생활수준 유지 가능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表 5-20 參照).

마. 子女의 軍入隊 및 休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가 軍隊에 入隊하거나 학교를 休學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9%이었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별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다른 특성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50대의 가구주가구의 10.0%, 40대는 6.7%, 그리고 60대는 3.5%의 가구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군 입대를 하거나 휴학을 하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가구주가 고학력일수록 同 비율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가 고학력일수록 젊은 층이 많고 소자녀의 경향이 강해 군입대를 할 정도의 자녀가 보다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5-19〉 家口主 및 家口의 特性別 子女의 軍入隊 및 休學

(단위: %)

| 가구주 특성 | 비율 | χ^2 |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유형 | | |
| 남자 | 6.0 | .00 | 독신가구 | 1.1 | |
| 여자 | 5.9 | | 부부가구 | 8.1 | 27.84*** |
| | | | 편부모가구 | 16.7 | |
| | | | 기타가구 | 3.8 | |
| 연령 | | | 노인가구 여부 | | |
| 29세 이하 | 0.9 | | 비노인가구 | 6.1 | .27 |
| 30~39세 | 1.0 | 46.26*** | 노인가구 | 5.1 | |
| 40~49세 | 6.7 | | 주택소유여부 | | |
| 50~59세 | 10.0 | | 자가 | 6.6 | 1.75 |
| 60세 이상 | 3.5 | | 비자가 | 5.1 | |
| 교육수준 | | | 가구 총소득 | | |
| 초교이하 | 8.7 | | 없음 | 6.6 | |
| 중학교 | 5.4 | 9.89 | 19만원이하 | 1.7 | |
| 고등학교 | 4.9 | | 20~49만원 | 7.1 | 14.27 |
| 대학이상 | 4.9 | | 50~79만원 | 8.3 | |
| | | | 80~99만원 | 2.7 | |
| 결혼상태 | | | 100~199만원 | 3.9 | |
| 미혼 | 2.7 | | 200만원이상 | 4.8 | |
| 유배우 | 5.9 | 3.87 | 취업자수 | | |
| 이혼·별거·사별 | 7.8 | | 없음 | 6.0 | .85 |
| | | | 1명 | 5.5 | |
| 실업자 여부 | | | 2명 이상 | 6.8 | |
| 비실업자 | 5.2 | 1.30 | 실업자수 | | |
| 실업자 | 6.5 | | 1명 | 5.6 | 2.91 |
| | | | 2명 이상 | 8.6 | |
| | | | 이환가구여부 | | |
| | | | 비이환가구 | 5.0 | 4.12 |
| | | | 이환가구 | 7.3 | |
| 전체 | 5.9 | - | 전체 | 5.9 | - |

註: * p<.05, ** p<.01, *** p<.001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가구주일 경우 5.9%, 이혼·별거·사별한 가구주의 경우 7.8%에서 자녀의 진학포기 또는 휴학의 경우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실업가구(6.5%)일 경우 비실업 가구주(5.2%)보다 同 비율이 높았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우선 가구유형에 있어 편부모가구의 경우 자녀가 군입대를 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노인가구보다 비노인가구, 비자가가구보다 자가가구에서, 그리고 가구총소득이 50~79만원대 일 때 同 비율이 높았다. 가구 총소득의 경우는 50~79만원에서 가장 높은 비율(8.3%)을 취업자수와 실업자 수는 많을수록,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경우 同 비율이 높다. 또한 同 비율은 실업 전·후 소득이 증가하였거나 변화가 없는 경우보다 감소한 경우, 그리고 생활유지 가능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그러나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가구유형만이 자녀의 군입대 및 휴학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表 5-20〉 失業家口의 失業 前·後 所得變化 與否 및 生活維持 可能 期間別 子女教育 問題

(단위: %)

| 구분 | 자녀 진학포기 및 연기 | | 자녀 군입대 및 휴학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실업전후 소득변화 | | | | |
| 변화없음+증가 | 2.8 | 1.30 | 4.8 | .27 |
| 감소 | 5.2 | | 6.2 | |
| 생활수준 유지가능기간 | | | | |
| 6개월 미만 | 6.8 | | 7.5 | |
| 6개월~1년미만 | 3.7 | 5.84 | 7.1 | 3.02 |
| 1년~2년미만 | 3.9 | | 5.4 | |
| 2년 이상 | 3.6 | | 4.4 | |
| 전체 | 5.8 | - | 6.9 | - |

註: * p<.05, ** p<.01, *** p<.001

7. 生活方式의 變化

실업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감소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대부분의 실업가구는 그들의 生活方式의 變化를 통하여 가족의 危機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실업가구중 생활방식에 變化를 경험한 경우는 63.2%로 각 유형별 變化 경험률을 보면, 親交活動 감소 39.3%, 외식감소 31.0%, 문화·여가활동 감소 29.7%, 여행 및 휴가 감소 25.7% 등이다. 이 외 자녀의 결혼 및 출산연기²⁶⁾, 주택축소, 世代結合 등의 방법으로 소득감소에 대처하기도 한다(김승권 외, 1998a).

〈表 5-21〉 失業家口의 生活方式 變化經驗率

(단위: %)

| 내용 | 비율 |
|---------------------------|------|
| 생활방식 變化 경험률 ¹⁾ | 63.2 |
| 유형별 變化 경험률 ²⁾ | |
| 친교활동 감소 | 39.3 |
| 외식감소 | 31.0 |
| 문화·여가활동 감소 | 29.7 |
| 여행 및 휴가감소 | 25.7 |
| 자녀결혼연기 | 4.6 |
| 자녀출산연기 및 인공임신중절 | 4.6 |
| 주택축소 | 7.0 |
| 세대결합 및 기타 | 1.2 |

註: 1) 실직가구 중 생활방식의 變化를 한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이며, 유형별 變化경험률에서 제시된 항목 외에 '자녀 사교육 중단'과 '자녀 진학포기'가 포함된 것임.

2) 복수응답임.

資料: 김승권 외, 『여성 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a. <表 5-14> 재구성

26) 도시에 거주하는 혼전의 흑인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위기와 같은 역경에 대처하는 가족의 전략중의 하나로서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계획을 변경한다고 함(Chadiha, 1992).

第 2 節 失業家庭 夫婦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원만한 관계는 가족원 전체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가구주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夫婦關係에 영향을 주어 부부갈등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경우에는 家族解體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가구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보는 것은 실업가구의 원만한 가족생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變數의 設定

본 연구에서는 실업으로 인하여 ‘부부사이가 좋지않고 싸움을 한다’는 夫婦不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回歸分析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로는 ‘부부사이가 좋지않고 싸움을 한다’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그리고 ⑤ 매우 그렇다 등의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불화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독립변수로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가규모를 축소했는지의 여부와 생계유지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그 외 실업가구의 특성과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특성을 취급하였다. 가구특성으로는 주택소유 여부, 가구원 근로소득 유무, 가구 총소득, 소득감소액, 현 부채액, 가족·친지·이웃의 도움여부, 생활유지 가능기간, 가구원 수, 가구유형,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특성으로는 각각의 교육수준, 연령, 실업자 여부 및 직업유무를 포함하였다. 이 중 가구총소득, 소득감소액, 현 부채액, 가구원수,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연령은 실제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는 1~5,

생활유지 가능기간은 1~6의 서열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외의 변수들은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表 5-22>와 같다.

<表 5-22> 分析에 使用된 變數

| 독립변수 | 정의 |
|-----------------|--|
| 자가규모 축소여부 | 0: 아니오 1: 예 |
| 생계유지 어려움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
| 가구특성 | |
| 주택소유여부 | 0: 전세, 월세, 기타 1: 자가 |
| 가구원 근로소득 유무 | 0: 아니오 1: 예 |
| 가구 총소득 | 실제 소득(만원) |
| 소득 감소액 | 실제 감소액(만원) |
| 현 부채액 | 실제 부채액(원) |
| 가족·친지·이웃 도움여부 | 0: 아니오 1: 예 |
| 생활유지 가능기간 | 1: 1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3: 3~6개월 미만 4: 6개월~1년 미만 5: 1년~2년 미만 6: 2년 이상 |
| 가구원수 | 실제 수(명) |
| 가구유형 | 0: 부부가구 외 기타가구 1: 부부가구(부부+미혼자녀포함) |
| 가구주 특성 | |
| 가구주 교육수준 |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
| 가구주 연령 | 실제 연령(세) |
| 가구주의 실업자 여부 | 0: 비실업자 1: 실업자 |
| 가구주의 직업 유무 | 0: 없음 1: 있음 |
| 가구주 배우자 특성 | |
| 가구주 배우자의 교육수준 |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
| 가구주 배우자의 연령 | 실제 연령(세) |
| 가구주 배우자의 실업자 여부 | 0: 비실업자 1: 실업자 |
| 가구주 배우자의 직업 유무 | 0: 없음 1: 있음 |

〈表 5-23〉 夫婦關係에 影響을 주는 要因의 回歸分析

| 변수 | b | s.e |
|-----------------|-----------|------------|
| 절편 | 2.463*** | .394 |
| 자가규모 축소 여부 | -.071 | .271 |
| 생계유지 어려움 | .186*** | .041 |
| 주택소유 여부 | -.264** | .089 |
| 가구원 근로소득 유무 | .133 | .101 |
| 가구 총소득 | -.001* | .000 |
| 소득감소액 | -.000 | .000 |
| 현 부채액 | .00004*** | .000 |
| 가족·친지·이웃도움 여부 | .111 | .113 |
| 생활유지 가능기간 | -.052# | .029 |
| 가구원수 | .024 | .042 |
| 가구유형 | .144 | .099 |
| 가구주 교육수준 | -.099 | .112 |
| 가구주 연령 | -.025* | .010 |
| 가구주 실업자 여부 | .053 | .133 |
| 가구주 직업유무 | -.199 | .155 |
| 가구주 배우자의 교육수준 | -.144 | .125 |
| 가구주 배우자의 연령 | .009 | .010 |
| 가구주 배우자의 실업자 여부 | .431*** | .130 |
| 가구주 배우자의 직업유무 | .089 | .104 |
| R^2 | .13 | Adj. R^2 |
| | | .12 |

註: # p<.1, * p<.05, ** p<.01, *** p<.001

2. 分析結果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 중 夫婦不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와 주택소유 여부, 가구 총소득, 현 부채액, 그리고 향후 생활유지 가능기간,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

배우자의 실업 여부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生計維持의 어려움 정도는 부부불화와 유의한 관계(.186)를 보여 생계유지가 어려울수록 부부불화가 심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소유 여부와 가구의 월 총소득, 그리고 현 부채액도 부부불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를 소유하지 못할 때(-.264) 가구의 총소득이 낮을수록(-.001) 그리고 부채액이 많을수록(.00004) 부부불화를 심화시킨다. 또한 향후 생활유지 가능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052), 그리고 가구주 배우자가 실업자일 때(.431) 부부불화가 심해진다. 그러나 가구의 생계유지 방법중 가족원의 근로소득 유무나 소득감소액, 가족·친지·이웃 등의 도움여부, 가구원 수, 가구유형 등은 부부불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실업자 여부, 직업유무와 가구주 배우자의 교육수준, 연령, 직업유무 등은 모두 부부간의 불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가구의 부부간의 불화는 주로 經濟的인 變數와 관련성이 있으며, 이로써 실업이 가구주 부부의 불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第 3 節 要約 및 示唆點

IMF체제 이후 급증한 실업과 그로 인한 否定的인 問題發生은 실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家族解體로까지 이어져 社會問題化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특히 실업가구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자가구주 보다는 여자가구주가, 저연령층보

다는 40~50대의 연령층에서, 고학력층 보다는 저학력층에서, 부부가구 보다는 편부모가구일 경우, 비노인가구 보다는 노인가구에서, 자가가구 보다는 비자가가구에서, 월 평균 소득수준이 낮고, 취업자수가 적거나 실업자수는 많은 가구 등, 경제수준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에서 부정적인 가족생활 변화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가구를 위한 정부대책이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원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경제적 지원은 가구원의 근로능력 유무, 소득수준, 扶養者 有無 등을 고려한, 각 가구의 특성에 맞는 것이어야 하지만 특히 실업가구중에서도 脆弱階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적인 가계책임자가 여자인 가구나, 편부모가구,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再就業이 어려워 실직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은 계층이며, 재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업 보다 낮은 지위와 보수 등 조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가족생활 변화의 대표적 양상으로 실업가구의 兒童缺食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아동결식은 社會構成員의 再生産이라는 장기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과 관계되어 실업가구에서 겪고 있는 큰 문제가 子女養育 및 教育問題였다. 실업가구 중에는 소득감소로 인한 자녀양육비의 부담으로 자녀를 친지나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많은 실업가구에서 지출억제 방안의 하나로 자녀들의 상급 학교로의 진학포기 및 연기, 군입대 및 휴학, 사교육 중단 등이 일어났다. 특히 이는 가구원 실직이전부터 저소득층이었던 가구에서 더욱 빈번하여 자녀교육의 포기 및 중단이 貧困의 世襲化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킨

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보다 平等한 社會階層構造의 形成과 社會적 차원에서의 건전 아동육성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無料給食의 확대, 실업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와 아동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兒童手當制度의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家族關係의 측면에서 볼 때 실업가구의 가족원들이 겪는 크나큰 어려움의 하나는 새로운 가족원 役割에 대한 再適應의 문제이다. 물론 이는 대부분 실업가구의 물질적, 경제적 생활상태 및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생계유지가 어렵고, 가구소득이 적으며, 부채액이 많고, 향후 생활유지 가능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의 경우에서 夫婦不和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에서도 매우 잘 드러난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부부간, 부부-자녀간 등 가족관계상의 문제는 그런 변화된 상황에 대하여 각 가족원이 어떻게 認識하고 受容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에 실업에 의한 가족위기,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한 가족원의 인식 및 理解水準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변화된 역할에의 적응을 도와주는 家族相談事業의 활성화, 또 가족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이해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도입은 가족원간의 相互 理解를 증진시켜 가족의 結束力과 凝集力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다시 가족위기에 대한 가족단위의 대처능력 강화, 나아가 보다 튼튼한 社會構成單位의 形成으로 이어질 것이다.

第 6 章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失業은 가구소득을 감소시켜 실업당사자와 그 家族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실업자를 둘러싼 가족원과 형제자매 및 친·인척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한 個人을 둘러싼 環境의 變化가 그들의 家族員과 地域社會 네트워크, 그리고 社會와 有機的인 關係 속에서 相互作用하기 때문이다(金勝權 外, 1998). 그렇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실업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실업자가 가장 큰 충격을 받으며 다양한 心理的 變化를 겪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실업자의 心理的 變化는 自身에게 뿐만 아니라 家族員 및 社會에 대한 態度에도 많은 변화를 주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突發行動을 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실업자는 과도한 음주,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非行 및 犯罪를 저지르기도 한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경우에서 보듯 개인의 질병, 게으름 등 個人的인 理由가 아닌, 社會構造的 原因에 의한 실업의 경우에 이러한 側面은 더욱 強化될 가능성이 높다. 金勝權 外(1998)의 研究에 의하면 景氣不況 및 IMF 救濟金融에 따른 構造調整에 의하여 진행된 우리 사회의 大量失業事態에 대하여 대부분의 실업자가 國家 및 企業이 제대로 役割을 遂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실직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어 많은 실업자가 社會에 대한 反感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그러한 실업의 특징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²⁷⁾

27) 自身の 失職에 대하여 남성실직자의 15.7%, 여성실직자의 13.2%가 自身の 責任이라고 한 반면, 남성실직자의 61.4% 및 여성실직자의 63.8%는 國家의 責任이라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실직자는 실직전·후를 통해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실직 전에는 초조, 불안, 두려움의 상태에 있다가 막상 실직을 하게 되면 자존감 손상, 분노, 수치심, 열등감 등의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그런데 실직기간이 길어지고 재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과정은 보통 否定→不安→憤怒 및 背信感→受容→絶望 및 自暴自棄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김재갑 외, 1998; 장혜경 외, 1998 재인용).

실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時代와 社會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한다. 이는 失業率이 약 4% 이하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完全雇傭 狀態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실업은 個人의 잘못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社會의 責任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실업자의 心理狀態 變化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구조적 조건 및 그 변화가 개인행위 및 태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라는 점을 밝히는 데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실업자의 心理變化는 자신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和 그들이 속한 家口의 特性에 따라 相異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실업당사자가 어떤 심리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매개고리로서 그들의 個人的 및 家族的 特性에 따라 그러한 心理變化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였으며, 남성실직자의 17.6%, 여성실직자의 16.7%는 企業의 責任이라고 하였음 (金勝權 外, 1998).

第 1 節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자료는 실업자의 심리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2가지 질문유형을 제시하였다. 응답문항은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그렇지 않음, ③그저 그럼, ④그럼, ⑤매우 그럼’의 5개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정확한 감정표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잘 모르겠음’도 별도의 응답항목으로 활용되었다.

〈表 6-1〉 失業者의 心理狀態 變化

(단위: %)

| 심리상태 변화의 유형 | 전 혀 그 렇 지 않 음 | 그 렇 지 않 음 | 그 저 그 럼 | 그 럼 | 다 소 매 우 그 럼 | 매 우 그 럼 | 잘 모 르 겠 음 | 계(수) |
|--------------------------|---------------------------------|-----------------------|------------------|--------|----------------------------|------------------|-----------------------|------|
| ①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 12.5 | 24.9 | 18.3 | 33.1 | 8.0 | 3.1 | 100.0(3,189) | |
| ②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안됨 | 5.9 | 12.8 | 14.7 | 52.0 | 13.4 | 1.2 | 100.0(3,193) | |
| ③ 가슴이 두근두근거릴 때가 있음 | 10.3 | 23.9 | 17.3 | 37.3 | 8.9 | 2.3 | 100.0(3,189) | |
| ④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음 | 11.3 | 27.3 | 17.3 | 32.5 | 9.7 | 1.9 | 100.0(3,191) | |
| 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 6.3 | 17.9 | 15.3 | 45.8 | 13.5 | 1.3 | 100.0(3,189) | |
| ⑥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 | 21.3 | 39.4 | 15.8 | 16.7 | 4.8 | 2.0 | 100.0(3,184) | |
| ⑦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 | 11.1 | 23.6 | 16.8 | 37.6 | 9.7 | 1.4 | 100.0(3,188) | |
| ⑧ 잘 다툼 | 19.1 | 38.7 | 15.6 | 20.5 | 4.7 | 1.5 | 100.0(3,183) | |
| ⑨ 매사가 힘들 | 6.9 | 14.6 | 15.5 | 44.5 | 17.3 | 1.2 | 100.0(3,192) | |
| ⑩ 허무한 느낌이 듦 | 7.5 | 15.1 | 16.2 | 44.9 | 14.3 | 2.0 | 100.0(3,187) | |
| ⑪ 외로움 | 13.5 | 26.2 | 18.3 | 29.4 | 10.3 | 2.4 | 100.0(3,186) | |
| ⑫ 죽고 싶은 기분임 | 31.1 | 34.6 | 12.8 | 14.1 | 4.9 | 2.5 | 100.0(3,185) | |

이들 12종류의 심리상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表 6-1>에 제시하였다. 실업자들의 심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유형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가장 普遍的으로 나타나는 心理狀態(다소 그럼과 매우 그럼)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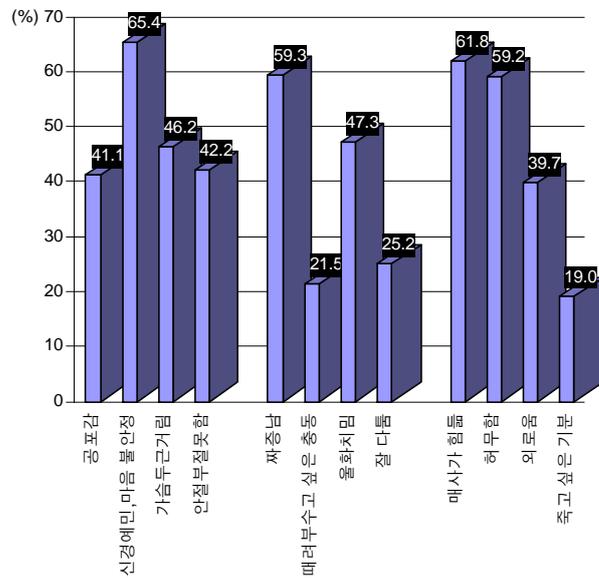
안정이 안됨'으로 실업자의 65.4%가 이러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심리상태는 '매사가 힘들' 61.8%,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59.3%, '허무한 느낌이 듦' 59.2% 등의 順이었다. 이들 네 가지 심리유형은 전체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적 변화인 것이다. 이들 외에도 실업자가 비교적 많이 겪고 있는 심리변화로는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밈' 47.3%,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음' 46.2%,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음' 42.2%,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41.1%, 그리고 '외로움' 39.7% 등이 있었다.

'잘 다툼'(25.2%),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21.5%), 그리고 '죽고 싶은 기분임'(19.0%) 등과 같은 과격한 형태의 심리상태를 겪는 실업자도 다소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엿보게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유형의 감정을 가진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실업자보다 훨씬 소수여서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하나 이러한 감정을 소유한 실업자가 그들의 가족원과 주변 사람, 그리고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능동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장 극단적인 심리상태라 할 수 있는 '죽고 싶은 기분임'을 표현하는 실업자가 전체의 1/5정도에 이르러 심각한 상황으로 飛火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히 우려되는 바라 하겠다.

이상에서 실업자의 심리상태 변화를 概略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리변화는 실업당사자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和 失業家口의 諸般 特性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심리변화가 당사자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지만 실업자를 둘러싼 周邊環境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同種의 심리유형일지라도 그 변화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업자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和 家口特性에 따라 12가지

유형의 心理的 狀態가 어떻게 變化하며 變化의 水準은 얼마나 큰가를 살펴보았다.

[圖 6-1] 失業者의 心理狀態別 水準²⁸⁾



우선 이들 12가지 유형의 심리상태는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不安感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됨’, ‘가슴이 두근 두근거릴 때가 있음’,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음’ 등이다. 敵對感을 나타내는 문항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 ‘잘 다툼’ 등이다. 그리고 憂鬱感을 나타내는 문항에는 ‘메사가 힘들’, ‘허무한 느낌이 듦’, ‘외로움’, ‘죽고 싶은 기분임’ 등이

28) ‘그럼’과 ‘매우 그럼’을 합산한 것임.

포함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영역의 心理狀態群을 구분하여 각 영역의 세부 심리상태를 하나 하나 검토하였다. [圖 6-1]은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 등 3개 영역별 심리수준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실업자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은 실업자의 性, 年齡, 教育水準, 結婚狀態, 家口主 與否, 失業期間, 罹患與否 등 7個 變數이다. 또한 실업자의 家口特性에 따른 심리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활용된 변수는 家口類型, 家口所得, 가구 내의 就業者數 및 失業者數, 그리고 罹患家口員이 있는지 여부 등 5個이다. 따라서 전체 12個 變數를 통해 실업자 심리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본다.

1. 「不安感」과 관련된 心理狀態 變化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不安感과 관련된 心理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됨’,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음’, 그리고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음’ 등의 네 유형이다. 이들 각각의 심리상태를 실업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가구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의 심리는 남성실업자 보다는 여성실업자가 약간 높았고, 실업자의 연령이 50~59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심리를 가진 실업자가 많았다. 同 感情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실업자에서 가장 낮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상태의 실업자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가구주인 실업자가, 또 이환실업자가 이러한 심리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 臥病과 家長의 責任感이 실업자에게 매우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表 6-2 參照).

〈表 6-2〉 失業者 및 家口特性格別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2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40.2 | 12.3* | 없음 | 43.9 | |
| 여자 | 43.3 | | ~ 19만원 | 46.3 | |
| 연령 | | | 20 ~ 49만원 | 48.3 | 74.4*** |
| ~29 | 27.9 | | 50 ~ 79만원 | 45.8 | |
| 30~39 | 38.3 | 187.2*** | 80 ~ 99만원 | 37.9 | |
| 40~49 | 53.5 | | 100~199만원 | 32.6 | |
| 50~59 | 54.9 | | 200만원 이상 | 30.5 | |
| 60+ | 42.9 | | | | |
| 교육수준 | | | 가구유형 | | |
| 초교 이하 | 56.2 | | 독신가구 | 40.7 | |
| 중학교 | 50.2 | 112.9*** | 부부(+미혼자녀)가구 | 40.8 | 18.0 |
| 고등학교 | 38.1 | | 편부모가구 | 52.2 | |
| 대학 이상 | 32.1 | | 기타가구 | 41.1 | |
| 결혼상태 | | | 취업자수 | | |
| 미혼 | 29.2 | | 없음 | 43.7 | |
| 유배우 | 46.5 | 146.6*** | 1명 | 42.2 | 39.3*** |
| 이혼·별거·사별 | 59.0 | | 2명 이상 | 32.4 | |
| 가구주여부 | | | 실업자수 | | |
| 가구주 | 46.3 | 54.1*** | 1명 | 40.9 | 4.4 |
| 비가구주 | 35.6 | | 2명 이상 | 42.7 | |
| 실업기간 | | | 이환가구여부 | | |
| 5개월 미만 | 36.4 | | 비이환가구 | 36.3 | 60.3*** |
| 6~11개월 | 45.4 | 43.1 | 이환가구 | 49.0 | |
| 12개월 이상 | 47.6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38.2 | 96.6*** | | | |
| 이환자 | 57.7 | | | | |
| 전체 | 41.1 | | 전체 | 41.1 | |

註: * p<.05, ** p<.01, *** p<.001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이라는 심리유형은 실업자의 가구소득, 취업자수, 이환가구원 여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나 가구유형과 실업자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공포감의 정도는 가구소득이 20~49만원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이를 정점으로 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그 정도는 저하하였다. 또한 가구내 취업자가 없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실업자가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으나 片父母家口의 실업자가 이러한 심리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아 缺損家庭의 생계유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공포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실업자는 이혼·사별·별거(59.0%)의 이환실업자(57.7%)로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56.2%) 50대 연령층(54.9%)의 가구주(46.3%)였다. 또한 편부모가구(52.2%)와 가구소득이 20~49만원(48.3%)인 경우의 실업자도 이러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실업자의 65.3%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됨’을 보여주고 있어 대부분의 실업자가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남성실업자 보다는 여성실업자가,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많이 나타나며 특히 50~59세 연령층의 실업자는 무려 76.3%로 정점에 달하였는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러한 심리의 발현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업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상태인 실업자에서,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인 실업자에서, 그리고 비이환실업자보다는 이환실업자에서 同 感情이 많이 나타났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실업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表 6-3 參照).

〈表 6-3〉 失業者 特性別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안됨’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2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64.7 | 12.0* | 없음 | 66.9 | |
| 여자 | 66.6 | | ~ 19만원 | 70.4 | |
| 연령 | | | 20 ~ 49만원 | 72.3 | 114.2*** |
| ~29 | 54.7 | | 50 ~ 79만원 | 70.4 | |
| 30~39 | 53.3 | 173.6*** | 80 ~ 99만원 | 65.4 | |
| 40~49 | 75.2 | | 100~199만원 | 57.5 | |
| 50~59 | 76.3 | | 200만원 이상 | 47.5 | |
| 60+ | 65.5 | | 가구유형 | | |
| 교육수준 | | | 독신가구 | 65.0 | |
| 초교 이하 | 76.8 | | 부부(+미혼자녀)가구 | 65.9 | 39.2*** |
| 중학교 | 74.9 | 111.7*** | 편부모가구 | 79.0 | |
| 고등학교 | 62.6 | | 기타가구 | 64.3 | |
| 대학 이상 | 57.2 | | 취업자수 | | |
| 결혼상태 | | | 없음 | 67.0 | 47.4*** |
| 미혼 | 55.9 | 133.9*** | 1명 | 66.7 | |
| 유배우 | 69.6 | | 2명 이상 | 57.7 | |
| 이혼·별거·사별 | 78.4 | | 실업자수 | | |
| 가구주여부 | | | 1명 | 64.5 | 5.3 |
| 가구주 | 69.7 | 55.4*** | 2명 이상 | 68.5 | |
| 비가구주 | 60.5 | | 이환가구여부 | | |
| 실업기간 | | | 비이환가구 | 60.0 | 96.3*** |
| 5개월 미만 | 63.6 | 12.0 | 이환가구 | 74.0 | |
| 6~11개월 | 68.6 | | | | |
| 12개월 이상 | 66.7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62.2 | 139.8*** | | | |
| 이환자 | 83.0 | | | | |
| 전체 | 65.3 | | 전체 | 65.3 | |

註: * p<.05, ** p<.01, *** p<.00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됨’의 심리상태는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가구유형, 총소득, 취업자수, 이환가구원 여부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상태에 있는 실업자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의 심리상태를 보이는 실업자 특성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 실업자의 가구소득이 20~49만원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이를 정점으로 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저하하였다. 또한 同 心理狀態의 비율은 편부모가구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독신가구에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가구내 취업자가 적을수록, 실업자가 많을수록,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일수록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실업자 계층을 정리하자면, 이환실업자(83.0%), 40~50대 연령층(75.2~76.3%),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76.8~74.9%), 배우자가 없는(78.4%) 가구주(69.7%)였다. 또한 편부모 가구에서 가장 높은 79.0%를 나타내었고, 가구소득이 20~49만원인 경우에서 72.3%,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경우에서 74.0%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음’이라는 심리유형을 보이는 실업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실업자 보다는 여성실업자에서 이러한 감정상태가 많이 나타나고, 실업자의 연령이 50~59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이환자보다는 이환자인 실업자에서,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 상태에 있는 실업자에서,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인 실업자에서, 그리고 실업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表 6-4 參照).

〈表 6-4〉 失業者 特性別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음’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2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43.6 | 28.4*** | 없음 | 50.4 | 127.3*** |
| 여자 | 51.6 | | ~ 19만원 | 48.5 | |
| 연령 | | 238.6*** | 20 ~ 49만원 | 53.2 | |
| ~ 29 | 31.2 | | 50 ~ 79만원 | 49.9 | |
| 30 ~ 39 | 47.0 | | 80 ~ 99만원 | 39.3 | |
| 40 ~ 49 | 56.3 | | 100 ~ 199만원 | 40.1 | |
| 50 ~ 59 | 60.2 | | 200만원 이상 | 30.7 | |
| 60+ | 51.5 | | | | |
| 교육수준 | | | 가구유형 | | |
| 초교 이하 | 63.1 | 131.5*** | 독신가구 | 52.2 | 31.4** |
| 중학교 | 53.3 | | 부부(+미혼자녀)가구 | 45.2 | |
| 고등학교 | 42.5 | | 편부모가구 | 56.9 | |
| 대학 이상 | 38.3 | | 기타가구 | 36.1 | |
| 결혼상태 | | | 취업자수 | | |
| 미혼 | 33.6 | 171.2*** | 없음 | 48.3 | 46.5*** |
| 유배우 | 51.4 | | 1명 | 48.0 | |
| 이혼·별거·사별 | 67.4 | | 2명 이상 | 37.0 | |
| 가구주여부 | | | 실업자수 | | |
| 가구주 | 50.7 | 48.3*** | 1명 | 45.4 | 4.2 |
| 비가구주 | 41.3 | | 2명 이상 | 48.7 | |
| 실업기간 | | | 이환가구여부 | | |
| 5개월 미만 | 43.1 | 38.9*** | 비이환가구 | 43.1 | 57.0*** |
| 6~11개월 | 49.1 | | 이환가구 | 51.4 | |
| 12개월 이상 | 54.7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43.6 | 123.9*** | | | |
| 이환자 | 60.9 | | | | |
| 전체 | 46.2 | | 전체 | 46.2 | |

註: * p<.05, ** p<.01, *** p<.001

同 心理狀態는 가구소득, 가구유형, 취업자수 및 이환가구 여부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으나 실업자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심리상태는 가구소득이 79만원 이하인 실업자에서 많이 나타났다으며, 특히 20~49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실업자에게서 가장 현저하였다. 또한 실업자의 가구유형이 편부모 가구와 독신가구일 때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원 중 취업자가 1명 이하인 경우가 2명 이상의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이러한 심리변화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계층을 살펴보면, 이혼·별거·사별상태(67.4%)의 초등학교 학력수준(63.1%)에 불과한 이환상태(60.9%)의 50대(60.2%) 연령층 실업자들이었다. 여성가구주 실업자(51.6%)와 1년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54.7%)에서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20~49만원 이하(53.2%)의 편부모가구(56.9%)에 사는, 취업자가 없거나(48.3%) 실업자가 2명 이상(48.7%)인, 이환가구원이 있는(51.4%) 가구의 실업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음’의 심리상태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과 관련된 마지막 심리유형인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은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음’과 마찬가지로 실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모두가 유의미함을 보였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경우는 50~59세가 될 때까지는 실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상태인 실업자에서,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 실업자에서, 실업기간이 6~11개월인 경우, 그리고 비이환자보다는 이환실업자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다른 심리유형과는 달리 남성실업자가 여성실업자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심리적 변화를 좀 더 많이 나타냈다(表 6-5 參照).

〈表 6-5〉 失業者 特性別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2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42.6 | 13.7* | 없음 | 44.1 | |
| 여자 | 41.5 | | ~ 19만원 | 49.5 | |
| 연령 | | | 20 ~ 49만원 | 48.4 | 125.9*** |
| ~ 29 | 28.5 | | 50 ~ 79만원 | 47.9 | |
| 30 ~ 39 | 38.4 | 233.1*** | 80 ~ 99만원 | 42.2 | |
| 40 ~ 49 | 54.6 | | 100 ~ 199만원 | 33.4 | |
| 50 ~ 59 | 55.4 | | 200만원 이상 | 24.1 | |
| 60+ | 50.2 | | 가구유형 | | |
| 교육수준 | | | 독신가구 | 48.1 | |
| 초교 이하 | 62.4 | | 부부(+미혼자녀)가구 | 41.3 | 25.2* |
| 중학교 | 52.0 | 173.9*** | 편부모가구 | 53.8 | |
| 고등학교 | 38.7 | | 기타가구 | 41.7 | |
| 대학 이상 | 29.6 | | 취업자수 | | |
| 결혼상태 | | | 없음 | 46.1 | |
| 미혼 | 31.6 | 134.8*** | 1명 | 40.7 | 46.6*** |
| 유배우 | 46.4 | | 2명 이상 | 35.8 | |
| 이혼·별거·사별 | 62.1 | | 실업자수 | | |
| 가구주여부 | | | 1명 | 41.0 | 11.3** |
| 가구주 | 48.2 | 89.1*** | 2명 이상 | 46.4 | |
| 비가구주 | 35.5 | | 이환가구여부 | | |
| 실업기간 | | | 비이환가구 | 37.7 | 53.4*** |
| 5개월 미만 | 38.6 | 31.9*** | 이환가구 | 49.4 | |
| 6 ~ 11개월 | 47.5 | | | | |
| 12개월 이상 | 45.6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39.2 | 96.8*** | | | |
| 이환자 | 58.2 | | | | |
| 전체 | 42.2 | | 전체 | 42.2 | |

실업자의 가구특성을 따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동 심리 수준이 높았는데, 가구소득이 49만원 이하인 실업자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2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을지라

도 이들 가구의 실업자 24.1%가 동 심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실업은 실직자본인의 심리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편부모가구와 독인가구의 실업자가, 취업자수가 없거나 적은 가구, 또는 실업자수가 많은 가구의 실업당사자가 더 안절부절못하며, 특히 가구내 이환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심리상태가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가장 많이 보이는 계층을 제시하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실업자(62.4%), 이혼·별거·사별상태의 실업자(62.1%), 이환실업자(58.2%), 50대 연령층의 실업자(55.4%) 등이며, 이들 계층보다는 다소 낮으나 남성실업자(42.6%), 가구주인 경우(48.2%), 실업기간이 6~11개월인 실업자(47.5%)도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다소 높았다. 아울러 가구소득이 19만원 이하인 실업자(49.5%), 편부모가구 실업자(53.8%),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실업자(46.1%), 실업자가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46.4%),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실업자(49.4%)가 동 심리상태에 많이 있었다.

2. 「敵對感」과 관련된 心理狀態 變化

敵對感과 관련된 많은 심리적 변화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 그리고 ‘잘 다툼’ 등의 네 유형이다. 먼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실업자는 조사대상의 59.3%였는데, 실업자의 性を 제외하고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모두에 대하여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경우는 남성실업자보다는 여성실업자에서 더 많았다. 동 심리는 실업자의 연령이 29세 이하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59세에서는 절정을 보였으며, 60세 이상 연

령층에서는 다소 저하되었다. 실업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이상(51.7%)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이러한 심리변화를 보이는 실업자는 점차 증가하여 초등학교 학력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상태인 실업자에서,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인 실업자에서, 실업기간이 6~11개월인 경우, 그리고 비이환자보다는 이환자인 실업자에서 同 感情이 많이 나타났다(表 6-6 參照).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의 심리상태를 가진 실업자는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20~49만원과 50~79만원대의 가구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상당히 많았다. 또한 편부모가구, 취업자가 없는 가구, 실업자가 많은 가구,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 등의 실업자가 이러한 심리를 많이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변화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계층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력수준(66.9%), 50대 연령층(66.5%), 이혼·별거·사별상태(63.8%), 여성실업자(60.8%), 가구주(61.5%), 실업기간이 6~11개월(65.1%)인 이환실업자(71.6%)들이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1~19만원(68.9%), 편부모가구(66.8%), 취업자가 없는(62.2%), 실업자가 2명 이상(60.9%), 이환가구원이 있는(66.1%) 가구의 실업자가 동 심리를 많이 갖고 있었다.

〈表 6-6〉 失業者 特性別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2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58.6 | 7.7 | 없음 | 61.4 | |
| 여자 | 60.8 | | ~ 19만원 | 68.9 | |
| 연령 | | | 20 ~ 49만원 | 67.1 | 92.8*** |
| ~29 | 54.8 | | 50 ~ 79만원 | 64.8 | |
| 30~39 | 56.3 | 81.9*** | 80 ~ 99만원 | 54.8 | |
| 40~49 | 64.6 | | 100~199만원 | 52.6 | |
| 50~59 | 66.5 | | 200만원 이상 | 42.7 | |
| 60+ | 56.9 | | 가구유형 | | |
| 교육수준 | | | 독신가구 | 58.0 | |
| 초교 이하 | 66.9 | 55.5*** | 부부(+미혼자녀)가구 | 56.8 | 26.9* |
| 중학교 | 65.4 | | 편부모가구 | 66.8 | |
| 고등학교 | 58.9 | | 기타가구 | 61.7 | |
| 대학 이상 | 51.7 | | 취업자수 | | |
| 결혼상태 | | | 없음 | 62.2 | 39.4*** |
| 미혼 | 53.6 | 59.4*** | 1명 | 60.3 | |
| 유배우 | 62.4 | | 2명 이상 | 50.2 | |
| 이혼·별거·사별 | 63.8 | | 실업자수 | | |
| 가구주여부 | | | 1명 | 58.5 | 11.0* |
| 가구주 | 61.5 | 26.4*** | 2명 이상 | 60.9 | |
| 비가구주 | 56.8 | | 이환가구여부 | | |
| 실업기간 | | | 비이환가구 | 55.2 | 62.7*** |
| 5개월 미만 | 54.1 | 49.4*** | 이환가구 | 66.1 | |
| 6~11개월 | 65.1 | | | | |
| 12개월 이상 | 64.9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57.2 | 82.5*** | | | |
| 이환자 | 71.6 | | | | |
| 전체 | 59.3 | | 전체 | 59.3 | |

註: *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敵對感과 관련된 두 번째 심리유형인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은 매우 破壞的인 심리상태이

다. 이러한 심리를 보이는 실업자는 다행히 다른 유형의 심리보다는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인 21.5%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동 심리상태가 가족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비율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어 실업자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접근과 효율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우선 남성실업자에서 이러한 심리상태가 많았다. 또한 실업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40~49세에서 절정을 보였으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다소 저하되었다. 중학교 학력을 가진 배우자 있는 실업자, 가구주인 실업자, 이환실업자에서, 그리고 실업기간이 길수록 동 심리가 많이 나타났다(表 6-7 參照).

이러한 심리상태는 가구소득이 1~79만원인 경우의 실업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보다는 취업자가 전혀 없는 가구의 실업자,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없는 가구보다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신가구, 부부가구, 편부모가구 등의 가구유형 및 실업자수는 동 심리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심리유형에서처럼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상태에 있는 실업자도 다소 있어 실업당사자의 심리상태는 다른 가족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처지에 의해서 보다 많이 좌우됨을 보여주었다.

정리하면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의 심리상태가 높은 계층은 남성실직자(25.0%), 40대 연령층(25.2%), 중학교 학력수준(29.4%), 유배우 상태(22.6%), 가구주(24.7%), 1년 이상 실업하고 있는(26.2%) 이환실업자(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1~19만원인 실업자(27.9%), 독신가구 실업자(26.7%), 취업자가 없거나(23.6%)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25.4%)의 실업자가 동 심리를 많이 갖고 있었다.

〈表 6-7〉 失業者 特性別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총동이 생김’의 心理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2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25.0 | 67.5*** | 없음 | 23.1 | |
| 여자 | 14.3 | | ~ 19만원 | 27.9 | |
| 연령 | | | 20 ~ 49만원 | 25.0 | 73.2*** |
| ~29 | 18.8 | | 50 ~ 79만원 | 24.5 | |
| 30~39 | 21.5 | 47.6*** | 80 ~ 99만원 | 12.6 | |
| 40~49 | 25.2 | | 100~199만원 | 17.0 | |
| 50~59 | 22.9 | | 200만원 이상 | 15.3 | |
| 60+ | 18.3 | | | | |
| 교육수준 | | | 가구유형 | | |
| 초교 이하 | 23.0 | | 독신가구 | 26.7 | |
| 중학교 | 29.4 | 27.1* | 부부(+미혼자녀)가구 | 20.0 | 17.3 |
| 고등학교 | 23.2 | | 편부모가구 | 25.4 | |
| 대학 이상 | 15.9 | | 기타가구 | 22.1 | |
| 결혼상태 | | | 취업자수 | | |
| 미혼 | 20.1 | 22.5* | 없음 | 23.6 | 29.9*** |
| 유배우 | 22.6 | | 1명 | 19.5 | |
| 이혼·별거·사별 | 19.9 | | 2명 이상 | 21.1 | |
| 가구주여부 | | | 실업자수 | | |
| 가구주 | 24.7 | 38.0*** | 1명 | 22.0 | 4.8 |
| 비가구주 | 17.8 | | 2명 이상 | 18.7 | |
| 실업기간 | | | 이환가구여부 | | |
| 5개월 미만 | 16.6 | 42.4*** | 비이환가구 | 19.1 | 33.5*** |
| 6~11개월 | 24.9 | | 이환가구 | 25.4 | |
| 12개월 이상 | 26.2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20.3 | 42.6*** | | | |
| 이환자 | 28.1 | | | | |
| 전체 | 21.5 | | 전체 | 21.5 | |

註: * p<.05, ** p<.01, *** p<.001

敵對感과 관련된 심리상태인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을 보이는 실업자는 47.3%였다. 이 심리상태에 대해 실업자의 性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없었으나 그 외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에 의해서는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자의 연령이 50~59세가 될 때까지 이러한 심리상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상태인 실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인 실업자가, 실업기간이 길수록, 비이환자보다는 이환자인 실업자가 同 心理狀態에 많이 있어 다른 심리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表 6-8 參照).

가구특성별로 보면 실업가구의 소득, 취업자수, 이환가구원 유무 등에 의하여는 영향을 받으나 가구유형과 실업자수에 의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즉, 가구총소득이 1~79만원 이하인 가구의 실업자, 취업자가 전혀 없거나 1명인 가구의 실업자,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가 이러한 심리를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많이 가진 계층을 정리하자면, 이환실업자(60.8%), 이혼·별거·사별상태의 실업자(59.8%), 초등학교 학력수준의 실업자(56.6%), 50대 연령층(56.1%)의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53.0%), 그리고 가구주인 실업자(52.3%)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1~19만원인 실업자(53.0%), 편부모가구의 실업자(61.3%), 취업자가 전혀 없는 가구의 실업자(50.1%),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53.6%)가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의 심리변화를 많이 보인다.

〈表 6-8〉 失業者 特性別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2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48.1 | 6.0 | 없음 | 51.3 | |
| 여자 | 45.7 | | ~ 19만원 | 53.0 | |
| 연령 | | | 20 ~ 49만원 | 50.3 | 78.6*** |
| ~29 | 36.0 | | 50 ~ 79만원 | 51.0 | |
| 30~39 | 48.6 | 136.2*** | 80 ~ 99만원 | 46.2 | |
| 40~49 | 55.7 | | 100~199만원 | 40.3 | |
| 50~59 | 56.1 | | 200만원 이상 | 32.1 | |
| 60+ | 48.0 | | | | |
| 교육수준 | | | 가구유형 | | |
| 초교 이하 | 56.6 | | 독신가구 | 50.7 | |
| 중학교 | 53.2 | 62.9*** | 부부(+미혼자녀)가구 | 45.3 | 20.1 |
| 고등학교 | 47.0 | | 편부모가구 | 61.3 | |
| 대학 이상 | 37.9 | | 기타가구 | 48.1 | |
| 결혼상태 | | | 취업자수 | | |
| 미혼 | 37.7 | | 없음 | 50.1 | 38.6*** |
| 유배우 | 51.8 | 93.8*** | 1명 | 46.3 | |
| 이혼·별거·사별 | 59.8 | | 2명 이상 | 42.6 | |
| 가구주여부 | | | 실업자수 | | |
| 가구주 | 52.3 | 52.1*** | 1명 | 47.0 | 4.2 |
| 비가구주 | 41.8 | | 2명 이상 | 47.3 | |
| 실업기간 | | | 이환가구여부 | | |
| 5개월 미만 | 44.4 | | 비이환가구 | 43.3 | 47.2*** |
| 6~11개월 | 50.2 | 28.5** | 이환가구 | 53.6 | |
| 12개월 이상 | 53.0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44.9 | 74.4*** | | | |
| 이환자 | 60.8 | | | | |
| 전체 | 47.3 | | 전체 | 47.3 | |

註: *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 분류한 敵對感의 한 유형인 ‘잘 다툼’의 심리상태에 있는 실업자는 다른 유형의 심리상태보다는 상당히 낮은 25.1%를 보여 실질적으로 인한 도전적 태도의 형성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가 대량실직사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된 결과로서, 실업자 개인의 실업기간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이러한 유형의 심리상태는 실업자의 性을 제외한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받아서 우선, 타인과 잘 다투게 되는 경향은 40대 연령층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50대부터는 다소 저하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대학 미만의 학력수준을 가진 실업자의 약 25~29%가 이러한 심리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실업자의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우보다는 기혼인 경우,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인 실업자에서, 6~11개월의 실업기간을 가진 이환실업자에서 잘 다투는 경향이 있었다(表 6-9 參照).

실업자의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비교적 낮은, 편부모 가구의 실업자에서 잘 다투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그러한 경향은 家口內 취업자수와는 반비례, 실업자수와는 비례해서 나타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잘 다투는 경향에 있는 실업자는 이환실업자(32.7%)이며 40대 연령층(30.0%)의 6~11개월의 실직기간(29.3%)을 가진 유배우(28.3%) 가구주(27.4%) 실업자이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20~49만원의 가구소득(32.0%)을 가진 편부모가구(40.7%), 그리고 가구 내 취업자가 없거나(28.3%), 실업자가 2명 이상(30.0%)인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28.3%)의 실업자에서 이러한 심리상태의 발생 비율이 특히 높았다.

〈表 6-9〉 失業者 特性別 ‘잘 다툼’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2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25.6 | 9.1 | 없음 | 26.7 | |
| 여자 | 24.2 | | ~ 19만원 | 26.4 | |
| 연령 | | | 20 ~ 49만원 | 32.0 | 74.1*** |
| ~29 | 20.3 | | 50 ~ 79만원 | 28.8 | |
| 30~39 | 26.7 | 64.2*** | 80 ~ 99만원 | 21.5 | |
| 40~49 | 30.0 | | 100~199만원 | 17.7 | |
| 50~59 | 25.8 | | 200만원 이상 | 14.7 | |
| 60+ | 24.5 | | 가구유형 | | |
| 교육수준 | | | 독신가구 | 25.9 | |
| 초교 이하 | 28.7 | 42.6*** | 부부(+미혼자녀)가구 | 24.4 | 34.1*** |
| 중학교 | 25.8 | | 편부모가구 | 40.7 | |
| 고등학교 | 27.6 | | 기타가구 | 25.1 | |
| 대학 이상 | 17.3 | | 취업자수 | | |
| 결혼상태 | | | 없음 | 28.3 | 46.6*** |
| 미혼 | 19.7 | 64.8*** | 1명 | 24.2 | |
| 유배우 | 28.3 | | 2명 이상 | 19.4 | |
| 이혼·별거·사별 | 27.7 | | 실업자수 | | |
| 가구주여부 | | | 1명 | 24.2 | 17.3*** |
| 가구주 | 27.4 | 21.0*** | 2명 이상 | 30.0 | |
| 비가구주 | 22.8 | | 이환가구여부 | | |
| 실업기간 | | | 비이환가구 | 23.2 | 31.3*** |
| 5개월 미만 | 22.1 | 27.0** | 이환가구 | 28.3 | |
| 6~11개월 | 29.3 | | | | |
| 12개월 이상 | 25.7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23.7 | 35.5*** | | | |
| 이환자 | 32.7 | | | | |
| 전체 | 25.1 | | 전체 | 25.1 | |

註: * p<.05, ** p<.01, *** p<.001

3. 「憂鬱感」과 관련된 心理狀態 變化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優越感과 관련된 심리상태는 ‘매사가

힘듦’, ‘허무한 느낌이 듦’, ‘외로움’, 그리고 ‘죽고 싶은 기분임’ 등의 네 가지 유형이다. 먼저 ‘매사가 힘듦’의 심리상태를 보이는 실업자를 보면 본 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7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모두에 의하여 有意함을 보였다. 즉, 이러한 심리상태는 여성실업자보다는 남성실업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연령이 50~59세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혼실업자보다는 기혼실업자에서, 유배우자 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 상태의 실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인 실업자가, 실업기간이 길수록, 비이환자 보다는 이환자인 실업자가 同 感情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심리변화를 많이 가진 계층은 이혼·별거·사별을 한 실업자가 80.4%로 가장 높았으며, 이환실업자가 78.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40~50대의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의 실업가구주도 동 심리상태에 많이 있었다(表 6-10 參照).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비교적 낮은 가구, 그리고 편부모가구의 실업자가 많았으며, 독신가구의 실업자도 비교적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동 심리상태는 취업자수와는 반비례, 실업자수와는 비례하여 나타났으며,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가 이러한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매사가 힘든’상태에 있는 실업자 및 그 가구 특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경우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혼·별거·사별상태(80.4%)의, 초등학교 정도의 낮은 교육수준(79.3%)을 가진 이환실업자(78.2%), 그리고 50대 연령층(74.5%)의, 1년 이상 실직(68.8%)한 남성 가구주(68.6%)에서 동 심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19만원 이하의 소득(72.2%)을 가진 편부모가구(73.4%), 취업자가 전혀 없거나(66.9%), 실업자가 2명 이상인(66.2%),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68.6%)

의 실업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表 6-10〉 失業者 特性別 ‘매사가 힘들’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 ²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 ²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68.6 | 84.3*** | 없음 | 65.4 | |
| 여자 | 54.3 | | ~ 19만원 | 72.2 | |
| 연령 | | | 20 ~ 49만원 | 69.9 | 181.2*** |
| ~29 | 56.9 | | 50 ~ 79만원 | 69.2 | |
| 30~39 | 61.0 | 223.5*** | 80 ~ 99만원 | 62.8 | |
| 40~49 | 73.2 | | 100~199만원 | 51.0 | |
| 50~59 | 74.5 | | 200만원 이상 | 32.9 | |
| 60+ | 71.7 | | 가구유형 | | |
| 교육수준 | | | 독신가구 | 64.3 | |
| 초교 이하 | 79.3 | 191.5*** | 부부(+미혼자녀)가구 | 59.0 | 30.0* |
| 중학교 | 76.0 | | 편부모가구 | 73.4 | |
| 고등학교 | 58.9 | | 기타가구 | 63.6 | |
| 대학 이상 | 47.5 | | 취업자수 | | |
| 결혼상태 | | | 없음 | 66.9 | |
| 미혼 | 48.8 | 179.7*** | 1명 | 61.0 | 71.4*** |
| 유배우 | 67.7 | | 2명 이상 | 51.3 | |
| 이혼·별거·사별 | 80.4 | | 실업자수 | | |
| 가구주여부 | | | 1명 | 60.5 | 9.5# |
| 가구주 | 68.6 | 84.3 | 2명 이상 | 66.2 | |
| 비가구주 | 54.3 | | 이환가구여부 | | |
| 실업기간 | | | 비이환가구 | 57.6 | 60.8*** |
| 5개월 미만 | 57.7 | 33.9*** | 이환가구 | 68.6 | |
| 6~11개월 | 66.7 | | | | |
| 12개월 이상 | 68.8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58.9 | 84.7*** | | | |
| 이환자 | 78.2 | | | | |
| 전체 | 61.8 | | 전체 | 61.8 | |

註: # p<.1, * p<.05, ** p<.01, *** p<.001

〈表 6-11〉 失業者 特性別 ‘허무한 느낌이 듦’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2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2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58.2 | 12.8* | 없음 | 60.6 | |
| 여자 | 61.3 | | ~ 19만원 | 64.0 | |
| 연령 | | | 20 ~ 49만원 | 65.5 | 67.1*** |
| ~ 29 | 49.2 | | 50 ~ 79만원 | 63.5 | |
| 30 ~ 39 | 56.7 | 162.5*** | 80 ~ 99만원 | 61.4 | |
| 40 ~ 49 | 66.7 | | 100 ~ 199만원 | 52.1 | |
| 50 ~ 59 | 70.8 | | 200만원 이상 | 52.5 | |
| 60+ | 68.5 | | | | |
| 교육수준 | | | 가구유형 | | |
| 초교 이하 | 68.1 | | 독신가구 | 68.6 | |
| 중학교 | 69.1 | 87.4*** | 부부(+미혼자녀)가구 | 55.7 | 36.9*** |
| 고등학교 | 57.6 | | 편부모가구 | 66.4 | |
| 대학 이상 | 51.1 | | 기타가구 | 61.4 | |
| 결혼상태 | | | 취업자수 | | |
| 미혼 | 50.5 | | 없음 | 60.8 | 30.2*** |
| 유배우 | 62.4 | 115.0*** | 1명 | 59.5 | |
| 이혼·별거·사별 | 77.9 | | 2명 이상 | 55.2 | |
| 가구주여부 | | | 실업자수 | | |
| 가구주 | 64.9 | 71.7*** | 1명 | 58.9 | 2.8 |
| 비가구주 | 53.1 | | 2명 이상 | 60.7 | |
| 실업기간 | | | 이환가구여부 | | |
| 5개월 미만 | 57.3 | | 비이환가구 | 55.2 | 68.7*** |
| 6 ~ 11개월 | 62.8 | 26.4** | 이환가구 | 66.1 | |
| 12개월 이상 | 64.2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56.8 | 79.5*** | | | |
| 이환자 | 73.6 | | | | |
| 전체 | 59.3 | | 전체 | 59.3 | |

註: * p<.05, ** p<.01, *** p<.001

憂鬱感을 잘 보여주는 지표인 ‘허무한 느낌이 듦’의 심리상태에 있는 실업자는 조사대상의 59.3%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 유의하였다. 동 심리상

태는 남성실업자보다는 여성실업자에서 더 높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50대 이상 연령층의 실업자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실업자가 허무한 느낌을 가장 많이 나타내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에서 5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혼실업자 및 유배우 실업자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상태의 실업자가 허무한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비가구주 보다는 가구주인 실업자, 그리고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이환실업자가 同 感情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소득, 가구유형, 취업자수, 이환가구원 유무 등이 동 심리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으며 실업자수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20~49만원인 가구의 실업자, 독신가구 및 편부모가구의 실업자, 가구 내 취업자가 적은 실업자,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가 허무한 느낌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및 가구특성별 변수를 따라 허무한 느낌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계층을 정리하면 여성실업자(61.3%), 50대 연령층의 실업자(70.8%), 중학교 교육수준을 가진 실업자(69.1%), 이혼·별거·사별상태의 실업자(77.9%), 가구주인 실업자(64.9%),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64.2%), 그리고 이환자인 실업자(73.6%)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20~49만원인 실업자(65.5%), 독신가구의 실업자(68.6%), 취업자가 전혀 없는 가구의 실업자(60.8%),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66.1%)가 허무한 느낌을 많이 나타낸다.

‘외로움’을 느끼는 실업자는 조사대상의 39.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감정은 실업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실업기간, 이환여부 등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업자의 연령이 상승할

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혼실업자보다는 유배우 실업자가, 유배우 실업자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실업자가,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 실업자가, 실업기간이 6~11개월인 실업자가, 그리고 비이환 실업자보다는 이환 실업자가 同 感情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表 6-12 參照).

〈表 6-12〉 失業者 特性別 ‘외로움’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 ²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 ²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39.8 | 14.0* | 없음 | 43.9 | |
| 여자 | 39.6 | | ~ 19만원 | 46.1 | |
| 연령 | | | 20 ~ 49만원 | 42.6 | 71.7*** |
| ~29 | 30.9 | | 50 ~ 79만원 | 42.9 | |
| 30~39 | 36.2 | 129.8*** | 80 ~ 99만원 | 35.2 | |
| 40~49 | 46.8 | | 100~199만원 | 32.9 | |
| 50~59 | 50.2 | | 200만원 이상 | 29.2 | |
| 60+ | 49.3 | | 가구유형 | | |
| 교육수준 | | | 독신가구 | 59.5 | |
| 초교 이하 | 49.4 | 77.8*** | 부부(+미혼자녀)가구 | 36.6 | 80.2*** |
| 중학교 | 49.5 | | 편부모가구 | 60.0 | |
| 고등학교 | 37.1 | | 기타가구 | 39.5 | |
| 대학 이상 | 33.0 | | 취업자수 | | |
| 결혼상태 | | | 없음 | 42.4 | 23.8* |
| 미혼 | 34.8 | 116.1*** | 1명 | 38.7 | |
| 유배우 | 39.6 | | 2명 이상 | 35.4 | |
| 이혼·별거·사별 | 64.8 | | 실업자수 | | |
| 가구주여부 | | | 1명 | 39.9 | 3.2 |
| 가구주 | 45.0 | 61.1*** | 2명 이상 | 39.4 | |
| 비가구주 | 34.1 | | 이환가구여부 | | |
| 실업기간 | | | 비이환가구 | 35.8 | 59.6*** |
| 5개월 미만 | 37.3 | 29.7*** | 이환가구 | 46.0 | |
| 6~11개월 | 42.8 | | | | |
| 12개월 이상 | 40.7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37.2 | 94.4*** | | | |
| 이환자 | 53.9 | | | | |
| 전체 | 39.7 | | 전체 | 39.7 | |

註: * p<.05, ** p<.01, *** p<.001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1~19만원인 가구의 실업자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심리상태는 감소하였다. 외로움은 편부모가구와 독신가구의 실업자가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등의 실업자는 비교적 외로움을 적게 느꼈다. 또한 취업자수가 적을수록, 이환자가 있는 가구일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실업자가 많았다. 그러나 가구 내 실업자수는 통계적으로 외로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실업자 계층을 정리하면 50~59세 연령층의 실업자(50.2%),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실업자(49.4~49.5%), 이혼·별거·사별상태의 실업자(64.8%), 가구주인 실업자(45.0%), 6~11개월 동안 실직상태인 실업자(42.8%), 이환실업자(53.9%) 등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1~19만원인 가구의 실업자(46.1%), 편부모가구의 실업자(60.0%)와 독신가구의 실업자(59.5%), 취업자가 전혀 없는 가구의 실업자(42.4%), 그리고 가구원 중 이환자가 있는 가구의 실업자(46.0%) 등이 비교적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실업자의 심리상태 중에서 가장 염려되는 '죽고 싶은 기분임'을 느끼고 있는 실업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19.2%로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다. 동 심리상태는 실업자의性に 의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실업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여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후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업자의 교육수준과 '죽고 싶다'는 感情은 반비례하였는데, 대학 이상 학력의 실업자가 12.3%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수준의 실업자에서 가장 높았다. 미혼인 실업자는 가족부양부담이 적기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진 비율은 가장 낮은 12.4%였던 반면 배우자가 없는 이혼·별거·사별상태의 실업자는 무려 41.1%나 되어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비가구주 실업자보다는 가구주인 실업자가 이러한 심리상태에 많이 있어 가구주로서 직업

을 갖지 못한테 대한 자책감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실업기간과 죽고 싶은 심정의 수준은 정비례하였으며, 이환실업자는 비이환자의 2배 이상이나 이러한 심리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어 이환실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함을 보여준다(表 6-13 參照).

〈表 6-13〉 失業者 特性別 ‘죽고 싶은 기분임’의 心理狀態 水準
(단위: %)

| 실업자 특성 | 비율 | χ ² | 실업자 가구특성 | 비율 | χ ² |
|----------|------|----------------|-------------|------|----------------|
| 성 | | | 가구총소득 | | |
| 남자 | 18.8 | 4.8 | 없음 | 25.0 | 118.0*** |
| 여자 | 19.4 | | ~ 19만원 | 29.6 | |
| 연령 | | | 20 ~ 49만원 | 32.2 | |
| ~ 29 | 12.3 | 133.2*** | 50 ~ 79만원 | 21.9 | |
| 30 ~ 39 | 17.5 | | 80 ~ 99만원 | 13.0 | |
| 40 ~ 49 | 25.2 | | 100 ~ 199만원 | 10.7 | |
| 50 ~ 59 | 25.7 | | 200만원 이상 | 9.0 | |
| 60+ | 21.3 | | | | |
| 교육수준 | | | 가구유형 | | |
| 초교 이하 | 25.6 | 19.1*** | 독신가구 | 32.6 | 62.3*** |
| 중학교 | 23.4 | | 부부(+미혼자녀)가구 | 16.9 | |
| 고등학교 | 18.9 | | 편부모가구 | 43.6 | |
| 대학 이상 | 12.3 | | 기타가구 | 18.5 | |
| 결혼상태 | | | 취업자수 | | |
| 미혼 | 12.4 | 121.8*** | 없음 | 23.3 | 47.5*** |
| 유배우 | 20.5 | | 1명 | 16.7 | |
| 이혼·별거·사별 | 41.1 | | 2명 이상 | 14.3 | |
| 가구주여부 | | | 실업자수 | | |
| 가구주 | 23.8 | 75.2*** | 1명 | 19.4 | 4.4 |
| 비가구주 | 13.9 | | 2명 이상 | 18.2 | |
| 실업기간 | | | 이환가구여부 | | |
| 5개월 미만 | 18.0 | 44.5*** | 비이환가구 | 16.0 | 46.1*** |
| 6 ~ 11개월 | 19.8 | | 이환가구 | 24.1 | |
| 12개월 이상 | 24.1 | | | | |
| 이환여부 | | | | | |
| 비이환자 | 16.1 | 110.1*** | | | |
| 이환자 | 35.2 | | | | |
| 전체 | 19.2 | | 전체 | 19.2 | |

註: * p<.05, ** p<.01, *** p<.001

실업가구 특성별로 보면 ‘죽고 싶은 기분’의 심리상태는 가구소득이 20~49만원을 정점으로 증감을 보이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는 가장 낮은 수준인 9.0%만이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편부모가구의 실업자는 ‘죽고 싶은 기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부부 및 미혼자녀 가구의 실업자 16.9%만이 이러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취업자수가 없거나 적을수록, 그리고 이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일수록 ‘죽고 싶다’는 감정을 많이 토로하였다.

‘죽고 싶은 기분’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실업자 계층을 정리하면 여성실업자(19.4%), 50대 연령층의 실업자(25.7%), 초등학교 학력수준의 실업자(25.6%), 배우자와 헤어진 실업자(41.1%), 가구주인 실업자(23.8%),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실업자(24.1%), 이환실업자(35.2%) 등이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20~49만원인 가구의 실업자(32.2%), 편부모가구의 실업자(43.6%), 취업자가 전혀 없는 가구의 실업자(23.3%), 가구원 중 이환자가 있는 가구의 실업자(24.1%)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第 2 節 失業者의 心理狀態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析

실업자들의 心理狀態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要因으로는 실업당사자의 人口社會學的 要因, 家族關聯 要因, 자신의 失業 前 職業, 失業 期間, 失業理由 등 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諸 要因,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의 求職活動, 職業訓練 및 公共勤勞 參與, 失業給與 受給 등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업자의 다양한 심리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1. 要因分析을 위한 變數

가. 從屬變數

요인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앞서 설명된 12 종류의 실업자 심리상태이다. 그런데 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 심리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불안, 적대감 그리고 우울감 각각에 네 가지씩의 심리상태를 통합하였다. 먼저 실업자의 심리적 불안과 관련된 문항은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됨, 가슴이 두근 두근거릴 때가 있음,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음’ 등이고, 적대감과 관련된 문항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 잘 다툼’ 등이며, 그리고 우울을 나타내는 문항에는 ‘매사가 힘들, 억울한 느낌이 듦, 외로움, 죽고 싶은 기분임’ 등으로 하였다.

조사당시의 응답문항은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그럼, 매우 그럼’의 5개 범주 외에도 ‘잘 모르겠음’도 별도의 응답항목이다. 그러나 ‘잘 모르겠음’이라고 한 응답자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들 네 유형의 값은 1~5의範疇에 있게 된다. 따라서 不安感, 敵對感, 憂鬱感 등과 관련된 변수의 전체 합은 각각 4~20 사이에 있다. 따라서 서열변수의 합에 의한 새로운 서열변수가 生成된 것으로 이 값은 연속변수가 아니며 비연속변수이다. 그러나 각 영역에서 활용된 12 가지 유형의 변수 값인 관측치는 대부분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 변화의 정도가 정확한 연속변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값의 크기는 연속변수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表 6-14 參照).

〈表 6-14〉 心理狀態 領域別 心理水準 分布

(단위: %)

| 4개 변수의 합 | 심리상태 영역 | | |
|----------|--------------|--------------|--------------|
| | 불안감 | 적대감 | 우울감 |
| 4 | 4.8 | 4.4 | 5.0 |
| 5 | 0.7 | 1.5 | 0.4 |
| 6 | 1.1 | 2.5 | 1.8 |
| 7 | 3.1 | 4.0 | 3.2 |
| 8 | 9.4 | 11.8 | 9.5 |
| 9 | 4.6 | 5.9 | 4.9 |
| 10 | 6.9 | 10.3 | 7.9 |
| 11 | 4.9 | 7.4 | 7.8 |
| 12 | 9.3 | 11.7 | 11.9 |
| 13 | 8.0 | 9.4 | 9.5 |
| 14 | 10.6 | 9.4 | 11.2 |
| 15 | 8.6 | 5.6 | 6.1 |
| 16 | 15.3 | 8.3 | 9.5 |
| 17 | 3.7 | 2.3 | 4.3 |
| 18 | 2.9 | 2.2 | 2.0 |
| 19 | 1.9 | 1.1 | 1.9 |
| 20 | 4.4 | 2.0 | 3.0 |
| 계(분석건수) | 100.0(2,637) | 100.0(2,678) | 100.0(2,659) |

나. 獨立變數

본 분석을 위해 활용된 독립변수는 모두 25개이다. 失業期間과 週當 平均求職時間은 실제 기간인 個月數와 時間數를 각각 이용하였다.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더미(dummy) 變數化하였다. 즉, 실업자 자신의 책임에 의하여 실직이 된 경우는 0, 직장파산, 폐업, 휴업, 해고 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자신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1로, 그리고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이 약하면 0, 강하면 1로 操作하였다.

정부실업대책 관련변수는 실업급여 수급여부, 실업 후 직업훈련 여부, 공공근로 참여여부 등 3개이다. 이는 모두 더미변수로 操作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경험이 없으면 0,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1로 하였고, 실업 후 직업훈련의 경우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0,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1, 그리고 공공근로 참여 여부는 참여경험이 없으면 0, 현재 참여하고 있으면 1로 하였다.

실업에 따른 가족들의 반응과 관련된 변수는 ‘배우자가 용기를 줌’, ‘배우자 또는 자녀취업’, ‘막막해 함’, ‘자녀들이 부끄럽게 여김’, 그리고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임’ 등 5개이다. 이들은 모두 ‘(매우) 그렇지 않다’는 0, ‘(매우) 그렇다’는 1로 操作되었다. 자신의 실업에 대한 주관적 이유는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 ‘기업의 무능 및 잘못된 경영’, 그리고 ‘정치인의 무능’ 등 모두 4개 변수이다. 이들은 모두 ‘(매우) 그렇지 않다’는 0, ‘(매우) 그렇다’는 1로 操作하였다.

이들 변수 외에도 본 要因分析을 위해서는 실업자 및 그들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9개가 활용되었다. 이 중 가구소득과 연령은 실제 숫자인 千원 및 歲를 사용하였고, 教育水準은 서열화된 값(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학 6, 대학 7, 대학원 8)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변수는 모두 더미화 하였다. 즉, 실업자의 性(남자 0, 여자 1), 가구주 여부(가구주 0, 비가구주 1), 이환자 여부(이환자 0, 비이환자 1), 편부모가구 여부(비편부모 가구 0, 편부모가구 1), 이환가구원 유무(없음 0, 있음 1), 노인가구원 유무(없음 0, 있음 1) 등이다. 이와 같은 독립변수의 操作 내용을 <表 6-15>에 요약, 제시하였다.

〈表 6-15〉 要因分析을 위한 諸 變數의 操作

| 독립변수 | 본 분석을 위한 조작 | |
|--------------------|--|-------------|
| 실업기간 | 실제 기간: 개월 | |
| 주당 평균 구직시간 | 실제 시간: 시간 | |
| 직장을 그만 둔 이유 | 0: 실업자 자신의 귀책사유 1: 타인(회사, 정부)의 귀책사유 | |
|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 | 0: 필요성 작음, 1: 필요성 큼 | |
| 정부실업대책 관련 변수: | | |
| 실업급여 수급 | 0: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 없음 1: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음 | |
| 실업후 직업훈련 | 0: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없음 1: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음 | |
| 공공근로참여 | 0: 공공근로 참여경험 없음 1: 현재 공공근로 참여중 | |
| 실업에 대한 가족반응: | | |
| 배우자가 용기를 줌 | 0: (매우)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 배우자 또는 자녀취업 | 0: (매우)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 막막해 함 | 0: (매우)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 자녀들이 부끄럽게 여김 | 0: (매우)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임 | 0: (매우)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 실업의 이유에 대한 주관적 판단: | | |
|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 | 0: (매우)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 | 0: (매우)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 기업의 무능 및 잘못된 경영 | 0: (매우)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 정치인의 무능 | 0: (매우)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 실업자 및 실업가구 특성: | | |
| 성 | 0: 남자 | 1: 여자 |
| 가구주 여부 | 0: 가구주 | 1: 비가구주 |
| 교육수준 | 2~8의 서열 | |
| 연령 | 실제 연령: 세 | |
| 이환자 여부 | 0: 이환자 | 1: 비이환자 |
| 가구총소득 | 실제 소득: 천원 | |
| 편부모가구 여부 | 0: 비편부모 가구 | 1: 편부모 가구 |
| 이환가구원 유무 | 0: 없음 | 1: 있음 |
| 노인가구원 유무 | 0: 없음 | 1: 있음 |

2. 分析結果

종속변수인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表 6-16>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실업기간,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 실업급여 수급여부, 실업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5개 변수, 실업자의 교육수준, 이환실업자 여부, 가구총소득, 노인가구원 유무 등이었다. 즉,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심리상태는 실업기간이 길수록(불안감 .017, 적대감 .019, 우울감 .013),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이 강한 실업자가(불안감 1.311, 적대감 1.007, 우울감 1.177),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불안감 -.703, 적대감 -.558, 우울감 -.76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자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어떤가가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용기를 주지 않는 경우(불안감 -.322, 적대감 -.372, 우울감 -.776), 실업자 대신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한 경우(불안감 1.049, 적대감 .866, 우울감 .804), 실업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막막해 하는 경우(불안감 1.429, 적대감 1.144, 우울감 1.530), 자녀들이 실업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불안감 .629, 적대감 1.135, 우울감 1.084),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불안감 1.198, 적대감 1.536, 우울감 1.218)에 대해 실업자는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 세 심리유형을 모두 강하게 나타냈다. 또한 실업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실업자(불안감 -.243, 적대감 -.123, 우울감 -.130)와 이환실업자(불안감 -.919, 적대감 -.522, 우울감 -.851), 가구소득이 낮고(불안감 -.002, 적대감 -.003, 우울감 -.003),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불안감 .432, 적대감 .462, 우울감 .692)에서 이러한 심리상태가 보다 많이 나타났다.

<表 6-16> 失業者의 心理狀態에 영향을 주는 要因의 回歸分析

| 변수 | 불안감 | | 적대감 | | 우울감 | |
|-----------------------|--------------------|------|--------------------|------|--------------------|------|
| | b | s.e. | b | s.e. | b | s.e. |
| 절편 | 11.087*** | .685 | 11.034*** | .685 | 10.955*** | .685 |
| 실업기간 | .017** | .006 | .019** | .007 | .013* | .006 |
| 주당 평균 구직시간 | .019*** | .005 | .012* | .005 | .006 | .005 |
| 직장을 그만 둔 이유 | .248 | .164 | .290 [#] | .161 | .337* | .156 |
|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 | 1.311*** | .287 | 1.007*** | .284 | 1.177*** | .274 |
| 정부실업대책 관련 변수: | | | | | | |
| 실업급여 수급 | -.703** | .289 | -.558* | .285 | -.769** | .274 |
| 실업후 직업훈련 | .238 | .311 | .282 | .308 | .245 | .302 |
| 공공근로참여 | -.458 | .613 | -.497 | .599 | -.364 | .578 |
| 실업에 대한 가족반응: | | | | | | |
| 배우자가 용기를 줌 | -.322** | .173 | -.372* | .170 | -.776*** | .165 |
| 배우자 또는 자녀취업 | 1.049*** | .185 | .866*** | .181 | .804*** | .177 |
| 막막해 함 | 1.429*** | .167 | 1.144*** | .164 | 1.530*** | .160 |
| 자녀들이 부끄럽게 여김 | .629 [#] | .346 | 1.135*** | .342 | 1.084*** | .327 |
|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임 | 1.198*** | .268 | 1.536*** | .265 | 1.218*** | .256 |
| 실업의 이유에 대한 주관적 판단: | | | | | | |
|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 | .050 | .197 | .005 | .196 | .597*** | .188 |
|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 | .704*** | .194 | .552** | .191 | .227 | .186 |
| 잘못된 기업경영 | .156 | .180 | .094 | .178 | .045 | .173 |
| 정치인의 무능 | .217 | .202 | .295 | .200 | .446* | .196 |
| 실업자 및 실업가구 특성: | | | | | | |
| 성 | -.031 | .273 | -.605* | .269 | -.109 | .260 |
| 가구주 여부 | -.375 [#] | .211 | -.253 | .208 | -.734*** | .200 |
| 교육수준 | -.243*** | .734 | -.123 [#] | .073 | -.130 [#] | .070 |
| 연령 | .034*** | .009 | -.005 | .009 | .024** | .008 |
| 이혼자 여부 | -.919*** | .263 | -.522* | .260 | -.851*** | .251 |
| 가구총소득 | -.002** | .001 | -.003** | .001 | -.003** | .001 |
| 편부모가구 여부 | .816 | .591 | .925 | .584 | 1.162* | .557 |
| 이혼가구원 유무 | .089 | .124 | .096 | .122 | .094 | .119 |
| 노인가구원 유무 | .432** | .177 | .462** | .174 | .692*** | .169 |
| | R^2 .22 | | R^2 .15 | | R^2 .22 | |
| | Adj. R^2 .21 | | Adj. R^2 .14 | | Adj. R^2 .21 | |
| F | 23.0*** | | 14.2*** | | 22.8*** | |

註: # p<.1, * p<.05, ** p<.01, *** p<.001

세 가지 영역의 심리상태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닐지라도 특정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不安感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위에서 논의된 공통요인 외에도 실업자의 주당 평균구직시간이 길수록(.019), 실업의 이유가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수록(.704), 실업자가 가구주일 때(-.375), 그리고 실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034) 불안감을 높게 나타냈다.

敵對感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들을 보면 실업자의 주당 평균구직시간이 길수록(.012), 직장을 그만 둔 이유가 실업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및 정부의 잘못에 의한 경우라고 생각할수록(.290), 실업의 이유가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내릴수록(.552), 그리고 남성실업자(-.605)에서 적대감을 높게 나타냈다.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요인들은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회사 및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할수록(.337), 실업의 근본이유가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내릴수록(.597), 정치인의 무능에 의하여 실업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록(.446), 그리고 가구주인 실업자(-.734)와 연령이 높은 실업자(.024), 편부모가구의 실업자(1.162)에서 우울감의 심리가 높게 나타났다.

第 3 節 要約 및 示唆點

실업자들은 실업 전·후의 주변환경에 따라 그 격차는 있을지라도 실업으로 인하여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실업은 실업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에게도 많은 感情的 影響을 주게 된다. 실업은 실업자 개인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비행 및 범죄 뿐 아니라 가구원의 가출, 자녀·노인의 유기 및 학대, 가정폭력의 증

가, 자살 등 여러 가지 가족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승권 외 (1998a)의 연구에 따르면, 실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낸다. 즉, 배우자, (손)자녀, 부모 등 주요 가족원에 대해서는 責任感, 罪責感을 가지며,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감을 느끼는 한편, 부모에 대한 원망감도 있어 양면성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실업자가 겪는 심리상태변화는 대부분 家族의 主扶養者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자의 심리상태는 실업이유, 실업기간, 구직시간, 정부정책의 수급여부, 실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의 특성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존연구에서는 중년 이상의 연령층 및 교육수준이 낮은 실업자일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김승권 외, 1998a), 본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실업자를 대하는 가족원들의 태도이다. 배우자가 용기를 주고 있는지, 생활상의 어려움 때문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하였는지, 가족들이 막막해 하거나 실직가구원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지 등 가족관계와 관련되어 실업자는 보다 강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실직자에 대한 다른 가족원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업자가 겪는 감정적 변화는 실업자의 자기 삶에 대한 希望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極的 狀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 家族의 따뜻한 配慮와 전문기관에 의한 相談 및 精神的 治療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家族葛藤, 家出 및 露宿, 家庭暴力 등 家族問題는 가구원 실직을 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하여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승권 외, 1998a).

第 7 章 健康·醫療保護의 變化

失業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실업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실직된 당사자로, 스트레스 및 정신적 질환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져 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실직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가족원과의 감정관계는 책임감 및 죄책감 대 부담감 및 원망감 등 相反된 感情交流가 있어 미묘한 가족관계의 일면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실직자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고통과 더불어 주위 가족으로부터 오는 물질적·정신적 압력은 실직자 및 그들의 가족원으로 하여금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질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실업이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損傷을 들 수 있으며, 또 하나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1999)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는 실업실태조사 결과는 경제위기로 파급된 영향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지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경제위기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 및 의료이용 실태를 단편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실업이 健康·保健醫療에 미치는 영향을 두 단계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실업 후의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의 이용현황 변화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혜택 등을 가구주 특성 및 가구특성 그리고 보건의료관련 변수별로 접근·분석함으로써 가구주의 성, 연령, 가구유형, 가구소득 등에 기초한 계층별로 규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하려는 의사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최근에 발생한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향후 실직을 당하는 모든 계층들이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한편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第 1 節 失業家口의 健康·醫療保護 行態變化

실업이 발생된 후 그로 인하여 파생된 실업자를 비롯하여 가족원의 건강상태 및 의료보호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상태는 실업 후의 2개월 내에 질병발생 여부와 질병유형의 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의료보호생활은 의료기관의 변경여부와 의료기관의 유형변화 및 변경이유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보건 의료서비스 혜택의 변화는 실업 후의 치료상태의 변화와 그 원인,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과 중단이유 등의 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1. 失業 後의 健康狀態 變化

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건강은 사회경제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많은 理論과 文獻을 통하여 밝혀졌다. 실업자 및 그 가족원의 健康喪失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 또 다른 부담과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就業의 障礙要因이 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안 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실업위기를 겪는 사회에서는 실업에 기인된 스트레스는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하는 실업과 질병과의 관계가 199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²⁹⁾. 이 실태조사 결과는 실업은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表 7-1> 및 <表 7-2>를 통하여 이환가구원이 있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실업 이후 2개월간 질병의 발생 여부인 疾病發生率을 가구주 및 가구 특성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주의 성에 따라서는 실업과 질병발생간에는 관련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실업과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가구주의 연령과 질병발생 비율과는 正의 관계를 보였고 실업, 비실업가구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즉,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질병발생 비율은 실업과 비실업가구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30대는 실업, 비실업가구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고, 40대는 실업가구(38.1%)가, 비실업가구(35.8%)보다 질병발생 비율이 높았고, 50대에서는 실업가구(41.2%)보다 비실업가구(47.3%)의 질병발생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질병발생 비율과는 負의 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질병발생 비율이 높았는데, 가구주가 초등학교

29)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이환가구원 중에서 실업가구에서는 38.4%가 비실업가구에서는 34.0%의 이환가구원이 현재 질환의 원인을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하인 경우만 실업가구(45.9%)보다 비실업가구(52.8%)의 질병발생 비율이 높았고, 다른 학력층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교육수준은 직업 및 경제수준과도 관련이 높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그 가구의 경제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질병발생과 正의 관계를 보였고 실업, 비실업가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구주가 미혼에서 유배우, 이혼·별거·사별로 갈수록 질병발생률이 증가하였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연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는 실업가구의 질병발생 비율이 높았고, 이혼·별거·사별 상태의 질병발생률은 비실업가구가 높았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가구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가구가 소년소녀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등의 缺損家庭은 경제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실업자 여부와 질병발생 비율과의 관계는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에 질병발생 비율이 높은 가구는 비실업가구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실업가구는 가구주가 실업자인 것이 질병발생 비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가구주와 질병발생비율과의 관계는 가구주의 성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었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결혼상태가 미혼이거나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일수록 질병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실업가구, 비실업가구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 질병발생비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비실업가구였다(表 7-1 參照).

〈表 7-1〉 家口主 特性別 經濟危機 以後 지난 2個月間 疾病發生 比率
(단위: %)

| 가구주 특성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성 | | | | |
| 남자 | 38.8 | 0.720 | 38.4 | 5.625 |
| 여자 | 38.0 | | 43.0 | |
| 연령 | | | | |
| 29세 이하 | 25.7 | 51.320*** | 24.3 | 73.131*** |
| 30~39세 | 30.6 | | 31.5 | |
| 40~49세 | 38.1 | | 35.8 | |
| 50~59세 | 41.2 | | 47.3 | |
| 60세 이상 | 49.0 | | 58.5 | |
| 교육수준 | | | | |
| 초교 이하 | 45.9 | 31.657*** | 52.8 | 46.661*** |
| 중학교 | 41.3 | | 41.4 | |
| 고등학교 | 34.2 | | 32.8 | |
| 대학 이상 | 33.4 | | 34.0 | |
| 결혼상태 | | | | |
| 미혼 | 26.3 | 24.697*** | 23.2 | 24.342*** |
| 유배우 | 39.2 | | 39.0 | |
| 이혼·별거·사별 | 44.0 | | 50.8 | |
| 실업자여부 | | | | |
| 비실업자 | 40.9 | 6.152 | 36.5 | 29.520*** |
| 실업자 | 36.3 | | 50.4 | |

註: *** p<.001

가구유형과 질병발생 비율과의 관계는 실업과 비실업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유형별로 실업, 비실업가구내의 질병발생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편부모가구(실업가구: 36.3%, 비실업가구: 41.9%)의 질병발생 비율은 실업과 비실업가구 모두 1/3 이상 수준을 보였다. 또한 노인가구 여부와 질병발생 비율과는 관련이 깊었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실업 비노인가구와 비실업 노인가구의 질병발생율이 높았다.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간의 질병발생 비율의 차이

를 비교하면 실업가구는 8.8%포인트(노인가구: 46.0%, 비노인가구: 37.2%)차이가 나는 반면, 비실업가구는 24.2%포인트(노인가구: 59.9%, 비노인가구: 35.7%)의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업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노인가구의 慢性疾患率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업가구인 경우 노인과 비노인가구간의 질병 발생 비율의 차이가 적은 것은 비실업가구보다 비노인가구의 질병 발생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가구 주택소유와 질병발생 비율과의 관계는 비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즉 자가를 소유한 비실업가구의 질병발생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자가를 소유한 가구가 월세나 전세 등에서 사는 가구보다 반드시 경제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과거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가 경제수준과 관련이 있었지만 최근에 올수록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력을 문화 및 여가생활에 투자하기 때문이지 않나 짐작된다.

가구소득과 질병발생 비율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실업과 비실업가구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대체로 질병발생 비율은 높았다. 그런데 가구소득이 80만원 이상인 가구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저소득 실업가구의 질병 발생 비율은 36.9~54.5%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실업가구에서는 질병발생 수준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수와 질병발생 비율은 正의 관계를 보였고, 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구내에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질병 발생 비율이 높았다(表 7-2 參照). 이는 실업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表 7-2〉 家口 特性別 經濟危機 以後 지난 2個月間 疾病發生 比率
(단위: %)

| 가구 특성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가구유형 | | | | |
| 독신가구 | 27.8 | | 29.8 | |
| 부부가구 | 40.0 | 9.459* | 41.5 | 12.695* |
| 편부모가구 | 36.3 | | 41.9 | |
| 기타가구 | 38.7 | | 37.9 | |
| 노인가구여부 | | | | |
| 노인가구 | 46.0 | 11.453*** | 59.9 | 45.421*** |
| 비노인가구 | 37.2 | | 35.7 | |
| 주택소유여부 | | | | |
| 자가 | 40.5 | 4.293 | 43.4 | 11.146** |
| 비자가 | 36.7 | | 35.1 | |
| 가구총소득 | | | | |
| 없음 | 36.9 | | 42.4 | |
| 19만원 이하 | 54.5 | | 74.0 | |
| 20 ~ 49만원 | 47.4 | | 47.0 | |
| 50 ~ 79만원 | 41.9 | 38.921*** | 40.5 | 30.187** |
| 80 ~ 99만원 | 34.4 | | 31.3 | |
| 100~199만원 | 37.0 | | 37.4 | |
| 200만원 이상 | 29.8 | | 35.4 | |
| 실업자수 | | | | |
| 0명 | - | | 43.1 | |
| 1명 | 37.6 | 8.684* | 37.9 | 4.200 |
| 2명 이상 | 46.3 | | 39.6 | |
| 의료보장형태 |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34.5 | 0.753 | 40.0 | 11.963** |
| 가입되어 있음 | 38.7 | | 38.9 | |
| 실업전후 소득의 변화 | | | | |
| 소득 늘어남 | 57.4 | | 35.0 | |
| 변화 없음 | 28.6 | 11.288** | 37.7 | 4.134 |
| 소득감소 | 40.0 | | 40.0 | |
| 전체 | 38.6 | | 38.9 | |

註: * p<.05, ** p<.01, *** p<.001

그리고 실업가구의 경우는 醫療保障形態와 질병발생 비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비실업가구는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서 질병발생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제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기초적 의료보장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가구에서 가족원의 질병으로 醫療費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실업 전·후의 소득변화에 따른 질병발생 비율의 차이는 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실업 전에 비해 소득이 변화 없는 가구보다 소득이 감소된 가구의 질병발생 비율이 높았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실업가구 중에서도 독신가구, 편부모가구, 그리고 노인가구의 질병발생 비율은 1/3 이상이나 되었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실업자가 많을수록 질병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이 감소된 실업가구에서 질병발생이 높다는 것은 실업과 질병발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表 7-2 參照). 따라서 실업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다 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二, 三重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7-3〉 失職者の 健康狀態

(단위: %)

| 실직자 특성 | 건강 | 질병 | 기타 | 계(명) |
|----------------|------|------|-----|------------|
| 전체 | 66.8 | 28.5 | 4.7 | 100.0(696) |
| 여성가구주가족의 실직자 | 47.5 | 46.0 | 6.5 | 100.0(137) |
| 남성가구주가족의 여성실직자 | 74.9 | 24.1 | 1.0 | 100.0(195) |
| 남성가구주가족의 남성실직자 | 69.7 | 24.2 | 6.1 | 100.0(364) |

資料: 김승권 외,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에서 재구성한 것임.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과 남성 가구주에 따른 질병발생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같은 시기에 조사된 여

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조사 결과에서는 여성가구주 가족의 실직자 중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남성가구주 가족의 여성 실직자는 적었다(表 7-3 參照).

2. 失業 後의 疾病類型 變化

지금까지 조사자료 분석을 통하여 실업가구의 질병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질병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慢性疾患과 急性疾患의 두 가지가 있다. 만성질환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반해, 급성질환은 급속한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한번에 많은 治療費用이 드는 것이다. 1998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보면 만성질환자의 과반수 이상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특히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저소득 계층인 것으로 밝혀졌다³⁰⁾.

<表 7-4>와 <表 7-5>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가구주 및 가구 특성별로 어떤 유형의 질병을 앓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가구의 이환가구원은 만성질환이 급성질환에 비해 2.4배나 많았고, 비실업가구는 1.7배로 나타나서 실업가구인 경우 만성질환자가 훨씬 많았다. 이는 醫療保障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업가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의료비까지 부담해야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환가구원은 남성가구주 실업가구보다 여자가구주 실업가구에서 많았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30) 서울특별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 연구한 결과로 보고서 『서울시민의 보건의료수준』 중에서 발췌함.

다. 그러나 가구주의 실업자 여부에 따른 만성질환의 분포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즉 실업가구에서는 가구주가 비실업자인 경우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환가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실업가구에서는 가구주가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 많았다(表 7-4 參照).

〈表 7-4〉 家口主 特性別 罹患 家口員의 疾病類型

(단위: %)

| 가구주 특성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만성질환 | 급성질환 | 만성질환 | 급성질환 |
| 성 | | | | |
| 남자 | 70.9 | 29.1 | 62.3 | 37.7 |
| 여자 | 73.3 | 26.7 | 71.6 | 28.4 |
| 연령 | | | | |
| 29세 이하 | 33.9 | 66.1 | 46.2 | 53.8 |
| 30~39세 | 47.4 | 52.6 | 42.0 | 58.0 |
| 40~49세 | 70.1 | 29.9 | 63.2 | 36.8 |
| 50~59세 | 82.4 | 17.6 | 50.0 | 50.0 |
| 60세 이상 | 80.2 | 19.8 | 76.5 | 23.5 |
| 교육수준 | | | | |
| 초교 이하 | 79.6 | 20.4 | 77.2 | 22.8 |
| 중학교 | 78.7 | 21.3 | 66.9 | 33.1 |
| 고등학교 | 65.3 | 34.7 | 55.4 | 44.6 |
| 대학 이상 | 57.2 | 42.8 | 51.6 | 48.4 |
| 결혼상태 | | | | |
| 미혼 | 62.2 | 37.8 | 77.8 | 22.2 |
| 유배우 | 70.5 | 29.5 | 62.1 | 37.9 |
| 이혼·별거·사별 | 78.4 | 21.6 | 70.5 | 29.5 |
| 실업자여부 | | | | |
| 비실업자 | 73.7 | 26.3 | 59.5 | 40.5 |
| 실업자 | 68.8 | 31.2 | 79.8 | 20.2 |
| 전체 | 70.5 | 29.5 | 62.4 | 37.6 |

가구유형별로 보면 독신가구의 이환가구원 중에서 만성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편부모가구는 과반수 이상이 만성질환자로 발견되었다. 노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유형인 노인가구의 이환가구원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는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영

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 만성질환자가 더 많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또한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表 7-5〉 家口 特性別 罹患 家口員의 疾病類型

(단위: %)

| 가구 특성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만성질환 | 급성질환 | 만성질환 | 급성질환 |
| 가구유형 | | | | |
| 독신가구 | 79.2 | 20.8 | 81.3 | 18.7 |
| 부부가구 | 75.9 | 24.1 | 67.6 | 32.4 |
| 편부모가구 | 57.7 | 42.3 | 66.7 | 33.3 |
| 기타가구 | 66.6 | 33.4 | 59.6 | 40.4 |
| 노인가구여부 | | | | |
| 노인가구 | 81.0 | 19.0 | 75.8 | 24.2 |
| 비노인가구 | 68.8 | 31.2 | 60.8 | 39.2 |
| 주택소유여부 | | | | |
| 자가 | 72.8 | 27.2 | 67.9 | 32.1 |
| 비자가 | 69.5 | 30.5 | 59.8 | 40.2 |
| 가구총소득 | | | | |
| 없음 | 68.9 | 31.1 | 69.3 | 30.7 |
| 19만원 이하 | 86.1 | 13.9 | 81.3 | 18.7 |
| 20 ~ 49만원 | 75.8 | 24.2 | 76.8 | 23.2 |
| 50 ~ 79만원 | 70.8 | 29.2 | 69.4 | 30.6 |
| 80 ~ 99만원 | 71.3 | 28.7 | 70.0 | 30.0 |
| 100~199만원 | 68.0 | 32.0 | 92.1 | 7.9 |
| 200만원 이상 | 69.5 | 30.5 | 51.3 | 48.7 |
| 실업자수 | | | | |
| 0명 | 40.0 | 60.0 | 57.9 | 42.1 |
| 1명 | 57.1 | 42.9 | 64.8 | 35.2 |
| 2명 이상 | 69.2 | 30.8 | 70.6 | 29.4 |
| 의료보장 형태 |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78.0 | 22.0 | 23.4 | 76.6 |
| 가입되어 있음 | 70.3 | 29.7 | 63.5 | 36.5 |
| 실업전후 소득의 변화 | | | | |
| 소득 늘어남 | 73.8 | 26.2 | 45.8 | 54.2 |
| 변화 없음 | 77.4 | 22.6 | 66.7 | 33.3 |
| 소득감소 | 69.6 | 30.4 | 62.1 | 37.9 |
| 전체 | 70.5 | 29.5 | 62.4 | 37.6 |

이와 같은 추세는 실업가구와 비실업 가구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의료보장형태와 실업 전·후의 소득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비율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즉 실업가구 중에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비실업가구는 의료보장에 가입되지 못한 가구에서 급성질환자가 많았다. 또한 실업 전과 소득변화가 없는 가구에 만성질환자가 많았고, 소득이 감소된 가구의 이환가구원 10명 중 7명은 만성질환자였다. 비실업가구는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였다(表 7-5 參照). 결과적으로 실업가구 중에서 만성질환자가 많은 경우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인 가구주가 여자이고, 고령층, 저학력층, 그리고 이혼·별거·사별 로 인한 缺損家庭 등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 및 편부모가구 등의 缺損家口와 老人家口 등에 만성질환자가 많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고 실업자수가 많으며,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가구일수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수가 많았다. 소득이 감소된 실업가구의 이환가구원 10명 중 7명은 만성질환자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나 결혼가정, 특히 의료보장 혜택에서 제외된 실업가구에서 만성질환자가 많은 것은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동안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심각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限界階層 실업자인 경우는 필요한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表 7-5 參照). 많은 연구에 의하면 실업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두통, 消化不良, 睡眠障礙, 高血壓, 심장 및 순환계 장애 등이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한 심장병, 肝硬化,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실업을 경험하였거나 장

기간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³¹⁾.

가구주 특성에 따라 이환가구원의 질병종류를 보면 남자가구주 실업가구에 속한 이환가구원은 관절염 및 디스크 그리고 소화불량이 많이 발생한 반면 여자가구주인 경우는 관절염 및 디스크 그리고 두통이었다. 가구주가 실업자일 때 그 가구내의 이환가구원은 소화불량, 精神科 질환 그리고 두통을 앓고 있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 그러나 가구주의 성과 실업자 여부에 따른 질병종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주의 연령별 질병종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소화불량은 40~50대 가구주에게 많이 나타났고, 순환기계 질환과 관절염 및 디스크는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이 높았다. 정신과 질환은 30대 가구주(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3.2%) 가구주에서 높았다. 두통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발견되었고, 사고, 中毒, 後遺症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유형별로는 실업 독인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관절염(29.1%)이었고, 실업 편부모가구에선 소화불량(22.9%)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질병종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실업가구 내에 노인이 함께 살고 있는 실업 노인가구에 나타나는 질병은 관절염 및 디스크와 순환기계 질환이었던 반면, 비노인가구는 관절염 및 디스크, 소화불량이었고, 사고, 중독 및 후유증이 노인가구에 비해 약간 많았다. 노인가구 여부에 따른 질병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1) Brenner(1984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서구유럽의 자료를 시계열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증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심혈관 질환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신부전 사망률은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서 2년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2~4년 후에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존 홉킨스 대학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이 증가할 때 심장병, 간경화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정신병원 입원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실업자수에 따른 질병유형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어서 가구내 실업자수와 상관이 없이 관절염 및 디스크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실업자가 1명일 때는 소화불량(11.6%), 2명 이상일 때는 사고, 중독, 후유증(11.0%)이었다. 특히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가구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관절염 및 디스크, 순환기계 질환 및 정신과 질환, 사고 및 중독, 후유증 등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어서 의료비의 부담을 보여준다.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는 실업가구도 관절염 및 디스크, 소화불량, 순환기계 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치료비 부담이 예상되나, 의료보장 여부에 따른 질병종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변화에 따른 질병종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향만을 보면 소득이 감소된 실업가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은 관절염 및 디스크, 소화불량 및 순환기계질환이었고, 소득이 늘어났거나 변함 없는 실업가구에 비해 정신과 질환과 두통이 미미하나마 약간 많았다(表 7-6 參照). 결과적으로 실업가구에서 발생한 질병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두통, 소화불량, 고혈압, 심장 및 순환기계 질환 등이었다.

한편 김승권(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실직자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주요 질병으로는 관절염, 디스크, 사고 및 중독의 후유증, 消化性 潰瘍 등의 만성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³²⁾으로 나타났다.

32) 이 연구는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조사의 분석결과로 실업가구내에 발생한 질병 중 관절염 및 디스크(23.3%)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서 이환가구원 10명중 2명이 앓고 있었음. 순환기계 질환과 소화불량은 이환가구원 약 10명중 1명에게 나타났고, 그 외에 사고, 중독 및 후유증, 정신과 질환 및 두통 등의 질병은 미미한 비율을 보였음.

〈表 7-6〉 失業家口內 罹患家口員의 疾病種類

(단위: %)

| 가구(주)특성 | 소화 불량 | 순환기 계질환 | 정신과 질환 | 두통 | 관절염 디스크 | 사고, 중독, 후유증 | 기타 | ↗ |
|------------|----------|------------|-----------|-----|------------|-------------------|------|----------|
| 성 | | | | | | | | |
| 남자 | 11.9 | 9.7 | 2.8 | 1.7 | 21.4 | 5.9 | 46.6 | 18.660 |
| 여자 | 8.6 | 9.7 | 2.8 | 2.7 | 30.9 | 4.2 | 41.0 | |
| 연령 | | | | | | | | |
| 29세 이하 | 10.3 | 4.7 | - | - | 11.3 | 8.6 | 65.0 | |
| 30~39세 | 6.4 | 3.2 | 4.6 | 3.5 | 12.2 | 5.1 | 65.2 | |
| 40~49세 | 15.1 | 8.6 | 2.4 | 2.9 | 21.0 | 6.0 | 44.0 | 77.264** |
| 50~59세 | 12.6 | 12.1 | 2.4 | 1.6 | 26.5 | 5.1 | 39.7 | * |
| 60세 이상 | 8.4 | 12.9 | 3.2 | 0.5 | 31.2 | 5.6 | 38.3 | |
| 실업자여부 | | | | | | | | |
| 비실업자 | 8.6 | 10.4 | 2.3 | 1.4 | 25.2 | 5.7 | 46.4 | 11.718 |
| 실업자 | 14.2 | 9.1 | 3.3 | 2.4 | 21.2 | 5.5 | 44.3 | |
| 가구유형 | | | | | | | | |
| 독신가구 | 15.7 | 10.5 | 2.7 | 7.6 | 29.1 | 6.6 | 28.0 | |
| 부부가구 | 12.7 | 10.4 | 3.2 | 1.6 | 23.7 | 5.4 | 43.0 | 23.775 |
| 편부모가구 | 22.9 | 2.7 | 2.9 | - | 12.2 | 5.9 | 53.3 | |
| 기타가구 | 9.1 | 9.3 | 2.4 | 1.7 | 22.7 | 5.7 | 49.1 | |
| 노인가구여부 | | | | | | | | |
| 노인가구 | 6.7 | 13.8 | 2.8 | 1.1 | 31.1 | 3.7 | 40.8 | 17.418* |
| 비노인가구 | 12.4 | 8.9 | 2.8 | 2.1 | 21.5 | 6.0 | 46.4 | * |
| 실업자수 | | | | | | | | |
| 1명 | 11.6 | 9.9 | 2.8 | 1.7 | 23.3 | 4.7 | 46.0 | 14.494 |
| 2명 이상 | 9.8 | 8.6 | 2.7 | 2.9 | 23.0 | 11.0 | 42.1 | |
| 의료보장형태 | | | | |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3.7 | 8.3 | 7.0 | 3.5 | 25.0 | 5.7 | 46.7 | 4.890 |
| 가입되어 있음 | 11.6 | 9.8 | 2.6 | 1.8 | 23.2 | 5.6 | 45.3 | |
| 소득의 변화 | | | | | | | | |
| 소득늘어남 | 13.6 | 13.8 | - | - | - | - | 72.6 | |
| 변화 없음 | 8.0 | 15.9 | 1.0 | 1.0 | 34.1 | 9.0 | 31.0 | 13.422 |
| 소득감소 | 11.5 | 8.9 | 3.0 | 2.0 | 22.6 | 5.4 | 46.6 | |
| 전체 | 11.3 | 9.8 | 2.8 | 1.9 | 23.3 | 5.6 | 45.3 | |

註: ** p<01, *** p<.001

3. 醫療利用의 變化

가. 失業 後의 醫療機關 利用率의 變化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의 발생은 실업자 및 가족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실업이라는 요인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업 후의 의료기관 변경 여부와 의료기관 이용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을 변경한 비율인 醫療機關 變更率을 가구주의 특성별로 보면 실업가구에서는 여자가구주일 때(여자가구주: 10.7%, 남자가구주: 9.9%)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비실업가구에서는 남자가구주일 때가 1.8배나 많았다. 그리고 실업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와 40대 그리고 60대 연령층의 의료기관 변경률은 10% 수준이었으나, 비실업가구의 경우 40대 연령층(12.2%)에서 의료기관 변경률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연령층에선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률은 실업가구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비실업가구는 초등학교 이하와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동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실업가구는 가구주가 기혼이거나 이혼·별거·사별상태 등일 때 의료기관 변경율이 높았고, 비실업가구는 유배우일 때 의료기관 변경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에 동 비율은 실업과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11% 수준으로 10가구당 1가구에서 의료기관을 변경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실업가구 및 비실업가구의 가구주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률은 숫자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表 7-7 參照).

〈表 7-7〉 家口主 特性別 醫療機關 變更率

(단위: %)

| 가구주 특성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비율 | χ | 비율 | χ |
| 성 | | | | |
| 남자 | 9.9 | 3.022 | 10.2 | 5.099 |
| 여자 | 10.7 | | 5.6 | |
| 연령 | | | | |
| 29세 이하 | 6.5 | 5.611 | 7.7 | 5.913 |
| 30~39세 | 10.4 | | 9.2 | |
| 40~49세 | 11.1 | | 12.2 | |
| 50~59세 | 9.5 | | 9.2 | |
| 60세 이상 | 10.5 | | 7.0 | |
| 교육수준 | | | | |
| 초교 이하 | 9.6 | 0.744 | 10.5 | 1.756 |
| 중학교 | 11.0 | | 7.9 | |
| 고등학교 | 10.1 | | 9.0 | |
| 대학 이상 | 10.2 | | 10.6 | |
| 결혼상태 | | | | |
| 미혼 | 7.1 | 2.805 | 4.9 | 4.585 |
| 유배우 | 10.4 | | 10.2 | |
| 이혼·별거·사별 | 10.2 | | 7.2 | |
| 실업자여부 | | | | |
| 비실업자 | 9.3 | 1.754 | 9.3 | 0.56 |
| 실업자 | 10.9 | | 10.5 | |
| 전체 | 10.1 | | 9.5 | |

가구유형별로는 편부모 가구의 경우 의료기관을 변경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실업과 비실업가구에서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비노인가구 및 비자가가구의 경우 의료기관 변경률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유형 및 노인가구 여부 그리고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구소득과 의료기관 변경률은 대체로 正의 관계로 실업과 비실업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비실업가구에서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表 7-8〉 家口 特性別 醫療機關 變更率

(단위: %)

| 가구 특성 | 실업가구 | | 실업가구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가구유형 | | | | |
| 독신가구 | 8.6 | | 3.0 | |
| 부부가구 | 9.8 | 1.196 | 9.9 | 6.707 |
| 편부모가구 | 12.6 | | 16.1 | |
| 기타가구 | 10.5 | | 9.9 | |
| 노인가구여부 | | | | |
| 노인가구 | 9.2 | 0.420 | 7.7 | 0.887 |
| 비노인가구 | 10.3 | | 9.8 | |
| 주택소유여부 | | | | |
| 자가 | 9.0 | 3.396 | 9.4 | 0.021 |
| 비자가 | 11.1 | | 9.6 | |
| 가구총소득 | | | | |
| 없음 | 11.7 | | 17.1 | |
| 19만원 이하 | 15.5 | | 11.2 | |
| 20 ~ 49만원 | 10.2 | | 12.2 | |
| 50 ~ 79만원 | 11.8 | 13.515* | 7.6 | 20.379** |
| 80 ~ 99만원 | 8.6 | | 10.5 | |
| 100~199만원 | 7.8 | | 10.4 | |
| 200만원 이상 | 7.6 | | 4.5 | |
| 실업자수 | | | | |
| 0명 | - | | 10.2 | 0.866 |
| 1명 | 9.3 | 17.303*** | 9.6 | |
| 2명 이상 | 16.7 | | 7.4 | |
| 이환가구여부 | | | | |
| 비이환가구 | 6.2 | 76.043*** | 6.6 | 24.744 |
| 이환가구 | 16.5 | | 14.2 | |
| 의료보장 형태 |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17.3 | 5.966* | 1.6 | 2.648 |
| 가입되어 있음 | 9.9 | | 9.7 | |
| 실업전후 소득의 변화 | | | | |
| 소득 늘어남 | 18.7 | | 3.5 | |
| 변화 없음 | 4.0 | 10.006** | 2.7 | 18.413*** |
| 소득 감소 | 10.9 | | 11.0 | |
| 질병유형 | | | | |
| 만성질환 | 16.2 | 0.204 | 16.4 | 4.897* |
| 급성질환 | 17.4 | | 9.9 | |
| 의료비 지출 | | | | |
| 없음 | 8.7 | | 7.4 | |
| 99천원 이하 | 9.6 | | 9.2 | |
| 100 ~ 299천원 | 13.9 | 7.257 | 14.0 | 6.884 |
| 300 ~ 499천원 | 9.9 | | 16.1 | |
| 500 ~ 999천원 | 7.7 | | 7.3 | |
| 1000천원 이상 | 14.6 | | 8.5 | |
| 전체 | 10.1 | | 9.5 | |

註: * p<.05, ** p<.01, *** p<.001

실업가구는 가구소득이 없거나 20~49만원대인 경우가 50~79만원 대보다 의료기관 변경률이 약간 낮게 나타난 것 외에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비율이 높았다. 비실업가구도 일부 가구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료기관을 변경한 비율은 비실업가구가 실업가구보다 1.5배 높았다. 또한 8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층에서는 실업가구가 비실업가구보다 同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8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소득 층에서는 비실업가구의 그것이 오히려 높았고, 200만원 이상에선 다시 실업가구의 의료기관 변경률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실업가구는 실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변경할 필요도 없이 이미 열악한 의료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가구소득이 8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인 실업가구의 경우는 실업이 발생된 이후 소득의 감소분만큼 의료기관을 하향 수준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편 8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소득가구의 경우 비실업가구의 의료기관 변경률이 높다는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총 가구소득 지출 중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실업 전·후 소득의 변화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즉 실업가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오히려 의료기관 이용이 상향이동한 반면 소득이 감소된 경우 10가구 중 1가구 정도에서 의료기관 이용이 하향이동 하였다. 비실업가구도 소득이 감소된 경우 의료기관 변경률이 높았다.

실업 전·후의 소득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률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실업자수와 이환자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률은 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실업자수가 많을수록(2명인 경우 16.7%) 그

리고 질환자가 있는 이환가구(16.5%)인 경우 의료기관을 변경한 비율이 높아 실업가구 전체 수준(10.1%)의 1.6배나 되었다.

또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는가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률도 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 의료보장을 못 받는 실업가구(17.3%)의 의료기관 변경 비율은 전체 실업가구보다 1.7배가 많았고, 비실업가구(1.6%)와 비교하였을 때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제활동의 터전을 잃어서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의료보장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업가구의 이환자는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도 받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실업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탈락된 限界階層 실업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치료포기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수준에 危害要因이 될 수 있다.

질병유형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률은 비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비실업가구는 만성질환인 경우 의료기관을 변경한 비율이 급성질환일 때보다 1.7배로 높았다. 이는 급성질환의 특성상 신속한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경제위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바꾸기가 어려우나 만성질환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의료비지출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률은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통계적인 차이도 없었다(表 7-8 參照).

나. 失業 前·後의 醫療機關 類型的 變化

지금까지 가구주 및 가구특성에 따라 의료기관을 변경한 비율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실업이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 전과 후에 의료기관 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업가구에 나타난 이용의료기관 유형의 변화를 통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실업 이전에는 병원(54.0%)과 종합병원(23.2%)을 주로 이용하던 실업가구가 실업이후에는 약국(55.8%)과 보건(지)소(26.5%)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³³⁾. 이와 같이 실업가구에서 나타난 의료기관의 下向化는 실업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의료보장의 혜택의 미비성을 시사한다. 즉,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각 가구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비용 부담이 큰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가구였을수록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다는 것이다³⁴⁾.

<表 7-9>는 가구주 특성별 실업 전과 후에 이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가구주와 여자가구주 실업가구 모두 실업 전에는 병원, 종합병원 및 의원 순으로 자주 이용하였는데, 실업 후에는 남자가구주 실업가구는 약국(57.3%)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 여자가구주 실업가구에선 상대적으로 보건소 이용률(36.9%)이 더 높아졌다. 이는 여자가구주가 남자가구주에 비해서 더욱 열악한 경제 사정에 있어 실업으로 인한 의료비부담이 더 큼을 말해준다. 가구주가 젊은 연령층일수록 실업 전에는 종합병원과 의원급에서, 실업 후에는 약국을 연령층이 높을수록 실업 전에는 병원과 종합병원, 실업 후에는 약국과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 10명 중 약 4명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가 經濟活動 能力이 없는 노인일 경우 의료서비스

33) 1998년 서울특별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서울시민의 보건의료수준』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이용한 의료기관은 약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원, 종합병원 순이었고, 보건소가 가장 낮음. 연령별로는 고령층은 종합병원과 한방병의원, 보건소의 이용률이 높았고 의원급은 저연령층과 고령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득수준별로는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34) 199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인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인용한 것임.

이용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예상할 수 있다.

〈表 7-9〉 家口主 特性別 失業 前·後 醫療機關 利用의 變化

(단위: %)

| 가구주 특성 | 종합 병원 | | 병원 | | 의원 | | 한방 병의원 | | 약국 | | 보건 (지)소 | | χ^2 | |
|----------|-------|-----|------|-----|------|------|--------|------|-----|------|---------|------|----------|--------|
|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 성 | | | | | | | | | | | | | | |
| 남자 | 23.4 | 0.9 | 53.3 | 3.3 | 18.5 | 6.6 | 4.0 | 7.1 | 0.6 | 57.3 | 0.3 | 24.2 | 4.536 | 5.354 |
| 여자 | 22.0 | - | 55.6 | 4.3 | 18.1 | 8.7 | 1.4 | 4.3 | 3.0 | 47.8 | - | 36.9 | | |
| 연령 | | | | | | | | | | | | | | |
| 29세 이하 | 37.6 | - | 30.8 | - | 26.1 | 9.1 | - | - | - | 72.7 | 5.5 | 27.3 | 34.285 | 39.092 |
| 30~39세 | 31.7 | - | 44.5 | 6.0 | 20.6 | 10.9 | 3.2 | 9.5 | - | 41.8 | - | 31.9 | | |
| 40~49세 | 19.2 | 1.3 | 60.2 | 6.7 | 19.3 | 5.3 | 1.3 | 2.7 | - | 72.0 | - | 13.3 | | |
| 50~59세 | 19.6 | - | 55.0 | 1.4 | 20.7 | 6.9 | 2.9 | 8.3 | 1.8 | 55.6 | - | 29.2 | | |
| 60세 이상 | 22.8 | 2.2 | 56.0 | 2.2 | 9.3 | 6.5 | 9.3 | 8.7 | 2.7 | 43.5 | - | 39.1 | | |
| 교육수준 | | | | | | | | | | | | | | |
| 초교 | 15.3 | - | 59.9 | 4.4 | 19.7 | 1.5 | 3.1 | 4.5 | 2.0 | 53.7 | - | 35.8 | 21.507 | 35.726 |
| 중학교 | 28.7 | 2.0 | 48.1 | - | 17.7 | 12.0 | 5.4 | 16.0 | - | 52.0 | - | 18.0 | | |
| 고등학교 | 18.7 | - | 60.9 | 2.1 | 17.5 | 6.3 | 1.7 | 5.2 | 1.3 | 60.4 | - | 26.0 | | |
| 대학 이상 | 38.2 | 2.4 | 35.5 | 9.5 | 20.0 | 11.9 | 5.0 | 2.4 | - | 52.4 | 1.3 | 19.0 | | |
| 결혼상태 | | | | | | | | | | | | | | |
| 미혼 | 33.8 | - | 44.1 | - | 10.9 | 13.3 | 7.4 | 6.7 | - | 60.0 | 3.8 | 26.7 | 15.506 | 12.547 |
| 유배우 | 22.7 | 0.5 | 53.5 | 9.4 | 18.9 | 5.9 | 3.6 | 7.4 | 1.3 | 58.3 | - | 24.0 | | |
| 이혼·별거·사별 | 19.1 | 2.8 | 59.9 | 5.6 | 19.2 | 11.1 | 1.8 | 5.6 | - | 38.9 | - | 36.1 | | |
| 실업자 여부 | | | | | | | | | | | | | | |
| 비실업자 | 19.8 | 0.8 | 54.9 | 4.2 | 20.9 | 5.8 | 3.2 | 5.0 | 1.1 | 51.7 | - | 31.7 | 2.684 | 3.732 |
| 실업자 | 26.0 | 0.7 | 53.2 | 2.8 | 15.8 | 7.7 | 3.7 | 7.7 | 0.9 | 58.5 | 0.4 | 21.8 | | |
| 전체 | 23.2 | 0.8 | 54.0 | 3.5 | 18.1 | 6.9 | 3.5 | 6.5 | 1.0 | 55.8 | 0.2 | 26.5 | | |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는 실업 전에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실업 후에는 약국, 그리고 가구주가 이혼·별거·사별인 경우는 실업 전 병원 및 의원급에서 실업 후 약국과 보건지소로 하향화되었다. 또한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 실업 전 병원과 종합병원 및 의원급을 이용하던

가구주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약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보건(지)소(21.8%) 및 의원급을 이용하였다. 가구주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表 7-10〉 家口特性別 失業 前·後 醫療機關 利用의 變化

(단위: %)

| 가구 특성 | 종합병원 | | 병원 | | 의원 | | 한방 병의원 | | 약국 | | 보건 (지)소 | | χ ² | |
|--------------|------|------|------|-----|------|------|-----------|------|-----|------|------------|------|----------------|--------|
|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 가구유형 | | | | | | | | | | | | | | |
| 독신가구 | 7.3 | - | 81.4 | - | 11.3 | 7.3 | - | - | - | 42.1 | - | 50.6 | 10.707 | 17.289 |
| 부부가구 | 23.9 | - | 53.1 | 4.5 | 17.4 | 3.6 | 3.3 | 9.0 | 2.3 | 60.4 | - | 23.4 | | |
| 편부모가구 | 9.5 | - | 70.9 | - | 19.5 | 18.6 | - | - | - | 53.2 | - | 28.2 | | |
| 기타가구 | 25.0 | 1.6 | 51.0 | 3.1 | 19.5 | 9.3 | 4.2 | 5.4 | - | 53.5 | 0.4 | 26.4 | | |
| 노인가구여부 | | | | | | | | | | | | | | |
| 노인가구 | 17.2 | - | 57.6 | - | 14.5 | 11.8 | 6.0 | 5.9 | 3.3 | 44.1 | 1.5 | 35.2 | 7.869 | 11.065 |
| 비노인가구 | 24.2 | 0.9 | 53.4 | 3.9 | 18.7 | 6.1 | 3.1 | 7.0 | 0.6 | 57.0 | - | 25.0 | | |
| 주택소유여부 | | | | | | | | | | | | | | |
| 자가 | 24.0 | 1.7 | 57.7 | 2.6 | 15.5 | 7.7 | 2.3 | 7.7 | - | 48.7 | 0.5 | 29.9 | 5.167 | 9.059 |
| 비자가 | 22.0 | - | 51.4 | 4.2 | 20.3 | 6.3 | 4.4 | 5.6 | 1.8 | 61.1 | - | 22.9 | | |
| 가구총소득 | | | | | | | | | | | | | | |
| 없음 | 18.9 | 1.4 | 53.5 | 2.7 | 21.3 | 6.8 | 4.3 | 4.1 | 1.9 | 57.5 | - | 27.4 | 30.035 | 29.472 |
| 19만원 이하 | 20.4 | - | 46.5 | - | 29.0 | 13.3 | 4.1 | - | - | 60.0 | - | 26.7 | | |
| 20 ~ 49만원 | 19.5 | - | 54.7 | 3.3 | 22.3 | - | 3.4 | 10.0 | - | 66.7 | - | 23.3 | | |
| 50 ~ 79만원 | 17.4 | - | 67.4 | 1.7 | 11.3 | 8.5 | 1.8 | 5.1 | 2.1 | 50.8 | - | 32.2 | | |
| 80 ~ 99만원 | 54.6 | - | 33.2 | 9.6 | 6.0 | 9.1 | 6.3 | - | - | 57.8 | - | 23.5 | | |
| 100~199만원 | 20.0 | 5.0 | 55.9 | 7.5 | 17.4 | 7.5 | 5.3 | 7.5 | - | 55.0 | 1.4 | 22.5 | | |
| 200만원 이상 | 37.6 | - | 40.2 | 3.7 | 22.2 | 3.7 | - | 18.5 | - | 44.4 | - | 29.6 | | |
| 실업자수 | | | | | | | | | | | | | | |
| 1명 | 22.3 | 0.9 | 53.9 | 3.7 | 20.1 | 6.9 | 2.2 | 7.4 | 1.2 | 53.7 | 0.3 | 27.3 | 9.392 | 4.488 |
| 2명 이상 | 27.4 | - | 54.3 | 2.2 | 9.1 | 6.5 | 9.2 | 2.2 | - | 63.0 | - | 21.7 | | |
| 의료보장형태 | | | | | | | | | | | | | | |
| 가입되어있지 않음 | 24.5 | - | 23.5 | - | 41.9 | 13.3 | 10.1 | - | - | 80.0 | - | 6.7 | 10.842 | 12.025 |
| 가입되어있음 | 23.1 | 0.8 | 56.0 | 3.7 | 16.6 | 6.5 | 3.1 | 6.9 | 1.1 | 54.1 | 0.2 | 27.6 | | |
| 소득의 변화 | | | | | | | | | | | | | | |
| 소득 늘어남 | - | - | - | - | - | - | - | - | - | - | - | - | 3.088 | 18.441 |
| 변화 없음 | 17.9 | 14.7 | 43.6 | 7.6 | 38.4 | - | - | 7.2 | - | 54.9 | - | 15.5 | | |
| 소득 감소 | 23.8 | 0.4 | 53.2 | 3.3 | 18.1 | 7.4 | 3.7 | 6.1 | 1.1 | 55.7 | 0.2 | 26.6 | | |
| 전체 | 23.2 | 0.8 | 54.0 | 3.5 | 18.1 | 6.9 | 3.5 | 6.5 | 1.0 | 55.8 | 0.2 | 26.5 | | |

가구유형별로 실업 전과 후에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변화를 보면 독신가구는 실업 전 병원급에서 실업 후에는 보건지소(50.6%)와 약국(42.1%)으로 바뀌었다. 편부모가구는 실업 전 병원(70.9%)과 의원급(19.5%)에서 실업 후에는 약국(53.2%)과 보건지소(28.2%)로 변경되었다. 실업 전 병원 및 종합병원, 의원급에서 노인가구는 실업 후에 약국, 보건(지)소 및 의원급으로 하향되었고, 비노인가구는 약국(57.0%)과 보건(지)소를 이용하였다. 자가와 비자가 모두 실업 전에는 병원과 종합병원급으로 이용 의료기관유형이 같았으나 실업 후에는 달라져 비자가인 경우 약국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자가가구에서는 의원 및 한방병원의 이용률이 약간 더 높았다.

그리고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일수록 실직 후에는 약국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 전에 주로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의원급(41.9%)에서, 실업 후 약국(80%)으로 하향화되었고, 그나마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限界階層의 실업가구는 보건(지)소도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실업가구는 실업 전에 병원급(56.0%)에서 실업 후에는 약국(54.1%)과 보건(지)소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같은 실업가구이더라도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소득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변화를 보면 소득이 감소된 실업가구는 실업 전 병원(53.2%)과 종합병원(23.8%)급을 이용하던 10가구 중 5가구가 약국을 이용하였고, 3가구는 보건(지)소급(26.6%)으로 하향화되었다. 가구특성에 따른 의료기관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7-10 參照).

결과적으로 실업 이후에 나타난 의료기관의 利用樣相은 약국 및 보건(지)소 이용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약국이 병원이나 의원급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이며 보건소 이용의 증가 역시 낮은

비용에 의한 것이나 보건소의 지리적 접근성이 약국만큼이나 좋아진다면
 실업가구의 보건소 이용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³⁵⁾.

다. 失業 後의 醫療機關 變更의 原因

실업 후에 의료기관을 변경한 원인의 대부분은 생활고(53.1%)와 높은 치료비(42.1%)때문으로 이 두 가지 원인은 서로 상관이 높다. 가구주 특성별로 실업 후에 의료기관을 변경한 원인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자인 실업가구는 생활고가 주된 원인인 반면, 여자 가구주인 경우는 높은 치료비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결혼상태가 유배우와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또한 가구주가 실업자일 때 의료기관을 바꾸게 된 원인은 생활고 때문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 결혼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변경이유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表 7-11 參照). 이와 같은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구주가 연령이 높고 저학력층이라는 의미는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대부분 單純肉體勞動으로 제한되어 이미 저소득층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업 전에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계층이기 때문에 실업기간이 연장될수록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독신가구의 54.1%는 높은 치료비 때문에 의료기관을 바꾼 것으로 나타난 반면 편부모가구는 62.8%가 생활고 때문이었다.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는 모두 생활고 때문으로 차이가 없었다.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을 변경한 주된 이유는 생활상의 어려움이었으나 그 정도는 비자가인 경우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35) 199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인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P. 248에서 인용한 것임.

〈表 7-11〉 家口主 特性別 失業 前·後 醫療機關 變更理由

(단위: %)

| 가구주 특성 | 높은 치료비 | 생활고 | 치료 효과 | 거리 | 교통 불편 | 질병명 변경 | 기타 | χ^2 |
|----------|-----------|------|----------|-----|----------|-----------|------|----------|
| 성 | | | | | | | | |
| 남자 | 40.7 | 54.9 | 1.1 | 0.9 | 0.8 | 1.1 | 0.5 | 30.295** |
| 여자 | 48.9 | 46.4 | - | 1.3 | - | - | 3.4 | |
| 연령 | | | | | | | | |
| 29세 이하 | 28.1 | 53.7 | - | - | - | - | 18.2 | 74.387** |
| 30~39세 | 49.8 | 50.2 | - | - | - | - | - | |
| 40~49세 | 36.3 | 61.3 | 1.6 | 0.8 | - | - | - | |
| 50~59세 | 39.2 | 54.5 | - | - | 2.2 | 3.3 | 0.7 | |
| 60세 이상 | 51.4 | 42.4 | 2.4 | 3.9 | - | - | - | |
| 교육수준 | | | | | | | | |
| 초교 이하 | 45.1 | 51.3 | - | 2.7 | - | 0.9 | - | 42.640* |
| 중학교 | 37.1 | 48.5 | 2.2 | 1.2 | 3.2 | 3.7 | 4.1 | |
| 고등학교 | 42.7 | 56.1 | 1.3 | - | - | - | - | |
| 대학 이상 | 56.1 | 21.7 | - | - | - | - | 22.1 | |
| 결혼상태 | | | | | | | | |
| 미혼 | 43.6 | 43.1 | - | - | - | - | 13.2 | 42.292** |
| 유배우 | 41.0 | 55.3 | 0.6 | 0.9 | 0.8 | 1.2 | 0.3 | |
| 이혼·별거·사별 | 46.0 | 49.4 | 3.0 | 1.6 | - | - | - | |
| 실업자여부 | | | | | | | | |
| 비실업자 | 46.9 | 47.0 | 0.9 | 1.5 | 0.5 | 1.6 | 1.6 | 4.691 |
| 실업자 | 38.1 | 58.1 | 0.8 | 0.4 | 0.7 | 0.4 | 1.5 | |
| 전체 | 42.1 | 53.1 | 0.9 | 0.9 | 0.6 | 0.9 | 1.5 | |

註: * p<.05, ** p<.01, *** p<.001

〈表 7-12〉 家口 特性別 失業 前·後 醫療機關 變更理由

(단위: %)

| 가구 특성 | 높은 치료비 | 생활고 | 치료 효과 | 거리 | 교통 불편 | 질병명 변경 | 기타 | % |
|-------------|-----------|-------|----------|-----|----------|-----------|------|--------|
| 가구유형 | | | | | | | | |
| 독신가구 | 49.6 | 32.4 | - | - | 7.3 | - | 10.7 | |
| 부부가구 | 41.1 | 54.1 | 1.1 | 1.6 | 0.5 | 1.6 | - | 25.586 |
| 편부모가구 | 37.2 | 62.8 | - | - | - | - | - | |
| 기타가구 | 42.3 | 54.1 | 0.9 | 0.5 | - | 0.4 | 1.9 | |
| 노인가구여부 | | | | | | | | |
| 노인가구 | 44.0 | 52.9 | - | - | - | - | - | 1.269 |
| 비노인가구 | 41.7 | 53.1 | 1.0 | 1.1 | 0.7 | 0.8 | 1.5 | |
| 주택소유여부 | | | | | | | | |
| 자가 | 45.3 | 48.0 | 1.0 | 2.1 | 0.5 | 2.1 | 1.0 | 8.487 |
| 비자가 | 39.2 | 57.3 | 0.8 | - | 0.7 | - | 1.9 | |
| 가구총소득 | | | | | | | | |
| 없음 | | | | | | | | |
| 19만원 이하 | 39.6 | 53.4 | 1.6 | 0.8 | - | 0.8 | 3.8 | |
| 20 ~ 49만원 | 34.4 | 58.5 | - | - | 7.1 | - | - | 43.654 |
| 50 ~ 79만원 | 25.6 | 74.4 | - | - | - | - | - | |
| 80 ~ 99만원 | 50.9 | 47.0 | - | 2.1 | - | - | - | |
| 100~199만원 | 41.4 | 51.7 | 2.7 | - | 1.4 | - | 2.7 | |
| 200만원 이상 | 44.0 | 49.1 | - | - | - | 6.9 | - | |
| 실업자수 | | | | | | | | |
| 1명 | 41.1 | 53.6 | 0.5 | 1.1 | 0.8 | 1.1 | 1.8 | 4.608 |
| 2명 이상 | 46.7 | 50.6 | 2.7 | - | - | - | - | |
| 의료보장형태 | | | | |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29.9 | 70.1 | - | - | - | - | - | 2.612 |
| 가입되어 있음 | 42.9 | 51.9 | 0.9 | 1.0 | 0.7 | 1.0 | 1.6 | |
| 소득의 변화 | | | | | | | | |
| 소득늘어남 | - | - | - | - | - | - | - | |
| 변화 없음 | 39.9 | 44.2 | 16.0 | - | - | - | - | 19.499 |
| 소득감소 | 41.9 | 53.4 | 0.5 | 1.0 | 0.7 | 1.0 | 1.6 | |
| 질병유형 | | | | | | | | |
| 만성질환 | 37.3 | 55.4 | 1.0 | 2.2 | 1.5 | 2.2 | 0.5 | 7.067 |
| 급성질환 | 55.2 | 44.8 | - | - | - | - | - | |
| 의료비 지출 | | | | | | | | |
| 99천원 이하 | 46.3 | 51.4 | 0.7 | 0.8 | 0.4 | - | 0.4 | |
| 100 ~ 299천원 | 48.9 | 44.5 | - | - | - | 5.4 | 1.2 | |
| 300 ~ 499천원 | 49.0 | 51.0 | - | - | - | - | - | 27.938 |
| 500 ~ 999천원 | - | 100.0 | - | - | - | - | - | |
| 1000천원 이상 | 20.6 | 79.4 | - | - | - | - | - | |
| 전체 | 42.1 | 53.1 | 0.9 | 0.9 | 0.6 | 0.9 | 1.5 | |

註: * p<.05, ** p<.01, *** p<.001

또한 가구소득이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의료기관을 변경한 이유가 높은 치료비 때문이었고, 나머지 소득층은 생활고 때문이었는데, 특히 5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74.4%)는 10가구 중 7가구가 생활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바꾼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업자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의료기관을 변경한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 70.1%였는데, 이는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에 비해 1.4배나 높은 수치다. 즉, 실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된 가구의 과반수가 생활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바꾸었다. 또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실업가구에서 의료기관을 변경한 이유는 생활고(55.4%)로 나타난 반면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는 높은 치료비 때문이 55.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만성질환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고액의 비용이 들지는 않으나 급성질환은 단기간에 치료를 완료해야 하므로 만성질환에 비해 고액의 비용을 一時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비 지출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이유는 100천원 이상 300천원 미만의 의료비용이 지출된 실업가구에서는 높은 치료비 때문으로 나타났고, 100천원 미만과 300천원 이상의 의료비가 지출된 실업가구에선 생활고 때문으로 나타났다(表 7-12 參照).

3. 保健醫療서비스 惠澤의 變化

가. 失業 後의 治療狀態의 變化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이 보건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실업 이후 의료기관에서 받는 保健醫療서비스 惠澤의 樣相이 治療狀態의 變化 측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최근 2개월내 질병을 앓은 이환가구원

중 실업가구의 41.8%(미치료: 16.9%, 치료중단: 24.9%), 비실업가구의 33.7%(미치료: 12.1%, 치료중단: 21.6%)가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치료나 치료중단율은 실업가구가 비실업가구에 비해서 높았고, 특히 실업가구는 치료중단율보다 未治療率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실업가구의 이환가구원 10명 중 4명은 실업이 발생된 후에 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실정인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疏外되는 계층의 발생이 예상된다.

<表 7-13>은 가구주 특성별로 미치료율 및 치료중단율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 여자가구주인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실업상황에서도 여자가구주가 남자가구주보다 경제생활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못 받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가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40대와 30대에서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실업가구에서는 50대와 40대 연령층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실업가구의 가구주가 30대와 40대인 경우 構造調整으로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은 연령층으로 가구주의 실업에 의해, 비실업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실업가구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가구주인 경우, 비실업가구는 가구주가 고등학교 출신인 경우에 미치료율 및 치료중단율이 높았다. 또한 실업가구는 가구주가 유배우인 경우, 비실업가구는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同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실업가구에선 가구주의 결혼상태와 거의 무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비실업가구는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 실업가구의 과반수는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비실업가구는 다른 경향을 보여 가구주가 비경제활

동 인구인 경우 미치료율이 약간 높았고, 경제활동 인구인 경우 치료 중단율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表 7-13 參照).

〈表 7-13〉 家口主 特性別 未治療率 및 治療中斷率

(단위: 명, %)

| 가구주 특성 | 실업가구 | | | 비실업가구 | | |
|----------|------|------|--------|-------|------|--------|
| | 전체수 | 미치료율 | 치료 중단율 | 전체수 | 미치료율 | 치료 중단율 |
| 성 | | | | | | |
| 남자 | 862 | 17.7 | 30.0 | 504 | 11.9 | 21.1 |
| 여자 | 177 | 11.9 | 37.3 | 92 | 14.1 | 25.8 |
| 연령 | | | | | | |
| 29세 이하 | 49 | 6.1 | 42.9 | 37 | 8.1 | 25.0 |
| 30~39세 | 156 | 16.7 | 32.7 | 137 | 8.0 | 21.1 |
| 40~49세 | 270 | 19.6 | 34.8 | 142 | 14.1 | 25.0 |
| 50~59세 | 342 | 16.7 | 30.7 | 157 | 17.8 | 22.3 |
| 60세 이하 | 223 | 15.2 | 25.7 | 125 | 8.0 | 19.6 |
| 교육수준 | | | | | | |
| 초교 이하 | 334 | 13.2 | 28.2 | 182 | 14.3 | 18.3 |
| 중학교 | 204 | 20.6 | 31.3 | 107 | 11.2 | 22.9 |
| 고등학교 | 345 | 17.7 | 27.5 | 204 | 12.7 | 25.4 |
| 대학 이상 | 141 | 17.7 | 37.9 | 99 | 8.1 | 23.9 |
| 결혼상태 | | | | | | |
| 미혼 | 60 | 8.3 | 39.5 | 26 | 11.5 | 10.5 |
| 유배우 | 814 | 17.8 | 30.8 | 485 | 11.8 | 21.8 |
| 이혼·별거·사별 | 165 | 14.5 | 31.3 | 84 | 15.5 | 23.7 |
| 실업자여부 | | | | | | |
| 비실업자 | 540 | 15.6 | 25.9 | 469 | 11.5 | 23.4 |
| 실업자 | 506 | 18.2 | 37.6 | 134 | 12.7 | 16.1 |
| 전체 | 1047 | 16.9 | 24.9 | 603 | 12.1 | 21.6 |

가구유형별로는 실업가구인 경우 편부모가구(72.0%)의 이환가구원 10명 중 7명이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인가구(54.5%)에선 과반수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비실업가구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노인가구 여부는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주택소유 여부가 실업가구의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에 영향을 주어 비자가 실업가구의 이환가구원은 자가 소유한 실업가구에 비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실업가구는 오히려 자가인 경우가 비자가보다 약간 높았다. 가구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이 높았다. 실업가구에서는 실업자수는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과 正의 관계를 보였으나 비실업가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수는 동 비율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보다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이 1.5배나 높고, 비실업가구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 실업 전·후 소득변화는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에 영향을 미쳐서 소득이 감소된 경우가 높았다. 또한 만성질환인 경우는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급성질환은 치료중단율이 높았는데, 이는 급성질환은 일시에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향은 실업과 비실업가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의료비지출 규모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미치료 및 치료중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表 7-14 參照).

실업 이후에 나타난 의료기관의 서비스 변화 양상을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치료 중단한 경우를 入院과 外來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치료중단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업 이후 입원(실업가구원 50.7%, 비실업가구원 44.4%)으로 인한 치료중단율은 외래(실업가구원 23.0%, 비실업가구원 16.0%)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를 비교하면 실업가구의 이환가구원이 비실업가구보다 입원과 외래에 있어서 치료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다.

〈表 7-14〉 家口 特性別 未治療率 및 治療中斷率

(단위: 명, %)

| 가구 특성 | 실업가구 | | | 비실업가구 | | |
|-------------|------|------|--------|-------|-------|--------|
| | 전체수 | 미치료율 | 치료 중단을 | 전체수 | 미치료율 | 치료 중단을 |
| 가구유형 | | | | | | |
| 독신가구 | 47 | 25.5 | 29.0 | 31 | 19.4 | 13.6 |
| 부부가구 | 479 | 16.9 | 31.2 | 260 | 12.3 | 17.3 |
| 편부모가구 | 19 | 5.3 | 66.7 | 11 | 18.2 | 33.3 |
| 기타가구 | 502 | 16.3 | 30.4 | 300 | 11.0 | 26.1 |
| 노인가구여부 | | | | | | |
| 노인가구 | 191 | 18.8 | 24.0 | 124 | 9.7 | 19.8 |
| 비노인가구 | 856 | 16.2 | 33.0 | 479 | 12.3 | 22.3 |
| 주택소유여부 | | | | | | |
| 자가 | 534 | 14.6 | 26.3 | 312 | 12.8 | 21.4 |
| 비자가 | 513 | 19.1 | 37.0 | 290 | 10.7 | 22.6 |
| 가구총소득 | | | | | | |
| 없음 | 251 | 19.9 | 35.4 | 61 | 18.0 | 20.0 |
| 19만원 이하 | 57 | 15.8 | 38.2 | 16 | 18.8 | 50.0 |
| 20 ~ 49만원 | 146 | 11.6 | 37.4 | 63 | 22.2 | 25.0 |
| 50 ~ 79만원 | 215 | 16.7 | 31.6 | 121 | 13.26 | 21.7 |
| 80 ~ 99만원 | 71 | 19.7 | 31.3 | 44 | 18.2 | 14.7 |
| 100~199만원 | 202 | 13.9 | 24.7 | 194 | 8.8 | 24.8 |
| 200만원 이상 | 105 | 21.9 | 24.7 | 95 | 4.2 | 16.4 |
| 실업자수 | | | | | | |
| 0명 | - | - | - | 51 | 5.9 | 23.8 |
| 1명 | 907 | 16.6 | 30.8 | 112 | 21.4 | 28.4 |
| 2명 이상 | 136 | 17.6 | 35.4 | 439 | 10.5 | 19.9 |
| 의료보장 여부 | | |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35 | 22.9 | 34.6 | 14 | 7.1 | 25.0 |
| 가입되어 있음 | 1012 | 11.2 | 26.2 | 589 | 8.3 | 20.0 |
| 실업전후 소득변화 | | | | | | |
| 소득 늘어남 | - | - | - | - | - | - |
| 변화 없음 | 55 | 9.1 | 14.6 | 90 | 7.8 | 14.7 |
| 소득감소 | 952 | 11.9 | 26.9 | 472 | 8.5 | 22.4 |
| 질병유형 | | | | | | |
| 만성질환 | 730 | 12.1 | 25.2 | 376 | 11.4 | 17.3 |
| 급성질환 | 307 | 10.4 | 29.2 | 223 | 3.6 | 27.0 |
| 의료비 지출 | | | | | | |
| 없음 | - | - | - | - | - | - |
| 99천원 이하 | 603 | 11.8 | 28.4 | 369 | 10.6 | 23.6 |
| 100 ~ 299천원 | 226 | 6.2 | 18.1 | 134 | 3.0 | 14.7 |
| 300 ~ 499천원 | 41 | 2.4 | 16.7 | 24 | - | 23.8 |
| 500 ~ 999천원 | 18 | - | 5.9 | 12 | - | 10.0 |
| 1000천원 이상 | 19 | 10.5 | 9.1 | 11 | - | - |
| 전체 | 1047 | 16.9 | 24.9 | 603 | 12.1 | 21.6 |

이와 같은 결과는 입원이 외래보다 일시에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실업가구도 이러한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업이 발생된 후 家計維持도 어려운 실업가구에서 이환가구원의 치료를 중단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表 7-15>는 가구주 특성별로 입원과 외래의 어느 부분에서 치료중

<表 7-15> 家口主 特性別 入院과 外來 治療中斷率

(단위: %)

| 가구주 특성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입원 치료중단율 | 외래 치료중단율 | 입원 치료중단율 | 외래 치료중단율 |
| 성 | | | | |
| 남자 | 52.7 | 27.9 | 43.5 | 20.5 |
| 여자 | 55.6 | 36.1 | 50.0 | 20.3 |
| 연령 | | | | |
| 29세 이하 | 50.0 | 42.3 | - | 25.0 |
| 30~39세 | 57.1 | 30.8 | 33.3 | 20.2 |
| 40~49세 | 62.5 | 32.4 | 25.0 | 25.0 |
| 50~59세 | 47.4 | 29.4 | 42.9 | 21.1 |
| 60세 이상 | 47.1 | 23.5 | 60.0 | 15.7 |
| 교육수준 | | | | |
| 초교 이하 | 61.1 | 25.9 | 57.1 | 16.3 |
| 중학교 | 37.5 | 30.6 | 16.7 | 23.4 |
| 고등학교 | 57.1 | 30.8 | 44.4 | 24.1 |
| 대학 이상 | 66.7 | 36.0 | 75.0 | 20.6 |
| 결혼상태 | | | | |
| 미혼 | 75.0 | 35.9 | - | 10.5 |
| 유배우 | 54.5 | 28.5 | 40.0 | 20.4 |
| 이혼·별거·사별 | - | 32.0 | 100.0 | 24.1 |
| 실업자 여부 | | | | |
| 비실업자 | 41.2 | 24.6 | 50.0 | 37.5 |
| 실업자 | 69.0 | 34.9 | 42.9 | 16.9 |
| 전체 | 50.7 | 23.0 | 44.4 | 16.0 |

단이 더 많이 발생하였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가구주가 남자가구주보다 치료중단율이 높았고, 특히 실업가구일 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입원으로 발생하는 치료중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비실업가구인 경우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실업가구인 경우는 가구주가 미혼일 때 입원으로 인한 치료중단율(75.0%)이 외래(35.9%)보다 2배나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실업가구는 가구주가 이혼·별거·사별일 때 입원(100.0%)이 외래(24.1%)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실업자일 때 입원으로 인한 치료중단(69.0%)이 외래(34.9%)보다 2배 높았고, 이는 비실업가구(입원 42.9%, 외래16.9%)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유형별로는 독신가구 및 편부모가구에서 입원으로 인한 치료중단의 경우는 없었고, 외래로 인한 치료중단만 나타났다. 독신가구인 경우는 외래 치료 중단율은 실업가구(30.0%)의 이환가구원이 비실업가구(13.6%)보다 2.2배나 높았다. 편부모가구도 실업가구(66.7%)가 비실업가구(33.3%)의 2배의 중단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독신가구와 편부모가구가 입원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급성질환으로 입원해야 되는 이환가구원이 발생되었더라도 고액의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입원대신에 외래로 대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업가구에선 비실업가구보다 훨씬 높은 치료 중단율이 나타나 실업상태에 있는 독신가구와 편부모가구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실업가구 중 노인가구는 입원의 치료 중단율이 비노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비실업가구에선 비노인가구의 입원 치료 중단율이 높았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입원과 외래의 치료 중단율은 실업가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비실업가구에서만 나타났다. 즉 비자가인 경우에 입원으로 치료를 중단한 비율이 외래보다 3.4

배나 높았으나, 자가인 경우는 입원의 치료 중단율이 외래보다 약간 높았다.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없는 실업가구는 입원 중단율이 외래에 비해 1.6배 높고, 비실업가구는 1.9배 높았다.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입원 중단율이 외래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200만원 이상인 실업가구는 입원으로 인한 중단율(57.1%)이 외래(21.2%)보다 2.7배 높았고, 같은 소득층의 비실업가구에선 5.9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고소득층 가구에서 이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입원의 치료중단을 상대적으로 더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실업가구보다 비실업가구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업자수에 따른 치료중단율을 보면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 실업자수(비경제활동인구수)가 1명인 경우에 입원으로 인한 치료중단이 많았다.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실업가구의 치료중단은 입원(100.0%)이 외래(29.2%)보다 3.4배 높았다. 실업 전·후 소득변화에 따른 치료중단율은 소득이 늘어났거나 변화없는 실업가구에선 외래로 인한 치료중단만 나타났고, 소득이 감소된 실업가구에선 입원이 외래보다 2.2배나 높은 치료중단율을 보였다. 비실업가구는 소득변화가 없는 가구의 입원중단율이 높았다. 또한 실업가구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의 치료중단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비실업가구는 급성질환일 때 높았다. 의료비 지출규모가 많을수록 입원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이 높았고, 이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같은 경향을 보였다(表 7-16 參照).

〈表 7-16〉 家口 特性別 入院과 外來 治療中斷率

(단위: %)

| 가구 특성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입원 치료중단율 | 외래 치료중단율 | 입원 치료중단율 | 외래 치료중단율 |
| 가구유형 | | | | |
| 독신가구 | - | 30.0 | - | 13.6 |
| 부부가구 | 45.2 | 29.9 | 38.5 | 15.8 |
| 편부모가구 | | 66.7 | - | 33.3 |
| 기타가구 | 64.5 | 27.4 | 53.8 | 24.4 |
| 노인가구여부 | | | | |
| 노인가구 | 60.0 | 20.1 | 33.3 | 19.4 |
| 비노인가구 | 52.1 | 31.4 | 43.5 | 20.7 |
| 주택소유여부 | | | | |
| 자가 | 48.6 | 24.3 | 28.6 | 21.0 |
| 비자가 | 60.7 | 35.1 | 66.7 | 19.8 |
| 가구총소득 | | | | |
| 없음 | 52.2 | 32.9 | 33.3 | 17.9 |
| 19만원 이하 | 66.7 | 27.5 | | 50.0 |
| 20 ~ 49만원 | 100.0 | 34.2 | 50.0 | 22.7 |
| 50 ~ 79만원 | 35.7 | 31.3 | - | 21.7 |
| 80 ~ 99만원 | 50.0 | 30.4 | - | 15.6 |
| 100~199만원 | 42.9 | 23.8 | 46.2 | 22.7 |
| 200만원 이상 | 57.1 | 21.2 | 75.0 | 12.7 |
| 실업자수 | | | | |
| 0명 | - | - | 25.0 | 18.2 |
| 1명 | 57.7 | 28.6 | 52.4 | 20.9 |
| 2명 이상 | 40.0 | 34.8 | - | 19.5 |
| 의료보장 여부 |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100.0 | 29.2 | - | 39.1 |
| 가입되어 있음 | 50.0 | 24.3 | 25.0 | 18.9 |
| 실업전후 소득변화 | | | | |
| 소득 늘어남 | - | 25.0 | - | - |
| 변화 없음 | - | 15.0 | 75.0 | 10.9 |
| 소득감소 | 54.5 | 24.5 | 35.3 | 21.8 |
| 질병유형 | | | | |
| 만성질환 | 57.8 | 18.2 | 25.0 | 17.0 |
| 급성질환 | 22.6 | 30.0 | 50.0 | 25.0 |
| 의료비 지출 | | | | |
| 없음 | - | - | - | - |
| 99천원 이하 | 44.4 | 27.3 | 45.5 | 22.6 |
| 100 ~ 299천원 | 50.0 | 16.0 | 80.0 | 11.5 |
| 300 ~ 499천원 | - | 17.6 | - | 25.0 |
| 500 ~ 999천원 | - | 6.7 | - | 11.1 |
| 1000천원 이상 | - | 10.0 | - | - |
| 전체 | 50.7 | 23.0 | 40.0 | 16.0 |

나. 失業 後의 未治療 및 治療中斷 理由

경제위기 이후 실업으로 인한 치료중단의 주된 이유는 治療費用으로 나타났는데(실업가구: 78.9%, 비실업가구: 75.4%), 이는 미치료 및 치료중단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表 7-17>은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여자가구주 가구의 미치료 및 치료중단의 이유는 치료비용 때문으로 나타났고, 이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같은 경향을 보였으나, 비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이유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치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이유는 비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주가 저학력층으로 갈수록 치료비용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직업 및 경제수준이 不可分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결혼상태에 따른 미치료 및 치료중단이유는 실업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구주가 유배우(79.2%)일 때 치료비용의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이혼·별거·사별(78.1%), 미혼 가구주(77.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의 실업자 여부에 따른 미치료 및 치료중단이유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 치료를 못 받았거나 중단한 이유가 치료비용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가구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편부모가구와 독인가구는 각각 10가구 중 9가구, 10가구 중 8.5가구가 치료비용을 미치료 및 치료중단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 같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노인가구 여부는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의 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미치료 및 치료중단이유는 실업가구에서만 차이가 있어서 자가보다 비자가일 때 치료비용의 이유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소득별 미치료 및 치료중단이유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실업가구에서 80~99만원의 소득층이 50~79만원 소득층보다 치료비용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치료비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실업가구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表 7-17〉 家口主 特性別 未治療 및 治療中斷 理由

(단위: %)

| 가구주 특성 | 실업가구 | | | | 비실업가구 | | | |
|----------|-------|----------|------|----------|-------|----------|------|----------|
| | 치료 비용 | 치료의 불필요성 | 기타 | χ^2 | 치료 비용 | 치료의 불필요성 | 기타 | χ^2 |
| 성 | | | | | | | | |
| 남자 | 78.1 | 12.7 | 9.2 | 7.644 | 71.5 | 13.1 | 15.3 | 6.264* |
| 여자 | 81.0 | 6.2 | 12.7 | | 93.1 | 3.4 | 3.4 | |
| 연령 | | | | | | | | |
| 29세 이하 | 64.3 | 21.4 | 14.3 | 28.072** | 66.7 | 11.1 | 22.2 | 17.294* |
| 30~39세 | 74.6 | 15.3 | 10.2 | | 58.1 | 29.0 | 12.9 | |
| 40~49세 | 81.5 | 16.0 | 2.5 | | 69.0 | 11.9 | 19.0 | |
| 50~59세 | 80.9 | 6.4 | 12.8 | | 85.2 | 3.7 | 11.1 | |
| 60세 이하 | 81.7 | 7.3 | 11.0 | | 90.0 | 6.7 | 3.3 | |
| 교육수준 | | | | | | | | |
| 초교 이하 | 86.1 | 8.2 | 5.7 | 13.830 | 90.2 | 3.9 | 5.9 | 20.042** |
| 중학교 | 73.9 | 11.4 | 14.8 | | 86.7 | 3.3 | 10.0 | |
| 고등학교 | 81.8 | 9.1 | 9.1 | | 72.6 | 14.5 | 12.9 | |
| 대학 이상 | 71.9 | 19.3 | 8.8 | | 38.5 | 26.9 | 34.6 | |
| 결혼상태 | | | | | | | | |
| 미혼 | 77.0 | 11.8 | 11.2 | 13.607* | 40.0 | 20.0 | 40.0 | 8.289 |
| 유배우 | 79.2 | 12.1 | 8.8 | | 73.7 | 12.8 | 13.5 | |
| 이혼·별거·사별 | 78.1 | 8.9 | 13.0 | | 92.9 | 3.6 | 3.6 | |
| 실업자 여부 | | | | | | | | |
| 비실업자 | 72.9 | 12.7 | 14.4 | 7.577* | 68.5 | 14.1 | 17.4 | 10.275* |
| 실업자 | 83.4 | 10.3 | 6.3 | | 93.1 | 6.9 | - | |
| 전체 | 78.9 | 11.5 | 9.6 | | 75.4 | 11.4 | 13.2 | |

註: * p<.05, ** p<.01

〈表 7-18〉 家口 特性別 未治療 및 治療中斷 理由

(단위: %)

| 가구 특성 | 실업가구 | | | | 비실업가구 | | | |
|-------------|-------|----------|------|----------|-------|----------|------|----------|
| | 치료 비용 | 치료의 불필요성 | 기타 | χ^2 | 치료 비용 | 치료의 불필요성 | 기타 | χ^2 |
| 가구유형 | | | | | | | | |
| 독신가구 | 85.0 | 10.0 | 5.0 | 3.884 | 80.0 | 10.0 | 10.0 | 2.346 |
| 부부가구 | 81.3 | 9.8 | 8.9 | | 76.2 | 9.5 | 14.3 | |
| 편부모가구 | 90.0 | - | 10.0 | | 100.0 | - | - | |
| 기타가구 | 75.6 | 14.0 | 10.4 | | 73.3 | 13.3 | 13.3 | |
| 노인가구여부 | | | | | | | | |
| 노인가구 | 75.3 | 11.0 | 13.7 | 1.786 | 77.0 | 13.9 | 9.0 | 0.820 |
| 비노인가구 | 79.9 | 11.0 | 9.1 | | 72.7 | 4.5 | 22.7 | |
| 주택소유여부 | | | | | | | | |
| 자가 | 72.7 | 17.1 | 10.1 | 9.842** | 70.5 | 14.5 | 14.9 | 0.666 |
| 비자가 | 83.1 | 6.7 | 10.1 | | 76.3 | 10.9 | 12.8 | |
| 가구총소득 | | | | | | | | |
| 없음 | 88.2 | 10.0 | 1.8 | 23.337* | 78.9 | 5.3 | 15.8 | 25.067* |
| 19만원 이하 | 82.6 | 13.0 | 4.3 | | 100.0 | - | - | |
| 20 ~ 49만원 | 80.6 | 11.3 | 8.1 | | 84.0 | 12.0 | 4.0 | |
| 50 ~ 79만원 | 70.8 | 11.2 | 18.0 | | 88.6 | 8.6 | 2.9 | |
| 80 ~ 99만원 | 77.8 | 3.7 | 18.5 | | 61.5 | 15.4 | 23.1 | |
| 100~199만원 | 69.1 | 16.2 | 14.7 | | 60.4 | 16.7 | 22.9 | |
| 200만원 이상 | 85.0 | 12.5 | 2.5 | | 83.3 | 8.3 | 8.3 | |
| 실업자수 | | | | | | | | |
| 0명 | - | - | - | 9.001 | 77.4 | 6.5 | 16.1 | 3.253 |
| 1명 | 78.4 | 12.0 | 9.5 | | 75.6 | 12.0 | 11.4 | |
| 2명 이상 | 81.7 | 8.3 | 10.0 | | 69.2 | 7.7 | 23.1 | |
| 의료보장 형태 | | | | |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91.5 | - | 8.5 | 2.843 | 100.0 | - | - | 1.432 |
| 가입되어 있음 | 77.7 | 12.1 | 10.2 | | 72.6 | 13.1 | 14.3 | |
| 소득의 변화 | | | | | | | | |
| 소득 늘어남 | - | - | - | 9.980* | - | - | - | 1.476 |
| 변화 없음 | 43.2 | 34.1 | 22.7 | | 71.3 | 7.1 | 21.6 | |
| 소득 감소 | 79.4 | 10.9 | 9.8 | | 73.7 | 13.9 | 12.4 | |
| 질병유형 | | | | | | | | |
| 만성질환 | 81.8 | 7.5 | 10.7 | 12.691** | 80.2 | 7.9 | 11.9 | 7.150* |
| 급성질환 | 69.9 | 20.5 | 9.5 | | 60.6 | 20.9 | 18.5 | |
| 의료비 지출 | | | | | | | | |
| 없음 | 86.3 | 7.2 | 6.5 | 13.356 | 91.2 | - | 8.8 | 5.466 |
| 99천원 이하 | 75.0 | 15.1 | 9.9 | | 69.4 | 15.6 | 15.1 | |
| 100 ~ 299천원 | 80.2 | 4.3 | 15.5 | | 71.4 | 11.7 | 16.9 | |
| 300 ~ 499천원 | 100.0 | - | - | | 100.0 | - | - | |
| 500 ~ 999천원 | 100.0 | - | - | | 100.0 | - | - | |
| 1000천원 이상 | 100.0 | - | - | | - | - | - | |
| 전체 | 78.9 | 11.5 | 9.6 | | 75.4 | 11.4 | 13.2 | |

註: * p<.05, ** p<.01

실업가구에서는 실업자수가 1명일 때보다 2명 이상일 때 치료비용으로 인한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비실업가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 수는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업자수별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이유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았거나 중단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실업 후의 소득변화에 따른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이유는 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서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았거나 중단한 비율은 소득이 변함없는 가구에 비해서 1.8배 높았다. 그리고 질병유형에 따른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이유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만성질환은 치료비용으로 중단한 경우가 급성질환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의료비 지출의 규모가 클수록 치료비용으로 중단한 비율이 높았고, 이 같은 경향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같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 失業 後의 醫療費 比率의 變化

실업 이후 보건의료서비스의 혜택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가구당 월 총 가계지출 중에서 保健醫療費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8년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가구나 비실업가구의 總支出額 對比 醫療費 比率(실업: 9.4%, 비실업: 7.7%)은 전국도시근로자가구 평균(4.1%)³⁶⁾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36) 전국도시근로자 가구의 의료비지출 비율은 통계청의 1998년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동향에서 조사된 것으로 소득 십분위별로 보았을 때 2.2%~5%의 값을 가짐(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P. 250에서 재인용).

실업가구는 물론 비실업가구도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을 것을 감안하면 이는 비슷한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해도 저소득계층일수록 분모가 되는 총지출액 자체가 작아서 상대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³⁷⁾.

<表 7-19> 家口主 特性別 月 總支出額 中 醫療費 比率

(단위: %)

| 가구주 특성 | 실업가구 | 비실업가구 |
|----------|------|-------|
| 성 | | |
| 남자 | 9.8 | 8.8 |
| 여자 | 8.8 | 8.6 |
| 연령 | | |
| 29세 이하 | 8.5 | 7.6 |
| 30~39세 | 8.0 | 7.8 |
| 40~49세 | 9.2 | 6.6 |
| 50~59세 | 9.7 | 10.8 |
| 60세 이상 | 12.5 | 12.9 |
| 교육수준 | | |
| 초교 이하 | 11.4 | 12.3 |
| 중학교 | 10.2 | 8.0 |
| 고등학교 | 9.0 | 8.0 |
| 대학 이상 | 7.6 | 7.2 |
| 결혼상태 | | |
| 미혼 | 8.7 | 6.8 |
| 유배우 | 9.7 | 9.0 |
| 이혼·별거·사별 | 9.7 | 8.6 |
| 실업자여부 | | |
| 비실업자 | 10.5 | 7.9 |
| 실업자 | 8.8 | 12.8 |
| 전체 | 9.4 | 7.7 |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본 월 총지출액 중 의료비 비율은 <表 7-19>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가구주 가구가 여자가구주보다 의료비 비율이

37) 1998년에 발간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P. 251.에서 인용함.

약간 높았고, 이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의 총지출액 중 의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많거나 저학력일수록 경제수준이 열악하다는 것,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업가구는 가구주가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약간 많게 나타난 반면, 비실업가구는 유배우일 때 가장 많았다. 실업가구는 가구주의 실업자 여부가 의료비 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비실업가구에서만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일 때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았다(表 7-19 參照).

가구유형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가구 여부 및 가구소득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에서 의료비지출 비율에 영향을 주어 노인가구인 경우, 그리고 일부 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총지출액 중 의료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 주택이 자가인 경우, 그리고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의료비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을 때와 실업가구는 실업 후 소득이 늘어났을 때, 비실업가구는 소득이 감소되었을 때 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업가구의 경우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업 후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서 가계의 총지출 중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만성질환인 경우에 급성질환보다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表 7-20 參照).

〈表 7-20〉 家口 特性別 月 總支出額 中 醫療費 比率

(단위: %)

| 가구 특성 | 실업가구 | 비실업가구 |
|-------------|------|-------|
| 가구유형 | | |
| 독신가구 | 8.9 | 6.5 |
| 부부가구 | 9.6 | 9.7 |
| 편부모가구 | 6.0 | 6.7 |
| 기타가구 | 9.9 | 8.3 |
| 노인가구여부 | | |
| 노인가구 | 11.4 | 12.0 |
| 비노인가구 | 9.3 | 8.3 |
| 주택소유여부 | | |
| 자가 | 10.6 | 9.3 |
| 비자가 | 8.7 | 8.3 |
| 가구총소득 | | |
| 없음 | 9.3 | 11.5 |
| 19만원 이하 | 14.1 | 16.0 |
| 20 ~ 49만원 | 11.1 | 10.8 |
| 50 ~ 79만원 | 9.5 | 8.9 |
| 80 ~ 99만원 | 8.9 | 6.7 |
| 100~199만원 | 8.6 | 7.7 |
| 200만원 이상 | 9.7 | 7.7 |
| 실업자수 | | |
| 0명 | - | 8.8 |
| 1명 | 9.4 | 8.7 |
| 2명 이상 | 10.9 | 8.8 |
| 의료보장 형태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6.7 | 2.9 |
| 가입되어 있음 | 9.7 | 8.7 |
| 실업전후 소득의 변화 | | |
| 소득 늘어남 | 14.0 | 7.2 |
| 변화 없음 | 8.8 | 7.9 |
| 소득 감소 | 9.6 | 8.8 |
| 질병유형 | | |
| 만성질환 | 14.8 | 15.4 |
| 급성질환 | 13.3 | 10.4 |
| 전체 | 9.4 | 7.7 |

第 2 節 醫療機關 利用 中斷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실업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의료행위가 단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서 疏外되는 계층이 대량 발생되고, 이들은 결과적으로 國民健康의 惡化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의료기관의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이차적으로 의료기관 이용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回歸分析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1. 醫療費 負擔이 病院利用 中斷에 미치는 影響

경제위기 이후 의료비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담스러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비율 즉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실업가구에선 50.5%, 비실업가구에선 43.7%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가구는 물론 비실업가구도 의료기관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의 부담이 심각한 실정임을 나타낸다. <表 7-21>은 가구주 특성별로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가구는 남자가구주인 경우, 비실업가구는 여자가구주가 중단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비실업가구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중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별 치료 중단 가능성은 가구주가 미혼에서 유배우 그리고 이혼·별거·사별로 갈수록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실업자일 때 중단할 가능성이 높았

고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表 7-21 參照).

〈表 7-21〉 家口主 特性別 醫療費 負擔으로 인한 病院利用 中斷 比率
(단위: %)

| 가구주 특성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성 | | | | |
| 남자 | 51.0 | | 42.7 | |
| 여자 | 50.5 | 4.304 | 47.9 | 9.155* |
| 연령 | | | | |
| 29세 이하 | 38.7 | | 31.1 | |
| 30~39세 | 44.5 | | 41.1 | |
| 40~49세 | 53.7 | 27.000*** | 44.2 | 21.392*** |
| 50~59세 | 52.5 | | 47.8 | |
| 60세 이상 | 55.8 | | 49.0 | |
| 교육수준 | | | | |
| 초교 이하 | 57.3 | | 53.1 | |
| 중학교 | 57.1 | 43.028*** | 48.0 | 31.567*** |
| 고등학교 | 47.9 | | 39.7 | |
| 대학 이상 | 40.7 | | 35.8 | |
| 결혼상태 | | | | |
| 미혼 | 44.0 | | 23.2 | |
| 유배우 | 51.5 | 7.835* | 44.0 | 24.896*** |
| 이혼·별거·사별 | 52.5 | | 53.0 | |
| 실업자여부 | | | | |
| 비실업자 | 46.3 | 20.590*** | 48.5 | 10.105** |
| 실업자 | 55.1 | | 55.1 | |
| 전체 | 50.8 | | 43.7 | |

註: * p<.05, ** p<.01, *** p<.001

〈表 7-22〉 家口 特性別 醫療費 負擔으로 인한 病院利用 中斷 比率
(단위: %)

| 가구 특성 | 실업가구 | | 비실업가구 | |
|-------------|------|-----------|-------|-----------|
| | 비율 | χ^2 | 비율 | χ^2 |
| 가구유형 | | | | |
| 독신가구 | 47.0 | | 38.6 | |
| 부부가구 | 50.8 | | 44.2 | |
| 편부모가구 | 61.7 | 3.332 | 44.9 | 1.117 |
| 기타가구 | 50.9 | | 44.0 | |
| 노인가구여부 | | | | |
| 노인가구 | 47.0 | | 43.1 | |
| 비노인가구 | 49.6 | 0.911 | 47.9 | 1.527 |
| 주택소유여부 | | | | |
| 자가 | 46.9 | | 41.4 | |
| 비자가 | 54.5 | 15.327*** | 46.0 | 3.167 |
| 가구총소득 | | | | |
| 없음 | 56.5 | | 53.6 | |
| 19만원 이하 | 67.9 | | 70.7 | |
| 20 ~ 49만원 | 60.7 | | 63.0 | |
| 50 ~ 79만원 | 55.1 | 81.617*** | 55.2 | 81.449*** |
| 80 ~ 99만원 | 47.1 | | 43.0 | |
| 100~199만원 | 39.2 | | 36.5 | |
| 200만원 이상 | 40.2 | | 28.4 | |
| 실업자수 | | | | |
| 0명 | - | | 46.4 | |
| 1명 | 49.2 | 24.406*** | 42.9 | 1.424 |
| 2명 이상 | 64.1 | | 46.5 | |
| 의료보장 형태 | | | | |
| 가입되어 있지 않음 | 70.0 | | 60.7 | |
| 가입되어 있음 | 50.1 | 14.537*** | 43.4 | 3.715 |
| 실업전후 소득의 변화 | | | | |
| 소득 늘어남 | 52.0 | | 19.6 | |
| 변화 없음 | 28.1 | 42.560*** | 31.5 | 30.027*** |
| 소득 감소 | 52.7 | | 47.0 | |
| 질병유형 | | | | |
| 만성질환 | 64.0 | | 54.2 | |
| 급성질환 | 57.0 | 4.382* | 43.7 | 6.034* |
| 전체 | 50.8 | | 43.7 | |

註: 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의 5점 척도 중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 p<.05, ** p<.01, *** p<.001

가구유형별로 보면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편부모가구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실업가구나 비실업가구 모두 비노인가구일 때 중단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중단 가능성은 실업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고, 가구소득에 따른 중단 가능성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즉 비자가인 경우와 일부 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비율이 증가하였다. 실업자수에 따른 중단 가능성은 실업가구에서만 유의하여서, 실업자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예상되던 바대로 의료보장 여부와 의료기관의 중단 가능성은 실업가구에서만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으나 실업 후의 소득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중단 가능성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업가구와 소득이 감소된 가구 모두에서 의료기관을 중단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질병유형은 의료비 부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질병유형은 실업가구와 비실업가구 모두에서 중단 가능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表 7-22 參照).

2. 醫療機關 利用中斷에 影響을 미치는 決定要因

가. 要因分析을 위한 變數

1) 從屬變數

요인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의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향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저 그

럼, 그런 편입, 매우 그런 편입'의 5개 범주의 서열변수로 비연속 변수이다. 그러나 응답결과가 대체적으로 正規分布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연속변수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2) 獨立變數

독립변수는 15개로, 醫療 關聯 變數(질병유형, 의료비지출규모, 이환자수), 가구특성 변수(가구형태, 주택소유여부, 가구의 월소득, 실업 전·후 소득의 변화, 생계유지 어려움, 취업자수, 실업자수), 가구주 특성 변수(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등이 사용되었다.

〈表 7-23〉 要因分析에 使用된 變數

| 독립변수 | 정의 |
|-------------|------------------------------|
| 의료관련 변수 | |
| 질병유형 | 0: 급성질환 1: 만성질환 |
| 의료비지출규모 | 실제 지출: 천원 |
| 이환자수 | 실제 수: 명 |
| 가구특성 변수 | |
| 가구형태 | 0: 비독신가구 1: 독신가구 |
| 주택소유여부 | 0: 비자가 1: 자가 |
| 가구의 월소득 | 실제소득: 천원 |
| 실업전후 소득의 변화 | 0: 소득증가/소득동일 1: 소득감소 |
| 생계유지어려움 | 0:(전혀)그렇지 않다/그저그렇다 1:(매우)그렇다 |
| 취업자수 | 실제 수: 명 |
| 실업자수 | 실제 수: 명 |
| 가구주 특성 변수 | |
| 가구주의 성 | 0: 남자 1: 여자 |
| 가구주의 연령 | 실제 연령: 세 |
| 가구주의 결혼상태 | 0: 무배우 1: 유배우 |
| 가구주의 교육수준 |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
| 가구주의 직업 | 0: 비임금근로자 1: 임금근로자 |

변수의 정의는 <表 7-23>에 제시되어 있다. 의료비지출규모, 가구의 월소득은 실제 금액을 사용하였고, 이환자수, 취업자수, 실업자수는 실제 인원수를 활용하였다. 가구주의 성과 연령은 조사결과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질병유형과 가구형태, 주택소유여부, 실업 전·후 소득의 변화, 생계유지 어려움, 가구주의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직업 등은 더미변수화 하였다.

나. 分析結果

<表 7-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특성 변수 중 생계유지 어려움 (-0.971)의 변수가 $p < .001$ 수준의 높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즉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실업으로 인해 생계유지조차 어렵게 되면 가구 총지출 중 의료비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이고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은 중단되거나 비용부담이 적은 의료기관으로 하향될 것이라는 것이다. 가구주의 특성 중 가구주의 직업(0.445)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에 대한 正의 관계는 가구주가 賃金勤勞者(일용직 포함)일 때 가정 경제생활에 미치는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을 말해준다. 그리고 의료비지출규모 (0.003), 이환자수(0.261), 가구의 월소득(-.001), 실업자수(0.411) 등 변수들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의료비 지출규모가 클수록, 이환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구의 월소득과 의료기관 이용 중단과의 負의 관계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의료기관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한편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이용을 중단하겠다는 가능성에 질병유형이나 가구

형태, 주택소유 여부, 실업 전·후 소득의 변화, 취업자수 및 가구주의 특성 중 가구주의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연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表 7-24〉 醫療機關 利用 中斷에 影響을 미치는 決定要因

| 변수 | b | s. e. |
|-------------|----------|---------------|
| 절편 | 2.458*** | .570 |
| 의료관련 변수 | | |
| 질병유형 | -0.91 | .182 |
| 의료비 지출규모 | .003* | .0001 |
| 이환자수 | .261* | .113 |
| 가구특성 | | |
| 가구형태 | -.142 | .221 |
| 주택소유 여부 | .021 | .129 |
| 가구의 월소득 | -.001* | .0007 |
| 실업전후 소득의 변화 | .140 | .157 |
| 생계유지어려움 | .971*** | .120 |
| 취업자수 | -.072 | .086 |
| 실업자수 | -.411* | .206 |
| 가구주특성 | | |
| 가구주의 성 | .097 | .370 |
| 가구주의 연령 | .003 | .623 |
| 가구주의 결혼상태 | .317 | .382 |
| 가구주의 교육수준 | -.124 | .125 |
| 가구주의 직업 | .445** | .154 |
| R^2 | .32 | Adj R^2 .29 |
| F | | 10.585*** |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 의료기관의 이용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생계유지 어려움, 가구소득 및 가구주의 직업, 실업자수 등의 經濟的 要因과 의료비 지출규모, 이환자수 등의 保健醫療 關聯 要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실업가구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업가구,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거나 가정 경제생활에 미치는 의료

비부담이 큰 실업가구 및 의료비 지출규모가 큰 실업가구, 이환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가구소득이 낮은 실업가구 등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병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第 3 節 要約 및 示唆點

본 연구는 실업이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健康狀態 측면에서 질병발생과 질병유형의 관계를, 醫療利用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변경률 및 의료기관 유형의 변화를, 그리고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치료상태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과 질병발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독신가구와 편부모가구 등 缺損家口 및 老人家口의 질병발생 비율은 1/3 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자수가 많을수록 질병발생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득이 감소된 실업가구에서 질병발생 비율이 높았다. 한편 실업가구의 이환가구원 10명 중 7명은 만성질환자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은 대부분 약국과 보건(지)소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가구주 실업가구의 1/3 이상이 보건(지)소를,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 10명 중 약 4명이 종합병원이나 병원 대신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노인, 또는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일 경우 실업가정의 경제가 훨씬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실업가구가 醫療保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실업 후 이용기관이 약국으로 하향화되었고, 그나마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限界階層의 실업가구는 보건(지)소도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치료 및 치료 중단율은 여자 가구주인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구소득이 없거

나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보다 1.5배나 높게 나타났다. 넷째 치료중단 중 입원으로 인한 중단은 외래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자가구주인 경우 입원의 치료 중단율이 높았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실업자일 때 입원으로 인한 치료중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업가구가 의료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입원으로 인한 치료중단은 외래보다 3.4배 높았고,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선 2.2배나 높았다. 또한 慢性疾患으로 인한 입원의 치료 중단율이 급성질환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실업가구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업가구,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거나 가정 경제생활에 미치는 의료비부담이 큰 실업가구 및 의료비 지출규모가 큰 실업가구, 이혼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가구소득 규모가 적은 실업가구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병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업은 가정의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生活樣式의 변화 뿐만 아니라 健康狀態 및 保健醫療 行爲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연구결과 입증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를 포함한 가족원의 건강수준이 낮아졌고, 의료기관 이용도 감소하였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受惠率이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말한다. 또한 실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실업자 및 가족원의 미치료 및 치료 중단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실업가정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율의 저하는 나아가 國民健康의 큰 危害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실업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실업자 및 가족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接近度를 높이려면 먼저 실업가구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실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 중단 가능성이 높아질 실업가구를 중심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第 3 部

失業家庭의 福祉欲求와 對應方案

第 8 章 失業家庭의 福祉欲求

第 9 章 失業者 및 失業家庭을 위한 對應方案

第 10 章 結 論

第 8 章 失業家庭의 福祉欲求

人間에게 勞動이 주는 意味는 단지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에게 勞動은 그들의 生活을 計劃하고, 時間을 配分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形成하고, 社會經濟的 地位를 부여받으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一次的인 源泉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의 喪失’이 주는 의미 또한 所得의 喪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은 실업당사자와 그들 가족에게 經濟的 苦痛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精神的·身體的 健康과 家族關係 및 社會關係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다준다. 결국 실업은 가구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결핍을 가져옴으로써 가족의 위기를 유발하며 심한 경우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특히 실업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總體的이고 統合的으로 接近할 필요가 있다. 즉, 求職과 所得保障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가족상담서비스, 보호서비스와 같은 실업가정의 社會心理的 問題에 대한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사상 유래 없는 失業率을 기록하였고, 최근 실업률은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영향은 지속되어 각종 社會問題가 야기되고 있다. 가족의 동반자살, 이혼율의 증가, 아동과 노부모의 유기, 가정폭력의 증가 등과 같은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 失業과 雇傭 不安定에 기인된 社會問題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실업가정이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동일한 樣式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 실업가정의 유형, 그리고 실업 이전의 가족관계의 양상 등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상이한

대응기제를 발전시킨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업가정에 대해 주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이들 실업자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적절한 형태로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 영역은 실업가정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欲求」란 일차적으로 缺乏 또는 問題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고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실업가정이 가지고 있는 결핍 또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먼저 실업가정이 가지고 있는 결핍 또는 문제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와 같은 결핍 또는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실업자 개인의 특성 혹은 가구특성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第 1 節 失業家庭의 福祉欲求와 社會福祉서비스의 對應

1. 失業家庭의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欲求

실업은 가족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예상치 않던 일종의 家族事件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사건에 대해 가족은 나름대로의 대응기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두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실업으로 인한 문제는 家族危機를 초래하며 家族解體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이라는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외부적인 대응기제의 역할이 기대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와 같은 役割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업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失業家庭의 欲求가 무엇인지를 다차원적으로

사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응되는 사회적 욕구란 집단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욕구, 다시 말해서 사회문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radshaw(1972)는 욕구인식의 기준에 따라 욕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최성재, 1990에서 재인용).

먼저, ‘規範的 欲求’(normative need)는 전문가, 행정가 또는 사회과학자 등이 욕구의 상태 및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바람직한 욕구충족의 수준을 정해 놓고 이 수준과 실제 상태와의 차이에 의하여 욕구의 정도를 규정하든가 또는 최고의 욕구수준을 정해 놓고 실제 상태와의 차이에 의하여 欲求程度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규범적 욕구는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며, 실제로 기준을 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식의 발전과 사회의 가치기준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둘째, ‘感觸的 欲求’(felt need)는 욕구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느낌에 의하여 인식되는 욕구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어떤 욕구의 상태에 있는지(또는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보아서 파악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촉적 욕구는 실제적인 욕구의 측정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인식 정도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한계를 지닌다.

셋째, ‘表現的 欲求’(expressed need)는 서비스를 실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로 파악되는 욕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比較的 欲求’(comparative need)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욕구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욕구충족을 위한 급여(서비스)의 수준을 미리 정하고 이 수준에 의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중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感觸的 欲求와 表現的 欲求이다. 즉, 일차적으로 欲求를 어떠한 결핍 또는 문제의 상황으로 넓게 해석한다면 감촉적 욕구는 욕구의 가장 넓은 범주에서 주요한 사회복지의 잠재적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결핍 또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표출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즉, 이들은 결핍 또는 문제를 개인적 및 가족 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로 표출한다면 이를 표현적 욕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업가구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가정의 潛在的(感觸的) 欲求와 表出的 欲求를 중심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失業家庭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의 類型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은 매우 否定的인 生活事件(negative life events)을 형성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욕구 또한 매우 다차원적인 것이다(Sales, 1995). 그러나, 지금까지 실업에 대한 社會政策的 接近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의존해 왔으며, 社會心理的·家族關係的 側面에서의 接近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따라서 실업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업자와 그 가족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고갈에 따라 심화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련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차원과 함께 유발되는 다양한 社會心理的·關係的 效果들에 주목해야 하며, 따라서 社會福祉서비스의 接近 또한 이러한 다양한 실업가정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의 현금이전과 현물과 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실업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현금이전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도입시기가 일천하여 수급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며³⁸⁾, 급여의 기간도 매우 짧아 특히 장기실업자를 위한 생계보장으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 공공부조로서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기존의 근로능력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던 생활보호사업을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업자에까지 확대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여전히 그 대상자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급여의 수준 또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실업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보호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이러한 고용보험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같은 현금이전은 실업가정의 경제적 대처기제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위기를 완충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효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금이전과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본 연구의 관심의 대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과 범위는 더욱 더 제한적이다. 기존의 대상영역별 서비스, 즉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이 실업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욕구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구직상담과 각종 구직지원서비스가 실업자에 대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실업자 개인이나 실업

38) 경제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가입범위 또한 급속히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는 정규직 위주의 안정적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며, 특히 일용직 피용자는 여전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가정의 위기에 대처하는 외부적 安全板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기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실업가정의 사회복지 욕구를 査定하고, 이러한 욕구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

第 2 節 失業家庭의 福祉欲求 査定

주지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욕구와 표현적 욕구의 차원에서 실업가정의 욕구를 사정한다. 각각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는 다시 긴급 현물서비스 욕구, 상담서비스 욕구, 보호서비스 욕구, 그리고 고용관련서비스로 나누어서 분석하며, 추가적으로 아동양육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욕구를 분석한다.

긴급현물서비스 욕구란 갑작스러운 소득의 단절로 유발되는 긴급한 욕구에 대한 대응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긴급식품비, 긴급의료권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자활보호대상자, 한계계층 실업자, 노숙자, 노약자, 난민 등의 현금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공공부조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긴급한 욕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빈곤계층과 次上位階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실업가정은 일차적으로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이 가장 주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소득단절로 인해 혹은 여타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 내외적으로 다양한 사회심리적 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실업으로 인한 실업자 개인과 배우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자녀문제 등이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담서비스는 이러한 실업가정이 겪는 갈등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가족간의 지지적이고 우호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구직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보호서비스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단절, 가족내 갈등, 혹은 구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족의 유리 등으로 인해 자녀나 노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 혹은 결여된 가구에 대해 그들의 자녀나 노부모를 중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족의 재결속과 재결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실업가정 문제의 일차적 근원은 실업으로 유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실업가정의 가족원 혹은 여타 가구원의 재취업, 취업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관련서비스는 실업가족원에 대해 구직활동비, 구인정보, 구직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정리하면, 긴급 현물서비스와 구직 관련 서비스는 주로 실업가정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상담서비스와 보호서비스는 실직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가족 및 사회관계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1. 潛在的 欲求

잠재적 욕구는 구체적인 욕구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요청되는 缺乏 또는 問題의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욕구를 가진 실업가정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가. 緊急 現物서비스의 潛在的 欲求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가 있다’,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자녀의 진학을 포기하거나 연기하였다’의 문항이 잠재적 욕구로서 긴급 현물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전체 실업가정의 약 70%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가 있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50.8%가 의료비가 부담스럽다, 5.2%가 자녀의 진학을 포기하거나 연기하였다고 응답하여 실업가정의 긴급 현물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생계유지와 의료비 부담에서 각각 29.6%와 15.1%로 나타나, 일차적인 경제적 욕구도 해결되지 못하는 실업가정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실업 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고 있는 가구의 수도 전체 실업가정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업가정에 대한 긴급 식품권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과 같은 현물지원 서비스의 잠재적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8-1〉 緊急 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단위: %)

| 구분 | 생계유지 부담 | | 의료비 부담 | | 자녀교육 부담 | |
|-----------|---------|-------|--------|-------|---------|-------|
|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115 | 4.2 | 223 | 8.4 | | |
| 그렇지 않다 | 302 | 11.1 | 759 | 28.7 | 2,017 | 94.1 |
| 그저 그렇다 | 398 | 14.7 | 320 | 12.1 | | |
| 그런 편이다 | 1,093 | 40.3 | 943 | 35.7 | 110 | 5.2 |
| 매우 그렇다 | 804 | 29.6 | 398 | 15.1 | | |
| 합계 | 2,711 | 100.0 | 2,643 | 100.0 | 2,127 | 100.0 |

나. 相談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상담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크게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욕구로 분류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욕구는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제6장의 <表 6-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며,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욕구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싸움을 한다’, ‘자녀의 학업성적이 떨어졌다’, ‘자녀의 비행행동이 증가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실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 심리상태에 대한 문항의 경우 15~50%의 실업자가 심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심리상태에 있다(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상태가 매우 심하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5~15% 내외에 이른다. 또한, 극단적으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실업자의 비율도 5.1%에 이르러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실업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업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의 일부 혹은 전부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개인적으로 혹은 家族內的 關係網이나 社會的 支持網을 통해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우 혹은 개인적 관계망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을 경우는 각종 상담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부부싸움이 매우 잦은 경우가 전체 실업가정의 5.0%, 자녀의 학업성적이 매우 떨어진 가구가 5.8%, 그리고 자녀의 비행행동이 매우 증가한 경우가 3.8%로 나타났다. 이로 유추해 볼 때, 전체 실업가정의 5% 내외가 가족문제로 인한 잠재적 상담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8-2〉 夫婦 및 子女問題

(단위: %)

| 구분 | 부부관계 | | 자녀 학업성적 | | 자녀 비행행동 | |
|-----------|-------|-------|---------|-------|---------|-------|
|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 전혀 그렇지 않다 | 462 | 24.4 | 342 | 29.2 | 564 | 48.6 |
| 그렇지 않다 | 685 | 36.2 | 478 | 40.8 | 491 | 39.7 |
| 그저 그렇다 | 295 | 15.6 | 144 | 12.3 | 59 | 5.1 |
| 그런 편이다 | 358 | 18.9 | 138 | 11.8 | 33 | 2.8 |
| 매우 그렇다 | 94 | 5.0 | 68 | 5.8 | 44 | 3.8 |
| 합계 | 1,893 | 100.0 | 1,170 | 100.0 | 1,160 | 100.0 |

다. 保護서비스 欲求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또는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경우는 보호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친지에게 위탁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므로 엄격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로 분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보호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로 분류하여 2% 내외의 실업가정이 아동위탁 혹은 부모위탁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잠재적 욕구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表 8-3〉 保護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단위: %)

| 구분 | 아동위탁 | | 부모위탁 | |
|-----|-------|-------|-------|-------|
|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 그렇다 | 44 | 2.0 | 27 | 1.3 |
| 아니다 | 2,158 | 98.0 | 2,072 | 98.7 |
| 합계 | 2,202 | 100.0 | 2,099 | 100.0 |

라. 家口類型別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실업가정은 전체적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잠

재적 욕구가 더 크다. 특히, 이러한 실업가정 중에서도 특정의 욕구를 가진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더 많은 욕구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하는 실업가정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는 실업가정에 비해 추가적인 욕구 혹은 더 많은 욕구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실업가정³⁹⁾을 살펴보면, 이들 가구는 전체 실업가정에 비해 생계유지 부담이나 의료비 부담이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총지출에서 식품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실업가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아래 表 8-4 參照).

〈表 8-4〉 老人을 包含한 失業家庭의 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단위 %)

| | 전체 실업가구 | 노인부양실업가구 |
|----------------|---------|----------|
| 생계유지가 어렵다 | 69.8 | 85.3 |
| 의료비가 부담스럽다 | 50.6 | 62.0 |
| 총지출 대비 식품비의 비중 | 33.2 | 38.0 |
| 총지출 대비 의료비의 비중 | 9.4 | 10.8 |

다음으로, 실업가정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실업가정⁴⁰⁾의 경우 생계유지, 의료비,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4.7%, 59.8%, 9.7%로, 위의 <表 8-1>에서 나타난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가구가 현물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본 조사에서 전체 실업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실업 가구는 421가구로 전체 실업가구(2,771가구)의 15.2%였음.

40) 실업가구 2,771가구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2.8%인 495가구였다. 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본 조사표의 항목에는 장애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表 8-5〉 障碍人을 包含한 失業家庭의 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단위: %)

| 구분 | 생계유지 부담 | 의료비 부담 | 자녀교육 부담 |
|-----------|---------|--------|---------|
| 전혀 그렇지 않다 | 5.7 | 9.0 | |
| 그렇지 않다 | 8.7 | 22.2 | 91.3 |
| 그저 그렇다 | 10.9 | 9.1 | |
| 그런 편이다 | 34.7 | 41.0 | 9.7 |
| 매우 그렇다 | 40.0 | 18.8 | |
| 계 | 100.0 | 100.0 | 100.0 |

2. 失業家庭의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

주지한 바와 같이, 표현적 욕구란 서비스를 실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로 파악되는 욕구를 말한다. 따라서, 표현적 욕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 즉 欲求査定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서 살펴본 잠재적 욕구에 비해 소극적인 욕구라고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욕구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분배 차원에서 표현적 욕구에 주목하는 것은 目標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⁴¹⁾.

가. 緊急 現物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

긴급 현물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는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표현된다. 긴급식품권, 긴급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적 욕구에만 주목할 경우 진정한 욕구를 가지고서도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임.

의료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56.9%, 68.1%의 실업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잠재적 욕구로서 생계 곤란 및 의료비 부담에 대한 응답비율과는 반대의 결과인데, 이는 식품권과 같은 경우 상당한 낙인(stigma)이 붙는다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로 간접적으로 추정가능한데, 전체 실업가정의 57.7%가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자녀 학비지원에 대한 표현적 욕구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表 8-6 參照).

〈表 8-6〉 失業家庭의 緊急 現物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 (단위: %)

| 구분 | 긴급식품권 | 긴급의료비 | 학비 지원 |
|--------|-------|-------|------------|
| 매우 필요 | 20.7 | 30.7 | |
| 필요 | 36.2 | 37.4 | |
| 보통 | 22.6 | 18.8 | 자녀양육 |
| 불필요 | 18.1 | 11.1 | 우선순위: 57.7 |
| 매우 불필요 | 1.1 | 0.8 | |
| 무응답 | 1.3 | 1.1 | |
| 계 | 100.0 | 99.9 | |

〈表 8-7〉 失業者의 保健醫療對策 要求順位

| 내용 | 빈도(명) | 비율(%) |
|---------------------------------|-------|-------|
| 월 의료보험료 50% 지원 | 1,313 | 41.1 |
| 보건(지)소의 무료치료 또는 실비이용 확대 | 544 | 17.1 |
| 정부가 실비보조하는 실업가정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 | 403 | 12.6 |
| 긴급의료비 지원 | 305 | 9.6 |
| 실업전 가입한 의료보험 혜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305 | 9.6 |
| 실업자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 담당제 실시 | 129 | 4.0 |
| 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치료비 대부사업 | 100 | 3.1 |
| 기타 | 91 | 2.9 |
| 계 | 3,190 | 100.0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긴급의료비 도입보다는 현 의료보험제도 내에서의 지원이나 보건소의 무료 혹은 실비 치료 등, 현존하는 제도에 대한 보완 및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8-7 參照).

나. 相談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

전체 실업자 중 12.7%가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상담받고 싶은 문제로는 경제적 곤란, 실업스트레스, 취업문제, 부부갈등, 아동/부모부양, 자녀부양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가족위기의 일차적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점은 소득계층별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상담욕구가 41.0%인 반면 40~60만원은 16.7%, 60~80만원은 12.4%, 80~100만원 12.5%, 100만원 이상은 17.4% 등⁴²⁾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실업가정의 상담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제3자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할 때, 가족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대해 상담받고자 하는 비율도 무시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⁴³⁾(表 8-8 參照).

〈表 8-8〉 相談을 원하는 問題의 類型

| 문제 유형 | 실업 스트레스 | 경제적 곤란 | 취업 문제 | 부부 갈등 | 아동/부모 부양 | 자녀 비행 | 기타 | 계 (명) |
|-------|---------|--------|-------|-------|----------|-------|-----|-------------|
| 비율(%) | 21.9 | 42.3 | 23.4 | 5.0 | 2.2 | 1.6 | 3.6 | 100.0 (400) |

42) 전체 상담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실업가정의 가족원 407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결과임.

43) 참고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담기관으로는 전문상담기관 44.0%, 사회복지관 28.6%, 종교기관 10.1%, 병원 6.5% 등의 순서로 나타남.

다. 求職 關聯 서비스 欲求

구직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구직활동비와 구인정보의 필요성을 통해 추정될 수 있다. 전체 실업자의 70.4%가 구직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6%가 타지역의 구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실업자의 구직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업’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취업’이라고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表 8-9 參照).

〈表 8-9〉 求職 關聯 서비스에 대한 欲求

| 구분 | 구직활동비 | 구인정보 (타지역) |
|--------|-------|---------------|
| 매우 필요 | 28.7 | 27.9 |
| 필요 | 42.7 | 38.1 |
| 보통 | 16.1 | 15.6 |
| 불필요 | 10.1 | 13.1 |
| 매우 불필요 | 1.1 | 3.5 |
| 무응답 | 1.3 | 1.8 |
| 계 | 100.0 | 100.0 |

라. 家口類型別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

앞의 잠재적 욕구에서 자녀의 학업성적이 떨어지거나 비행행동이 증가하는 등의 자녀문제에 대한 서비스 욕구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 및 문화·휴식공간설치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실업과 관련해서 가정 내에서의 자녀의 학습분위기에 상당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프로그램, 有害環境 정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순으로 자녀문제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나타났다(表 8-10 參照).

〈表 8-10〉 子女에게 問題가 있는 경우 받고 싶은 도움

| 내용 | 실업자 | 실망실업자 |
|---------------------------|------------|------------|
| | 빈도(비율) | 빈도(비율) |
|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 문화·휴식공간 | 257(37.4) | 40(38.1) |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 186(27.1) | 30(29.2) |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 정비 | 107(15.5) | 10(9.8) |
| 가정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 62(9.1) | 5(4.9) |
|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 41(5.9) | 10(10.1) |
| 기타 | 34(5.0) | 8(7.9) |
| 계 | 687(100.0) | 104(100.0) |

〈表 8-11〉 子女養育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가장 必要한 政府의 支援

(단위: 명, %)

| 내용 | 실업자 | 실망실업자 |
|-------------------|--------------|------------|
| | 빈도(비율) | 빈도(비율) |
| 학비지원 | 778(57.7) | 68(43.9) |
| 양육비지원 | 178(13.2) | 17(10.8) |
| 미취학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 | 142(10.5) | 32(21.0) |
| 무료급식 | 86(6.4) | 14(9.0) |
| 취학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호시설 | 74(5.5) | 8(5.5) |
| 아동위탁시설 확대 | 38(2.8) | 5(3.3) |
| 상담 | 16(1.2) | 1(.8) |
| 기타 | 38(2.8) | 9(5.7) |
| 계 | 1,349(100.0) | 154(100.0) |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실업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요구되는 정부의 지원서비스 우선순위는 학비지원, 양육비 지원, 미취학자녀를 위한 保育施設의 확대, 無料給食, 취학자녀를 위한 방과후 保護施設의 순으로 나타났다(表 8-11 參照).

다음으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실업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保護手當의 지급, 의료서비스·의료비지원, 노인전문병원, 가정봉사원·訪問看護制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表 8-12 參照).

〈表 8-12〉 老人扶養을 위해 가장 必要한 政府支援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
| 보호수당지급 | 77 | 43.7 |
| 의료서비스·의료비지원 | 60 | 34.4 |
|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 | 15 | 8.3 |
| 가정봉사원·방문간호제 | 10 | 5.9 |
| 노인요양원 시설 건립 | 6 | 3.2 |
| 상담서비스 확대 | 2 | 1.0 |
| 기타 | 6 | 3.5 |
| 계 | 176 | 100.0 |

마지막으로 장애인가구에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障礙人手當 지급, 의료서비스 지원, 편의시설 확충, 시설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表 8-13 參照).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와 같은 가구유형별 욕구에는 일관된 우선순위의 순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金錢的 支援, 의료적 욕구 해결을 위한 의료서비스·의료비지원과 같은 現物 支援, 이용·보호서비스시설의 확충과 같은 서비스의 확대 등의 순서이다. 결국, 이는 실업가정의 긴급한 욕구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表 8-13〉 障礙人家口에 가장 必要한 政府支援

(단위: 명, %)

| 내용 | 빈도 | 비율 |
|---------------------|-----|------|
| 장애인수당 지급 | 105 | 31.9 |
|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 84 | 25.5 |
| 편의시설 확충 | 38 | 11.6 |
| 시설복지서비스 확대 | 59 | 17.9 |
| 가정봉사원제도 및 가정방문제도 확대 | 13 | 4.0 |
| 보장구 지급 | 13 | 4.0 |
| 기타 | 17 | 5.1 |
| 계 | 329 | 100 |

第 3 節 失業家庭의 福祉欲求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1. 模型構築 및 變數의 設定

실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다차원적인 것이며, 따라서 욕구도 다차원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동일한 실업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서도 각 가족에의 스트레스 정도와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그 대처 양식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실업 가정의 욕구의 정도 - 근본적으로 볼 때, 가족스트레스의 정도 -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욕구의 사정과 급여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욕구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업가정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정도(욕구의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多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노인부양 지원, 장애인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문제자녀에 대한 도움,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상담받고 싶은 욕구, 구직활동비, 타지역 구인정보 제공, 세금 및 공과금 감면에 대한 욕구 중 조사 대상 실업가정이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의 수로 규정한다.

독립변수는 실업가정 특성군과 가구주 특성군, 그리고 응답자 특성군으로 분류된다. 失業家庭 特性으로는 전체 가구원수, 취업가구여부, 실업가구여부, 이환가구여부, 65세 이상 가구여부, 20세 미만 가구여부, 장애가구여부, 가구소득, 가구재산,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부부+미혼자녀가구, 편부모·조부모가구, 기타가구)이 포함되었다. 家口主 特性群으로는 가구주의 결혼상태(기혼, 미혼, 이혼·별거·사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의 동거여부, 가구주의 고용형태(실업,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포함되었으며, 응답자 특성군에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이혼여부, 결혼상태(기혼, 미혼, 이혼·별거·사별),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 및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심리상태는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2. 分析結果

복지욕구는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表 8-14>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평균 복지욕구를 나타낸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817.85, p<0.0005$). 이에 따라, Schéffe 多重比較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 복지욕구의 차이는 실업자와 임금근로자,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 그리고 실망실업자와 임금근로자, 실망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실업자와 실망실업자를, 또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한 집단으로 하며 복지욕구를 비교할 수 있다.

<表 8-14> 就業狀態에 따른 福祉欲求

| 경제활동상태 | 사례수 | 평균복지욕구 | 표준편차 |
|--------|-------|--------|--------|
| 실업자 | 3,092 | 4.0766 | 2.2677 |
| 실망실업자 | 329 | 3.8237 | 2.3320 |
| 임금근로자 | 1,341 | 1.1738 | 1.0854 |
| 비임금근로자 | 370 | 1.2297 | 1.0033 |
| 계 | 5,132 | 3.0966 | 2.3782 |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자와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의 복지욕구를 비교해 보면, 실업자의 복지욕구는 평균 4.1인 반면에 취업자의 복지욕구는 1.2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독립변수들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가구원수에서는 실업자 가구에서 0.8명, 취업자 가구에서 1.8명이며, 실업가구원수에서는 실업자가구에서 1.1명, 취업자가구에서 1.3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수도 실업자가구에서는 0.19명, 취업자가구에서는 0.15명으로 실업자가구에서 더 많았다. 가구소득은 실업자가구에서 67만 4천원, 취업자가구에서 101만 6천원으로 예상대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연한에 있어서는 실업자가구에서는 9.6년, 취업자가구에서는 10.0년으로 취업자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을 비교해 보면, 실업자가구에서는 37.5세, 취업자가구에서는 36.9세로 실업자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났다.

〈表 8-15〉 就業狀態에 따른 獨立變數의 記述統計와 t-檢證 結果

| 구분 | 전체 | | 취업자 | | 실업자 | | 통계적 유의도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복지욕구 | 3.1 | 2.4 | 1.2 | 1.1 | 4.1 | 2.3 | *** |
| 가구원수 | 3.6 | 1.4 | 3.6 | 1.4 | 3.6 | 1.4 | |
| 취업가구원수 | 1.1 | .96 | 1.8 | .87 | .82 | .84 | *** |
| 실업가구원수 | 1.2 | .53 | 1.3 | .43 | 1.1 | .58 | *** |
| 이환가구원수 | .52 | .74 | .53 | .75 | .51 | .73 | |
| 65세 이상 노인수 | .18 | .45 | .15 | .42 | .19 | .46 | ** |
| 20세 미만 자녀수 | .45 | .78 | .46 | .78 | .44 | .77 | |
| 가구소득 | 79.1 | 83.4 | 101.6 | 83.6 | 67.4 | 80.8 | *** |
| 가구재산 | 2.8 | 2.0 | 2.8 | 2.1 | 2.74 | 2.0 | |
| 가구주 교육연한 | 9.7 | 4.1 | 10.0 | 4.1 | 9.6 | 4.1 | ** |
| 가구주 연령 | 47.2 | 12.9 | 45.2 | 13.0 | 48.1 | 12.7 | *** |
| 응답자 연령 | 37.3 | 12.2 | 36.9 | 11.7 | 37.5 | 12.4 | |
| 응답자 교육연한 | 11.0 | 3.6 | 10.9 | 3.7 | 11.1 | 3.5 | |
| 응답자 심리상태 | 35.4 | 10.3 | 34.9 | 10.1 | 35.6 | 10.3 | * |

註: * p<0.05, ** p<0.01, *** p<0.001

<表 8-16> 失業者의 福祉欲求에 대한 回歸分析

| 구분 | 모형 I | | 모형 II | | 모형 III | |
|----------------------------|-----------|-------|-----------|-------|-----------|-------|
| | 비표준화 | 표준화 | 비표준화 | 표준화 | 비표준화 | 표준화 |
| | 계수(B) | 계수(β) | 계수(B) | 계수(β) | 계수(B) | 계수(β) |
| 상수 | 4.114*** | | 3.955*** | | 4.156*** | |
| 가구원수 | 0.098* | .061 | | | .130** | .088 |
| 취업가구여부 | -.242** | -.083 | | | -.252*** | -.095 |
| 실업가구여부 | -.178* | -.041 | | | 0.0059 | .001 |
| 이환가구여부 | 0.044 | .010 | | | 0.056 | .014 |
| 노인가구여부 | .487*** | .073 | | | .293* | .049 |
| 20세미만 자녀가구여부 | .363** | .076 | | | .154 | .036 |
| 장애가구여부 | 1.896*** | .304 | | | 1.757*** | .319 |
| 가구소득 | -0.0012* | -.047 | | | -0.0012* | -.050 |
| 가구재산 | -0.095*** | -.087 | | | -0.078*** | -.079 |
| 단독가구 ¹⁾ | -.194 | -.019 | | | -.571** | -.065 |
| 부부가구 ¹⁾ | 0.051 | .007 | | | -.329* | -.050 |
| 편부모·조부모가구 ¹⁾ | .693* | .048 | | | .606* | .047 |
| 기타 가구 ¹⁾ | .452*** | .105 | | | 0.085 | .022 |
| 가구주성별 ²⁾ | 0.077 | .014 | | | -0.008 | -.002 |
| 가구주교육 | 0.016 | .031 | | | 0.016 | .034 |
| 가구주 미혼 ³⁾ | -.507* | -.061 | | | .302 | .041 |
| 가구주 이혼·별거·사별 ³⁾ | -0.0013 | .000 | | | 0.086 | .016 |
| 가구주 동거여부 | .210 | .010 | | | -.525 | -.027 |
| 가구주 연령 | -0.0098* | -.054 | | | 0.0055 | .034 |
| 가구주 정규직 ⁴⁾ | -.209 | -.023 | | | -.152 | -.019 |
| 가구주 임시직 ⁴⁾ | -.180 | -.029 | | | -.159 | -.029 |
| 가구주 일용직 ⁴⁾ | -.593*** | -.095 | | | -.281 | -.049 |
| 응답자 성별 | | | .339*** | .083 | .234* | .058 |
| 응답자 이환여부 | | | -0.0157 | -.003 | 0.0087 | .002 |
| 응답자 미혼 ⁵⁾ | | | -.995*** | -.244 | -.937*** | -.231 |
| 응답자 이혼·별거·사별 ⁵⁾ | | | .112 | .015 | -0.030 | -.004 |
| 응답자 연령 | | | -0.018*** | -.114 | -0.019** | -.120 |
| 응답자 가구주 여부 | | | -.190* | -.049 | -.203 | -.053 |
| 응답자 교육수준 | | | -0.0162 | -.029 | -0.011 | -.020 |
| 응답자 심리상태 | | | 0.045*** | .239 | 0.034*** | .182 |
| Adj. R ² | 0.163 | | 0.098 | | 0.236 | |
| F | 24.95*** | | 42.01*** | | 26.74*** | |

註: 1) 비교범주는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2) 남성이 '1', 여성이 '0'임.

3) 가구주 기혼이 비교범주임.

4) 가구주 실업자가 비교범주임.

5) 응답자 기혼이 비교범주임.

실업자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表 8-16>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I은 가구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모형이다. 이에 따르면,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복지욕구는 커진다. 반면에 취업가구여부와 실업가구여부는 취업가구일수록, 또 실업가구일수록 복지욕구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구의 복지욕구가 가구원의 취업여부보다는 가구원의 경제활동여부에 더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가구내에 이환가구원이 있는지 여부는 복지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여부와 20세 미만 자녀가구 여부는 모두 영향을 미쳐서, 노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복지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도 복지욕구가 더 크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또 재산이 많을수록 복지욕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偏父母家口와 祖父母家口가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보다 복지욕구가 많음을 보였다. 또한, 기타 가구도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보다 복지욕구가 많다.

반면에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은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인 경우에 기혼인 경우보다 복지욕구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도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지욕구가 줄어든다. 또한, 가구주의 雇傭形態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용직은 실업자에 비해 복지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β 값이 가장 큰 장애가구여부이며, 가구유형, 가구주의 고용형태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의 수정 R제곱은 0.163으로, 이 모형이 복지욕구 변량의 16.3%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II에서는 응답자의 個人變數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복지욕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혼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응답자의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에 기혼인 경우보다 복지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지욕구는 떨어졌으며, 응답자가 가구주일수록 복지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심리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복지욕구는 증가한다.

모형 II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상태와 심리상태였다. 또한, 모형 II의 수정 R제곱은 0.098로, 이 모형이 福祉欲求 變量의 9.8%를 설명하였다.

모형 III은 家口變數와 個人變數를 모두 포함시킨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가구원수와 취업가구여부가 모형 I에서처럼 모두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가구여부는 모형 I에서와 달리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형 I에서보다는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여부는 모형 I에서와 달리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障礙人家口여부는 모형 III에서도 여전히 복지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여전히 복지욕구에 영향을 주어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수록 복지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은 모형 I에서와는 달리 모형 III에서는 모든 범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복지욕구가 적었으며, 편부모가구와 조부모가구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복지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형 I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기타 가구와 부부 및 미혼자녀 가구의 차이는 모든 변수를 넣은 모형 III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가구주와 관련된 변수들은 모형 III에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형 II와 모형 III을 비교해 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복지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에 있어서도 두 모형에서 모두 미혼인 경우에 기혼보다 복지욕구가 더 작았다. 연령에 관해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지욕구가 작아지는 경향이 두 모형 모두에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는 모형 I에서는 유의미하였으나, 모형 III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바뀌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심리상태는 모형 I에서와 같이 모형 III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변수와 개인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 III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장애인가구여부이며, 응답자의 결혼상태(기혼 대 미혼), 응답자의 심리상태, 응답자의 연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III의 수정 R제곱은 0.236으로 복지욕구 변량의 23.6%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의 복지욕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보다 說明力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8-17>은 취업자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가구변수와 개인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형 VI을 실업자의 복지욕구 모형 III과 비교해보면, 취업 가구여부는 실업자 모형에서 유의미했었으나 취업자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실업가구여부는 실업자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취업자 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바뀌었다.

〈表 8-17〉 就業者의 福祉欲求에 대한 回歸分析

| 구분 | 모형 IV | | 모형 V | | 모형 VI | |
|---------------------------|------------|-----------|------------|-----------|------------|-----------|
| | 비표준화 계수(B) | 표준화 계수(β) | 비표준화 계수(B) | 표준화 계수(β) | 비표준화 계수(B) | 표준화 계수(β) |
| 상수 | 1.539*** | | 1.131*** | | 1.282* | |
| 가구원수 | .148*** | .184 | | | .170*** | .202 |
| 취업가구여부 | -.132* | -.064 | | | 0.043 | .020 |
| 실업가구여부 | -0.047 | -.017 | | | -.287** | -.090 |
| 이환가구여부 | 0.0096 | .004 | | | 0.022 | .010 |
| 노인가구여부 | .292** | .081 | | | .346** | .090 |
| 20세미만 자녀가구여부 | .181* | .079 | | | .172 | .072 |
| 장애가구여부 | .482* | .064 | | | .290 | .036 |
| 가구소득 | -0.0007* | -.059 | | | -0.0003 | -.018 |
| 가구재산 | -0.035* | -.068 | | | -0.032 | -.056 |
| 단독가구 ¹⁾ | 0.088 | .017 | | | .119 | .020 |
| 부부가구 ¹⁾ | -0.099 | -.028 | | | -.240 | -.063 |
| 편부모·조부모가구 ¹⁾ | .407* | .059 | | | .519* | .070 |
| 기타 가구 ¹⁾ | .342*** | .162 | | | .227* | .104 |
| 가구주성별 ²⁾ | 0.084 | .027 | | | -0.016 | -.005 |
| 가구주교육 | 0.014 | .055 | | | -0.002 | -.007 |
| 가구주 미혼 ³⁾ | -.507*** | -.118 | | | .134 | .029 |
| 가구주이혼·별거·사별 ³⁾ | -0.015 | -.004 | | | 0.068 | .019 |
| 가구주동거여부 | -.576** | -.065 | | | -.553 | -.058 |
| 가구주 연령 | -0.006* | -.076 | | | 0.004 | .043 |

註: 1) 비교범주는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2) 남성이 '1', 여성이 '0'임.

3) 가구주 기혼이 비교범주임.

〈表 8-17〉 계속

| 구분 | 모형 IV | | 모형 V | | 모형 VI | |
|--------------------------------|---------------|----------------------|---------------|----------------------|---------------|----------------------|
| | 비표준화 계수(B) | 표준화 계수(β) | 비표준화 계수(B) | 표준화 계수(β) | 비표준화 계수(B) | 표준화 계수(β) |
| 가구주 정규직 ⁴⁾ | -0.017 | -.006 | | | -.111 | -.039 |
| 가구주 임시직 ⁴⁾ | -.147 | -.067 | | | -.252 | -.113 |
| 가구주 일용직 ⁴⁾ | -0.071 | -.030 | | | -0.043 | -.017 |
| 응답자 성별 | | | 0.035 | .015 | -0.094 | -.040 |
| 응답자 이혼여부 | | | 0.018 | .006 | 0.055 | .018 |
| 응답자 미혼 ⁵⁾ | | | -.876*** | -.351 | -.905*** | -.368 |
| 응답자 이혼· 별거·사별 ⁵⁾ | | | 0.024 | .005 | -.158 | -.035 |
| 응답자 연령 | | | -0.005 | -.051 | -0.009 | -.098 |
| 응답자 가구주 여부 | | | -.273** | -.122 | .125 | .057 |
| 응답자 교육수준 | | | 0.023 | .071 | 0.022 | .069 |
| 응답자 심리상태 | | | 0.0087** | .079 | 0.007* | .066 |
| <i>Adj. R²</i> | 0.118 | | 0.084 | | 0.184 | |
| F | 9.57*** | | 12.89*** | | 7.86*** | |

註: 4) 가구주 실업자가 비교범주임.

5) 응답자 기혼이 비교범주임.

老人家口與否는 실업자 모형과 취업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자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던 障礙人家口여부는 취업자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업자 모형에서 복지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취업자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가구의 유형에서는 실업자 모형에서는 단독가구, 부부가구, 편부모·

祖父母家口가 모두 부부+미혼자녀가구와 복지욕구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자 모형에서는 편부모·조부모가구, 기타 가구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도 실업자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였으나 취업자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결혼상태는 실업자 모형과 취업자 모형 모두에서 복지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미혼인 경우에 기혼인 경우보다 복지욕구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은 실업자 모형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취업자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심리상태는 실업자 모형과 취업자 모형에서 모두 복지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VI에서 복지욕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답자의 결혼상태(미혼 대 기혼)였으며, 다음으로 가구원수 등의 順이었다. 따라서, 失業者 模型과 就業者 模型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모형의 수정 R제곱을 비교해 보면, 실업자의 모형에 비해 취업자의 모형은 설명력이 떨어지고 있다. 전체 모형에서, 모형 III은 0.236이지만 모형 VI은 0.184로 나타나고 있다.

第 4 節 要約 및 示唆點

지금까지 거의 完全雇用 상태를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로서는 노동 가능한 인구(the able-bodied)의 貧困을 그 원인에 있어 상당히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상대적으로 도외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勤勞 가능한 貧困階層’(working poor)의 문제는 社會福祉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

고 있다. 실업은 이제 그 대상과 범위,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 사회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실업은 경제적 위기, 신체적·심리적 건강의 위기, 가족관계의 위기, 社會關係의 위기 등 다차원적인 家族危機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 家族解體와 社會不安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실업에 대한 社會福祉的 介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僱傭保險, 公共扶助와 같은 현금지원 서비스는 차치하고라도 긴급 현물 지원 서비스, 상담서비스, 보호서비스, 고용관련서비스 등은 여전히 조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는 무엇이며, 가구에 따라 상이한 욕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실업가구에 대한 目標效率的이고 效果的인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障礙家口與否, 실업자의 結婚狀態와 心理狀態 및 年齡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장애가구원이 있는 실업가구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실업자가 기혼인 경우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偏父母·祖父母家口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失業者家口의 特性을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업자가구 중에서 장애가구여부, 편

부모·조부모가구여부 등의 가구 유형 및 실업자의 결혼상태와 심리상태를 조사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가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실업자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리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모든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第9章 失業者 및 失業家庭을 위한 對應方案

第1節 失業家庭을 위한 社會安全網 構築方案⁴⁴⁾

IMF 관리체제 이후 극도로 위축되었던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은 최근 실물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은 어느 시대, 사회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야기한다. 이는 실업의 증가가 빈곤계층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IBRD가 추정한 1998년의 빈곤율이 1997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社會安全網(social safety net)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 및 빈곤은 각종 사회병리현상들을 야기하였다. 즉, 앞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적으로는 이혼, 아동·노인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가정해체의 양상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노동력의 상실, 共同體的 連帶感의 와해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을 요구한다.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다양한 실업대책을 강구하여 증가하는 실업가정의 생계보장 및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社會安全網의 사각지대

44) 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복지정책학회의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김미근,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1999)를 중심으로 빈곤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

에 놓인 실업자⁴⁵⁾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실업대책의 계층간 형평성, 사업의 효율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실업대책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실업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社會安全網 구축을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업가정의 생계보장과 고용창출에 대한 巨視的인 示唆點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유의한 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몇 가지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실업관련 社會安全網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업가정에 대한 社會安全網 構築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社會安全網 現況

가. 社會安全網의 概念

社會安全網은 학자에 따라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개념이 다르고, 그에 따라 포괄하는 범위도 다르다.⁴⁶⁾ Gibert & Specht(1974)는 사회복지를 殘餘的(residual) 觀點과 制度的(institutional) 觀點으로 나누고 전자의 기능을 社會安全網으로 한정하고 있다. OECD는 ‘貧困(빈곤원인에 대한 불문)에 대한 최후의 보루(last resorts)로서의 社會的 裝置’로 해석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생활보호, 실업부조,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가족급여제도, 장애급여제도, 주택급여제도가 社會安全網에 포함된다(정형선, 1999). World Bank(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45)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자이면서 사회보장제도나 임시적 실업대책(공공근로, 실업자 대부사업 등)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 정의함.

46) 社會安全網을 협의로 해석하는 학자는 Gibert & Specht, OECD, World Bank, 문진영 등이며, 광의로 해석하는 학자는 IMF, 정경배 등임.

는 구조조정기에 한시적으로 경제적 압박이나 예기치 않은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보전해주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세계은행에서는 社會安全網을 경제적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고안된 사회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IMF의 社會安全網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에서 추와 굽타(Chu & Gupta, 1998: 7)는 사회적 안전망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제개혁조치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제도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安全網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보편적 급여(아동수당, 노령수당 등) 등이 포함된다고 논의하고 있다. 정경배(1998)는 社會安全網이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재해·노령·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완적 장치(공공근로, 실직자 대부사업 등)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社會安全網을 보는 시각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社會安全網은 한 개인이 일생동안(life cycle) 부딪히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일시에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의 완화장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社會安全網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社會安全網 體系 및 適用對象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기본 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제도가 성숙되기 전 발생한 대량실업

으로 임시보완 대책인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대부사업 등이 첨가되었다. 그 결과 현행 社會安全網은 1차 社會安全網으로 4대 사회보험이 있으며, 2차 社會安全網으로 공공부조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등이 있다. 이러한 社會安全網 중 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도적 社會安全網은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이고, 한시적 성격을 지닌 社會安全網은 공공근로이다.

〈表 9-1〉 社會安全網 現況(1999. 5. 30 現在)

| 사회안전망 | 제도 | 사회적위험 | 대상계층 | 적용 현황 |
|--------------|--------|------------------|------|----------------------|
| 1차 (사회보험) | · 의료보험 | · 질병 | 일반국민 | · 전국민 적용 |
| | · 국민연금 | · 노령 | 근로자 | · 전근로자 적용 |
| | · 산재보험 | · 산업재해 | | · 5인 미만 사업장·임시직 제외 |
| | · 고용보험 | · 실업 | | · 일용직만 제외(98. 10월이후) |
| 2차 | 보완적장치 | · 공공근로사업 | 실직자 | · 연말까지 43만 9천명 참가 |
| | | · 직업훈련 | | · 연말까지 32만 참가 |
| | | · 각종대부사업 | | · 연말까지 7만명 수혜 |
| | 공공부조 | · 자활보호 · 거택보호 | · 빈곤 | 저소득계층 |

다. 失業關聯 社會安全網 豫算

실업과 관련된 社會安全網豫算⁴⁷⁾은 IMF 경제위기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98년 3.26 종합실업대책 전 1998년 社會安全網 豫算은 실직자 생계보호(3535억원), 직업훈련(3086억원), 직업안정(148억원), 해고회피지원(3267억원)으로 1조 35억원이었다. 정부는 3.26 종합실업대

47) 실업대책예산 중 社會安全網 豫算을 분리하여 산정하기에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고회피지원,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안정 예산을 社會安全網 豫算으로 간주하였음. 즉, 실업대책 예산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예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예산으로 구분할 때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과 일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예산을 포함하였음.

책에서 연간 실업률을 6%(130만명)로 보고 총 7조 9020억원의 실업대책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중 社會安全網 關聯豫算은 실업자 생활보호(3조 5425억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7714억원), 공공근로(5419억원), 해고회피지원(4512억원)으로 5조 3070억원이었다. 이후 실업자가 3.26종합실업대책에서 예상한 130만명을 넘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실업대책예산을 10조 707억원으로 확대하였고 社會安全網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5조 6672억원을 배정하였다. 1999년의 경우 당초 예산은 간접 실업대책비를 포함한 총 실업대책예산이 13조 1859억원, 社會安全網 豫算은 7조 8911억원 이었으나 4월 추경에서 각각 16조 539억원, 9조 5439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러한 예산의 변화추이는 총 실업대책예산에 社會安全網 豫算이 차지하는 비율이 3.26종합실업대책 예산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일자리 창출 등 간접 실업대책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表 9-2〉 社會安全網 關聯 豫算 推移

| 구분 | 1998년 | | | 1999년 | |
|----------|---------|-----------|-----------|-----------|-----------|
| | 당초예산 | 3.26종합대책 | 2차 추경안 | 당초예산 | 4월 추경예산 |
| 실업대책(A) | 1조 35억원 | 7조 9020억원 | 10조 707억원 | 13조1859억원 | 16조 539억원 |
| 사회안전망(B) | 1조 35억원 | 5조 3070억원 | 5조 6672억원 | 7조8911억원 | 9조 439억원 |
| 비율(B/A) | 100% | 67% | 56% | 60% | 59% |

資料: 정부부처 관련 자료

2.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에 대한 評價

가. 評價의 尺度

현행 실업대책 중 社會安全網 사업을 현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먼저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이

용하여 실업대책을 평가하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내고 있는 자료조차도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나열식 자료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는 시점의 문제이다. 실업대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불과하여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⁴⁸⁾를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고,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⁴⁹⁾를 하여야 하나 이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社會安全網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평가를 통하여 현행 실업대책의 개선방향에 함의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업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의 거시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란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을 원용하여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측정하는 일련의 절차이다(Rutman, 1984). 이러한 평가는 평가 시기에 따라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로 나누어지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양적 평가⁵⁰⁾와 질적 평가⁵¹⁾로 나누어지며, 학자에 따라 평가 범주 및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케이츠와 로만(Cates & Lohman, 1975)은 네 가지 분석적 범주(정책의 가치나 목적에 관한 평가, 정책의 표적집단, 정책수행방법, 특정정책에 관한 환경적 영향)를 설정하고 있고,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74)는 할당(allocation), 급여(provision), 전달체계(delivery), 재정(finance)이라는 정책분석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 척도로 켈리(Kelly, 1975)는 적합성(adequacy), 효과성

48) 일정기간동안 실시되어 왔거나 완료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그 프로그램의 존속여부에 관한 총괄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49)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50) 계량화가 가능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는 평가방법(예: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 등)

51) 계량화가 불가능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반규범, 기준, 원칙 등으로 비교하는 평가방법(예: 정당성, 적절성, 합목적성 등)

(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미네건과 위싱턴(Meenagan & Washington, 1980)은 형평성(fairness), 적합성(adequacy), 평등성(equality)을, 그리고 트리포디(Tripodi, 1983)는 노력성(effort),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예상치 못한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관련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요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의 충분성, 대상계층의 형평성, 프로그램의 포괄성·효과성·효율성·책임성에 대하여 <表 9-3>의 평가방법에 의한 양적 평가 및 질적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평가를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척도를 이용한 평가결과에서 설명한다.

<表 9-3> 評價尺度의 定義 및 方法

| 평가 척도 | 의 미 | 방 법 |
|-----------------------|--------------------------|---------------------------------------|
| 정당성(rightfulness) | 제도의 존립 타당성 정도 | 제도의 목적, 현황, 여건변화 전망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 |
| 효율성(efficiency) | 단위 비용당 편익 | 제도의 실적/투입비용 |
|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달성의 정도 | 제도의 실적/제도의 목표 |
| 적절성(adequacy) | 제도의 성과가 문제해결에 기여한 정도 | 제도의 실적/본질적인 문제의 크기 |
| 형평성(equity) | 비용과 편익이 집단간에 고르게 분배되는 정도 | Pareto criterion Rawls criterion 등 |
| 책임성(responsiveness) | 정책의 결과가 욕구나 선호를 충족시키는 정도 | 제도의 실적/수급자 욕구 |
| 적합성(appropriateness) | 제도 목표의 타당성 정도 | 제도의 목표에 대한 검토 |
| 접근성(approachableness) | 수급자가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 |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또는 접근에 대한 편의성 정도 |

資料: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개혁과제 심사분석 편람』, 보건복지부, 1996.

나. 評價結果

1) 社會安全網 프로그램 全般에 대한 綜合評價

가) 政策 基調(制度擴充과 臨時對策)에 대한 方向性

현행 社會安全網 豫算을 社會보장제도 확충예산과 임시대책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社會安全網 豫算의 대부분(1998년 76%, 1999년 80%)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생활보호, 공공근로, 실직자 대부사업 예산을 제도확충예산과 임시대책예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즉, 실업급여와 생활보호 확충예산은 社會보장 제도확충 예산으로, 공공근로와 실직자 대부사업예산은 임시대책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表 9-4〉 社會保障 擴充豫算 대 臨時對策 豫算

| (단위: 억원, %) | | |
|----------------------|--------|--------|
| 구분 | 1998 | 1999 |
| 사회보장제도 확충(A) | 12,058 | 25,343 |
| • 실업급여 ¹⁾ | 8,500 | 15,227 |
| • 생활보호(기존 생활보호 제외) | 3,558 | 10,116 |
| 임시대책(B) | 17,944 | 36,306 |
| • 공공근로 | 10,444 | 24,924 |
| • 실직자 대부사업 | 7,500 | 11,382 |
| 비율(A/B) | 0.67 | 0.70 |

註: 1) 한시적 생활보호, 취로사업,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의 합계

그 결과 社會보장 제도확충 예산은 수치상으로는 임시대책 예산의 70%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석하면 社會보장제도 확충예산은 70% 이하인 것으로 추

정된다. 왜냐하면 <表 9-4>에서는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만이 확충예산이나 자료의 한계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업급여 예산을 사용하였고, 생활보호의 경우도 한시 생활보호 등은 말 그대로 임시적 성격을 지닌 예산이지만 생활보호라는 차원에서 제도확충 예산에 포함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기 전에 발생한 대량실업이라는 우리 현실에서 공공근로, 실직자대부사업 등의 임시 보완적 성격의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이 필요함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社會安全網은 사회보장제도 구축이 가능한 부문은 애써 외면한 채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만을 위한 임시 실업대책(공공근로)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프로그램별 保護率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表 9-7 參照). 즉,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율보다는 임시 실업대책에 의한 보호율이 높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이나 1999년 모두 가장 많은 실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시 실업대책은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업가정은 항상 불안감속에 살 수 밖에 없다.

나) 社會安全網 豫算의 充分性

거시적인 관점에서 社會安全網 豫算의 충분성은 社會安全網에 필요한 예산과 실제로 투입된 예산을 비교함으로써 평가 가능하다. 실업과 관련된 社會安全網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실질적인 실업자의 80%⁵²⁾로 추정되는 社會安全網 대상 실업자에 대한 소요예산 및 빈곤자 중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실질

52) 실업자의 80%를 社會安全網대상으로 가정한 것은 자발적 실업자의 비율이 약 20%(노동부)인 점과 실업자의 과거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이었던 비율이 약 20%(도시가계연보에서 추정)이기 때문이다.

적인 실업자란 통계상 실업자와 실업자 중 직업훈련 이수자, 공공근로자 중 실업자⁵³⁾를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19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의 월 평균 적자폭은 64.3만원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빈곤gap⁵⁴⁾은 44.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社會安全網 대상 실업가구에 빈곤gap 수준의 월 평균 44.2만원을 지원한다면 소요예산은 1998년 약 5조 8751억원⁵⁵⁾, 1999년 약 6조 6729억원⁵⁶⁾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모두에게 1인당 빈곤gap인 월 17.8만원(최저생계비 23.4만원 - 자가소득 5.6만원⁵⁷⁾)을 지원할 경우 소요예산은 1998년 3조 1826억원, 1999년 약 4조 1225억원⁵⁸⁾이 된다. 반면에 정부의 社會安全網 關聯 豫算은 1998년의 경우 생활보호예산⁵⁹⁾을 제외한 社會安全網 關聯 豫算이 3조 9249억원이고 생활보호예산이 1조

-
- 53) 공공근로자 중 실업자 참여비율은 모니터링 결과마다 다른 수치를 제공하고 있음. 본 자료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기준이 원칙적으로 구직등록한 실업자이나 현실적으로 실망실업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참여자의 약 80%로 가정
 - 54) 여기서 빈곤갭이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55) 1998년의 경우 실직적인 실업자는 통계상의 실업자 146만명과 직업훈련자 월 6만명(노동연자료), 공공근로자 중 실업자 월 10만명임(참여자의 80%). 예산수요는 실질적 실업가구수(162만명/1.17명) × 사회안전망대상비율(0.8) × 월 평균 빈곤갭(44.2만원) × 12개월 = 5조8751억원
 - 56) 1999년의 경우 실직적인 실업자 추정치는 통계상의 실업자 155만명과 직업훈련자 이수 실업자 6만명, 공공근로자 중 실업자 23만명이므로 예산수요는 실질적 실업가구수(184만명/1.17명) × 사회안전망대상비율(0.8) × 월 평균 빈곤갭(44.2만원) × 12개월 = 6조6729억원
 - 57) 거택보호대상자 소득
 - 58) 1998년의 경우 149만명 × 17.8 × 12개월 = 3조 1826억원, 1999년의 경우 193만명 × 17.8 × 12개월 = 4조 1225억원,
 - 59) 생활보호예산에는 기존생활보호, 한시생활보호,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결식아동 중식지원, 특별취로사업 포함하였음.

7423억원이며, 금년의 경우 각각 7조 329억원과 2조 5110억원이다.

이와 같이 社會安全網 豫算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의 충분성은 1998년의 경우 63%, 1999년의 경우 88%로 나타나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가계의 이러한 부족분은 주로 가족 및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⁰⁾.

〈表 9-5〉 社會安全網 豫算의 充分性

| 구분 | 사회안전망 예산 수요 | | 사회안전망 예산 공급 | | 충족률(공급/수요) ¹⁾ | |
|--------|-------------|-----------|-------------|----------|--------------------------|------|
| | 1998 | 1999 | 1998 | 1999 | 1998 | 1999 |
| 합계 | 9조 579억원 | 10조7954억원 | 5조6672억원 | 9조5439억원 | 0.63 | 0.88 |
| 실업자 대책 | 5조8751억원 | 6조6729억원 | 3조9249억원 | 7조 329억원 | 0.67 | 1.05 |
| 빈곤자 대책 | 3조1826억원 | 4조1225억원 | 1조7423억원 | 2조5110억원 | 0.55 | 0.61 |

註: 1) 사회안전망 예산 중에는 수급자에게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예산 외에 구인·구직 연계체계 확충 예산 등이 포함되므로 실제는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술적인 충족률 이하임.

다) 社會安全網 事業의 階層別 衡平性

빈곤대책의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업대책의 대상인 실업자보다 더 열악한 계층이다. 현행 社會安全網 豫算을 실업자 대책예산과 빈곤자 대책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9년의 경우 실업대책예산은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빈곤대책예산은 적정수요의 61%수준에 불과하다(表 9-5參照). 이는 열악한 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롤즈의 분배정의에 위배된다. 이와 유사한 예는 실업자 대책과 빈곤자 대책의 유사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실업자를 위한 실직자 대부사업의 예산이 1999년에 1조 1382억원

60) IMF이후 실업가구 중 이전소득이 있는 비율이 12.9%, 금액은 월평균 31만원임. 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임.

인 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생업자금은 350억원에 불과하였다.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는 비교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당 평균지원 금액으로 환산해 보아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⁶¹⁾.

이러한 사실은 社會安全網 프로그램 수급자의 階層分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98년 9월 실시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을 수급하고 있는 실업가구에 대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수급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업가구 중 가장 형편이 좋은, 재산 5000만원 이상, 소득 8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수급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社會安全網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수급자선정까지 所得逆進的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지니계수가 계수를 산출을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表 9-6〉 失業者 階層別 社會安全網 需給比率

| 구분 | 사례수 | 프로그램 수급가구 ¹⁾ | 수급비율 |
|--------------------------|-------|-------------------------|------|
| 합계(평균) | 2,854 | 401 | 14.1 |
| 재산 5000만원 미만, 소득 80만원 미만 | 1,457 | 184 | 12.6 |
| 재산 5000만원 미만, 소득 80만원 이상 | 578 | 72 | 12.5 |
| 재산 5000만원 이상, 소득 80만원 미만 | 349 | 50 | 14.3 |
| 재산 5000만원 이상, 소득 80만원 이상 | 471 | 95 | 20.3 |

註: 1) 실업급여, 직업훈련, 실업자 대부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공공근로 수급가구

資料: 박능후, 사각지대 실업자 분석, 『보건복지포럼』, 1999. 6.

61) 실업가구당 실직자 대부사업예산은 11382억원(예산)÷184만명(실질적 실업자수)×1.17(가구당 실업자수) ≃ 72.4만원이나 생활보호가구당 생업자금은 350억원(예산) ÷ 193만명(생보자수) ×2.2(가구당 생보자수) ≃ 3.3만원에 불과함.

라)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의 包括性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의 포괄성은 요보호 실업자 및 빈곤자에 대한 社會安全網의 保護率(coverage)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대량실업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보호율이 낮았을 것이란 점은 예견되었으나, 실제 보호율이 社會安全網 豫算의 대폭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1998년 약 35.0%⁶²⁾, 1999년 60.4%에 불과하였다. 이는 社會安全網의 사각지대 비율이 1998년 약 65.0%, 1999년 39.6%에 불과하여 고용(실업)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 등 社會安全網을 통한 보호비율이 캐나다 129%, 핀란드 112%, 프랑스 98%, 뉴질랜드 92%, 독일 89%, 호주 82%등인 선진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OECD, The OECD Jop Study-Part II, 1994, 188).

그리고 프로그램별 보호율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율보다 임시 실업대책에 의한 보호율이 높은 실정이다. 프로그램별 보호율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1998년 및 1999년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시 실업대책은 생계보장에 있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지 못하므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고용보험, 공공부조)의 확충이 필요하다.

보호율의 거시적 추산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한 실업자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급할 경우 社會安全網에 의한 보호율이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점과 프로그램을 수급하고도 빈곤한 자의 비율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1998년 실시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

62) 1998년 9월 현재 실업자의 18.7%만이 실업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양자간의 차이는 1998년의 경우 실업대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과 실태조사에서는 인턴사원으로 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됨.

사의 결과에 의하면 각 사업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가구 중 최저생계비이하의 수입상태에 있는 가구비율이 실업급여 60.6%, 실직자 대부사업 35%, 한시생활보호사업 90.5%에 이르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급여할 때 급여의 충분성과 보호대상의 포괄성간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가치판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表 9-7〉 社會安全網 프로그램別 月 保護者(失業者 基準)

| 구 분 | 사 업 내 용 | 인 원 | |
|---------------------------|--------------|----------|-----------------------|
| | | 1998 실적 | 1999 계획 ¹⁾ |
|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²⁾ | | 129.6 만명 | 147.5 만명 |
| 1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 9.9 만명 | 22.0 만명 |
| 2차 | 보완장치 | | |
| | 공공근로사업 | 10.0 만명 | 23.0 만명 |
| | 직업훈련 | 6.0 만명 | 7.0 만명 |
| | 실직자대부사업 | 7.0 만명 | 10.0 만명 |
| | 인턴사원제 | 2.5 만명 | 2.5 만명 |
| 공공부조 | 자활보호 | 7.6 만명 | 19.9 만명 |
| | 거택보호 | 2.5 만명 | 4.7 만명 |
| 계 | | 45.4 만명 | 89.1 만명 |
| 보호율 ³⁾ | | 35.0% | 60.4% |

註: 1) '99년 종합 실업대책안(4월 추경 포함)에 적시된 목표인원을 월 stock 인원으로 환산.

2)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실업자(실질적인 실업자)는 통계상 실업자와 직업훈련이수 실업자, 공공근로자 중 실업자의 합이 80%로 가정.

3) 보호율 = 보호실업자 ÷ 사회안전망 보호대상 실업자

마)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의 效果性

효과성이란 제도의 실적이 목표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비율이다⁶³⁾. 그러므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표를 살펴

63) 효과성을 대상자 선정, 급여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전자의 경우 자

보아야 한다.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의 1차적인 목표는 생계안정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生産性, 公益性 등의 부차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고, 직업훈련의 경우 기능 습득을 통한 취업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양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에 대해 생계안정만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을 더 큰 문제를 지닌다.

〈表 9-8〉 限時 生活保護의 效果性

(단위: 만원, %)

| 구분 | 최저생계비(A) | 가용소득(B) | 효과성(B/A) |
|-------------|--------------------|--------------------|----------|
| 생계보호(2인 기준) | 46.8 ¹⁾ | 34.2 ²⁾ | 0.73 |
| 자활보호(3인 기준) | 63.7 ³⁾ | 39.3 ⁴⁾ | 0.62 |

註: 1) 1인당 최저생계비 23.4만원×2인

2) 자가소득 11.2만원(5.6만원×2)+생계보호 15만원(6등급)+의료·교육보호 8만원(4만원×2)

3) 2인가구 최저생계비에 균등화지수를 적용

4) 자가소득 16.8만원(5.6만원×3)+생계보호 21만원(6등급)/2+의료·교육보호 12만원(4만원×3)

그러므로 여기서는 限時 生活保護事業만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토한다. 한시 생활보호사업은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로 구분되어 급여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생계보호의 경우 의료보호(1종), 교육보호 외에 현행 생활보호 차등급여 기준 중 최하 등급인 6등급에 해당하는 현금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보호인 경우 의료보호(2종), 교육보호 그리고 동절기 6개월간 월 차등급여 6등급을 기준으로 급여하고 있다.

한시 생보사업의 給與充足律⁶⁴⁾은 자활보호 62%, 생계보호 73% 수

료의 부족으로 여기서는 급여차원에서 검토함. 효과성을 급여차원에서만 검토하면 급여의 충분성과 맥을 같이 하게됨.

64) 자가소득과 급여액을 합한 총 가용소득과 최저생계비 간의 비율

준인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의 생계안정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시 생활보호사업 수급자의 90.5%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바) 社會安全網과 雇傭創出間의 連繫性

고용창출은 궁극적인 실업대책이다. 그리고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이다. 따라서 社會安全網의 프로그램이 고용창출과 연계성을 지닐 때 실업대책의 효과는 배가되고 실제 생산적 복지(workfare)의 실현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나들고 있으나 일부 3D업종에서는 7~10만명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내용이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수요와 부정합(mismatching)관계에 있으며, 취업률이 약 1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양자간의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고 한시 생활보호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근로연계 시스템이 없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 需要者의 欲求와 政策間의 整合性(責任性)

바람직한 실업대책 기준 중의 하나는 실업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실업대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될 때 대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8) 결과 공공근로, 실업대부 등의 '생활안정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욕구도 조사에서 '생활보호확대'가 21.6%, '의료 및 연금확대' 18.7%, 공공근로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실업대책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부사업 등이 생활보호나 의료 및 연금확대보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앞서고 있다. 결국 욕구와 정책간에는 乖

離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실업대책이 수요자의 욕구나 계층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 때문에 부처이기주의 또는 탁상공론식의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表 9-9〉 生活安定對策에 관한 프로그램 選好度

(단위: %)

| 구분 | 실업자 | 구직경험 비경제활동인구 | 계 |
|-------------|------------------|-----------------|------------------|
| 생활보호확대 | 21.3 | 24.9 | 21.6 |
| 의료 및 연금확대적용 | 18.4 | 21.3 | 18.7 |
| 공공근로사업 | 12.7 | 12.1 | 12.6 |
| 대부사업확대 | 12.9 | 7.7 | 12.4 |
| 생업자금융자 | 11.4 | 13.3 | 11.5 |
| 고용보험개선 | 11.5 | 7.0 | 11.0 |
| 기타 | 11.8 | 13.7 | 12.2 |
| 계(명) | 100.0 (3,187) | 100.0 (347) | 100.0 (3,584) |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아) 傳達體系의 效率性

현행 실업대책의 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가, 실업급여·직업훈련·실직자 대부사업은 노동부가, 그리고 한시 생활보호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까지 부처이기주의가 스며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간의 기능조정과 상호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중앙정부,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간의 전달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하며, 실업대책 관련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간에 통합조정 기능의 미흡으로 중복 급여의 문

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국민 血稅의 漏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실업 및 빈곤관련 DB를 조기에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2) 社會安全網 프로그램別 評價

가) 公共勤勞事業

공공근로사업은 1999년 실업대책 중 豫算이 가장 큰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1단계 사업 초기의 경우 수요자의 약 반만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즉, 64만명이 신청하였으나 33만명만이 참여하였는데 이들 참여자에는 다수의 비실업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꼭 참여가 필요한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층 30~55세라는 연령의 선행 기준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업자도 많다. 또한 일부 3D업종 종사자 및 어민들이 취업하지 않고 임금수준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약한 공공근로를 선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책이 시장기능에 순응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정책이 입안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들의 경우 생산성이 낮다는⁶⁵⁾ 평가를 받고 있으나 참여자의 생계안정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실업가구 중 빈곤가구의 빈곤Gap보다는 이들이 받는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동 사업이 통계상의 실업률 저하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월 30만명이 공공근로를 할 경우 약 1.5%의 실업률 하락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2000년의 예상 실업률 및 다른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65) 그러나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간병인 사업 등의 사업은 생산성과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 失業給與

실업급여는 실업가정의 1차 社會安全網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은 제도의 미성숙으로 실업대책으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못하고 있는데 즉, 금년의 경우 실업자의 약 7%수준인 9.9만명(월 평균)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사업체부터 시작하여 적용대상을 점차 작은 기업으로 확대하여 왔기 때문에 수급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종사자이다. 대기업에 종사했던 실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았던 계층이므로 실업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가장 열악한 계층인 일용직은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 자격기간이 짧아 급여를 받는 기간이 짧다. 따라서 저소득 장기실업자 가정을 위한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다) 職業訓練

직업훈련은 실업자 본인 뿐 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행 직업훈련은 훈련직종이 민간기업의 技能人力需要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훈련생의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약 19%)도 저조한 실정이다.

라) 限時的 生活保護事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결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실업자의 욕구가 가장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공공 근로사업 및 실직자대부사업보다 낮게 취급받고 있다. 선정기준이 낮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저소득 실업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실업실태조사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9.6%에 달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 따른 2000년 최저생계비가 발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부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失職者 貸付事業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좋은 실업자는 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므로 대부가 되는 반면에 수요가 많은 저소득 실업자에게는 대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득 역진적 대책이며, 머지 않아 많은 대부자들이 금융 불량거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3. 社會安全網 關聯 社會的 與件의 展望

가. 社會安全網 關聯 主要變數 展望

1) 經濟成長率 展望

1998년은 -5.8%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1999년 10.2%, 2000년 5.8%, 2001년 5.9%, 2002년 5.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KDI).

2) 失業率 展望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작년 11월 2.6%(57만 명)이던 실업률이 '98년 3월에 6%를 넘기고, 금년 2월에는 8.7%(179만 명)로 높아졌다. 이는 실업률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다행히도 3월부터 외형상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어 다소 고무적이나 실질적인 실업률의 하락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경기 회복과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형 실업대책이 강화된다면 실업률은

1999년 6.3%, 2000년 4.3%, 2002년 4.1%로 하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KDI).

〈表 9-10〉 經濟危機 以後 失業率 推移 및 展望

| 구분 | '97.11 | '98 | 1999 | 2000 | 2002 |
|----------|--------|-------|-------|------|------|
| 실업률(%) | 2.6 | 6.8 | 6.3 | 4.3 | 4.1 |
| 실업자수(천명) | 574 | 1,461 | 1,353 | 996 | 938 |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KDI 전망치.

3) 貧困率 展望

대량실업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또한 실업의 증가는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內需萎縮, 生産縮小로 이어져 다시 실업증가라는 惡循環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소득층 실업자들은 貧困人口로 전락하게 된다⁶⁶⁾. 실제로 우리 나라의 빈곤율은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도시지역의 경우 1997년 말의 외환위기부터 1998년사이 전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⁶⁷⁾(박찬용, 1999), 전국의 빈곤율 또한 약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表 9-11參照).

빈곤에 대한 제도적인 社會安全網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빈곤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이들은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성장, 저실업 시대의 구인난에 국가의 현금 지원 없이도 인력시장을 통해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자활보호자

66) 실업률이 1% 증가할 때 빈곤율은 약 0.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김미곤외, 중기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1999).

67) 도시가계연보상의 근로자가구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자료. 박찬용은 도시가계연보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1인가구가 제외되어 있고, 근로자가구는 전가구에 비하여 빈곤율이 낮으므로 실제 빈곤율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들이 저성장, 고실업시대의 구직난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마저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도 인력시장을 통하여 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이들이 되면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表 9-11〉 經濟危機 以後의 貧困率(都市) 推移

(단위: %)

| 연도 | | 1997 | | | | 1998 | | | |
|-------------------|-----------|----------------------|--------|-----|------|------|------|------|------|
| 분기 | | 1 | 2 | 3 | 4 | 1 | 2 | 3 | |
| 가계지출 자료 | 전가구 | KIHASA ¹⁾ | 9.1 | 9.4 | 10.1 | 8.9 | 16.2 | 18.0 | 21.6 |
| | | NSO ¹⁾ | 8.1 | 8.8 | 9.7 | 8.9 | 15.5 | 17.4 | 21.0 |
| | | IBRD ¹⁾ | 7.5 | 8.2 | 8.5 | 10.2 | 18.3 | 19.1 | 22.9 |
| | 근로자 가구 | KIHASA | 7.8 | 8.6 | 8.6 | 7.6 | 14.2 | 16.4 | 20.3 |
| | | NSO | 6.8 | 7.9 | 8.2 | 7.5 | 13.5 | 15.5 | 19.4 |
| | 소득자료 | 근로자 가구 | KIHASA | 3.5 | 3.1 | 2.4 | 3.0 | 6.9 | 7.2 |
| NSO | | | 3.3 | 2.8 | 2.3 | 3.0 | 6.2 | 6.6 | 7.1 |
| KDI ¹⁾ | | | - | 4.5 | 3.6 | 4.2 | 9.4 | 10.2 | 10.8 |

註: 1) KIHA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NSO(통계청), IBRD(세계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資料: 박찬용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表 9-12〉 2000~2002년 貧困率 推定結果

(단위: 원, %)

| 연도 | 기본가정 | 1인당 GDP ¹⁾ | Gini ²⁾ | 실업율 ³⁾ | 빈곤율 |
|------|------|-----------------------|--------------------|-------------------|-----|
| 2000 | 낙관적 | 11,271,852 | 0.299 | 3.5 | 6.2 |
| | 중립적 | 11,062,728 | 0.309 | 4.5 | 7.1 |
| | 비관적 | 10,853,603 | 0.319 | 5.5 | 8.3 |
| 2001 | 낙관적 | 12,162,328 | 0.289 | 3.5 | 5.9 |
| | 중립적 | 11,715,429 | 0.299 | 4.5 | 6.6 |
| | 비관적 | 11,276,893 | 0.309 | 5.5 | 7.9 |
| 2002 | 낙관적 | 13,098,827 | 0.282 | 3.5 | 5.6 |
| | 중립적 | 11,276,893 | 0.292 | 4.5 | 6.3 |
| | 비관적 | 11,694,138 | 0.302 | 5.5 | 7.6 |

註: 1) 「한국경제 중기전망」(KDI, 99.10)의 전망치(2000년 5.8%, 2001년 5.9%, 2002년 5.7%)를 중립적인 가정으로 두고 낙관적은 +2%, 비관적은 -2% 적용
 2) 중립적 가정의 2000년 지니계수는 1996년 지니계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배구조가 향후 약간씩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함. 2002년의 경우 분배구조에 있어서도 IMF 전의 분배상태를 회복한다는 가정하에 분기별 자료중 가장 낮은 지니계수 적용
 3) 노동연구원 전망치 4.5%를 중립적인 가정으로 두고, 낙관적인 가정은 -1%, 비관적인 가정은 +1% 적용

나. 社會安全網의 保護對象者數

1) 貧困者 中 公共扶助對象者 推定

공공부조는 대상자의 가족 및 친지 중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과 ‘신청보호주의’ 등의 원리에 따라 1999년의 경우 대상자가 빈곤자의 약 42% 수준인 192만명이었다. 2000년 이후의 경우 빈곤율의 하락에 따라 생활보장대상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빈곤자 중 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약간씩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한 생활보장대상자 추정치는 2000년 186만명, 2001년 176만명, 2002년 172만명이다.

〈表 9-13〉 年度別 公共扶助對象者數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총인구 | - 4,686만명 | - 4,727만명 | - 4,768만명 | - 4,806만명 |
| • 빈곤율 ¹⁾ | • 9.9% | • 7.1% | • 6.6% | • 6.3% |
| • 빈곤자 | • 457만명 | • 336만명 | • 315만명 | • 303만명 |
| - 생활보장대상자 ²⁾ | - 192만명 | - 186만명 | - 176만명 | - 172만명 |
| • 생계보호 | • 53.4만명 | • 52만명 | • 176만명 | • 172만명 |
| • 자활보호 | • 138.6만명 | • 134만명 | | |

註: 1) 김미곤, 빈곤율 추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 2000년 경제수준이 1997년 수준을 회복한다고 가정하되,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 생활보장대상자 수

2) 失業者 中 社會安全網 對象規模 推定

실업자 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업자수의 추정은 자발적 실업자(약 20%)를 제외하는 방식과 실업자의 과거 소득이 평균소득 이상이었던 자(약 20%)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하

는 것은 퇴직을 하여도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소득이 평균소득 이상이었던 자를 제외하는 것은 과거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두 접근 방식은 개별 대상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시적인 규모 추정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 실업자⁶⁸⁾의 80%를 社會安全網 보호대상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된 社會安全網 대상실업자는 2000년 917천명, 2001년 848천명, 2002년 806천명으로 추정된다.

〈表 9-14〉 失業者 中 社會安全網 對象

(단위: 천명)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통계상의 실업자 | - 996 | - 950 | - 938 |
| - 실질적 실업자 | - 1,146 | - 1,060 | - 1,008 |
| • 통계상 실업자 | • 996 | • 950 | • 938 |
| • 직업훈련이수 실업자 ¹⁾ | • 70 | • 70 | • 70 |
| • 공공근로자 참여 실업자 ²⁾ | • 80 | • 40 | • - |
| - 사회안전망 대상 실업자 ³⁾ | - 917 | - 848 | - 806 |
| - 사회안전망 대상 실업가정 ⁴⁾ | - 784 | - 725 | - 669 |

- 註: 1) 직업훈련 이수 실업자는 노동연 계획치를 인용
 2) 공공근로사업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가정하에 참여자의 80%를 실업자로 가정
 실질적 실업자의 80%를 사회안전망 대상 실업자로 가정
 4) 실업가구의 평균 실업자수 1.17명 적용

4. 社會安全網 프로그램 改編方案

가. 社會安全網 構築을 위한 基本方向

1) 社會安全網의 保護對象(target group)의 明確化 및 衡平性 提高

현행 社會安全網은 개념상의 혼란으로 실업자만을 위한 ‘실업자 社

68) 통계상의 실업자, 공공근로자 중 실업자, 직업훈련이수 실업자

會安全網'으로 오용되고 있으나 IBRD, IMF 등의 社會安全網 개념에 따르면 社會安全網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실업과 관련된 社會安全網 정책의 주요대상은 실업자와 빈곤층으로 요약되며, 정책에 있어서는 열악한 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J. Rawls의 maximin principle).

2) 包括的 社會安全網의 設置·連繫로 保護의 死角地帶 除去

社會安全網의 대상계층 중 빈곤선 이상의 계층에게는 고용보험,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공공부조 또는 고용보험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한시적(2001년까지)으로 공공근로, 실직자대부사업 등으로 보완하고 그 규모는 실업률의 하락에 따라 축소한다. 그리고 1, 2차 社會安全網에서 누락된 자는 제3차 긴급구호으로써 보호함으로써 社會安全網의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3) 勤勞能力 有無에 따른 2元的 社會安全網 構築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受惠的 福祉(Welfare)를,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근로연계 福祉(Workfare)를 지원하도록 한다. 즉 근로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를 통한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를 하고, 社會安全網과 3D업종 및 비인기 중소기업 취업 등과 연계하도록 한다.

4) 傳達體系의 效率性 向上과 DB 構築

社會安全網 프로그램별 전달체계가 달라 요보호 계층에 대한 One-stop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기존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전환을 통한 전달체계의 일원화로 대상자의 접근성 제고 및 비용효과적인 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社會安全網 關聯 DB를 조기에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한다.

5) 社會安全網의 무게중심을 失業對策에서 貧困對策으로 轉換

기존의 社會安全網은 빈곤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인 실업자에게 무게를 두고 있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약계층은 경기회복 후에도 상당기간 빈곤층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의 방향을 실업자 중심에서 빈곤한 실업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로 전환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나. 階層別·特性別 社會安全網 構築方案

실업대책은 실업가정의 소득수준 및 가구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所得認定額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장을 하여야 한다. 생계보장대상 중 가구여건을 감안할 때 근로를 할 수 없는 실업가정은 수혜적 복지를 제공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실업가정은 근로제공을 전제로 條件附 生計給與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실업가정에게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8)에 의하면 한시적 생활보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실업 가구비율은 약 45%이다. 이중 가족 및 친지의 지원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가구 비율(18%)을 제외하면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실업가구 비율은 36.9%로 추정된다. 이들을 수혜적 복지 와 근로연계복지대상으로 구분하면 각각 14%⁶⁹⁾와 22.9% 이다. 그리

69) 저소득층 실업가구 중 자발적 취업보류자, 그리고 편부모가구,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이 있어서 곧바로 취업이 힘든 가구 비율임.

고 실업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인 55%은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社會安全網이 보완되어야 하는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圖 9-1] 失業者 特性別 政策目標 및 事業의 類型

| 대상유형 | 구성비 | 정책목표 | 사업유형 | | | |
|-------------|------------------|------|-------------------------|---------------------------------------|----------|---------------------------|
| 最低生計費 以下 家口 | 재취업 가능성 미약 | 14% | 基礎 生活保障 | 생계보호 | | |
| | 재취업 가능자 | 31% | 基礎 生活保障 + 雇傭政策 | 실업자 대부 의료보험 연장 중고령자조기 퇴직금 | 공공 부조 | 실업 급여 |
| 最低生計費 以上 家口 | | 55% | 雇傭政策 | 임금보조금 민간복지 | | 공공 근로 · 직업 훈련 |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에서 재구성

다. 社會安全網 프로그램別 改善方案 및 政策課題

1) 雇傭保險의 改善

가) 適用對象者의 擴大

1998. 10월부터 전 사업장의 상용직·임시·시간제 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향후 일용직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 아닌 공무원에 대한 적용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나) 在職時 所得水準別 給與時機 調整

현행 실업급여는 실직후 1개월부터 지급되나 임금수준에 따른 급여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즉, 임금수준이 높았던 실직자일수록 대기기간을 길도록 재편한다(적용사례 아이슬란드).

다) 特別延長給與의 改善

부조의 성격이 강한 特別延長給與는 3D업종 취업 및 비인기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이수 등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현행 定率給與(실업급여의 70%)인 특별연장급여를 定額給與로 전환하도록 한다.

2) 基礎生活保障制度의 政策課題

가) 適正豫算의 確保

적정 소요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法的 訴訟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선 빈곤율 변화 전망을 감안한 대상자 수 추정과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적정 소요예산의 규모가 얼마이며, 이 규모는 우리의 경제수준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소요예산

생활보장예산의 대부분은 대상자 수와 급여액(최저생계비-자가소득)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상자수는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자 수, 소득분배구조, 동 법 제정에 따른 저소득층의 기대심리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급여액은 '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의 결과⁷⁰⁾와 전체 수급자의 자가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 중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소요예산은 2000년 약 2조 7천억원, 2001년 약 3조 1천억원, 2002년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IMF에 따른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 요인이 없는 한 생활보장예산은 본격적인 법 시행 연도인 2001년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2002년부터 빈곤을 감소에 따라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9-15〉 年度別 所要豫算(1999년 現在 價値基準)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총인구 | - 4,686만명 | - 4,727만명 | - 4,768만명 | - 4,806만명 |
| • 빈곤율 ¹⁾ | • 9.9% | • 7.1% | • 6.6% | • 6.3% |
| • 빈곤자 | • 457만명 | • 336만명 | • 315만명 | • 303만명 |
| - 생활보장대상자 ²⁾ | - 192만명 | - 186만명 | - 176만명 | - 172만명 |
| • 생계보호 | • 53.4만명 | • 52만명 | • 176만명 | • 172만명 |
| • 자활보호 | • 138.6만명 | • 134만명 | | |
| - 생활보장예산 | - 24,308억원 ³⁾ | - 27,567억원 ⁴⁾ | - 31,502억원 ⁵⁾ | - 30,779억원 ⁶⁾ |

- 註: 1) 김미곤, 빈곤율 추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 2000년 경제수준이 1997년 수준을 회복한다고 가정하되,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 생활보장대상자 수
 3) 99년 8월 현재, 생계보호+ 자활생계비+ 자활장제비+교육보호+의료보호+특별취로사업+공공근로+노숙자보호 합계금액, 지방비 포함, 한시 포함.
 4) • 1월~9월 : 52만명(생계보호) × 20.7만원(최저생계비 26.8만원-거택자가소득 5.6만원- 타법 0.5만원) × 9개월 + 2340억원(자활생계보호)×9개월÷12월 + 134만명(자활)×5.3만원(교육, 의료보호) × 9개월
 • 10월~12월: 186만명(생활보장대상자) × 13.8만원(최저생계비 26.8만원 - 자가소득 12.5만원- 타법 0.5만원) × 3개월=8197억원.
 • 기타 : 2,300억원(특별취로사업, 노숙자보호 등 1999년 수준)
 5) 176만명(생계보호) × 13.8만원(최저생계비 26.8만원 - 전체자가소득 12.5만원- 타법 0.5만원) × 12개월 + 2300억원(특별취로사업, 노숙자보호 등 1999년 수준)
 6) 172만명(생계보호) × 13.8만원(최저생계비 26.8만원 - 전체자가소득 12.5만원- 타법 0.5만원) × 12개월 + 2300억원(특별취로사업, 노숙자보호 등 1999년 수준)

70) 99년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01,357원

(2) 추정된 소요예산의 국제비교

2001년의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총소요예산 약 3조 1천억원은 1997년도 우리나라 GDP 416조원(한국은행, 1998) 대비 0.72%이하로 추정되어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부조 지출의 비중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면, 호주는 우리보다 9.4배, 미국은 5배 정도 높게 지출하고 있으며, 공공부조 지출비율이 다소 낮은 스웨덴이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도 각각 우리보다 2배, 2.7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9-16〉 主要國의 GDP對比 公共扶助 支出費의 比重(1992)

| 구분 | 호주 | 뉴질란드 | 프랑스 | 독일 | 이태리 | 일본 | 영국 | 미국 | 스웨덴 |
|-----|-----|------|-----|-----|-----|-----|-----|-----|-----|
| 구성비 | 6.8 | 2.5 | 2.0 | 2.0 | 3.3 | 0.3 | 4.1 | 3.7 | 1.5 |

資料: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1996.

나) 勤勞誘引을 提高할 수 있는 所得認定額 模型開發

所得認定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요소로서 동 법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동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생활보호법하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소득이 거의 없으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가구나, 또는 그역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이는 자산 소유형태에 따른 형평성과 대상자 선정의 포괄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근로와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극히 빈약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고(제5조), 급여에서는 그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또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는 근로유인을 위한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영국의 경우 유사한 제도(Tariff Income⁷¹)가 있으나, 수급자 선정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 공제 제도는 두고 있으나, 재산과 소득을 통합한 소득인정액 제도는 없다. 일본의 경우도 수입충당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소득평가액과 비슷한 개념) 산정시 월평균 총수입에서 실비공제와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산과 소득을 통합한 소득인정액 제도는 없다(김미곤, 1995). 결국 우리의 소득인정액 모형은 각국의 공공부조 모형의 장점을 종합한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의 현실적 적용에는 많은 연구와 시범사업 그리고 정확한 자산조사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1) 所得評價額 算定方式

소득평가액은 총 수입 중 필요경비(주부의 경우 보육료, 교통비 등)를 차감한 소득에서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경비는 수입발생을 위한 비용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수급자 선정의 경우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시스템을 두지 않을 경우 일하는 자는 탈락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71) 금융재산과 세를 준 재산(특히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는 급여에서만 적용하고 있음.

또한 급여의 경우에서도 보충급여로 인하여 일하는 자나 일하지 않는 자나 동일한 생활수준(최저생계비)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공제를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공제율과 폭을 얼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공제율을 높이면 근로유인이 증가하지만 공제액만큼 톱니효과(notch effect)⁷²⁾가 나타나 열등처우의 원칙⁷³⁾을 위배하게 된다. 반면에 공제율이 낮으면 근로유인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에 안주하는 빈곤함정(poverty trap)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공제율 결정을 위해서는 공제율에 따른 근로유인 정도, 노동시장의 상태에 따른 공제율 효과 등을 파악키 위한 示範事業이 필요하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인정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제2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도 역시 소득평가액과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즉, 재산의 포함범위, 재산가격의 통일, 환산율 등에 대한 검토가 그것이다. 먼저 재산의 포함범위를 살펴보자. 재산의 특성상 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재산으로 첫째, 소득이 발생되는 재산(논, 밭 등) 둘째, 종중산, 결혼 예물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 셋째, 장애인의 전용 자동차 등 특정인의 필요불가결한 재산, 넷째, 조사비용, 행정비용 등을 감안한 일정액 이하의 재산 등이다.

그리고 현행 우리 나라의 가격체계는 현시가, 공시지가, 표준시가, 과표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들 중 하나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72) 생계보호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수급자의 가용소득이 비수급자의 소득보다 공제액 만큼 높아지는 모양이 notch(V) 모양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임.

73) 영국의 1834년 신구빈법에 반영된 법정신으로 구제받는 사람의 구빈수준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독립 노동자자의 임금수준보다는 높아서는 안된다는 원리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가격의 통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준 가격의 문제는 최저생계비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격이 현시가지므로 재산평가에서도 현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공시지가, 표준시가, 과표는 각각 현실화율의 역수를 곱하는 방식을 통해 현시가로 환산해야 한다⁷⁴⁾.

마지막으로 재산의 환산을 문제인데, 금융재산과 기타재산간 또는 필수재산과 비필수재산간에 환산율의 차등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재산이든간에 재산은 유동성이 현금보다 낮으므로 공급리 수준보다는 낮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초공제를 해야 한다.

다) 補充給與의 導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제7조 2항과 제3조 1항에서 보충급여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인 보충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현실적용에 있어서는 보충성의 원리, 형평성, 근로유인, 행정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및 소득인정액 산정모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차등급여에서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고려하고 있으나, 지역간의 차이와 가구유형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4인 가구라 할지라도 거주 지역과 가구유형에 따라 현실적인 생계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지역간, 가구규모간, 가구유형간 생계비 차이가 반

74) 단순모형은 기준가격 = 재산의 과표 또는 공시지가 ÷ 과표 또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로 표현되나, 이 경우 현실화율이 평균치보다 높은 재산은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됨.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미곤, 補充給與導入方案에 관한 研究, 1995, 참조.

영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형평성 및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차액을 지급할지라도 화폐의 최종단위까지 급여액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익이 없다. 그렇지만 현행의 차등급여표(소득등급 6, 가구규모 6)는 지역간의 차이가 없고, 소득등급도 너무 단순하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급여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세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향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현물급여+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 타법급여 · 보충급여(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현물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 타법급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1-공제율) × (소득 - 기초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율 ×(재산가액 - 기초공제액) |
|--|

라) 家口別 特性을 勸案한 基礎生活保障 및 自活支援計劃樹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의 기본정신은 가구원의 근로능력, 질병·장애 유무, 간병·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 등의 가구별 특성과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가구특성에 맞는 ‘맞춤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연계하여 가구별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등에 대한 부가급여 지급방안 등이 필요하다.

[圖 9-2] 生計維持能力別 基礎生活保障方案

| 최저생계비 | 근로능력 無 | 근로능력 有 | | | | |
|--------------------|--|--------------|------------|-----------------|------------|-------------------|
| |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 | 경제활동인구 | |
| 가 구 특 성 | (생계유지능력 無) | (생계유지능력 無) | (생계유지능력 有) | | (생계유지능력 有) | |
| |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 근로불능자 | 가구특성상 근로불가능자 | 근로의욕이 없는자 | 근로능력이 미약한 실망실업자 | 저소득 실업자 |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농어민 등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생 보 총 계 | ○ | ○ | - | - | - | ○ |
| 급 여 | | | | | | |
| 보 조건부 | - | - | ○ | ○ | ○ | - |
| 호 급여 ¹⁾ | | | | | | |
| 자 녀 교육보호 | ○ | ○ | ○ | ○ | ○ | ○ |
| 의료보호 | ○ | ○ | ○ | ○ | ○ | ○ |
| 생업자금 융 자 | - | ○ | ○ | ○ | ○ | ○ |
| 직업상담· 직업훈련등 | - | - | ○ | ○ | ○ | ○ |
| 해산·장제 보호 | ○ | ○ | ○ | ○ | ○ | ○ |
| 재가복지 서 비 스 | ○ | ○ | ○ | ○ | ○ | ○ |
| 주간보호 서 비 스 | ○ | ○ | ○ | ○ | ○ | ○ |
| 원인분석 및 상담치료 | - | - | ○ | - | - | - |
| 부 가 급 여 | ○ 가구원 특성에 따라 지급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 (장애인) (노인) (편부모가정) ↓ ↓ ↓ ↓ ↓ 소년소녀가장 지원수당 보육료 생계 보조수당 경로연금 양육비 등 | | | | | |

註: 1) 근로연계 보충급여

마) 傳達體系 構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행정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근로연계 행정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자. 즉 同법 19조 4항은 이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28조 1항),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생계급여(제9조 5항), 급여중지(제30조 2항) 등을 위해서는 전체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로연계행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社會福祉專門要員 數 增大

10월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2,930명이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생활보호가구수는 약 250(선진국 1인당 약 100가구)이며, 생활보호외에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전반적 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외에도 이들은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있어 읍·면·동사무소의 기타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가구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요원들의 수를 7,500명(1인당 100기준)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배치인원을 확대(2~3명)하고, 전문요원 한사람이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積極的인 勞動市場 進入을 위한 勤勞連繫 行政體系 構築

현행 생활보호사업에선 노동부의 고용안정조직과 행정적인 연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생활보호사업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관련 업무는 노동부의 각 지방노동

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체계 및 저소득층 DB 구축이 필수적이다.

바) 地域別 特性을 勘案한 福祉對策 樹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2항은 따르면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또는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활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공공부분이 모두 담당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第 2 節 失業者 및 失業家庭을 위한 補完的 對應方案

1. 基礎生活保障을 위한 對應方案

첫째, 적정예산의 확보가 선결요건이다. 생활보장예산의 대부분은 대상자 수와 급여액(최저생계비-자가소득)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상자수는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자 수, 소득분배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저소득층의 기대심리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와 수급자의 자가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한 소요예산은 2000년 약 2조 7천억원, 2001년 약 3조 1천억원, 2002년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정예산의 확보가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수급자 선정의 경우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시스템을 두지 않을 경우 일하는 자는 탈락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급여의 경우에서도 보충급여로 인하여 일하는 자나 일하지 않는 자나 동일한 생활수준(최저생계비)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제율을 높이면 근로유인이 증가하지만 공제액 만큼 톱니효과(notch effect)⁷⁵⁾가 나타나 열등처우의 원칙⁷⁶⁾을 위배하게 된다. 반면에 공제율이 낮으면 근로유인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에 안주하는 빈곤함정(poverty trap)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정 공제율 결정을 위해서는 공제율에 따른 근로유인 정도, 노동시장의 상태에 따른 공제율 효과 등에 대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계획수립되어야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정신은 가구의 근로능력, 질병·장애 유무, 간병·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 특성 등의 가구별 특성과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가구특성에 맞는 ‘맞춤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公共勤勞事業의 內實化

가. 事業規模 調定

금년의 경우 실업자수가 유사 이래 최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재(5월)의 투입계획 연간 57만명을 예산의 증액없이 급여수준 조정으로 확대하여 연간 60만명(월 30만명)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기회복 및 고용보험의 확충 효과가 나타날

75) 생계보호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수급자의 가용소득이 비수급자의 소득보다 공제액 만큼 높아지는 모양이 notch(V) 모양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임.

76) 영국의 1834년 신구빈법에 반영된 법정신으로 구제받는 사람의 구빈수준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독립 노동자의 임금수준보다는 높아서는 안된다는 원리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부터 사업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실업률이 5%이하로 떨어지는 2002년에는 전면 폐지하고 동 재원을 공공부조에 투입하도록 한다.

〈表 9-17〉 年度別 公共勤勞對象者數 및 所要豫算

(단위: 만명, 억원)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대상자수 | - 연간 60(월 30) | - 연간20(월 10) | - 연간 10(월 5) | 없음 |
| - 소요예산 | - 2조 5000억원 | - 1조원 | - 5000억원 | 없음 |

나. 對象者 選定基準 合理化

현행의 연령기준은 민간시장에 취업이 힘든 중고령층을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30~55세이고 여타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을 폐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와 가구내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왜냐하면 취업자 있는 실업가구 소득은 88.8만원인데 비하여 없는 가구는 33.3만원에 불과하고,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의 생계가 일반가구보다 생활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表 9-16 參照).

다. 公共勤勞事業의 生産性 向上

공공근로사업은 현행 실업대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이므로 이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업자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목표집단을 구분하여 특성화된 사업별로 배치함으로써 사업의 생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

다. 일용직은 사회기간시설 정비사업(도로 및 제방보수사업 등)과 간별사업, 자원재활용 사업 등의 환경정화사업에 여성은 복지도우미사업 등의 여성 친화적 사업에 청년은 정보화사업 등에 집중 배치하고, 장기실업자에게는 집단창업, 생활협동조합구성 등의 적절한 창업 및 생계자금을 대부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의 일정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민관 공조의 社會安全網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0년부터 전체 공공근로사업의 20~30%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중소기업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근로사업을 중소기업에 위탁·시행하여 공익적인 3D업종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職業訓練의 內實化

가. 失業者 特性에 따라 教育訓練 프로그램의 特性化

연령에 따라 40~50대는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20~30대는 재취직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학력 정도에 따라 저학력자는 기술·기능의 향상 및 숙련도, 그리고 고학력자는 전문기술, 벤처기업창업, 선진관련기법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한다.

나. 職業教育訓練 機關別 프로그램 特化

실업자가 교육훈련 과정과 교육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재취직훈련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다음의 <

表 9-18>에 제시된 특화프로그램이 한 방안이다.

<表 9-18> 教育機關別 特化프로그램

| 교육기관 | 특화프로그램 |
|--------------------------|--|
| - 대학, 전문대학 | 고도의 전문기술분야와 벤처기업강좌, 창업과정, 자격증취득 및 능력개발 관련 과정 |
| -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기관 | 특정영역의 자격증 및 기술·기능 과정의 개설 |
| - 비영리 법인 단체 | 전문직 및 사무관리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창업, 금융, 인적자원 관련 프로그램 |
| - 기술계 학원 | 타 교육훈련 기관에서 개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경쟁력을 갖는 자격증 과정, 기술·기능관련 과정, 기타 다양한 과정 |

다. 人力의 機能別 最適配分(FBA)시스템 導入

실업(ES)은 노동공급과 수요의 차이에서 발생($ES = LS - LD$)하나 미시적인 차원의 업종별·직종별·기능별 실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기능, 임금, 소득의 경직성) 때문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체의 업종별·기업별·직종별 노동수요와 공급을 비교하여 인력의 기능별 최적배분(functional best allocation)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12자리 정도의 기능별번호(직종, 적성, 학력, 건강정도 등)를 부여하여 기능별 노동공급 수준을 파악하고, 민간기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低所得層 失業家庭에 대한 負債償還 猶豫

실업가정의 원만한 경제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 지원 중의 하나는 재취업을 통한 가계의 독립성이 확보될 때까지 가계 부채

상황을 유예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가구원 실직 전부터 생계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가계소득원이 1인 이어서 실직이후 여타의 수입원이 없는 독신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요망된다.

5. 兒童手當制度 導入

실업가구 중 소득감소로 인한 자녀양육비의 부담으로 자녀를 친지나 시설에 위탁하는 가구도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비의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압박을 제거하고, 자녀를 둔 가정의 빈곤예방을 통한 생활안정과 가족기능의 강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6. 子女 教育費 및 附帶費用 支援

실업가정의 경우 가구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생계유지상의 어려움과 함께 자녀교육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자녀들의 상급 학교로의 진학포기 및 연기, 군입대 및 휴학, 사교육 중단 등으로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실업가구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교육의 포기 및 중단 등은 빈곤의 악순환과 연계되며, 빈곤이 세습화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들 가구를 위한 자녀의 교육비 지급을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교복비, 참고서 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이들 자녀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실업가정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 대출을 대폭 확충하고 대출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7. 失業者의 心理安定을 위한 家族員의 理解와 紐帶感 強化

실업자의 심리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직상황에 대해 실직자 및 가족의 인식 및 이해의 문제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적 및 지역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를 비롯한 자녀의 이해와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강연회,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실직자 개인의 상황과 약능력과 사회 및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며 또한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부간의 역할갈등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함을 생각할 때 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인 가족 역할 또는 모델에 대한 다양한 교양·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 유대감 증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지원. 무엇보다 같은 입장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간의 유대, 소통이 개인에게 가장 큰 심리적 지지임을 생각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연결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실직 아버지들의 모임 또는 실직가장 아내들의 모임 등과 같은 동료집단(peer group)의 모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심리적 안녕과 유대감을 증진시켜 실업당사자 및 가족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변화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8. 家族의 結束力 強化를 위한 家族相談事業 活性化 및 프로그램 開發

실업가구의 가족원들의 경우 주소득원의 실업으로 인해 변화된 역할에 대한 부적응, 부부간의 불화 심화, 자녀의 비행증가 등 가족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가족

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변화된 역할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사업의 활성화와 가족역할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서적 기능과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保健醫療 政策의 強化

실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이용이 하향화되었거나 치료가 중단된 계층인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및 결혼가구, 의료보장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한계계층 가구 및 만성질환자가 발생한 가구를 중심으로 한시적이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시급히 강구되어야겠다. 특히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계층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업가구,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나 가정 경제생활에 미치는 의료비부담이 큰 실업가구 및 의료비 지출규모가 큰 실업가구, 이환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가구소득 규모가 적은 실업가구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보건소 이용을 확대하고 의료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원진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입원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입원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정부가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10. 緊急食品券制度의 導入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기초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절대 빈곤층이 약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결식가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결식학생 수는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취학 결식아동을 포함하면 약 2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社會安全網 예산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1, 2차 社會安全網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失業者가 존재하고 있고, 취약실업가구는 소득수준 악화로 영양 결핍심화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폐질자 등은 실업가구 중에서도 더욱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 食品券制度 導入方案

1) 給與對象

식품권 제도의 급여대상은 社會安全網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결식아동 및 학생,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노인, 노숙자, 저소득 장애인 및 폐질자, 한계계층 실업자, 월남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2) 制度運用

제도운용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제도가 갖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식품권이 단순 금품살포가 아닌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해결이나, 영양결핍 방지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권으로 구입이 가능한 품목과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이 설정되어야 한다. 구입제한 품목으

로는 주류, 담배 등의 필수품이 아닌 품목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식품교환권(foodstamps)은 기존의 농·수·축협외 상품권을 이용하고, 최소액면가를 1,000원권으로 하되, 물건 구입후 잔돈은 현금 상환이 가능토록 한다. 그리고 가구내 취사가 불가능한 자를 위하여 식품교환권으로 대중음식점에서 5,000원 미만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급여대상자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하되, 총 급여일수를 24개월로 제한하도록 한다.

나. 食品券 制度化 方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 제7조(보호의 종류)에 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등의 긴급구호제도를 포함하여 법제화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임에 틀림없다.

第10章 結論

실업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존재한다. 단지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실업률이 약 4% 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완전고용상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실업은 항상 존재하는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실업자와 실업가정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최근 한국 사회는 경기불황과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공적 및 사적영역에서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실업대책에 의해 추진된 공공근로사업과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실업자는 크게 감소한 상태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업률에서 누락된 실망실업자를 감안하면 우리 사회에서 저실업률은 요원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命題 下에 신규채용은 상용직으로 보다는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업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저소득 및 저학력 계층의 고용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의 부족한 인적자원으로 인하여 취업의 필요성이 있는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 가정의 생계유지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貧困의 責任은 社會的 責任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貧困의 原因은 經濟的, 社會的 構造에서 비롯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빈곤을 발생시키는 社會經濟構造를 변화시켜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빈곤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실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업자의 인적자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MF관리체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자 및 빈곤자를 위하여 정부는 社會安全網 豫算을 대폭 증액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社會安全網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가 39.6%에 이르고 있고, 수급자의 경우도 급여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예산의 증액을 통하여 가능하지만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집행과 비용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실업자의 계층과 특성에 맞게 社會安全網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목표집단에게 급여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분배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가구 및 취약계층에게 비용효과적인 제도의 도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年金制度, 雇傭保險制度, 醫療保險制度, 産業災害保險 등 社會保險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업대책을 위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나아가서 저소득층을 위한 公共扶助政策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産業化, 都市化 및 西歐化로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家族規模의 縮小, 家族世代의 單純化, 家族關係의 弱化, 그리고 孤立化된 核家族(Isolated Nuclear Family)은 실업이 가족에 주는 충격을 완화시

키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家族葛藤 및 問題를 야기시킨다. 특히 核家族은 主扶養者의 사회적 위치변화에 情緒的 및 經濟的으로 크게 의존되어 있다(김승권 외, 1998a). 그러므로 주부양자의 실업은 다른 가족원에게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족문제가 발생되며, 심지어는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최근의 이혼율 증가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점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離婚 및 別居, 生計難 등으로 인하여 要保護 및 缺損家族이 증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家庭에서 야기되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 住居問題, 子女養育問題, 老人扶養問題 등의 각종 家族問題는 社會問題로 인식되어 국가 및 사회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失業은 실직당사자 및 그들 가족원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家族의 結束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정서적 문제를 가진 가족은 主扶養者의 실업으로 가족스트레스 및 갈등을 발생시키고, 가족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즉, 家族의 機能과 役割을 약화시켜 家族構成員間의 紐帶를 약화시키고 家族葛藤을 야기하여 家族危機를 초래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실업자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편부모가구 또는 독인가구일 때 실업자의 심리변화가 다양하고 또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문제, 즉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이들 가구에 보다 큰 사실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심리상태, 개인의 내면생활 차원에서, 그리고 실업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해석의 수준이 낮거나 보다 비관적인 것,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능동적, 긍정적 대처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인적 유대의 자원이 보다 결여되어 있는 사실의 반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가족의 배려와 사회복지적 대책이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 공세권·조애저, 『편부모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미곤, 『실업가구의 경제생활실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6.
- _____, 『공공근로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4.
- _____, 『생활보호제도의 개선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5.
- _____, 『고실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1998. 12.
- _____, 『보충급여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미곤, 양시현, 『중기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7.
- 김재갑 외, 『실업스트레스의 변화』, LG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1998.
- 김승권·이상헌·양혜경,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a.
- 김승권·조애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b.
- 김양희·곽인숙·윤정혜 외, 『가장의 실직전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1999.

- 문진영 「실업대책과 사회보장 정책방향」, 1998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7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8(a).
- _____, 『영국의 사회적 안전망과 실업대책』, 1998년도 한국유럽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1998(b).
- 박능후, 「사각지대 실업자 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6.
- 박순일, 「1998년 실업정책 효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제2차 실업대책백서』, 국민회의, 미발간.
- _____, 「고실업 시대의 한국복지정책방안」,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학회, 1998.
- 박찬용,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율 변화와 원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1999.
- 새정치국민회의, 『제1차 실업대책백서』, 1998.
- _____, 『제2차 실업대책백서』, 미발간, 1999.
- 서울특별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민의 보건의료수준』, 1998.
- 안병철, 「경제적 고통과 가족」, 『사회비평』, 제19호, 1999.
- 양혜경, 「경제위기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1998.
- 유길상 외,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8.
- _____,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이영문, 「경제위기 상황과 정신건강의 함수」, 『사회비평』, 제19호, 1999.
- 장혜경·김영란,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

- 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 정경배 외,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정개혁대
론회, 국정개혁모임, 1998.
- 정무성, 「실직자와 그 가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정책방향」,
『실직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8.
- 정형선, 「OECD 국가의 사회안전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1998. 10.
- 조성희,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 실직가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실직가장이 인식하는 가족해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사회복지연구』, 제13호, 1999.
- 조흥식, 「실직자 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한 가족스트레
스 대처모델의 적용」,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2호, 한국가족사
회복지학회, 1998a.
- _____, 「실직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직자 가족의 위기
와 사회복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8b.
- 최규련, 「실직자 가족의 문제와 대처,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지원요
구도: 실직자 아래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3호, 1999.
- 최성재,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대출판부, 199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월.
- 한국노동연구원, 「중기 실업대책의 방향과 과제」, 내부자료, 1999.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내부자료, 199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1999. 4.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현안에 대한 가계심리 설문조사』, 1998.
- Anderson, Micharel, *Family Structure in Nineteenth Century Lancash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Atkinson, T., Liem, R. & Liem, J. H., “The Social Cost of Unemployment: Implication for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7, 1986.
- Beckett, Joyce O., “Plant Closing: How Older Workers Are Affected”, *Social Work*, Vol. 33, 1986.
- Brenner, Harvey M., *Estimating the Effects of Economic Change on National Health and Social Well-being*,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 Broman, Clifford L., Hamilton, Lee V., and Hoffman, William S., “Unemployment and Its Effects on Families: Evidence from a Plant Closing Stud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8, No.5, 1990.
- Cates, J. R. & N. Lohman, “Education for Social Poli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Vol.16, No.1, 1975.
- Chadiha, Letha A., “Black Husband’s Economic Problems and Resiliency during the Transition to Marriage,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Vol.73, pp. 542~552.
- Chu, Ke-young and Sanjeev Gupta, “Social Safety Nets in Economic

- Reform". In *Social Safety Nets: Issues and Recent Experiences*, edited by Ke-young Chu and Sanjeev Gupta. Washington: IMF, 1998.
- Dail, Paula W., "Unemployment and Family Stress," *Public Welfare*, Winter, 1988.
- Darity, William, "Who Loses from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33, No.2, 1999, pp.491 ~ 6.
-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U.K),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Volume I: Synthesis Report, London: HMSO, 1996.
- Dunn, W. N., "Conclusion: Evaluating Policy Performance", *Public Policy Analysis*, 1994.
- Gilbert, Neil, Harry Specht and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3.
- Hernandez, Donald. J., "Jobs, Poverty, and Family Breakup," *USA Today*, Vol.122. No.2582, 1999.
- Kelly, J. B., "Educating Social Workers for a Changing Society: Social Policy",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Vol.11, No.1, 1975.
- Kessler et 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1988.
- Lala, Shulamith., Ashenberg Straussner, Norma Kolko Philips, "The Impact of Job Loss on Professional and Managerial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Nov/Dec, 1999.
- Liem R. & Liem, Joam H.,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44(4), 1988.

- Meenaghan, T. M. & R. O. Washington, *Social Policy and Social Welfare: Structure and Application*, New York: Free Press, 1980.
- OECD, *The OECD Jop Study-Part II*, 1994.
- Perrucci, Carolyn C., Perrucci, Robert., and Targ, Dena B., "Gender Differences in the Economic, Psychological and Social Effects of Plant Closing in an Expanding Econom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34, No.2, 1997, pp.217~33.
- Rutman, L., *Evaluation Research Methods: A Basic Guide*, SAGE Publications, 1984.
- Sales, Esther, 1995, "Surviving Unemployment: Economic Resources and Job Loss Duration in Blue-collar Household", *Social Work*, Vol.4, No.4, pp.483~494.
- Schliebner, Connie T. and Peregoy, John J., 1994, "Unemployment Effects on the Family and the Child: Interventions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2, No.4, pp.368~372.
- Sen, Amartya Kumar, *On Economic Inequality*, Oxford: Clarendon P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Theodossiou, I., 1998, "The Effect of Low-pay and Unemploy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 Logistic Regression Approac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7, pp.85~104.
- Vosler, N. R., "Displaced Manufacturing Workers and their Families: A Research-based Practice Model", *Families and Society*, 75, 105~115, 1994.
- _____, *New Approaches to Family Practice: Confronting Economic Stres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6.

Walsh, Susan., Paul R. Jackson, 1995, "Partner Support and Gender: Context for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8, pp.253~268.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Pov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著者 略歷 □

● 金 勝 權

美國 University of Hawaii 社會學 碩士
美國 University of Hawaii 社會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家族福祉·人口政策팀장

〈主要 著書〉

『女性失業者 및 失職者 家庭의 生活實態와 福祉欲求』, 大統領直屬
女性特別委員會·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8.(共著)
『韓國 家庭暴力의 概念定立과 實態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社會研
究院, 1998.(共著)

● 曹 愛 姐

淑明女子大學校 政策大學院 碩士課程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 金 美 坤

建國大學校 大學院 經濟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副研究委員

● 李 善 雨

美國 U.C. Berkeley, 社會福祉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 金 柔 敬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碩士課程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 宋 寅 珠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員

● 呂 珣 眞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福祉學科 博士課程 修了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研究報告書 99-08

失業家庭의 生活變化와 對應方案

Strategies to Respond to Changes in Ways of Life of Unemployed Households

1999年 12月 日 印刷 價: 9,000 원

1999年 12月 日 發行

著 者 金勝權外

發行人 鄭敬培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 : 02) 355-8003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大明企劃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9

ISBN 89-8187-199-X 93330